

수산물 산지위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04647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469-01

수산물 산지위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2010. 7.

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수산물 산지위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7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연구책임자 : 정 명 생

연 구 진 : 강 종 호

임 경 희

정 명 화

이 상 건

연구감리 : 김 정 봉

연구자문 : 장 영 수

(부경대학교)

요 약

제1장 연구배경 및 산지위판장의 개념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산지위판장은 수산물 산지유통의 중심기구로서 산지와 소비지의 효율적 연계는 물론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가격 형성기능 수행 등 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처럼 수산물유통에 있어 산지위판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 위생 및 품질 유지시설 미흡 등 산지위판장은 수산물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에 취약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음
 - 더욱이 1997년에 수산물 의무상장제(강제상장제)가 폐지되었는데, 이는 산지위판장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수산물 양륙의 불투명성을 초래해 수산자원관리, 수산물품질관리 등 여타 제도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수산물 의무상장제 폐지 이후 생산 및 유통부문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자원관리 수단으로서 양륙항 지정제도 도입 또는 의무상장제도 부활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산물 산지에는 다종다양한 수산물의 다양한 용도로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유통의 장이 필요하며 수산물유통의 시발점으로서 산지위판장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 목적

- 1997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현행 자유판매제(임의상장제) 하에서 발생하는 산지위판제도의 문제점과 모순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수산물 산지위판제도 개선방안 및 산지위판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2. 산지위판장의 개념 및 역할

1) 산지위판장의 개념

(1) 위판장 관련 법령

- 위판장은 1997년 의무상장제에서 자유판매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산업법 제52조 ‘어업조정명령’,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어획물의 양륙제한’, 제21조 ‘어획물판매장소의 지정’ 등 근거법령이 삭제됨
 - 이후 위판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2008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법률이 정비되었음
- 위판장의 지정은 수산업법 제61조의 제1항 제7호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음
 -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항만법에 따른 항만, 그 밖에 선착장 또는 물양장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어획물 양륙시설을 갖춘 지역이 해당됨
- 수산업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위판장을 지정취소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판장 지정을 받은 경우
 - 1년 이상 계속해서 위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위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또한 시·도지사는 위판장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함

(2) 위판장 및 공판장의 개념

- 위판장과 공판장의 개념을 정리하면 일선수협이 개설하는 산지시장이 위판장이며, 공판장은 농안법상의 법적기준을 갖춘 시설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위판장과 공판장의 기능상의 차이는 없으나, 규모와 개설방법, 농안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구분됨
- 위판장과 공판장 모두 거래방법에 상장경매원칙을 허용하거나 준용한다는 점에서 방법상으로 큰 차이가 없음

- 공판장은 개설자가 수협이라는 점과 입지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매시장과 큰 차이가 없음
- 반면 위판장은 수협이 개설하지만 시설이나 운영에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고, 소매시장의 개설이나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에도 자유로우며 입지나 시설의 제한도 없음

2) 산지위판장의 역할 및 기능

(1) 산지위판장의 역할

-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50% 전후가 양륙 어항에 위치한 산지위판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출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산물이 산지위판장을 통해 출하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산지위판장이 어장에 근접한 연안에 위치하고 있음
 - 수산물 공급의 주력은 어선어업으로, 한정된 규모의 어선으로 정해진 성어기에 어장과 어항 간을 신속히 이동함으로써 그 왕복 횟수가 곧 어획량을 결정하기 때문임
- 둘째 산지위판장의 신속한 판매 및 대금결제 기능은 곧 어업생산으로 직결됨
 - ‘어장 조업, 어획, 귀항, 양륙, 판매, 대금 결제, 연료·어구·선원 식료 보급·선원임금 지불, 재출항, 조업’이라는 어업생산 사이클의 시간단축은 곧 조업 횟수의 증가로 어업생산 증대에 직결됨
- 셋째, 산지위판장에서는 어획물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 배분이 가능함
 - 양륙된 어획물의 대부분이 선어·냉동 등의 형태로 소비지에 출하되는 것은 아니며 어종별 크기별로 대·중·소 등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사료와 같은 비식용 용도로 이용되며, 혹은 가공원료 내지는 수출용으로 이용됨

(2) 산지위판장의 기능

- 산지위판장은 주로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업생산자는 시장도매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협에 어획물을 위탁 판매하는데, 생산자를 대신하여 수협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요자의 대표로서 등록된 중도매인들과 경매 및 입찰에 의해 가격을 결정함
 - 이 때 어업생산자가 수협에 판매를 위탁할 때는 무조건 위탁 판매조건(또는 최저가격 제시)이 일반적임

- 어획물을 구입한 중도매인은 구입대금을 수협에 납입하고, 이 때 납입 기일 조건은 즉일 납입이 원칙임
 - 수협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그 중에서 수협에서 정한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어업생산자에게 지불함
- 산지위판장은 어업생산을 위한 전초 기지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 ① 생산지 어획물의 양륙과 진열기능, ② 거래형성기능, ③ 대금결제기능, ④ 판매기능 등을 수행함

제2장 수산물유통 및 산지위판제도의 여건 변화

1. 수산물 공급구조의 변화

1) 어업생산구조의 변화

(1) 어업별 구성비 변화

- 총 어업생산 규모는 물량의 경우 1990년 319만 톤에서 2009년에 318만 톤으로 1990년과 비슷한 수준임
 - 어업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2000년 초반까지 감소한 이후 양식생산의 호조로 증가해 2000년 대비 2009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2.7%를 기록함
- 이에 비해 금액은 꾸준한 증가세로, 1990년 2조 4천억 원에서 2009년 6조 9천억 원으로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연평균 약 6.1%씩 증가하였음
 - 어업별로는 양식어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11.7%로 가장 높았으며, 내수면어업도 9.3%로 높게 나타남
- 어업별 구성비(물량 기준)는 1990년의 경우 일반해면어업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고 원양어업이 천해양식어업 보다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양식어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9년 현재 전체 어업생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음
 - 금액 기준으로도 1990년의 경우 일반해면어업이 전체 어업생산의 약 60%, 원양어업이 20%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양식어업의 생산액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9년의 경우 양식어업이 원양어업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전체 어업생산 규모의 변화와 함께 어업별 구성비도 대내외 여건 변화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음

(2) 어선세력의 감소

- 우리나라는 과도한 어획노력의 감축을 위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 한일어업협정,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영향을 받은 어업에 대해 추가 감척사업이 추진되었음
 - 1999년~2002년까지 감척사업은 일반감척사업과 국제감척사업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일반감척사업만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어업 생산의 주요 수단인 어선세력의 동향을 보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어선척수는 7만 8천 척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2.3%씩 감소하였으며, 어선톤수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동기간 대비 연평균 4.8%씩 줄어들었음
 - 어업별(동력어선 한정)로는 가장 척수가 많은 연안어업의 경우 2000년 대비 2009년에 연평균 1.9%씩 감소하였으며 양식어업도 1.3%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규모가 큰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은 동기간 대비 각각 5.2%, 5.9%로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 2010년 1월 정부는 775억 원의 예산으로 근해어선 194척을 감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감척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 예정임
 - 2007~2010년까지 근해어선의 35%인 1,280척의 감척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3) 자원관리형 어업의 확대

- 대내외 환경적 변화와 자원 감소에 따른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보완이 요청되면서 2006년부터 자원회복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음
- 그 중 대표적인 TAC(Total Allowable Catch)는 이미 1995년에 제도 실시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1998년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도입된 상태임
 - 2000년까지 4개 어종(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과 2개 업종(대형선망, 근해통발)을 시범실시 어종 및 업종으로 선정한 이후 현재(2009년)까지 대상어종과 업종이 추가되면서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12개 업종에 약 41만 톤의 TAC가 설정되었고 향후 보다 확대될 예정임
- 이처럼 자원관리형 어업의 확립과 기조 유지가 전망되는 만큼 향후 어획물 위판과 관련된 수협과 기타 유통관계자 간의 경합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수입수산물의 유통 증가

(1) WTO, FTA에 따른 시장 개방 가속화

-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에 의한 WTO 체제의 출범으로 수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이 이뤄짐
 - 수산물은 공산품과 함께 비농산물 시장접근그룹(Non Agriculture Market Access, NAMA)에 속하게 되면서 관세인하 문제가 중심이 됨
- 또한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15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2007년 6월 및 2009년 8월에는 미국 및 인도와의 FTA에 각각 서명함
- 2000년 수산물 무역 수지 흑자 기록 이후 WTO, FTA 체결 등으로 인해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수산물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2) 수산물 수입의 확대

- 시장 자유화 이후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자리매김한 실정으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0년 이후 수산물 수입은 금액으로는 연평균 10%, 물량으로는 5% 가량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08년에는 수출 14억 5천만 달러, 수입 29억 5천만 달러로 15억 달러의 적자 기초를 기록함
- 국내의 수산물 공급은 국내 생산량이 정부의 지속적인 자원 관리 정책 등을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으로, 시장 개방으로 인해 수산물 수입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2. 수산물 소비 선호의 다양화

1) 사회 인구학적 구조와 선호 변화

- 최근 우리 사회 인구가 고령화로 급진전하면서 식품소비 패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산물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됨

- 인구의 연령구성 변화로 식품소비 패턴이 탄수화물 식품에서 동·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식품 위주로 전환되면서 주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소득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져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9% 증가한 55kg(2008년 기준)을 기록함
 -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한 것에 비례하여 국내 수산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지 않아 수산물 소비의 상당 부분이 수입 수산물로 충당되고 있음
 - 최근 수산물 소비의 특징은 고급화, 편의화·외부화 등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음
- 실질소득 증가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영향으로 실제 우리나라 가계의 외식비 지출을 보면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수산물의 경우 급식용 반찬과 수산물을 컨셉으로 한 레스토랑 체인(초밥 전문점, 시푸드 패밀리레스토랑, 특정품목 전문점 등)이 등장·확대하고 있음

2) 식품에 대한 안전·안심 요구 강화

-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대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과 같이 육류의 위해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동물성단백질이란 측면에서 대체관계에 있는 수산물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단백질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란 해석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정 품목과 수입수산물을 중심으로 안전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예 : 말라카이드그린, 동물항생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등), 소비자들은 식품 공급사슬 전체(Sea to Table)에 대한 식품 안전성 확보 요구를 강화하고 있음

3. 수산물유통구조의 변화

1) 대형수요처의 확산, 유통산업의 지각 변동

- 최근 수산물유통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지를 중심으로 대형할인점, 식자재업체, 급식업체 등 대형수요처가 등장한 데 따른 것으로 수산물유통구조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대형할인점, SSM 등 대기업 유통체인의 발전과 보급으로 도시의 경우 수산물을 구매하는 장소로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이 일반화되었는데, 실제로 2008년 대형할인점의 점포수는 378개로 2007년 대비 약 9.2% 증가하였음
- 소비지시장에서 대형수요처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주체의 대응은 제기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산지의 유통기능이 위축되고 있음
 - 즉, 대형수요처의 유통구조 지배력 증가로 기존의 유통경로를 경유하지 않고 독자로 개척·전개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경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새로운 판매형태의 등장, 전자상거래

- 수산물은 다양한 매매형태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자체적 특성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덜 활성화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즉, 수산물은 상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가 어렵고 생산 및 공급이 불안정하며, 짧은 유통기간으로 인하여 반품처리가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그러나 수산물 전자상거래가 꾸준히 확대되고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산지직거래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산지를 대표하는 수산물 위판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4. 산지위판제도의 변화

-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로 인해 산지유통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과 의무상장제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1997년 자유판매제가 전면 시행됨
 - 자유판매제 실시에 대한 지지논리의 근간에는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유통경로의 다양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수산물유통구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
- 그러나 자유판매제도의 한계점으로는 ① 생산량 통계집계 문제, ② 거래량 파악과 조세 부과 문제, ③ 불법어획물에 대한 감시·감독 문제, ④ 객주자본의 활성화 우려, ⑤ 시장 정보가 부족한 영세 어민에 대한 피해 우려, ⑥ 수협 위판사업 축소로 인한 수협 경영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음

제3장 산지위판장의 위판 현황 및 특성

1. 산지위판장 개설 현황

- 우리나라의 산지위판장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2개소의 산지위판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위판장이 168개소, 현장위판이 34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위판장 202개 중 75%가 전남, 경남, 경북, 강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취급부류에 따른 위판장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활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2. 산지위판장 시설 현황

- 위판장을 개장연도 기준으로 보면 1990년대에 개장한 위판장이 71개소로 가장 많고, 2000년대 66개소, 1980년대 18개소, 1970년대 16개소, 1970년 이전이 15개소 등의 순으로, 개장된 지 30년 이상된 위판장이 전체의 15.3%(31개소)를 차지하고 있음
- 규모별로는 1만㎡ 이상의 대규모 위판장이 3개소, 1천~1만㎡의 중규모 위판장이 49개소, 1천㎡ 이하의 소규모 위판장이 110개소로, 소규모 위판장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위판장의 필수시설은 사무실 이외 시설의 구비수준은 낮은 편으로, 오물처리장의 경우 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전체의 22%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부수시설 및 이용가공시설을 갖춘 위판장도 많지 않아 중도매인 사무실의 경우 전체 위판장 중 38%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제빙시설, 저빙시설, 냉동시설, 냉장시설 등 이용가공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20% 이하로 조사됨
- 한편 위판장 관계자의 동향을 보면 2009년 현재 산지위판장의 매수인 수는 총 3,896명으로, 중도매인 3,462명, 매매참가인 434명으로, 중도매인이 매수인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경매사수는 총 328명으로, 자격증을 보유한 경매사 보다 보유하지 않은 경매사가 191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음
- 매수인 수는 자유판매제로 전환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6년에는 3,533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증가하여 2009년 현재 10년 전과 유사한 수준까지 증가하였음
 - 매수인의 중심은 중도매인이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200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매매참가인이 연평균 4%로 중도매인의 0.3%에 비해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3. 산지위판장 위판 동향

- 어업생산량과 계통판매량을 이용하여 계통판매율을 계산한 결과 물량 기준으로는 1998년 65.8%에서 2009년 58.6%로 7.2% 감소하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998년 62.2%에서 2009년 62.3%로 0.1% 증가함
- 2009년 지역별 계통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물량 기준으로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제주가 전국 평균 이상의 계통판매율을 보였으며, 경인, 충청, 전북, 전남은 평균 이하의 계통판매율을 보임

지역별 위판실적(2009년 기준)

단위 : 천 톤, 억 원, %

구 분	어업생산(A)		계통판매(B)		계통판매율(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2,540	54,870	1,327	30,490	52.2	55.6
강 원	63	2,094	45	1,616	70.3	77.2
경 인	58	2,569	30	1,773	52.4	69.0
충 청	114	4,202	57	1,813	49.6	43.2
전 북	82	1,437	21	607	25.8	42.3
전 남	979	14,961	226	5,546	23.1	37.1
경 북	174	4,567	142	3,414	81.9	74.8
경 남	574	11,193	380	6,277	66.1	56.1
부 산	400	7,095	370	6,218	92.5	87.6
제 주	95	6,753	56	3,227	58.8	47.8

자료 :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 2009년 전체 계통 판매량 148만 9천 톤 중 경남지역이 43만 3천 톤으로 2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산 42만 톤(28.2%), 전남 24만 4천 톤(16.4%), 경북 16만 3천 톤(11%) 등의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계통 판매량의 85%를 차지함
- 2009년 전체 계통 판매액 3조 4,208억 원 중 경남지역이 7,172억 원으로 21.0%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부산 7,113억 원(20.8%), 전남 6,166억 원(18.0%), 경북 3,877억 원(11.3%) 등의 순이며, 이들 4개 지역의 계통 판매액은 전체 계통 판매액의 71%를 차지함
- 1998년 이후 어종별 계통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물량 기준으로 어류, 패류, 기타수생동물은 감소한 반면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는 증가하였고, 금액기준으로는 기타수산동물을 제외한 모든 어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998년 이후 2009년까지 산지수협의 계통판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물량 기준으로는 연평균 0.7% 증가, 금액 기준으로는 연평균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금액 기준으로는 36개 수협의 위판규모가 증가하였으며, 33개 수협이 감소함
 - 물량 기준으로는 58개 수협의 위판규모가 증가하였으며, 11개 수협이 감소함
- 산지수협의 규모(물량 기준)를 소규모(2만 톤 미만), 중규모(2만 톤 이상~7만 톤 미만), 대규모(7만 톤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만 톤 미만의 소규모 수협이 70% 이상을 차지함
 - 2009년 위판물량 상위 10개소를 정리해보면 물량이 가장 많은 위판장은 부산공동어시장으로 29만 7천 톤이며, 다음으로 굴수하식수협 15만 3천 톤, 부산시수협 11만 7천 톤, 기선권현망수협 7만 6천 톤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산지수협의 규모(금액 기준)를 소규모(200억 원 미만), 중규모(2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 대규모(500억 원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수협이 40~50%를 차지함
 - 2009년 위판금액별로 상위 10개소를 정리해보면 위판금액이 가장 많은 위판장은 부산공동어시장으로 4,369억 원이며, 다음으로 부산시수협 1,735억 원, 여수시수협 1,304억 원, 삼천포수협 1,054억 원 등의 순임

제4장 수산물 산지위판제도의 문제점

1. 산지위판 관련 법규의 문제점

- 법규의 복잡함 : 위판장 관련 법규가 수산업법, 농안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걸쳐 있어 명확한 법체계가 없음
 - 위판장이 시장, 공동출하 이외에 수산자원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법규의 불명확성 : 위판장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 운용, 지위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한 법규가 없음
- 수협중앙회의 공판사업요령이 위판장 운영을 비교적 명확히 기술
 - 동 규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회원조합에게는 가이드라인

1) 농안법

(1) 농수산물집하장

- 이전 해양수산부에서는 위판장을 농수산물집하장의 일종으로 해석
- 1976 농안법 제정 : 농수산물의 대량소비지 직출하, 고속도로변 등 설치·운영
 - 1994년 개정 : 산지집하장의 공판장 운영 신설
- 2001년 개정 : 장소 제한 삭제, 농수산물집하장의 공판장 운영 조항 삭제
- 위판장은 공동판매와 시장기능이 있어 집하장은 격이 맞지 않음

(2)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위판장

- 2001년 개정 당시 집하장과 공판장의 기능을 모두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설
- 위판장은 여전히 농수산물집하장으로 유권 해석

(3)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매매방법의 예외)

- 2006년 시행규칙 제28조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매매를 예외로 설정
 - 이중경매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산지거래시설의 명확한 정의가 없었음
 - 2008년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에서 위판장으로 정의

2) 수산업법의 산지위판 관련 법규

- 2007년 개정 : 제53조에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 또는 취소 신설
 - 2008년 개정 시행령 : 제41조 2(위판장의 지정), 41조의 3(위판장 지정의 취소) 신설
 - 2010년 개정 시행령 : 제43조(위판장의 지정), 제44조(위판장의 지정 취소)로 조문 변경
 -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그 밖에 어업조정 목적

3) 수협법과 관련 규정의 산지위판 관련 법규

(1)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사업)에서 판매사업 규정
시행령 제20조(위탁판매사업)에서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근거

(2) 수산업협동조합의 내부 규정

-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규정(2006 제정) 제4조(정의), 제12조(유통시설 설치), 제26조(판매장설치 및 운영) : 판매사업을 정의하였으나 시설에 위판장은 없음
- 공판사업요령에서 비로소 위판장에 대한 언급

2. 산지위판장의 문제점

- 위판장은 시장기능 이외에도 공동출하기능과 어획후처리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생산자 중심의 시장으로, 세 가지 기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산지위판장 기능상의 문제점

구 분	문 제 점
도매시장기능	· 위판장의 취급 규모가 감소 추세임,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가격형성기능이 위협받고 있음, 수급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중도매인의 기능이 취약해지고 있음
공동출하기능	· 물류 및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부가가치 제고 기능이 저하되고 있음 · 직거래의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관광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어획후처리기능	· 위판장 시설의 절대적 노후화 및 시설 미비, 수산물 어획후처리 기능의 미비 · 수산물 어획후처리 주체의 변화, 수산물 어획후처리 비용의 산지 전가

3. 위판장 이해관계자의 문제 인식

- 위판장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생산자, 수협, 중도매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음
- 설문은 산지위판장과 관련된 관계자 총 481명(생산자 191명, 수협 위판장 관계자 112명, 중도매인 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위판장 이해관계자의 문제 인식(설문조사 결과)

구 분	수협 관계자	중도매인	생산자
위판량 감소 원인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어획량 감소		상대적으로 낮은 어가
위판장 이용 구매자가 중시하는 점	선도관리, 정확한 선별, 안전성 확보	선도관리, 정확한 선별	선도관리, 정확한 선별

위판장 이해관계자의 문제 인식(설문조사 결과) - 계속

구 분	수협 관계자	중도매인	생산자
위판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우수 중도매인 확보, 가격제고, 판로 개척 및 확대	수산물 안전성과 선도관리 강화, 양륙·진열·선별 등 위판서비스 강화	가격제고, 판로 개척, 우수 중도매인 확보
위판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우선순위	전처리 가공시설 확충, 기계설비 도입, 활어취급시설 확충	위판장 및 주차장 면적 확대, 위판장 위생·안전성	활어취급시설 확충, 위판장 위생·안전성, 위판장 및 주차장 면적 확대
위판 활성화를 위한 정부나 수협의 시급한 과제	위판장 시설의 규모화·현대화	중도매인 지원 강화와 위판장 시설의 규모화·현대화	위판장 시설의 규모화·현대화, 수협의 마케팅 능력 강화

제5장 국내외 선진사례

1. 일본의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1) 일본 산지유통의 삼중고

- 일본 수산업은 생산량의 감소, 수산물 소비량의 감소, 대형마트의 저가수산물 지향 등 3중의 난관에 봉착
- 일본 수산청은 수산물 산지판매력 강화 사업을 확대 추진
- 사업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 중에서 필요한 것을 조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키워드로서 ‘지산지소’, ‘직거래’, ‘생산과 가공, 유통의 3장 연계’를 들 수 있음
- 또한 지원 대상 범위에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정책임
 - 정책사업의 지원은 최소 가족단위까지 설정함으로써 대상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음

2) 수산물 산지판매력 강화 사업

- 사업목적
 - 산지의 판매력 강화로 소비자 needs에 생산자가 직접 대응
 - 수산물 안정공급 실현,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어업경영 안정

- 지역 유통플랜 구축사업(정액)
 - 지역 수산물의 유통판매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 어련에 필요 경비 지원(협의회 개최, 선진지 시찰, 인쇄비 등)
- 산지 판매력 육성사업(정액, 보조 2/3)
 - 외부전문가(대형마트 등) 노하우,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판매전략 수립실행, 신규 판로 개척을 원하는 어협 지원
- 유통가공업과 산지의 연계 촉진사업(보조 1/2)
 - 유통가공업자가 산지와 연계하여 신규판로 개척, 신상품 개발, 신규 서비스 개발 추진시 유통가공업자 지원
- 산지시장 개혁사업(정액)
 - 산지시장 개혁, 통폐합을 추진하는 시장개설자, 도매법인 지원

2. 일본의 어항어장 기반정비사업

(1) 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 자원관리형어업·기르는어업 추진과 소비자 needs에 맞는 수산물 안정공급 목표
- 지역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광역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어항관련 도로정비 사업,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사업, 수산계 부산물 활용 추진모델 사업으로 구성

(2)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사업

- 수산물 집출하 거점인 어항과 적극적 수산물 수출 어항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의 효율화, 품질·위생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것임
- 수산청은 고도 위생관리 출하 비율을 2004년 23%에서 2011년 약 50% 목표로 함

(3) 광역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 광역어항 정비사업 : 어선 이용이 전국적, 광범위한 어항의 어항/어장 시설 정비
- 광역어장 정비사업 : 공동어업권 이외 이용범위가 광범위한 어장시설 대규모 정비

(4)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 인증제도

- 수산물 위생품질관리가 뛰어난 산지시장 인증·공표함로 선진사례 보급과 모델 제시
- 2005년에 사단법인 일본수산회가 만든 제도임

3. 일본 사례

1) 시모노세키도매시장

(1) 시장의 개요

- 2001년 신시장 개장 시에 마리나와 피셔맨 워프, 수족관 등 친수공간 및 판매, 전시 공간을 함께 설계하여 개장
 - 현재 연간 1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시장으로 명성

(2) 수산관광시장으로서의 활성화

- 수족관 등 주변 관광시설과의 연계, 시장 옥상의 정원화와 일반인 개방
 - 시장 건물 2, 3층 주차장 확보 및 별도 주차빌딩 건설로 접근성 확보

(3) 문제점 및 시사점

- 신시장 개장 이후 관광객 급증으로 관광객 위주 상품구성, 가격 상승으로 지역민들 외면, 지역 소매시장기능 상실
 - 도매시장 본연 기능 약화, 상장하지 않는 무단 반입 수산물 증가
 - 도소매상 혼재로 대립과 갈등 발생

2) 마츠우라이시장(서일본어시장주식회사)

(1) 시장의 개요

- 일본 마츠우라이시장은 1979년에 일본원양선망조합이 개설한 생산자시장
- 2003년 3월에 일본 최초로 위생시설이 완비된 출하시설인 ‘오사카나돔’ 설치, 시장 사용 해수 무균화, 양륙 수산물 살균해수 사용 등 고선도 유지시스템 도입

(2) 시장의 현대화 및 가격 유지 노력

- 시장의 현대화 과정
 - 동 시장은 1983년에 자동선별기를 도입하였으나, 생산자들의 반발로 약 10년에 걸쳐 정착시켰음
 - 정착 이후 효율적 선별 및 처리로 인해 비용 및 양륙시간의 절감이 이루어지자 생산자들의 양륙 증가
 - 2003년 위생처리 및 저온관리 포장 시설 도입함으로 차별적 시장으로 성장

- 가격 유지를 위한 시장의 노력
 - 첫째, 자회사를 통한 물량 조절
 - 자회사인 선망상사가 일정 이하 가격에서 경매 중단하고 잔량을 전량 매입
 - 둘째, 적극적인 어황정보 제공
 - 수산청 보조사업으로 각 선단 어획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물량조절과 가격안정 시행

(3) 시장 현대화의 성과 및 시사점

- 첫째, 양륙량의 증가
- 둘째, 다양한 상품화 성공
- 셋째, 브랜드 효과 창출
- 넷째, 비용 및 시간 절감
 - 양륙 및 선별 자동화, 위생적 처리시설 도입으로 양륙시간 및 포장, 배송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선도 제고를 통해 상품성이 향상됨

4. 국내 사례

- 위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협은 여건 변화에 대응, 다양한 방법으로 위판사업의 효율화를 도모
 - 어가 제고, 위판물량 확보, 위판시설의 신설·개선을 통한 효율화, 거래 건전성 확보와 어업인에 대한 위판서비스 강화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어가 안정화 : 직접 활동(계획 출하, 가격지지 사업, 경매 경쟁을 통한 어가 제고), 간접 활동(수산물의 인지도 제고, 안정적 판로 확보)
 - 위판물량 확보 : 직접 활동(위판방식·생산자 확보, 조합원의 계통출하 우선 관행), 간접 활동(어업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자금, 어업활동 등))
 - 위판시설의 신설·개선 : 위판장 시설의 신설 또는 현대화·규모화, 관련 부대시설의 확충
 - 거래의 건전성 확보 : 중도매인의 건전성 확보, 중도매인의 신규 영입
 - 어업인에 대한 위판서비스 강화 : 인적 유대감 강화, 수집·위판서비스 확대, 기여사업의 본격 도입

산지위판장 활성화 관련 수협 대응활동의 유형

구 분	어가 제고	위판물량 확보	위판시설의 신설·개선	거래의 건전성 확보	위판서비스 강화
세부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출하 · 가격지지 사업 · 경매 경쟁 · 수산물의 인지도 제고 · 안정적 판로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판방식· 생산자 확보 · 계통출하 우선 관행 · 어업생산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판장 시설의 신설 또는 현대화·규모화 · 관련 부대 시설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매인의 건전성 확보 · 중도매인의 신규 영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유대감 강화 · 수집·위판 서비스 확대 · 기여사업 도입

제6장 수산물 산지위판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 산지위판제도의 개선 방안

1) 산지위판제도의 법제화

(1) 법제화 방향

- 위판장이 시장기능과 공동출하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농안법을 기준으로 법제화
 - 농안법의 법률에 1개 조문을 신설
 - 시설기준이나 거래방법 등은 조문 특례조항을 두고 별도의 지침
- 수산업법에서 자원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만들어 자원관리에 관한 기능을 충족

위판장 관련 법률의 법제화 장단점

구 분	방 법	장 점	단 점
수산업법	(가칭)위판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설치 및 폐쇄에 대한 규정이 있어 제정 용이	· 수산업법의 성격에 맞지 않음 · 자원관리 목적의 내용에 한정될 수 있음
수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 위판장의 본질이 수협의 판매 사업이므로 사업성격에 맞음	· 협동조합법에 시장에 대한 규정을 한 선례가 없음 · 시설 및 운영을 삼입하기에는 법 성격 차이 있음
농안법	본조 조항 신설	· 유통법이면서 생산자 공동출하를 규정한 농안법의 성격에 맞음 · 미래지향적 기능 부여 가능함	· 농업부분과의 조율이 필요함 · 시장의 성격을 가지므로 운용상 한계가 있음(경매사, 시설기준 등)

(2) 법률개정(안)

- 위판장 법률은 농안법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삽입
 - 위판장 성격이 수협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산지의 수산물유통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제50조, 제51조와 같이 비슷한 성격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
- 신설 조항의 내용
 - 제52조(수산물 위판장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및 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위판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혹은 수산물 위판장의 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위판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공동출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항만 및 어항부지의 사용 등 입지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수산물 위판장 중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매시장 혹은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수산물 위판장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8조·제39조·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산물 위판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판장의 경우에는 수협중앙회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시설기준, 부대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제한적 의무상장제의 도입

(1) 의무상장제의 법률적 제약

- 유통 혹은 공동판매 목적으로 전면적 의무상장제 도입시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상장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
 - 공동판매를 공식적인 예외로 인정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
- 판례 : 수협의 판매사업은 상행위가 아니나, 중도매인은 상행위이므로 독점이 되어 전면도입은 어려움

(2) 자원관리 목적의 의무상장제 도입 가능성

-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배분량의 관리) : 배분량 초과(우려 포함) 시 포획·채취 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
- 동법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음

(3) 자원관리형 위판장의 도입

- 전면적인 의무상장제 도입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수산업법 제53조,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 제40조를 근거로 할 경우 제한적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도입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① TAC 대상어종의 모니터링에 제약이 있는 지역
 - ② 수산자원관리수면이 지정된 경우의 해당 지역
 - ③ 치어 남획이나 불법 어업의 징후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 ④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지역적 자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 ⑤ 기타 지역 어업인들이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지역

3) 자율적 의무상장제의 도입

- 자율관리공동체의 경우 자율관리규약에 위반자에 대한 제재(자체벌금 부과, 자격 및 권리제한 등)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제2항의 4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율적인 의결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수협과 조합원의 경우 정관에 포함시키거나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합원 전원의 의무상장을 실시할 수 있음

(1) 자율관리공동체 의무상장 실시의 법적 효력

- 강제성은 약하나 자율관리공동체의 결속이 강하고, 효과가 높을수록 의무상장의 효과도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관련사례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음
 - ① 탄도 통발 자율관리 공동체 ② 하전 자율관리공동체
 - ③ 남해 멸치유자망 자율관리공동체 ④ 속초 연안망 자율관리공동체

- 이상의 네 가지 사례는 자율관리공동체가 수협에 전량위판하여 성공한 사례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더라도 자율적 의무상장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 수협의 정관 혹은 총회의결에 의한 의무상장제 실시의 법적 효력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조합원의 책임)에서 위판장 이용에 대한 의무와 조합원 자격에 대한 조항이 있어 의무상장제 시행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음
 - 제25조의 2항에서 ‘조합원은 ... 생산한 수산물을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32조(제명)의 1항의 제명 사유는 ① 1년 이상 지구별 수협 사업의 미이용, ② 그 밖의 지구별 수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임
- 의무상장제 불이행 조합원에 대한 제제 수단은 사업이용 제한, 제명이 있음
- 사업이용의 제한은 수협법에 조합원의 사업이용에 대한 제한만 있음
- 제명은 현실적으로 총회의 제명 의결 가능성, 1년 이상 사업 미이용은 반드시 위판장 이용은 아니며, 제25조의 의무 이행은 100% 위판장 출하로는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수협법 제25조를 근간으로 의무상장제의 자율적 도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행의 완성도 여부는 얼마나 조합원들이 협조해 주는 지에 달려 있음

2. 산지위판장의 활성화 방안

1) 정부의 지원체제 전환

(1) 기능별 위판장 분류 및 육성

- 개방화 시대에 수입수산물과 경쟁하고 가격결정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 위판장을 위판장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유형화하고 차별화된 육성 방안 마련 필요
 - **광역유통형 위판장**은 주요 소비처로의 공급능력 확대를 통한 산지 수산물의 공급기지화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 및 고차가공시설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등으로 광역유통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원관리형 위판장**은 자원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어종이나 수산자원관리수역 지정 수역, 치어남획 및 불법어획 가능성이 높은 지역(또는 어업)과 관련되는 위판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대상어종을 전량위판하는 것을 원칙(사매 금지)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점 육성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원관리형 위판장에서 출시되는 품목에 대한 브랜드화를 유도함으로써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이 경우 해당 위판장에 대해서는 위판수수료 할인, 브랜드화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광중심형 위판장**은 관광지 주변에 위치해 소비자가 찾아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위판장으로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위생관리 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관광중심형 위판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의 관광명소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조건불리형 위판장**은 지역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도서나 도로 여건이 열악한 위판장으로 조건불리 극복을 위한 운반선, 운반차 등 수산물의 수집·배송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능별 위판장 유형화는 추후 위판장의 여건, 특성 및 전망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능별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능별 유형화에 따른 시범실시 후 우수 위판장 중심의 확대 실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형별 산지위판장의 특성 및 지원 방향

구 분	기능 및 특성	지 원 방 향
광역유통형 위판장	주요 대도시 소비처로의 수산물 공급이 가능한 광역 거점 위판장	산지 수산물의 공급기지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확충, 고차가공시설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등 지원
자원관리형 위판장	TAC 어종, 불법어업 대상어종, 남획 및 고갈 대상 어종 등 자원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위판장	우선적 자금지원, 위판수수료 할인 등 중점 육성 정책을 마련,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브랜드화 유도
관광중심형 위판장	관광지 주변에 위치해 소비자가 찾아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위판장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위생관리 시설 및 편의시설(오물처리장, 정화조, 위생시설 및 주차시설, 휴게시설 등) 확충,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개발, 지역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명소로 유도
조건불리형 위판장	지역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도서나 도로 등 물류 여건이 열악한 위판장	조건불리 극복을 위한 운반선, 운반차 등 산지 수집·배송 관련 사업 지원

(2) 우수사례 발굴과 인센티브 제공

- 위판율 제고, 업무 효율화 등 일선 수협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위판 활성화와 관련해 우수사례의 발굴 정례화를 통해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과 우수 위판장에 대한 차년도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

요가 있음

- 더불어 판매량이 많고 신규 판매처 발굴 등 실적이 우수한 중도매인에 대해 위판조성금 등 장려금 확대, 정부자금의 사용 금액 상향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마련

- 위판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 강화를 통해 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산지위판장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능별 위판장 분류를 중심으로 산지위판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기능을 고려하여 유형별 위생관리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위판장(예 : 광역유통형위판장)은 주요 소비처로의 공급기지화라는 측면에서 위생관리와 저온유통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위판장의 지원체제도 유형별 기능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방안 모색과 함께 유형내에서도 위판 활성화 등 경영 우수수협(위판장)에 대한 차등 지원 체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위생관리 시설과 관련해서 위판 활성화 유인 차원에서 우수위판장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대폭 완화(예 : 10%)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4) 중도매인 관련 탄력적 지원 방안 모색

- 홍수출하에 대한 가격지지, 어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도매인이 적정한 생산자 수취가격 지지와 위판장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큼
 - 현재 중도매인의 외상거래 한도는 수협중앙회의 공판사업요령 제14조(외상거래 한도) 1항에 의하나 동 규정에서도 외상거래의 신용한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연체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따라서 위판장 특성 및 중도매인 실적을 고려하여 연체기간 및 이자율의 탄력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수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 신규 매수인(또는 매매참가인) 모집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수협의 매수기능을 강화·확대하거나 또는 신규로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산지위판장 중에서도 ‘자원관리형’, ‘조건불리형’에 대해서는 브랜드 사업 지원,

수집·배송 등과 관련된 운송사업 지원, 위생·품질관리 관련 사업체 등록 등 관련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위판장 중도매인의 한도초과 문제는 대부분 일시다확성 어종의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수협과 중도매인이 협력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홍수출하시 긴급수매자금의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6) 소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노력

- 최근 소비지 대형수요처가 확대되면서 구매력이 증대하고 있고 시장 지배력·교섭력 높아져 산지의 가격결정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광역유통형위판장을 중심으로 산지시장의 규모화가 이루어지면 주요 거점별 물류기능이 원활화 될 수 있으나 물량집적 및 배송은 대도시를 전부 커버할 수 없고, 각 산지시장에서 소비지로 집산되는 물량의 처리가 어려움
 - 따라서 각 산지시장의 물류를 집적하여 소비지 배송이 원활화될 수 있도록 광역유통형위판장의 육성뿐만 아니라 대도시 소비지 인근에 수산물 소비지물류센터를 도입하여 산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수협의 자구노력 강화

(1) 위판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어업인들이 위판장에 위판하지 않는 이유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 가격과 전도금 문제를 들 수 있음
 - 따라서 산지위판장에 위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협에 위판하는 어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용고 배당의 확대, 영어자금에 대한 우선권 부여, 정책자금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전도금의 경우 위판을 원하는 어업인들이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어자금 등을 포함한 특별 용자자금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가격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도매인에 대한 유인책 마련도 중요한 바 실적이 우수한 중도매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함
 - 이 경우 위판 조성금 등 장려금 확대, 정부자금 사용금액 상향 및 이자율 조정 등의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위판장 내 물류비용의 절감방안 마련

- 위판장에 위판하는 어업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결재의 안정성, 양륙서비스, 판매서비스 등이 있지만 최근에는 사매매 상인들이 냉동탑차 등을 이용하여 직접수집에 나서는 등 수집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따라서 위판수수료 만큼의 가격 보장을 위해 어업인들에 대한 수집서비스의 강화, 위판장 내 물류설비의 확충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수산물의 물류비용이 농산물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어종별로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어상자, 물류체계 등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 표준화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위생관리 및 가격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최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수산물의 위생관리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바가 큰 만큼 산지위판장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위생 및 품질 관리 노력을 증대할 시점임
 - 지역별, 어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수산물 규격화 문제는 대중어종을 중심으로 연차별 규격화 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위판장 내 오물처리장, 정화조 설치 등 위생관리시설의 확대 도입과 수산물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한 어상자 이용의 확대방안 모색과 더불어 선도유지에 도움이 되는 용기개량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위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어업인 수취가격의 하락인 만큼 위판 활성화의 가장 큰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되는 산지위판가격 제고를 위해서는 수협차원의 노력 확대가 필수적임
 - 어업인 수취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산지 직거래 확대, 우수 소비처(판매처) 확보, 우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4) 어업인 및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고

- 위판 활성화와 관련 어업인 수취가격 이외에도 어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유무도 중요한 요인임
 - 따라서 위판제도 역시 어업인 중심의 위판서비스 제공체제 구축에 중심이 두어져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어업인을 찾아가는 위판서비스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위판시스템 개선을 위한 위판장과 어업인(조합원)간의 소통채널 구축도 위판장 이용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됨
 - 더불어 산지위판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위판사업을 효과적으로 기획·입안할 수 있는 운영 담당자(전문가)의 양성과 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위판장의 거래시스템 다양화

- 현 위판장의 거래체계는 경매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부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공품, 양식활어 등의 거래가 어렵고, 전처리된 수산물의 거래 또한 수용하기 쉽지 않아 위판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현재의 거래 방법 이외에도 수의매매, 정가매매 등의 도입으로 거래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3) 장단기 추진 로드맵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산지위판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 어업인 등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다양한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음
 - 그러나 이들 방안을 동시에 단기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측면에서 산지위판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추진 로드맵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위판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추진 로드맵

구 분	단 기	중 장 기
제도 개선	· 위판장 관련 법률개선안 마련 및 농안법 개정 추진	· 위판장 유형별 위생관리 기준 마련 및 연차별 적용
활성화 지원	· 기능별 위판장 분류 및 육성안 마련 · 우수사례 발굴 정례화 및 지원 방안 마련 · 중도매인 관련 지원 방안 마련	· 산지 수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체제 마련 · 소비자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 물류기반 확충
수협 자구노력	· 위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방안 마련 · 어업인 및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고 · 위생관리 및 가격제고 방안 마련	· 위판장 내 물류비용 절감 방안 마련 · 위판장 거래시스템 다양화 방안 마련

목 차

제1장 연구배경 및 산지위판장의 개념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3
2. 산지위판장의 개념 및 역할	4
1) 산지위판장의 개념	4
2) 산지위판장의 역할 및 기능	6
제2장 수산물유통 및 산지위판제도의 여건 변화	9
1. 수산물 공급구조의 변화	11
1) 어업생산구조의 변화	11
2) 수입수산물의 유통 증가	15
2. 수산물 소비 선호의 다양화	17
1) 사회 인구학적 구조와 선호 변화	17
2) 식품에 대한 안전·안심 요구 강화	21
3. 수산물유통구조의 변화	21
1) 대형수요처의 확산, 유통산업의 지각 변동	21
2) 대형할인점의 수산물유통관리구조	23
3) 새로운 판매형태의 등장, 전자상거래	27
4. 산지위판제도의 변화	31
1) 의무상장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31
2) 자유판매제의 도입 배경 및 의의	33
제3장 산지위판장의 위판 현황 및 특성	35
1. 산지위판장 개설 현황	37
1) 지역별 분류	37
2) 취급부류별 분류	40
2. 산지위판장 시설 현황	40
1) 위판장 시설 현황	40
2) 기타 시설 현황	42
3) 관련 종사자 현황	44

3. 산지위판장 위판 동향	46
1) 지역별 위판 동향	46
2) 어종별 위판 동향	55
3) 위판실적별 동향	62
제4장 수산물 산지위판제도의 문제점	71
1. 산지위판 관련 법규의 문제점	73
1) 농안법의 산지위판 관련 법규	73
2) 수산업법의 산지위판 관련 법규	78
3) 수협법과 관련 규정의 산지위판 관련 법규	79
2. 산지위판장의 문제점	80
1) 위판장의 시장기능	80
2) 위판장 시장기능의 한계	81
3) 공동출하 기능의 부족	82
4) 어획후처리 기능 및 시설의 부족	83
3. 위판장 이해관계자의 문제 인식	84
1) 위판량의 변화	84
2) 위판장 관련 요인분석 평가	87
3) 위판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89
제5장 국내외 선진사례	93
1. 일본의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95
1) 일본 산지유통의 삼중고	95
2) 주요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95
3) 주요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의 시사점	99
2. 일본의 어항어장 기반정비사업	99
1) 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100
2)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사업	101
3) 광역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103
4)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 인증제도	103
3. 일본 사례	107
1) 시모노세키도매시장	107
2) 마츠우라이시장(서일본어시장주식회사)	109
3) 후쿠오카시도매시장 선어시장	112

4. 국내 사례	114
1) 위판장 활성화 사례의 제유형	114
2) 부산·경남지역	119
3) 전라지역	152
4) 충청지역	160
5) 경북지역	170
6) 강원지역	189
제6장 수산물 산지위판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205
1. 산지위판제도의 개선 방안	207
1) 산지위판제도의 법제화	207
2) 제한적 의무상장제의 도입	212
3) 자율적 의무상장제의 도입	216
2. 산지위판장의 활성화 방안	219
1) 정부의 지원체제 전환	219
2) 수협외 자구노력 강화	224
3) 장단기 추진 로드맵	226
부 록	231
<부록 1> 인식도 조사 결과	233
<부록 2>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규정	257
<부록 3> 공판사업 요령	267
<부록 4> 산지위판제도 관련 법률	297

표 목 차

【표 1-1】	위판장 관련 법적근거	5
【표 1-2】	위판장과 공판장의 차이점	6
【표 2-1】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 추이	11
【표 2-2】	어업별 생산 구성비 추이	12
【표 2-3】	우리나라의 어선세력 추이	13
【표 2-4】	어업종류별 어선세력 추이(동력어선, 2009년)	13
【표 2-5】	한국의 수산물 교역 현황	16
【표 2-6】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	17
【표 2-7】	수산물 수급 동향	18
【표 2-8】	한국의 1인당(연간) 수산물 공급량 추이	18
【표 2-9】	식품류 소비 지출액의 비목별 구성 변화	20
【표 2-10】	대형마트 및 일반 수산물 소매업의 수산물 취급 규모	23
【표 2-11】	할인점의 수산물 취급 및 운영형태	24
【표 2-12】	대형할인점 수산물 SKU의 구성	25
【표 2-13】	수산물과 공산품의 상품 성격 차이	28
【표 2-14】	수산기관주도형 전자상거래 장의 현황	29
【표 2-15】	수산물 관련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현황	29
【표 2-16】	수산물 전자상거래가 극복해야 할 과제	31
【표 3-1】	지역별 위판장 현황(2009년 기준)	37
【표 3-2】	지역별 위판장 세부내역	38
【표 3-3】	취급 부류별 위판장 현황(2009년)	40
【표 3-4】	개장연도별 위판장 분포(2009년)	40
【표 3-5】	건물연수별 위판장 분류	41
【표 3-6】	면적별 위판장 분포(2009년)	42
【표 3-7】	위판장의 시설 현황(2009년)	42
【표 3-8】	가공시설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시기	44
【표 3-9】	향후 HACCP 도입 계획	44
【표 3-10】	산지위판장의 매수인 수 추이	45
【표 3-11】	수협조합의 매수인 추이	46
【표 3-12】	수산물 계통판매 추이	47
【표 3-13】	양식수산물의 비계통 판매 현황	47
【표 3-14】	지역별 위판실적(2009년 기준)	49

【표 3-15】	어종별 계통판매 현황	55
【표 3-16】	산지수협 계통판매 연평균 증가율 현황(1998~2009년 기준)	63
【표 3-17】	산지수협 위판물량 연평균 증가율	63
【표 3-18】	산지수협 위판금액 연평균 증가율	64
【표 3-19】	산지수협의 계층별 추이(물량 기준)	66
【표 3-20】	위판규모별 수협 현황(2009년 물량 기준)	67
【표 3-21】	산지수협의 계층별 추이(금액 기준)	67
【표 3-22】	위판규모별 수협 현황(2009년 금액 기준)	68
【표 3-23】	산지수협의 계층별 위판규모	69
【표 4-1】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세부시설 내역(예시)	75
【표 4-2】	위판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비교	76
【표 4-3】	위판장 이용시 각 사항별 평가(5점 척도)	88
【표 5-1】	산지 판매력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96
【표 5-2】	유통가공업과 산지의 연계 촉진사업의 주요 내용	97
【표 5-3】	산지시장 개혁사업의 주요 내용	98
【표 5-4】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의 사업내용	101
【표 5-5】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의 시설별 신청자격	102
【표 5-6】	수협의 산지위판사업 활성화 사례 유형	115
【표 5-7】	진해시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120
【표 5-8】	진해시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120
【표 5-9】	진해시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21
【표 5-10】	진해시수협의 위판수수료	121
【표 5-11】	진해시수협의 신규어종 위판실적	122
【표 5-12】	진해시수협 속천위판장의 위판 실적	123
【표 5-13】	마산시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125
【표 5-14】	마산시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125
【표 5-15】	마산시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25
【표 5-16】	마산시수협의 위판수수료	126
【표 5-17】	마산시수협 원전위판장의 위판실적 및 2010년 사업계획	128
【표 5-18】	마산시수협의 신규어종 위판실적	128
【표 5-19】	하동군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130
【표 5-20】	하동군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30
【표 5-21】	하동군수협의 위판수수료	131
【표 5-22】	하동군수협의 송어 위판액 추이	133
【표 5-23】	하동군수협의 신규어종 위판실적	135
【표 5-24】	삼천포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138

【표 5-25】	삼천포수협 의 가공시설 현황	138
【표 5-26】	삼천포수협 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38
【표 5-27】	삼천포수협 의 위판수수료	138
【표 5-28】	삼천포수협 의 대형 중도매인 위판액 추이	141
【표 5-29】	삼천포수협 의 신규어종 위판 실적	141
【표 5-30】	부산시수협 의 위판장 시설 현황	144
【표 5-31】	부산시수협 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45
【표 5-32】	부산시수협 의 위판수수료	145
【표 5-33】	부산시수협 의 아귀 위판실적	147
【표 5-34】	부산시수협 의 활어 위판실적	147
【표 5-35】	진동수협 의 위판장 시설 현황	149
【표 5-36】	진동수협 의 가공시설 현황	149
【표 5-37】	진동수협 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50
【표 5-38】	진동수협 의 위판수수료	150
【표 5-39】	신안군수협 의 위판장 시설 현황	153
【표 5-40】	신안군수협 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53
【표 5-41】	신안군수협 의 위판수수료	154
【표 5-42】	목포수협 의 위판장 시설 현황	157
【표 5-43】	목포수협 의 가공시설 현황	157
【표 5-44】	목포수협 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58
【표 5-45】	목포수협 의 위판수수료	158
【표 5-46】	서천군수협 의 위판장 시설 현황	161
【표 5-47】	서천군수협 위판장 관계자 현황	161
【표 5-48】	서천군수협 의 위판수수료	161
【표 5-49】	보령수협 의 위판장 시설 현황	165
【표 5-50】	보령수협 의 가공시설 현황	165
【표 5-51】	보령수협 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65
【표 5-52】	보령수협 의 위판수수료	165
【표 5-53】	보령수협 의 주요 어종 위판액 추이	166
【표 5-54】	보령수협 의 선급금 지원 현황	168
【표 5-55】	보령수협 의 활어 위판실적	169
【표 5-56】	보령수협 의 활어 위판 현황(전년대비)	170
【표 5-57】	구룡포수협 의 위판장 시설 현황	172
【표 5-58】	구룡포수협 의 가공시설 현황	173
【표 5-59】	구룡포수협 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173
【표 5-60】	구룡포수협 의 위판수수료	173
【표 5-61】	구룡포수협 의 오징어 및 문어 생산 추이	175
【표 5-62】	구룡포수협 의 청어 생산 추이	175

【표 5-63】	포항수협 위판장 시설 현황	177
【표 5-64】	포항수협 가공시설 현황	178
【표 5-65】	포항수협 위판장 관계자 현황	178
【표 5-66】	포항수협 위판수수료	178
【표 5-67】	강구수협 위판장 시설 현황	182
【표 5-68】	강구수협 가공시설 현황	182
【표 5-69】	신안군수협 위판장 관계자 현황	182
【표 5-70】	강구수협 위판수수료	182
【표 5-71】	경주시수협 위판장 시설 현황	186
【표 5-72】	경주시수협 가공시설 현황	186
【표 5-73】	경주시수협 위판수수료	186
【표 5-74】	경주수협 위판장 관계자 현황	186
【표 5-75】	죽왕수협 위판장 시설 현황	191
【표 5-76】	죽왕수협 위판장 관계자 현황	191
【표 5-77】	죽왕수협 위판수수료	191
【표 5-78】	속초수협 조합원의 어업종사 현황(2009년 기준)	196
【표 5-79】	속초수협 위판장 시설 현황	196
【표 5-80】	속초수협 위판장 관계자 현황	197
【표 5-81】	속초수협 위판수수료율	197
【표 5-82】	대포수협 위판장 시설 현황	201
【표 5-83】	대포수협 위판장 관계자 현황	201
【표 5-84】	대포수협 위판수수료	201
【표 6-1】	위판장 관련 법률 현황	208
【표 6-2】	위판장 관련 법률의 법제화 장단점	209
【표 6-3】	유형별 산지위판장의 특성 및 지원 방향	221
【표 6-4】	위판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추진 로드맵	227

그림 목 차

【그림 2-1】	한국의 FTA 체결	15
【그림 2-2】	A할인점의 수산물 구입-판매 경로 및 마진	26
【그림 3-1】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 비율	43
【그림 3-2】	지역별 계통판매율 추이(물량 기준)	48
【그림 3-3】	지역별 계통판매율 추이(금액 기준)	48
【그림 3-4】	지역별 조합별 계통판매 비중(물량 기준)	50
【그림 3-5】	지역별 조합별 계통판매 비중(금액 기준)	53
【그림 3-6】	어종별 계통판매율(물량기준)	56
【그림 3-7】	어류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56
【그림 3-8】	갑각류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57
【그림 3-9】	패류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57
【그림 3-10】	연체동물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58
【그림 3-11】	기타수산동물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58
【그림 3-12】	해조류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59
【그림 3-13】	어종별 계통판매율(금액기준)	59
【그림 3-14】	어류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60
【그림 3-15】	갑각류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60
【그림 3-16】	패류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61
【그림 3-17】	연체동물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61
【그림 3-18】	기타수산동물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62
【그림 3-19】	해조류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62
【그림 3-20】	위판물량 상위 10개 수협(2009년 기준)	66
【그림 3-21】	위판금액 상위 10개 수협(2009년 기준)	68
【그림 4-1】	1997년 이후 위판량의 변화	85
【그림 4-2】	위판량 감소 원인	85
【그림 4-3】	위판량 증가 원인	86
【그림 4-4】	1997년 이후 수협으로의 위판량 변화	86
【그림 4-5】	어업생산자의 위판량 증감 이유	87
【그림 4-6】	어업인들의 위판장 선택 요인	87
【그림 4-7】	위판장 이용 구매자들이 중요시 하는 점	89
【그림 4-8】	수협의 위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	90
【그림 4-9】	위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개선 과제	91

【그림 4-10】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우선순위 91

【그림 4-11】 위판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수협의 시급한 과제 92

【그림 5-1】 일본의 어항어장 기반정비사업의 개념도 100

【그림 5-2】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의 개념도 102

【그림 5-3】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의 관리단계 105

【그림 5-4】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 사례(미에현 鳥羽磯部어협 위판장) 105

【그림 5-5】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 인증서 (미에현 鳥羽磯部어협 위판장) 106

【그림 5-6】 시모노세키도매시장의 전경 107

【그림 5-7】 나가사키현 마츠우라(松浦)어시장의 전경 109

【그림 5-8】 나가사키현 마츠우라(松浦)어시장의 양륙 및 선별과정 110

【그림 5-9】 진해시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21

【그림 5-10】 진해시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22

【그림 5-11】 진해시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22

【그림 5-12】 마산시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26

【그림 5-13】 마산시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27

【그림 5-14】 마산시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27

【그림 5-15】 하동군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31

【그림 5-16】 하동군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32

【그림 5-17】 하동군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32

【그림 5-18】 삼천포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39

【그림 5-19】 삼천포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39

【그림 5-20】 삼천포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40

【그림 5-21】 부산시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46

【그림 5-22】 부산시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46

【그림 5-23】 부산시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46

【그림 5-24】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의 야간경매 148

【그림 5-25】 진동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50

【그림 5-26】 진동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51

【그림 5-27】 진동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51

【그림 5-28】 신안군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54

【그림 5-29】 신안군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55

【그림 5-30】 신안군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55

【그림 5-31】 목포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58

【그림 5-32】 목포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59

【그림 5-33】 목포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59

【그림 5-34】 서천군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162

【그림 5-35】 서천군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62

【그림 5-36】	서천군수협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63
【그림 5-37】	서천군수협 멸치 위판 실적	163
【그림 5-38】	보령수협 수산물 위판 실적	166
【그림 5-39】	보령수협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67
【그림 5-40】	보령수협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67
【그림 5-41】	구룡포수협 수산물 위판 실적	174
【그림 5-42】	구룡포수협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74
【그림 5-43】	구룡포수협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74
【그림 5-44】	포항수협 수산물 위판 실적	179
【그림 5-45】	포항수협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79
【그림 5-46】	포항수협 주요 위판품목(연체동물) 구성비(2009년 기준)	179
【그림 5-47】	죽도시장 회타운 전경	180
【그림 5-48】	강구수협 수산물 위판 실적	183
【그림 5-49】	강구수협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83
【그림 5-50】	강구수협 갑각류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83
【그림 5-51】	경주시수협 수산물 위판 실적	187
【그림 5-52】	경주시수협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87
【그림 5-53】	경주시수협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87
【그림 5-54】	죽왕수협 위판 실적	192
【그림 5-55】	죽왕수협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92
【그림 5-56】	죽왕수협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93
【그림 5-57】	속초수협 수산물 위판 실적	197
【그림 5-58】	속초수협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198
【그림 5-59】	속초수협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198
【그림 5-60】	대포수협 수산물 위판 실적	201
【그림 5-61】	대포수협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202
【그림 5-62】	대포수협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202

제1장

연구배경 및 산지위판장의 개념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산지위판장의 개념 및 역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산지위판장은 수산물 산지유통의 중심기구로서 산지와 소비지의 효율적 연계는 물론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가격 형성기능 수행 등 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처럼 수산물유통에 있어 산지위판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 위생 및 품질 유지시설 미흡 등 산지위판장은 수산물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에 취약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음
- 더욱이 1997년에 수산물 의무상장제(강제상장제)가 폐지되었는데, 이는 산지위판장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수산물 양륙의 불투명성을 초래해 수산자원관리, 수산물 품질관리 등 여타 제도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수산물 의무상장제 폐지 이후 생산 및 유통부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산지위판장 밖에서의 무질서한 판매 행위로 정확한 생산통계 확보가 곤란하고, 거래의 불투명으로 세금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산지위판장 밖의 산지수집상 독점적 행위로 인하여 가격 결정권이 약한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형성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자원관리 수단으로서 양륙항 지정제도 도입 또는 의무상장제도 부활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상황 하에서 다종다양한 수산물을 다양한 용도로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유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수산물유통의 시발점으로서도 산지위판장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 목적

- 1997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현행 자유판매제(임의상장제)하에서 발생하는 산지위판제도의 문제점과 모순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수산물 산지위판제도 개선 방안 및 산지위판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2. 산지위판장의 개념 및 역할

1) 산지위판장의 개념

(1) 위판장 관련 법령

- 위판장은 1997년 의무상장제에서 자유판매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산업법 제52조 ‘어업조정명령’,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어획물의 양륙제한’, 제21조 ‘어획물판매장소의 지정’ 등 근거법령이 삭제됨
- 이후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법률이 정비되었음
 - 최근 개정된 법률은 수산업법 제61조(2009.4.22), 수산업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2010.4.20),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2009.8.24) 등이 있음
- 위판장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그 밖에 선착장 또는 물양장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어획물 양륙시설을 갖춘 지역이 해당됨
 - 시·도지사는 위판장을 지정한 경우 위판장의 명칭 및 관리자, 위판장의 소재지,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에 대한 사항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함
- 또한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위판장을 지정취소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판장 지정을 받은 경우
 - 1년 이상 계속해서 위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위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또한 시·도지사는 위판장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함

【표 1-1】 위판장 관련 법적근거

구 분	세 부 내 용	근 거 법 령
지정 및 취소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위판장의 지정	<p>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p> <p>1.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p> <p>2. 「항만법」에 따른 항만</p> <p>3. 그 밖에 어획물 양륙시설을 갖춘 선착장 또는 물양장(物揚場)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1. 위판장의 명칭 및 관리자</p> <p>2. 위판장의 소재지,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p>	수산업법시행령 제43조
위판장 지정의 취소	<p>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판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p> <p>2. 1년 이상 계속하여 위탁판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수산업법시행령 제44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 위판장 및 공판장의 개념¹⁾

- 현재 위판장의 기준이 모호하여 위판장과 공판장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위판장과 공판장의 개념을 정리하면 일선수협이 개설하는 산지시장이 위판장이며, 공판장은 농안법상의 법적기준을 갖춘 시설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위판장과 공판장의 기능상의 차이는 없으나, 규모와 개설방법, 농안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구분됨
 - 즉, 위판장은 농안법을 준용하는 것이지 적용을 받지 않음
- 위판장과 공판장 모두 거래방법에 상장경매원칙을 허용하거나 준용한다는 점에서 방법상으로 큰 차이가 없음

1) 농림수산식품부, 「산지 수산물 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2008.10., pp. 36~37.

- 공판장은 개설자가 수협이라는 점과 입지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매시장과 큰 차이가 없음
- 반면 위판장은 수협이 개설하지만 시설이나 운영에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고, 소매시장의 개설이나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에도 자유로우며 입지나 시설의 제한도 없음

【표 1-2】 위판장과 공판장의 차이점

구 분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개설근거법령	수산업법	농안법	농안법	농안법
판매, 수집방법	경매, 입찰, 위탁	경매, 입찰, 위탁, 매취	경매, 입찰, 위탁, 매취	예의수의거래
운영주체	수협	수협, 생산자단체	민간법인, 공동출자법인	정부, 지자체
개설자	수협	수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정부, 지자체
기 능	지역권 공급	지방도시 공급	대도시 공급	물류센터 기능도, 소매 기능
소재지	어항입지	제한 없음	광역시, 시	구분 없음
규 모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제한 있음	제한 있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산지 수산물 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2008.10., p.37.

2) 산지위판장의 역할 및 기능²⁾

(1) 산지위판장의 역할

-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50% 전후가 양륙 어항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위판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출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산물의 대부분이 산지위판장을 통해 출하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산지위판장이 어장에 근접한 연안에 위치하고 있음
 - 수산물 공급의 주력은 어선어업으로 한정된 규모의 어선으로 정해진 성어기에 어장과 어항 간을 신속히 이동함으로써 그 왕복 횟수가 곧 어획량을 결정하기 때문임
 - 다시 말해 어장과 어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소비지에 직접 판매한다면 이동시간이나 판매소요 시간이 길어 정해진 어기에 조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드는 결과를 초래함
- 둘째 산지위판장의 신속한 판매 및 대금결제 기능은 곧 어업생산에 직결됨

2) 장영수, 「수산물유통론」, 부경대학교 수산기업연구소, 1997.9.

- ‘어장 조업, 어획, 귀항, 양륙, 판매, 대금결제, 연료·어구·선원 식료 보급·선원 임금 지불, 재출항, 조업’이라는 어업생산 사이클의 시간단축은 곧 조업 횟수의 증가로 어업생산 증대에 직결됨
- 어획물의 신속한 판매와 대금결제는 어업생산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과 정임
- 셋째, 산지위판장에서는 어획물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 배분이 가능함
 - 양륙된 어획물의 대부분이 선어·냉동 등의 형태로 소비지에 출하되는 것은 아님
 - 어획물은 어종에 따라, 크기에 따라 대·중·소 등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사료와 같은 비식용 용도로 이용되거나 혹은 가공원료 내지는 수출용으로 이용됨
 - 산지에는 이와 같은 가공 공장이나 다수의 가공업자가 집결해 있으며, 이들 업자 는 소비재로서가 아닌 원자재로서 어획물을 산지위판장에서 구입함

(2) 산지위판장의 기능

- 산지위판장은 주로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업생산자는 시장도매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협에 어획물을 위탁 판매하는데 생산자를 대신하여 수협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요자의 대표로서 등록된 중도매인들과 경매 및 입찰에 의해 가격을 결정함
 - 이때 어업생산자가 수협에 판매를 위탁할 때는 무조건 위탁 판매조건(또는 최저 가격 제시)이 일반적임
 - 수협과 중도매인들에 의한 가격결정 방법은 경매를 원칙으로 함
- 어획물을 구입한 중도매인은 구입대금을 수협에 납입하고, 이 때 납일 기일 조건은 즉일 납입이 원칙임
 - 수협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그 중에서 수협에서 정한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어업생산자에게 지불함
- 산지위판장은 어업생산을 위한 전초 기지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 ① 생산지 어획물의 양륙과 진열기능, ② 거래형성기능, ③ 대금결제기능, ④ 판매 기능 등을 수행함
 - 산지위판장의 실질적인 거래기능은 산지중도매인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제2장

수산물유통 및 산지위판제도의 여건 변화

1. 수산물 공급구조의 변화
2. 수산물 소비 선호의 다양화
3. 수산물유통구조의 변화
4. 산지위판제도의 변화

1. 수산물 공급구조의 변화

1) 어업생산구조의 변화

(1) 어업별 구성비 변화

- 총어업생산 규모를 보면 물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90년 319만 톤에서 2009년에는 318만 톤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차이를 보이는데 어업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2000년 초반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최근까지 양식생산의 호조로 전체 생산량이 1990년대의 수준까지 회복되었음
 - 실제로 생산량의 감소세가 유지되었던 2000년 이후 200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전체 어업생산의 증가율은 약 2.7%로, 어업 중에서는 양식어업이 8.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이에 비해 금액의 경우 1990년 이후 꾸준히 늘었는데, 1990년 2조 4천억 원에서 2009년 6조 9천억 원으로 약 2.9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전체 어업생산액은 연평균 약 6.1%씩 증가하였음
 - 어업별로는 양식어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11.7%로 가장 높았으며, 내수면어업도 9.3%로 높게 나타남

【표 2-1】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 천 톤, 억 원

구 분	합 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990년	3,198	24,182	1,472	14,162	773	4,199	34	908	919	4,913
1995년	3,348	37,963	1,425	24,794	996	6,481	29	1,429	897	5,260
2000년	2,514	40,664	1,189	23,295	653	6,839	21	1,234	651	9,297
2005년	2,714	50,493	1,097	27,060	1,041	13,484	24	1,757	552	8,192
2007년	3,275	57,519	1,152	29,391	1,386	15,995	27	2,231	710	9,902
2008년	3,361	63,451	1,285	32,223	1,381	15,201	29	2,753	666	13,274
2009년	3,182	69,242	1,227	36,404	1,313	18,463	30	2,738	612	11,638
연평균증가률 (’00~’09)	2.7	6.1	0.3	5.1	8.1	11.7	4.3	9.3	△0.7	2.5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보포털

- 어업별 구성비는 2009년 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 천해양식어업이 전체 생산의 41%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해면어업도 39%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금액 기준으로는 일반해면의 생산 비중이 전체의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천해양식어업이

27%의 비중으로 나타남

- 어업별 구성비는 연도별로 변화를 보여 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 1990년 일반해면 어업 46%, 원양어업 29%, 천해양식어업 24%로 일반해면어업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가운데 원양어업이 천해양식어업 보다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원양어업의 생산 비중은 감소한 반면 양식어업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9년 현재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이 전체 어업생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음
- 금액 기준으로도 1990년의 경우 일반해면어업이 전체 어업생산의 약 60%, 원양어업이 20%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양식어업의 생산액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9년의 비중이 전체의 27%로 1990년 대비 약 10% 포인트 가량 늘어나 원양어업 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2】 어업별 생산 구성비 추이

구 분	물량 기준				금액 기준			
	일반해면	천해양식	내수면	원양	일반해면	천해양식	내수면	원양
1990년	46%	24%	1%	29%	59%	17%	4%	20%
1995년	43%	30%	1%	27%	65%	17%	4%	14%
2000년	47%	26%	1%	26%	57%	17%	3%	23%
2005년	40%	38%	1%	20%	54%	27%	3%	16%
2007년	35%	42%	1%	22%	51%	28%	4%	17%
2008년	38%	41%	1%	20%	51%	24%	4%	21%
2009년	39%	41%	1%	19%	53%	27%	4%	17%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보포털

- 이처럼 전체 어업생산 규모는 물론이고, 어업별 구성비도 대내외 여건 변화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음

(2) 어선세력의 감소

- 어업 생산의 주요 수단인 어선세력의 동향을 보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어선척수는 7만 8천 척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2.3%씩 감소하였음
 - 어선톤수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동기간 대비 연평균 4.8%씩 줄어들었음
 - 어선마력수의 경우 연도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000년 대비 2009년 기준으로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어선종류별로는 동력선도 어선척수와 톤수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무동력선의 경우 척수와 톤수 모두 무동력선의 감소세가 높음

【표 2-3】 우리나라의 어선세력 추이

단위 : 척, 톤

구 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감률 (’00~’09)
합 계	척 수	95,890	90,735	85,627	80,766	77,713	△2.3%
	톤 수	923,099	700,810	663,869	621,338	594,772	△4.8%
	마력수	13,597,179	12,949,457	14,352,851	13,082,707	13,350,321	△0.2%
동력선	척 수	89,294	87,554	82,796	78,280	75,247	△1.9%
	톤 수	917,963	697,956	661,519	619,098	592,445	△4.7%
	마력수	13,597,179	12,949,457	14,352,601	13,082,258	13,350,321	△0.2%
무동력선	척 수	6,596	3,181	2,831	2,486	2,466	△10.4%
	톤 수	5,136	2,854	2,349.69	2,239	2,328	△8.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탈

- 동력어선에 한정해 어업별 어선세력을 보면 내수면어업을 제외한 모든 어선세력이 감소하였음
 - 어선척수 기준으로 가장 척수가 많은 연안어업의 경우 2000년 대비 2009년에 연평균 1.9%씩 감소하였으며 양식어업도 1.3%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규모가 큰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은 동기간 대비 각각 5.2%, 5.9%로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표 2-4】 어업종류별 어선세력 추이(동력어선, 2009년)

단위 : 척

구 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증감률 (’00~’09)
합 계	89,294	87,554	82,796	78,280	75,247	△1.9%
원양어업	597	493	470	448	370	△5.2%
근해어업	5,287	3,687	3,573	3,385	3,047	△5.9%
연안어업	59,064	59,240	57,843	52,659	49,758	△1.9%
양식어업	19,491	17,892	16,117	16,814	17,337	△1.3%
내수면어업	2,797	3,555	3,462	3,479	3,275	1.8%
기타어업	2,058	2,687	1,331	1,495	1,460	△3.7%

주 : 기타어업어선에는 어획물운반선, 지도단속선, 시험 및 교습선, 그 외 기타어선이 포함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탈

- 우리나라는 과도한 어획노력의 감축을 위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 한일어업협정,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영향을 받은 어업에 대해 추가 감척사업이 추진되었음

- 1999년~2002년까지 감척사업은 일반감척사업과 국제감척사업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일반감척사업만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2010년 1월 정부는 775억 원의 예산으로 근해어선 194척을 감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감척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 예정임
 - 2007~2010년까지 근해어선의 35%인 1,280척의 감척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 연안어선의 경우 1차 감척사업('04~'08)을 통해 연안어선의 10% 수준인 6,300여척의 감척을 추진하였음
 - 2010년도에는 감척의 폐업지원금 수준을 대폭 상향(50%→80%)하고, 감척사업 참여가 제한된 어선에 대해서도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감척사업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보임

(3) 자원관리형 어업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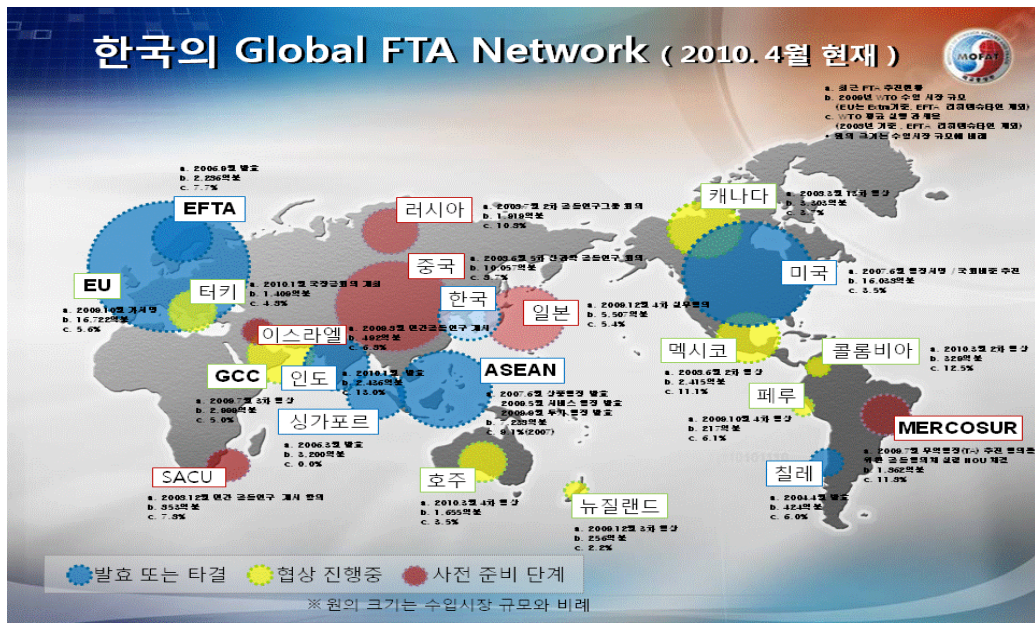
- 대내외 환경적 변화와 자원 감소에 따른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보완이 요청되면서 2006년 부터 현재 자원회복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음
 - 해역별로 회복대상어종을 선정하여 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2015년까지 회복대상어종을 20종으로 확대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 중 대표적인 TAC(Total Allowable Catch)는 이미 1995년 제도 실시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1998년 관련 규칙을 제정하며 도입된 상태임
 - 1999~2001년까지 시범실시 2000년까지 4개 어종(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과 2개 업종(대형선망, 근해통발)을 시범실시 어종 및 업종으로 선정, 2000년 제주소라가 대상으로 추가되었음
 - 2001년에는 개조개, 키조개, 소라 등 3개 어종이 추가, 업종은 잠수기, 마을어업이 추가되었으며, 이후 현재(2009년)까지 대상어종과 업종이 추가되면서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12개 업종에 약 41만 톤의 TAC가 설정되었고 향후 보다 확대될 예정임
- 이처럼 자원관리형 어업의 확립과 기조 유지가 전망되는 만큼 향후 어획물 위판과 관련된 수협과 기타 유통관계자 간의 경합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수입수산물의 유통 증가

(1) WTO, FTA에 따른 시장 개방 가속화

-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에 의한 WTO 체제의 출범으로 수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이 이뤄짐
 - 수산물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과 같이 독자적인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공산품과 함께 비농산물 시장접근그룹(Non Agriculture Market Access, 이하 NAMA)에 속하게 되면서 관세인하 문제가 중심이 됨
 - NAMA 협상은 현재도 진행 중으로 수산물은 관세상당치, 최소시장접근, 국영무역, 종량제 등의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수 없게 됨
 - 오히려 ‘식품위생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협정’ 등에 따라 위생기준 또는 기술규정을 국제규정에 일치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됨
-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15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2007년 6월 및 2009년 8월에는 미국 및 인도와의 FTA에 각각 서명함
 - EU와의 FTA 협상은 2009년 7월 타결되었으며, 현재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11개국과 협상이 진행 중임

【그림 2-1】 한국의 FTA 체결



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1997년 수산물 시장 전면 개방 이후 한국의 수산물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한국의 수산물 수출은 2000년 15억 달러, 수입은 14억 달러로 9,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이후 시장 개방이 WTO, FTA로 인해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산물 수출은 소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연평균 1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8년에는 수출 14억 5,000만 달러, 수입 29억 5,000만 달러로 15억 달러의 적자 기조를 기록함

(2) 수산물 수입의 확대

- 시장 자유화 이후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자리매김한 실정으로, 수산물 무역적자 규모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수산물 수입 확대는 결국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증대를 반증하는 것으로, 국내산과 비교할 때 수입산이 품질, 가격, 공급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업무용 수요(급식, 대형유통업체, 외식업체 등)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처럼 국내의 수산물 공급은 국내 생산량이 정부의 지속적인 자원 관리 정책 등을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시장 개방으로 인해 수산물 수입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즉, 시장 개방에 따른 수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 수산물 공급 구조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표 2-5】 한국의 수산물 교역 현황

단위 : 천 달러, 톤, %

구 분		2000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평균증감률 (00~08)
금 액	수 출	1,504,470	1,088,948	1,225,832	1,446,568	△0.5
	수 입	1,410,598	2,769,348	3,056,368	2,954,008	9.7
	무역수지	93,872	△1,680,400	△1,830,536	△1,507,440	22.0
물 량	수 출	533,824	367,498	536,009	582,461	1.1
	수 입	749,191	1,377,101	1,391,506	1,140,593	5.4

자료 : 농림수산물부, 「해양수산통계」, 2000~2008.

2. 수산물 소비 선호의 다양화

1) 사회 인구학적 구조와 선호 변화

(1) 고령화 사회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 최근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유소년인구(0~14세)는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노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인구의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총인구중 65세 이상 비율이 70년 3.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7.2%로 노령인구가 30년간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노령인구가 14.3%를 차지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임³⁾

【표 2-6】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

단위 : 천 명, %

구 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인구수	0~14세	10,974	9,911	9,241	7,907	6,118	5,525	4,777	3,763
	15~64세	29,701	33,702	34,530	35,611	35,506	31,299	26,525	22,424
	65세 이상	2,195	3,395	4,367	5,357	7,701	11,811	15,041	16,156
구성비	0~14세	25.6	21.1	19.2	16.2	12.4	11.4	10.3	8.9
	15~64세	69.3	71.7	71.7	72.9	72	64.4	57.2	53
	65세 이상	5.1	7.2	9.1	11	15.6	24.3	32.5	38.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이 같은 고령 인구의 증가는 식품소비 패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산물의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음⁴⁾
 - 인구의 연령구성 변화로 식품의 소비는 질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식품 소비 패턴이 탄수화물 식품에서 동·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식품 위주로 전환됨
 - 따라서 주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가족형태의 다양화도 진행되어 과거 대가족 중심의 가족구성이 핵가족화하였으며, 이와 함께 독신세대도 증가하는 등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가족형태의 다양화는 식품 소비의 다양화로 이어져, 소비 선호의 다양화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3) 고령화는 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7% 이상(고령화사회), 14% 이상(고령사회), 20% 이상(초고령사회)으로 구분하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자료 : 통계청)
- 4) 박성쾌 외,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가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해양정책연구 제23권 1호

(2) 식품소비 트렌드의 다양화

-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 동향을 보면 총 공급량은 2000년 452만 톤에서 꾸준히 늘어나 2008년에는 611만 톤으로 연평균 3.9%씩 증가하였음
 - 공급량의 증가는 국내 생산과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히 수입 증가율이 동기간 대비 연평균 5.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총 공급의 증가는 국내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국내소비는 2000년 267만 톤에서 2007년 428만 톤으로 연평균 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표 2-7】 수산물 수급 동향

단위 : 천 톤, %

구 분	공 급			합 계	수 요		
	생산	수입	재고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00년	2,514	1,420	582	4,516	2,668	1,338	510
2005년	2,714	2,557	531	5,802	4,169	1,121	512
2006년	3,032	2,646	512	6,190	4,568	1,047	575
2007년	3,271	2,604	575	6,450	4,621	1,211	618
2008년	3,360	2,135	618	6,113	4,280	1,266	567
연평균증감률 ('00~'08)	3.7	5.2	0.8	3.9	6.1	△0.7	1.3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업 연차보고서, 각 년도.

-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9% 증가하여 2008년에는 55kg을 기록함
 - 이처럼 수산물 소비가 늘어난 것은 국민소득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져 건강식품으로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임
 -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한 것에 비례하여 국내 수산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지 않아 수산물 소비의 상당 부분이 수입 수산물로 충당되고 있음

【표 2-8】 한국의 1인당(연간) 수산물 공급량 추이

단위 : kg, %

구 분	1999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평균 증감률 ('00~'08)
합 계	38.4	36.8	49.5	54.2	55.0	54.9	5.1
어패류	30.7	30.7	39.9	41.2	40.6	39.1	3.1
해조류	7.6	6.1	9.6	13.0	14.4	15.8	12.6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년도.

- 향후 소득 향상과 함께 웰빙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수입 장벽의 완화로 수산물 수입이 계속 증가할 여지가 높아 수산물 소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최근 수산물 소비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고급화, 편의화·외부화 등으로 유형 화해 볼 수 있음
- 고급화란 소득 향상으로 발생하는 변화로, 첫째, 동일한 식품에 대해 보다 단가가 높은 고가격 식품에 대한 선호 증대, 둘째, 동일한 종류의 식품 중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고가격 품목에 대한 선호 증대, 셋째, 에너지 단가가 낮은 식품군에서 높은 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게 됨
- 편의화·외부화는 핵가족화, 노령화, 가족 구성원의 사회 활동 증가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나타난 현상으로, 식사에 소요되는 가사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승하면서 식품 소비에 대한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임
 - 즉, 가정 내에서는 섭취가 간편한 조리식품이나 반조리식품, 생식가능한 식품에 대한 선호가, 외부적으로는 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의 식품소비지출 내 외식 비중이 47%(2007년 기준)로 매우 높고, 조리가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간편식품에 대한 지출도 높은 편임
 - 수산물의 경우 간고등어, 다시팩, 손질생선과 같이 반조리된 품목과 조미김, 포장 초밥·포장회처럼 완전조리된 품목의 선호 증가와 횃집, 초밥가게, 특정품목 전문식당·레스토랑(예 : 시푸드레스토랑, 낙지·아구 전문점 등)과 같은 수산물 전문 외식점이나 뷔페와 같이 부분적일지라도 외식을 통한 수산물 섭취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처럼 수산물 소비는 욕구 다양화, 우수식품에 대한 선호 확대 등을 배경으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 소득 증대, 사회여건 변화, 소비자 욕구 다양화를 배경으로 과거와는 달리 복잡·다단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소비 선호의 다양화는 이와 관련된 유통구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외식 수요의 확대

- 고성장기에 생활양식의 서구화, 근대화 내에서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등장한 외식은 여성의 사회 진출 진행과 함께 보급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은 핵가족화로 귀결되어 식(食)의 개별화를 연출하기에 이르렀음

-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최종유통기구의 다양화와 가정소비에서 업무소비라는 수산물 소비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즉, 가정소비 측면에서는 슈퍼마켓, 인터넷 구매 확대 등 구입처의 다양화가 진행 되었으며 그 결과 판매업자의 구매루트도 다양화하고 있음
- 실질소득 증가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영향으로 실제 우리나라 가계의 외식비 지출을 보면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수산물의 경우 급식용 반찬과 수산물을 컨셉으로 한 레스토랑 체인(초밥 전문점, 시푸드 패밀리레스토랑⁵⁾, 특정품목 전문점 등)이 등장·확대하고 있음

【표 2-9】 식품류 소비 지출액의 비목별 구성 변화

단위 : 천 원, %

구 분	2000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증감률 ('00~'07)
가구원수	3.54	3.44	3.38	3.33	3.3	△1.0
소비지출	2,099	2,142	2,092	2,163	2,203	0.7
식료품	578.1	562.9	551.6	556.1	554.9	△0.6
- 육류	70.9	60.0	42.4	42.7	45.0	△6.3
- 어패류	37.8	37.3	32.5	33.5	34.0	△1.5
· 선어패류	18.8	19.1	21.0	21.6	22.3	2.5
· 염건어패류	7.9	8.0	5.1	5.3	5.3	△5.7
· 어개가공품	5.1	5.1	6.4	6.6	6.8	4.2
- 해조류	4.3	3.9	3.8	3.6	3.6	△2.3
- 외식	204.1	222.4	255.9	253.5	257.9	3.4
· 식사대	154.5	172.1	188.1	187.3	191.8	3.1

주 : 소비지출액은 2005년 기준으로 디플레이트된 1가구당 1개월 지출액임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물가연보」, 각 년도.

- 외식 및 중식이라는 업계의 업무소비는 소위 4정 조건(정량, 정질, 정가, 정시)을 요구 하는 대형할인점의 판매특성에 더해 한정된 식재료비라는 제약에서 저가도 요구됨
 - 이는 수입수산물의 이용 증가를 초래하거나 또는 비용 삭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공수산물의 수입으로 이동하는 등 시장외거래라는 형태의 기존 도매시장 시스템과는 연계되지 않는 거래 형태를 확대시킴

5)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푸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는 CJ 푸드빌의 ‘시푸드 오션’, 신세계 푸드시스템의 ‘보노보노’ 등이 있으며,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으로는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의 ‘오션스타’, ‘오리와 참깨’ 및 ‘노랑저고리’를 운영하는 (주)이야기가있는외식공간의 ‘마리스코’, (주)해창시스템의 ‘텔라시스’, ‘텔크루즈’ 등이 대표적(이남수, 2007.8.3.)

2) 식품에 대한 안전·안심 요구 강화

- 최근 들어 인간의 수명을 결정짓는 외부조건으로 식생활이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면서 건강, 즉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소비자의 중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식품선택의 기준으로 가격이나 품질보다 안전성이 제일 기준으로 제시⁶⁾될 정도로 식품의 소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소비자의 이러한 성향을 반영해 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각종 인증제도(예 : HACCP, GAP, Traceability 등)가 도입·운영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대를 소비자의 식품의 안전성 요구 강화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음
 -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과 같이 육류의 위해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동물성단백질이란 측면에서 대체관계에 있는 수산물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단백질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란 해석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정 품목과 수입수산물을 중심으로 안전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예 : 말라카이드그린, 동물항생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등), 소비자들은 식품 공급사슬 전체(Sea to Table)에 대한 식품 안전성 확보 요구를 강화하고 있음

3. 수산물유통구조의 변화

1) 대형수요처의 확산, 유통산업의 지각 변동

- 최근 수산물유통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지를 중심으로 대형할인점, 식자재업체, 급식업체 등 대형수요처가 등장한 데 따른 것으로 수산물유통구조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대형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벤더업체, 급식업체 등 신업체들이 국내유통구조의 변화를 주도, 특히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로 유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과거에는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로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오늘날에는 소비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성장한 대형수요처가 기존의 유통경로(생산-산지위(공)판장-소비지시장-도·소매) 이외에 독자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수산물유통구조가 큰 변화를 겪고 있음

6) 多屋勝雄 「水産物流通と魚の安全性—産地から消費地まで」, 東京水産大學第26回公開講座, 2001.4., pp. 166-169.

- 최근의 수산물유통구조 변화는 대형수요처의 시장 지배력·교섭력 확대에 따른 수요측의 위상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수요측에서 시발된 변화는 수산물유통경로 단축과 체계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반면 소비지시장의 과점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수산물유통구조의 변화가 생산자 수취 가격 상승과 소비자 효용 증대로 연계되지 않고, 대형수요자의 이익 증대로 귀결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대형할인점, 대형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등 대기업 유통체인의 발전과 보급으로 도시의 경우 수산물을 구매하는 장소로서 이러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이 일반화되었는데, 실제로 2008년 대형할인점의 점포수는 378개로 2007년 대비 약 9.2% 증가하였음
 - 이들 대형마트의 수산물 취급 비중은 2008년 기준 4.3%로 전년대비 2%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수산물의 매출액은 1조 2,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의 성장세를 보였음
 - 대형유통업체는 다양한 상품화기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스톱쇼핑 장소로써 소비자가 점차 선호하는 쇼핑공간이 되고 있음
- 유통업체는 막강한 구매력으로 교섭력을 발휘하며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어 농수산물유통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수산물 구매 과정에서 막강한 가격협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 주도의 즉, 구매자 주도의 가격이 형성되게 됨
 - 이 같은 구매자 주도시장에서 산지의 공급주체들은 대형유통업체가 제안하는 가격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판촉 활동 및 상품의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어 산지 공급업체가 이에 대해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와 같은 유통업체들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운영비 절감, 독자적인 차별화 상품의 확보, 산지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안전 수산물의 소비자 제공, 산지에 대한 교섭력 강화, 선도 유지 등을 위해 산지 직거래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
- 소비지시장에서 대형수요처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주체의 대응은 제기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산지의 유통기능이 위축되고 있음
 - 즉, 대형수요처의 유통구조 지배력 증가로 기존의 유통경로를 경유하지 않고 독자로 개척·전개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경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 2-10】 대형마트 및 일반 수산물 소매업의 수산물 취급 규모

구 분		대형마트	수산물 소매업
사업체수 (개)	2007년	346	21,055
	2008년	378	21,101
	전년 대비(%)	9.2	0.2
매출액 (백만 원)	2007년	25,620,974	1,656,234
	2008년	29,116,055	1,794,005
	전년 대비(%)	13.6	8.3
수산물 취급 비중 (%)	2007년	4.1	100
	2008년	4.3	100
	전년 대비(%)	4.9	-
수산물 매출액 (백만 원)	2007년	1,050,460	1,656,234
	2008년	1,251,990	1,794,005
	전년 대비(%)	19.2	8.3
업체당 수산물 매출액 (백만 원/개)	2007년	3,036	79
	2008년	3,321	85
	전년 대비(%)	9.4	7.6

주 : 수산물 취급 비중은 '유통업체연감(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매출액 대비 수산 매출 비중으로 추정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국제 수산전망대회」, <표 7-8>, 2010.

2) 대형할인점의 수산물유통관리구조

- 백화점 및 할인점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최종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수산상품의 아이템(item)은 많게는 200여종에 달함
 - 이들 원료·상품 전부를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기에는 엄청난 인적자원과 정보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품분류마다 원료 및 제품구입경로를 달리하고 있으며 판매방법도 달리함
 - 하지만 대형최종소매점의 대부분은 수산물 구매에 있어 산지구매를 확대하고 있음

(1) 백화점

- 백화점의 식료품코너 안의 수산물 매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수산상품은 백화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선어, 냉장, 냉동, 염장, 건제품, 통조림, 조미가공품, 훈제품, 연제품 등 수산상품분류마다 다종의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으며, 고급 선어 위주로 상품 수적인 면에서 평균 100여 이상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운영형태는 크게 직영과 임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백화점의 경우 할인점과는 달리 직영보다 임대비율이 높음

- 한편 임대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량구매가 가능한 대중 선어의 경우는 본사 측에서 구매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구매나 판매에 있어서 백화점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판매가격의 설정에 있어서도 백화점 측이 상당부분 관여를 하고 있음
- 이 같은 백화점의 행동은 비록 백화점이 단순히 판매 대행의 대가로서 일정수수료를 취해 받는 수수료 상업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타 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백화점 측이 수산물유통관리에 직·간접적 관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임

(2) 할인점

- 대형할인점의 경우는 백화점에 비해 수산상품 분류면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를 가지지 않지만 각 부분별 품목수에 있어서는 다양한 편임
 - 수산물의 경우 대면판매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대형할인점의 셀프판매를 통한 판매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단위로 포장 판매되고 있음
- 운영형태 면에서는 백화점과는 달리 임대보다 직영비율이 높음
 - 특히 수산물 전체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할인점도 있음
 - 과거에는 임대비율이 높았지만 임대의 경우 상품구색 맞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도 입주 업체마다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음
- 또한 점차 할인점들이 대형화·체인화 됨으로써 대량구매와 대량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점포화에 따른 가격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일률적인 구매와 판매를 실현함으로써 유통마진 절감을 도모하기 때문임⁷⁾

【표 2-11】 할인점의 수산물 취급 및 운영형태

구 분	취급품목	운영형태 (판매형태)	구매 및 판매
국내 6개 할인점	선어, 냉장, 냉동, 염장, 건제품 등 평균 200여종의 아이템	직영 > 임대 직영이 100%인 할인점도 있으며, 평균 20~30%정도가 임대 임.	일부 품목의 경우에만 입주 업체가 직접구매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할인점 본사 구매팀을 통해 구매, 판매가격은 할인점 측에서 결정

- 할인점의 경우 판매형태에 있어서 대면판매와 함께 진열판매(특판) 부문을 강화하고 있음

7) 할인점에 있어 임대의 경우 취급품목은 냉동이나 가공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선어의 경우는 할인점 측에서 거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직접 관리 취급하고 있음

- 진열판매의 경우는 직접적인 대면판매활동은 하지 않고 진열만을 하는 것으로 셀 프판매를 통한 판매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할인점의 판매형태이라고 할 수 있음

(3) 수산물 구성

- 현재 대형할인점은 약 270여개 점포의 약 30조 가까운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
 - 일반적으로 대형할인점은 공산 50~60%, 농산 20% 전후, 축산 10~15%, 수산 5~8%의 매출구성비를 형성하는데, 매출액의 약 5%를 수산물 매출액으로 가정하면 1.5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종류는 약 200여 전후 아이템으로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가짐
- 대형할인점의 수산물 상품구색 범위는 크게 3가지로 대분류할 수 있음
 - 우선 가장 일반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대중선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생선회, 간편 조리생선 그리고 고급선어가 상품 관리 분류되고, 나머지는 해물 연체류와 냉동 반건조 수산물로 크게 3가지 대분류를 하고 있음
 - 물론 대형할인점마다 각각 상이한 분류를 가지고 있지만 200여개 전후의 다양한 상품구색을 맞추기 위해 완전 오픈 유통경로를 통한 수많은 거래선 확보 시스템이 아닌 제한적인 벤더를 지정 등록하여 납품 받는 구조화된 전속적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표 2-12】 대형할인점 수산물 SKU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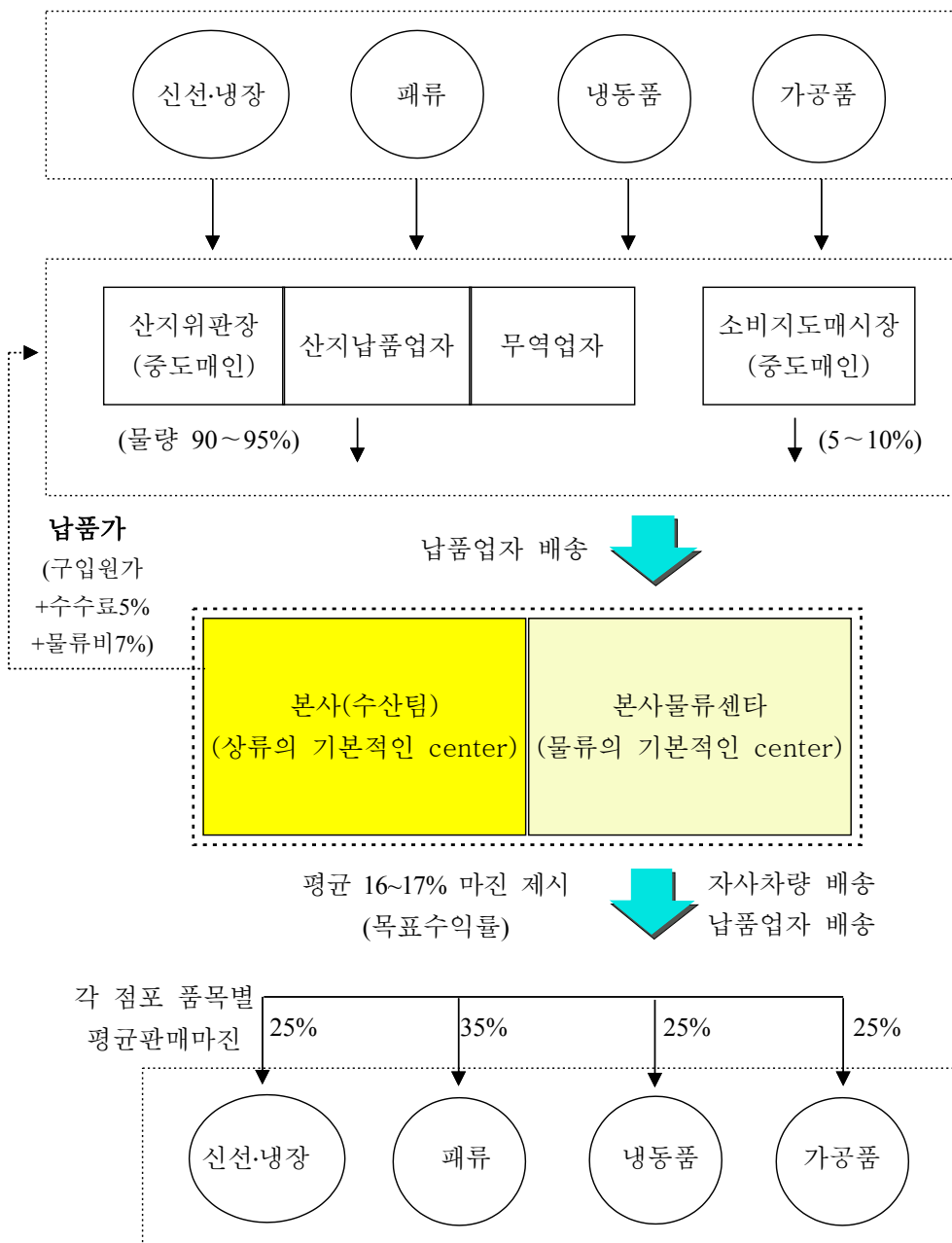
SKU의 종류	범위		어종 및 상태
대중선어(73)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중적인 어종		고등어, 갈치, 삼치, 오징어, 생태 등과 같이 조리, 구이 탕류용으로 식단에 자주 오르는 어종
생선회(16), 고급선어(11), 간편조리생선 (6)	생선회	포장용 생선회, 초밥	모듬회, 활전복, 롤초밥, 광어초밥
	고급선어	선어 중에서도 고가의 어종을 고급선어	민어조기, 연어-특히 부위별로 판매
	간편조리생선	국, 탕, 찌개, 등을 위해 손질된 생선과 재첩국과 같이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Prepared food	재첩국, 올갱이국, 대구탕, 해물탕 등 조리가 간편한 제품을 지칭
해물연체류, 냉동반건	해물연체류	해조류, 패류, 갑각류, 연체류 등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어종들을 소비자 기호에 따라 손질 상품 또는 전처리 상태로 판매	미역, 다시마, 새우, 오징어, 낙지, 굴, 조개류 등을 지칭
	냉동반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어종을 냉동/반건 상태에서 판매하는 제품	코다리, 동태, 굴비 등

주 : SKU(Stock Keeping Unit) - 상품 분류단위 재고단위, 개수별 순위, 현재 200여개 수산물 SKU를 가지고 있음

(4) 유통경로

- 우리나라 최대의 A할인점의 수산물 구입·판매경로는 그림과 같은데, 이는 A할인점의 경우를 나타낸 것이지만 대부분의 할인점들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수산물을 구입·판매하고 있음
- A할인점의 경우 현재 산지와 소비지도매시장의 구입비율이 산지가 80~90%, 소비지도매시장 구입비율이 10~20%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산지에서 구입함

【그림 2-2】 A할인점의 수산물 구입-판매 경로 및 마진



- 대형할인점 마다 산지와 소비지도매시장의 구입비율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산지 구매가 50% 이상으로 소비지도매시장에서의 구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수산물 구매팀과 물류센터를 통해 상적·물적 기능을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산물 구입은 각 지점에서 사전에 통보한 물량을 토대로 본사 구매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아직까지는 매매참가인으로 직접 경매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고, 고정적인 거래를 하는 산지 및 소비지 중도매인을 통해 수산물을 구매함
- 산지 구매의 경우 산지중도매인이 다음날의 예정 반입 물량과 예정 경매 가격 등을 본사에 통보하면, 본사는 이를 토대로 구입 물량과 구입 가격을 설정하여 산지중도매인에게 알려줌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어뿐만 아니라 냉동이나 가공품 등 물량 전체가 물류센터에 입고된 후 각 지점으로 배송하게 되는데, 이 때 단순가공을 거치게 되는 경우도 있음
- 이상과 같이 현재 대형할인점의 수산물은 산지 구매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특히 고등어, 오징어, 삼치, 갈치 등 대형 선어는 산지위판장을 통해 구매하고 있음
 - 양식수산물, 산지가공수산물(건어물, 젓갈, 염장품 등) 등은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어 대형할인점의 산지 구매가 전부 산지위판장 경유 구매로 보기는 어려움
 - 하지만 대형할인점과 산지와 관계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이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3) 새로운 판매형태의 등장, 전자상거래

(1) 수산물 전자상거래 현황

-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를 이용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도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와 비교해 단순한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직거래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시간·공간·지역에 상관없이 24시간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향후 정보화기술이 발달할수록 전자상거래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현재 수산물 전자상거래는 다양한 매매형태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자체적 특성에 공산품 전자상거래에 비해 전자상거래가 덜 활성화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즉, 수산물은 공산품과 비교해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품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

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가 어렵고, 생산 및 공급이 불안정하며, 짧은 유통기간으로 인하여 반품처리가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공산품과 같은 활성화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표 2-13】 수산물과 공산품의 상품 성격 차이

수 산 물	공 산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 체계가 미비하다 • 반품처리가 어렵다 • 생산 및 공급이 불안정하다 • 가격 대비 운송비가 높다 • 유통기간이 짧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 체계가 구축되었다 • 반품처리가 어렵다 • 생산 및 공급이 안정적이다 • 가격 대비 운송비가 낮다 • 유통기간이 길다

- 인터넷의 대두는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가속화시킴
 - 전자상거래 시장은 기존의 유통채널을 변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미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⁸⁾
- 전자상거래 시장은 기존의 유통단계를 축소함은 물론 24시간 쌍방향 교류가 가능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임
 - 1차 품목인 수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 및 각종부대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적시에 공급함을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목적임
- 그러나 현실은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수산기관 주도로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없지 않음
 -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추진하는 판매정책들이 주도적이지 못하고 민간의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판매채널에 편승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수협이 전자상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상거래 주요업체와의 전략적인 제휴노력을 통해서 수산기관주도형 수산물전자상거래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음

8) 수산물 전자상거래 현황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WTO/DDA 대비 어업인·어촌 지원대책 세부실천방안 수립(2차년도)」(2007.12.)의 pp638-644 참조

【표 2-14】 수산기관주도형 전자상거래 장의 현황

전자상거래	주요 내용	현황	비고
B2C	완도군수협 (www.wandosh.co.kr) 웅진수협 (www.ongjinfc.co.kr) 경인북부수협 (www.kanghwa.co.kr) 인천수협 (www.i-suhyup.co.kr)	수산물 구입매장, 다양한 수산물 정보제공, 수산물에 함유된 영양분석과 수산물 요리소개, 지역 관광코스 소개	일반 쇼핑몰과 차별되지 못하고 거래가 활발하지 못함, 체계적인 마케팅 부재로 소비자
	피쉬세일 (fishsale.co.kr) 어선어업인, 양식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가공업체 등 입점	한국수산회운영, 인터넷 수산시장, 생선, 조개 및 해조, 젓갈류 등 판매.	인식 낮음, 오픈마켓과 경쟁관계에서 경쟁력 부족(고객수, 제품 구
	e - 바다마트 (shop.suhyup.co.kr)	건어,굴비, 멸치, 활어회, 옥돔 등 판매.	색, 이용 편리성, 사이트 신뢰성 등)
B2B	인터넷생선사세요 (kfb2b.com)	‘팝니다’, ‘삽니다’ 게시판도 그리 활성화되지 않고 경매·입찰 게시물 빈약	현재로서는 구축자애의 의미

- 수산물 관련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주요 포털과 오픈마켓에서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현재 G-market의 취급 수산물 SKU는 약 1,318개, 옥션은 9,443개 등 상당한 다양성을 갖추고 있음
 - 물론 이는 세분화된 판매 단위의 SKU까지를 포함 수이기 때문에 이들 취급 수산물 전부를 별도의 어종과 브랜드로 보기에 는 문제가 있음
- 하지만 이들 쇼핑몰이 가지는 장점은 사이버 공간상에 진열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무한대의 상품구색군을 형성할 수 있음
 -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함

【표 2-15】 수산물 관련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 마켓 현황

주요 E-market	주요 경로	수산물 사이트 현황	비고
G-market	전체 > 신선/조리/농수축산물 > 수산물 수산물 (1,318개)	기타수산물(1203개), 게/킹크랩/바다가재(29개) 생선세트(21개) 조개류(16개) 고등어(9개) 굴비(10만원 미만)(9개) 새우(9개) 연어/알류(6개) 오징어/낙지/주꾸미(5개) 갈치/은갈치 세트(4개) 전복(2개) 굴비(10~30만원)(2개) 옥돔(1개) 굴(1개) 굴비(30만원 이상)(1개) 기타수산물에 다양한 수산물 판매 업체와 품목이 존재	오픈마켓으로 다양한 수산물제품과 전문 상점이 입주해서 활발한 상거래
옥션 수산물	식품/농수축산물>수산물/생선(9,443개)	건어물 [2908] 고등어/생선류[2295] 굴비/옥돔[1653] 수산물기타 [1257] 수산가공식품 [832] 김/김세트 [498] 해산물/어패류(2180)	오픈마켓으로 수산물제품과 전문상점이 입주해서 활발한 상거래

【표 2-15】 수산물 관련 인터넷 쇼핑물과 오픈 마켓 현황 - 계속

주요 E-market	주요 경로	수산물 사이트 현황	비고
야후	쇼핑과 서비스(B2C, C2C) > 식품, 음식 > 수산물	건어물(65) 게(50) 과메기(17) 굴비(28) 기업간거래(B2B) 전복(26) 젓갈(38) 해초·김(63) 홍어(22)	포털사이트의 등록사이트 숫자로 개별적인 쇼핑물
네이버	기업, 쇼핑 > 음식, 식품 > 수산물(769)	젓갈(50) 건어물(218) 게(81) 고등어(20) 과메기(46) 굴(7) 굴비(33) 멸치(30) 미역, 다시마(17) 바다가재·랍스타(4) 바지락(3) 복어(5) 새우(6) 오징어(18) 옥돔 (7) 장어(7) 전복(44) 참치, 다랑어(11) 홍어(30)	포털사이트의 등록사이트 숫자로 개별적인 쇼핑물
엠파스	기업 > 식품, 음식 > 수산물	해산물(259) 해산물(338) 농수산물시장(36) 해조류(83) 건어물(57) 굴비, 조기(29)	포털사이트의 등록사이트 숫자로 개별적인 쇼핑물

(2)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한계

- 앞에서 언급한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전자상거래가 가지는 한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수산물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매체의 활용과 정보의 공유, 수산물의 표준화 및 규격화, 물류시스템화, 마케팅활동,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 관리 운영 시스템 등 수산물유통과 관계된 근본적인 변화가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전자상거래 자체가 정보시스템 위에 구축되기에 급격히 변해가는 정보기술을 따라잡아야 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주변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장·단기적으로 기획하여 갖추어야 하고, 유연하게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전자상거래가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를 극복해야함
- 그러나 수산물 전자상거래가 꾸준히 확대되고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생산자와의 직거래, 즉 산지직거래의 확대라는 의미에서는 산지를 대표하는 수산물 위판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표 2-16】 수산물 전자상거래가 극복해야 할 과제

세부 항목	현 황	극복해야 할 과제	기대효과
취급품목의 다양화	대부분의 수산물 쇼핑몰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배송과 취급이 편리한 건어물, 반건조식품, 젓갈류, 수산가공식품등	생물판매(생낙지, 생문어, 생태, 생고등어 등), 활어판매(광어, 우럭, 도미, 농어 등), 활패류(활꽃게, 대하, 낙지, 소라 등) 등으로 취급상품을 다양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넓어짐
배송망 확보와 배송수단의 다양화	대부분이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고객에게 상품의 배달현황을 알려줄 수 있으며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속한 배달이 가능	취급상품의 종류와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택배회사, 우체국, 자체배송, 산지직송 시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최적의 배송망 확보	생물, 활어, 활패류 등으로 취급품목이 다양화 된다면 냉장, 냉동차 활어차등의 다양한 배송수단 필요
수산물의 품질 유지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되므로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되는 품질과 실제 수령했을 때의 품질의 차이가 발생	소비자 불신이 수산물 전체로 이어져 구매 욕구를 창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제품의 품질 유지에 엄격한 기준	생산자 배상 책임 정책, 품질검사 제도 마련(인증, 이력관리 강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전략수립	종합쇼핑몰에 비해서 수산물쇼핑몰은 상품소개와 간단한 수산상식 그리고 게시판운영등 대체로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운영	수산물 쇼핑몰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전시기능의 차원을 넘어 수산물 소비문화 창조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어 모아 앞으로 더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고객관리 강화, 홍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DB를 구축, 일 대 일 마케팅과 회원제 도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생산자, 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 등 표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 구매 유도	수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 향상
정보시스템의 활용	정부주도에 의한 민간 참여방식으로 기술비용과 시스템의 낙후성(투자개념보다 비용으로 작용, 농업부분 등 답습하여 후발시스템)	전문가 집단을 통한 시스템 아웃소싱, 선진 정보시스템 회사 지분인수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예: 인터넷경매, 무선정보)	선도적인 신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서비스제공(생산자, 중간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

4. 산지위판제도의 변화

1) 의무상장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 연근해 어획물의 판매제도로써 의무상장제는 실제로 1911년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져오던 제도임
 - 근대적인 수산업법 체제 하에서 1963년 수산자원보호령이 제정될 때, 연근해 어획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위탁판매(계통판매)하도록 규정을 정하면서 의무상장제가 제도적 틀을 잡음

-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어획물의 양륙제한)와 제21조(어획물 판매장소의 지정)에 근거하여 수산물은 산지에서 수협이 위판장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의무상장제 또는 강제상장제라고 함
- 의무상장제는 불법어획물의 유통단속을 통한 수산자원보호, 일시다획된 어획물의 신속한 집하와 분산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원활화, 정확한 생산통계의 집계를 통한 수산정책수립 기여가 목적임
- 의무상장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수산물에 관련된 유통법이 아닌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한 제도임
 - 즉, 의무상장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유통에 기반을 둔 공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거하여 양륙장소 제한과 판매장소 제한이 생기면서 부수적으로 나타난 제도임
 - 의무상장제의 근거법률이 없어진 현재를 ‘자유판매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임의적 성격을 갖는 명칭임
- 둘째, 동법의 규정에 의해 수협이 산지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됨
 - 문제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해 수협의 위판장에 양륙하여 상장하지 않는 경우는 불법이 된다는 점임
 - 실제 산지수집상 혹은 생산자에 의한 유통이 과거부터 있어 왔고, 이들이 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산지에서 큰 편은 아니나 엄연한 유통경로의 하나라는 점임
- 셋째, 수산물에 관한 유일한 유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농안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통주체에는 산지시장인 위판장과 위판장 소속 중매인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이상과 같이 의무상장제를 정리하면 수산물에 관련된 유통법이 아닌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명칭 또한 법률상의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임의적인 명칭임
- 수산물유통제도가 현실과 괴리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의무상장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됨
 - 의무상장제의 근본 목적이었던 수산자원의 보호에 한계가 나타났고,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어획물 운반, 수수료 지급 등에서 어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킴
 - 또한 유통단계에서 불법어획물은 단속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인 장치로서 단속 실적이 미미하였음
 - 그리고 새로운 유통경로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유통단계의 중복 및 유통기간의 지연으로 상품성이 저하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2) 자유판매제의 도입 배경 및 의의

-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로 인해 산지유통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과 앞서 살펴본 의무상장제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자유판매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됨
 - 특히 고흥, 완도 등 전남지역 일부 김 양식어업인들이 의무상장제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제기함
 - 즉, 의무상장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것으로 양식수산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상장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산지거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수립됨
 -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1983년 1월 1일부터 자유판매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본 계획은 위판물량 감소에 따른 수지 악화를 우려한 일선 조합의 반대로 무산됨
- 양식어업인을 중심으로 의무상장제 폐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정부도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활동을 수행함
 -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선어업인들도 지정된 항구에서만 양륙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토록 하는 의무상장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함
-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추진한 행정규제 개혁의 한 과제로 자유판매제 도입이 선정되면서 자유판매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됨
 - 그 동안 어업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행정규제 개혁’의 농림수산분야 대상과제로서 ‘수산물 산지수협 위판장 의무상장제 개선’이 선정됨
 - 개선에 대한 논의 결과, 1994년 1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미역, 넙치, 꽃게 등 10개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자유판매제를 시행함
- 1995년 3월부터는 단계별로 자유판매제를 실시하기 시작함
 - 제1단계 자유판매제(1995. 3~1996. 7)는 활어 전품목 및 넙치, 꽃게, 전복, 미역 등 31개 품목에 대해 자유판매를 허용토록 조치함
 - 제2단계 자유판매제(1996. 8~1997. 8)는 패류 및 기타 해조류를 추가하여 품목을 확대함
- 1997년 9월 이후 자유판매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
 - 그 동안 자유판매제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38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유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함
 - 또한 법률적으로도 자유판매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후 2년간은 수산자원보호령

을 개정하여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제21조(판매장소의 지정))를 존치시켰지만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시책에 따라 이 규정마저도 보호령 개정시(1999. 9. 30)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자유판매제 실시에 대한 지지논리의 근간에는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유통경로의 다양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수산물유통구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판매제도의 한계점으로는 ① 생산량 통계집계 문제, ② 거래량 파악과 조세 부과 문제, ③ 불법어획물에 대한 감시·감독 문제, ④ 객주 자본의 활성화 우려, ⑤ 시장 정보가 부족한 영세 어민에 대한 피해 우려, ⑥ 수협 위판사업 축소로 인한 수협 경영의 어려움 등이 있음
 - 하지만 자유판매제가 시행된 이후 12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즉, 생산지 수협의 관계자들은 자유판매제가 도입됨에 따라 생산지위판장의 거래 물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위판수수료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수협 경영이 악화되고 생산지의 유통질서가 문란해진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구축되어 온 건전한 산지유통기구의 상실과 향후 새로이 구축할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 등 현시점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제3장 산지위판장의 위판 현황 및 특성

1. 산지위판장 개설 현황
2. 산지위판장 시설 현황
3. 수산물 위판 동향

1. 산지위판장 개설 현황

1) 지역별 분류

- 현재 1개 수협이 복수 위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판장 수가 수협 수 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지위판장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2개소의 산지위판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위판장이 168개소, 현장위판이 34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 위판장의 경우 168개소 중 고시로 지정된 것은 162개소, 미지정 된 것은 6개소임
 - 현장위판의 경우 물량장이 21개소로 가장 많고, 가두리양식장·양만장 6개소, 어촌계 5개소, 기타(뗏목) 2개소임
- 산지위판장 202개 중 75%가 전남, 경남, 경북, 강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지역별 위판장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이 53개소로 가장 많고, 전남 52개소, 경북 24개소, 강원 22개소, 부산 14개소, 제주 11개소 등의 순으로 조사됨

【표 3-1】 지역별 위판장 현황(2009년 기준)

구 분	조합	위판장 구분						
		총계	위판장		현장위판			
			지정	미지정	물량장	가두리양식장 양만장	어촌계	기타 (뗏목)
합계	78	202	162	6	21	6	5	2
경인	5	9	5	-	4	-	-	-
강원	9	22	22	-	-	-	-	-
충청	7	13	11	2	-	-	-	-
전북	2	4	2	2	-	-	-	-
전남	19	52	33	-	12	3	4	-
경북	8	24	23	-	1	-	-	-
경남	18	53	46	-	2	2	1	2
부산	3	14	12	-	2	-	-	-
제주	7	11	8	2	-	1	-	-

주 : 내륙지 위(공)판장, 농협중앙회 위(공)판장 제외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3-2】 지역별 위판장 세부내역

지역	수협명	총계	위판장		현장위판			
			지정	미지정	물양장 선상	가두리 양식장 양만장	어촌계	기타 (뗏목)
합계	78개	202	162	6	21	6	5	2
경인	5개	9	5	-	4	-	-	-
	경인북부	1	1	-	-	-	-	-
	웅진	4	1	-	3	-	-	-
	인천	2	2	-	-	-	-	-
	경기남부	1	-	-	1	-	-	-
	영흥	1	1	-	-	-	-	-
강원	9개	22	22	-	-	-	-	-
	고성	3	3	-	-	-	-	-
	속초	3	3	-	-	-	-	-
	대포	1	1	-	-	-	-	-
	양양	4	4	-	-	-	-	-
	강릉	2	2	-	-	-	-	-
	동해	1	1	-	-	-	-	-
	삼척	2	2	-	-	-	-	-
	원덕	1	1	-	-	-	-	-
충청	7개	13	11	2	-	-	-	-
	보령	2	1	1	-	-	-	-
	서천	1	1	-	-	-	-	-
	서산	2	1	1	-	-	-	-
	서천서부	2	2	-	-	-	-	-
	태안남면	3	3	-	-	-	-	-
	안면	2	2	-	-	-	-	-
	신흥	1	1	-	-	-	-	-
전북	2개	4	2	2	-	-	-	-
	군산	2	2	-	-	-	-	-
	부안	2	-	2	-	-	-	-
전남	19개	52	33	-	12	3	4	-
	강진	2	2	-	-	-	-	-
	목포	2	2	-	-	-	-	-
	신안	3	2	-	-	-	1	-
	영광	2	2	-	-	-	-	-
	금일	4	3	-	1	-	-	-
	소안	6	1	-	3	-	2	-
	진도	5	5	-	-	-	-	-
	해남군	6	2	-	4	-	-	-
	흑산도	1	1	-	-	-	-	-
	거문도	1	1	-	-	-	-	-
	고흥	10	6	-	4	-	-	-
	나로도	1	1	-	-	-	-	-
	장흥군	1	1	-	-	-	-	-
	여수	2	2	-	-	-	-	-
	제3.4구	1	1	-	-	-	-	-
양만	1	-	-	-	1	-	-	

【표 3-2】 지역별 위판장 세부내역 - 계속

지역	수협명	총계	위판장		현장위판			
			지정	미지정	물양장 선상	가두리 양식장 양만장	어촌계	기타 (뗏목)
전남	전남동부	1	-	-	-	-	1	-
	서남해수	2	1	-	-	1	-	-
	전남서부	1	-	-	-	1	-	-
경북	8개	24	23	-	1	-	-	-
	경주	1	1	-	-	-	-	-
	구룡포	6	6	-	-	-	-	-
	포항	3	3	-	-	-	-	-
	강구	2	2	-	-	-	-	-
	축산	2	2	-	-	-	-	-
	후포	3	3	-	-	-	-	-
	죽변	2	2	-	-	-	-	-
경남	울릉	5	4	-	1	-	-	-
	18개	53	46	-	2	2	1	2
	거제	7	7	-	-	-	-	-
	고성	8	7	-	-	-	1	-
	마산	2	2	-	-	-	-	-
	삼천포	4	4	-	-	-	-	-
	울산	2	2	-	-	-	-	-
	의창	2	2	-	-	-	-	-
	진해	2	2	-	-	-	-	-
	통영	4	4	-	-	-	-	-
	하동	3	3	-	-	-	-	-
	남해	9	7	-	2	-	-	-
	사천	1	1	-	-	-	-	-
	굴수하	1	1	-	-	-	-	-
	권현망	2	2	-	-	-	-	-
	진동	2	2	-	-	-	-	-
	욕지	1	-	-	-	1	-	-
	피조개양식	1	-	-	-	1	-	-
근해통발	1	-	-	-	-	-	1	
멍게수하식	1	-	-	-	-	-	1	
부산	3개	14	12	-	2	-	-	-
	부산시	5	4	-	1	-	-	-
	부산동부	3	2	-	1	-	-	-
	제1,2구	5	5	-	-	-	-	-
	공동어시장	1	1	-	-	-	-	-
제주	7개	11	8	2	-	1	-	-
	서귀포	2	1	1	-	-	-	-
	모슬포	1	1	-	-	-	-	-
	성산포	2	1	1	-	-	-	-
	제주시	1	1	-	-	-	-	-
	추자도	2	2	-	-	-	-	-
	한림	2	2	-	-	-	-	-
제주해수어류	1	-	-	-	1	-	-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2) 취급부류별 분류

- 취급부류에 따른 위판장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활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위판장 중에서 활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53개소로 가장 많고, 활어·선어 42개소, 선어 36개소, 해조류 21개소, 패류 17개소 등의 순임
 - 또한 3가지 이상의 부류를 취급하는 위판장도 14개소에 달함

【표 3-3】 취급 부류별 위판장 현황(2009년)

합계	활어				선어		패 류 해조류	패 류	절 갈	해 조	건 어	전부류
	활어	선어	패류	해조류	선어	건어						
202	53	42	7	1	36	1	1	17	2	21	7	14

주 : 전부류는 3가지 이상의 부류를 취급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2. 산지위판장 시설 현황

1) 위판장 시설 현황

- 위판장을 개장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1990년대에 개장한 위판장이 71개소로 가장 많고, 2000년대 66개소, 1980년대 18개소, 1970년대 16개소, 1970년대 이전이 15개소 등의 순서임
 - 개장한지 30년 이상된 위판장은 전체 위판장의 15.3%(31개소)를 차지하고 있음

【표 3-4】 개장연도별 위판장 분포(2009년)

구 분	개소	비중
1970년대 이전	15	7.4%
1970년대	16	7.9%
1980년대	18	8.9%
1990년대	71	35.1%
2000년대	66	32.7%
기 타	16	7.9%
합 계	202	100%

주 : 기타는 집하장, 현장위판 등이 해당됨
 자료 : 수협중앙회(2010.5.) 자료를 이용하여 집계

- 참고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2008.10)의 조사 결과를 참고해 보면, 위판장 건물연수의 경우 건립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건물의 비중이 전체의 약 8%를 차지하였으며, 10년 이하의 건물을 보유한 곳은 전체의 약 2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표 3-5】 건물연수별 위판장 분류

단위 : 개소, %

구 분	개 소	비 율
50년 이상	1	0.6%
30~50년	14	7.8%
20~30년	16	8.9%
10~20년	50	27.8%
5~10년	21	11.7%
5년 이하	24	13.3%
미응답	54	30.0%
합 계	180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산지 수산물 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2008.10.

- 규모별 위판장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이상의 대규모 위판장이 3개소, 1천~1만㎡의 중규모 위판장이 49개소, 1천㎡ 이하의 소규모 위판장이 110개소로 조사됨
 - 5백㎡ 이하 규모의 위판장이 71개소로 전체 위판장의 35.1%를 차지해 가장 많고, 1천~5천㎡ 45개소(22.3%), 5백~1천㎡ 39개소(19.3%), 5천~1만㎡ 4개소(2%) 등의 순서임
- 위판장 시설은 주차장, 오물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등의 필수시설과 중도매인 사무실 등의 부수시설, 제빙·저빙·냉동·냉장 등의 이용가공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 위판장의 필수시설을 조사한 결과 사무실 이외 시설의 구비수준이 낮은 편임
 - 사무실을 갖춘 위판장은 122개소로 60% 이상의 위판장이 시설을 갖추었지만, 오물처리장의 경우 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45개소로 22%에 불과함
 - 주차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202개소 중 81개소로 전체의 40%에 불과하나, 실제 대도시가 아닌 한적한 곳에 위치한 소규모의 위판장들은 별도의 주차시설은 없지만 위판장 인근에 주차가 가능한 곳들이 많음⁹⁾
- 부수시설 및 이용가공시설도 대부분의 위판장들이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중도매인 사무실의 경우 전체 위판장 중 38%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제빙시설, 저빙시설, 냉동시설, 냉장시설 등의 이용가공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20% 이하로 조사됨

9) 농림수산식품부, 상계서, 2008.10., p.57 참조

【표 3-6】 면적별 위판장 분포(2009년)

구 분		개 소	비 율
소규모	소 계	110	54.5%
	5백㎡ 이하	71	35.1%
	5백㎡~1천㎡	39	19.3%
중규모	소 계	49	24.3%
	1천㎡~5천㎡	45	22.3%
	5천㎡~1만㎡	4	2.0%
대규모	소 계	3	1.5%
	1만~5만㎡	2	1.0%
	5만㎡ 이상	1	0.5%
기 타		40	19.8%
합 계		202	100%

주 : 1) 대지면적은 위판장의 연면적(㎡)을 이용하여 집계하되, 삼천포수협(패류, 선어), 속초수협(사진), 울릉수협(태화)은 대지면적을 이용하여 집계함

2) 기타는 물양장, 선상, 가두리, 어촌계 등으로 표시되어 위판장 규모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임

자료 : 수협중앙회(2010.5.) 자료를 이용하여 집계

【표 3-7】 위판장의 시설 현황(2009년)

구 분		개 소	비 중
필수시설	주차장	81	40.1%
	오물처리장	45	22.3%
	위생시설	85	42.1%
	사무실	122	60.4%
부수시설 및 이용가공시설	중도매인사무실 등	77	38.1%
	제빙	32	15.8%
	저빙	32	15.8%
	냉동	39	19.3%
	냉장	41	20.3%

주 : 비중은 전체 202개 위판장 중 해당시설을 보유한 위판장의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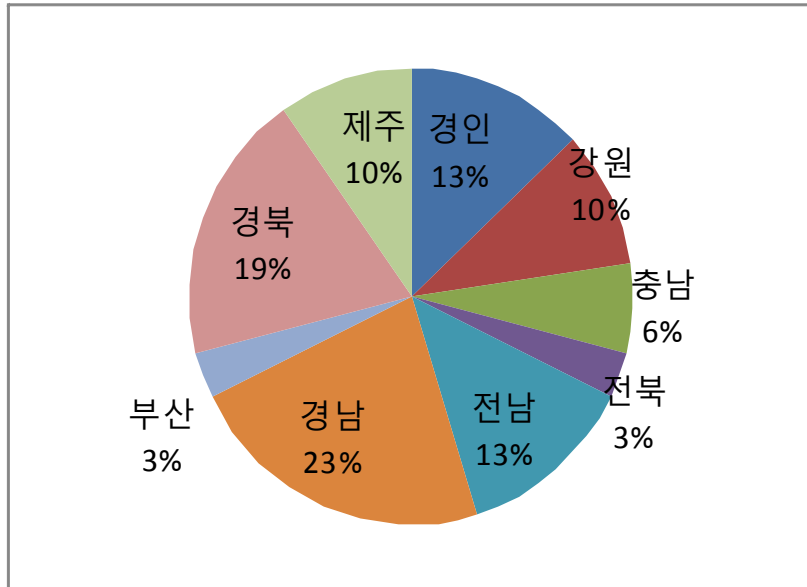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2) 기타 시설 현황

(1) 어상자

- 산지위판장의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과 관련해 전국의 지구별 수협 70개소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 전체 수협의 44.3%가 플라스틱 어상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경남지역이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 비율



- 전체 어상자 중 플라스틱 어상자 도입 비중의 경우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충남 지역의 수협은 플라스틱 어상자 도입 비중이 90%에 이르고, 특히 경남지역의 하동군 수협, 사천수협은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 비중이 100%인 것으로 조사됨
-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과 관련해 대부분의 수협은 정부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어상자 소유도 수협보다는 개별업자나 어민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도입과 관련 대다수의 수협은 플라스틱 어상자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 2012년 12월 1일 부터는 어묵류, 냉장수산물가공품,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패류·갑각류·조미가공품), 레토르트식품, 굴통조림 등의 가공시설은 연매출과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HACCP 시설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함
- 산지위판장 가공시설과 관련해 HACCP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기북부수협, 거제수협, 부안수협만이 도입하였거나 인증 신청 중으로 대부분의 산지수협이 HACCP을 도입하지 않음
 - HACCP을 도입한 수협은 대부분 2006~2007년에 도입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HACCP 도입 계획의 경우 전국 11개 수협에서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3-8】 가공시설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시기

적용대상	의무 적용시기	적용기준	
		연매출액	종업원수
어묵류, 냉장수산물가공품 냉동수산물(어류·연체류·패류·갑각류·조미가공품), 레토르트식품, 굴통조림,	2006.12.1	20억 원 이상	51인 이상
	2008.12.1	5억 원 이상	21인 이상
	2010.12.1	1억 원 이상	6인 이상
	2012.12.1	1억 원 미만	5인 이하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표 3-9】 향후 HACCP 도입 계획

지역	수협	내용
제주	성산포수협	신청 중
	서귀포수협	계획 중
	제주시수협	계획 중
	추자도수협	신청 중
	한림수협	계획 중
전남	해남군수협	올해 말 예정, 신축건물
부산	부산동부수협	올 상반기, 해조류의 건조, 소분시설 등
경남	사량수협	2010년
	진해시수협	2010년 말
전남	목포수협	2016년(가공시설 신축부지 확보 예정일)
	영광수협	2011년(가공시설 신축시 도입)

3) 관련 종사자 현황

- 산지위판장의 관계자로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등이 있음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도매인은 법률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영업하는 자임(제2조)
 - ※ 중도매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거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매매참가인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함
- 경매사는 제27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이 중에서도 산지위판장 중도매인의 경우 산지시장에 양륙된 수산물의 선별과 평가 기능, 소비지 실구매자의 주문에 대응하는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기능, 실구매자를 대행하는 금융결제기능을 본원적 기능으로 하고 있음¹⁰⁾
 - 2009년 현재 산지위판장의 매수인 수는 총 3,896명으로 이 중 연안 위판장에 전체 매수인의 약 88%가 속해 있음
 - 세부적으로는 중도매인이 3,462명, 매매참가인이 434명으로, 중도매인이 매수인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경매사수는 총 328명으로, 자격증을 보유한 경매사 보다 보유하지 않은 경매사가 총 191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음

【표 3-10】 산지위판장의 매수인 수 추이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연 안	
	매수인	중도매인 비중	매수인	중도매인 비중
1999년	3,895	89%	3,456	89%
2000년	3,677	92%	3,290	92%
2001년	3,732	91%	3,360	91%
2006년	3,533	92%	3,077	92%
2007년	3,543	92%	3,089	92%
2008년	3,834	90%	3,416	89%
2009년	3,896	89%	3,474	88%
연평균증감률 ('00~'09)	0.6%	0.3%	0.6	0.1%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매수인 수는 자유판매제로 전환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6년에는 3,533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증가하여 2009년 현재 10년 전과 유사한 수준까지 증가하였음
 - 매수인의 중심은 중도매인이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200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매매참가인이 연평균 4%로 중도매인의 0.3%에 비해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조합을 대상으로 매수인 수 추이를 보면 2001년 이후 2009년까지 연평균 1% 증가한

10) 장영수, “수산물 산지중도매인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2007.12., p.94.

가운데, 위판고가 500억 원 미만인 수협의 매수인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500억 원 이상 규모에 속한 매수인 수는 증가하였음

- 반면 1천억 원 이상 규모의 매수인 수는 동년 대비 약 5.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표 3-11】 수협조합의 매수인 추이

단위 : 명, %

구 분	매수인수			중도매인수			연평균증감률 (’01~’09)	
	2001년	2008년	2009년	2001년	2008년	2009년	매수인	중도매인
100억 원 미 만	475	512	391	383	338	293	△2.4	△3.3
100~200억 원	638	477	545	591	470	485	△2.0	△2.4
200~300억 원	520	374	395	416	279	294	△3.4	△4.2
300~400억 원	277	236	181	275	228	174	△5.2	△5.6
400~500억 원	-	363	273	-	363	273		
500~1천억 원	816	986	924	801	942	850	1.6	0.7
1천억 원 이상	499	487	783	473	437	706	5.8	5.1
합 계	3,225	3,435	3,492	2,939	3,057	3,075	1.0	0.6

주 : 매수인은 조합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특히 중도매인의 경우 위판고 500억 원 미만의 규모에서는 매수인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 500억 원 이상 규모의 조합에서도 매수인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음

3. 산지위판장 위판 동향

1) 지역별 위판 동향

- 우리나라의 어업생산량은 1998년 209만 톤에서 2009년 254만 톤으로 연평균 1.8% 증가하였고, 금액도 같은 기간 3조 2,440억 원에서 5조 4,867억 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함
- 계통판매량은 1998년 137만 톤에서 2009년 149만 톤으로 연평균 0.7% 증가하였고, 금액도 같은 기간 2조 188억 원에서 3조 4,208억 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함
- 어업생산량과 계통판매량을 이용하여 계통판매율을 계산한 결과 물량 기준으로는 1998년 65.8%에서 2009년 58.6%로 7.2% 감소하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998년 62.2%에서 2009년 62.3%로 0.1% 증가함

【표 3-12】 수산물 계통판매 추이

단위 : 천 톤, 억 원, %

구 분	어업생산(A)		계통판매(B)		계통판매율(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998년	2,086	32,440	1,373	20,188	65.8	62.2
1999년	2,101	31,119	1,489	20,978	70.9	67.4
2000년	1,842	30,133	1,338	21,190	72.6	70.3
2001년	1,908	31,855	1,447	22,789	75.8	71.5
2002년	1,877	32,815	1,338	22,220	71.3	67.7
2003년	1,923	35,715	1,244	20,920	64.7	58.6
2004년	1,994	38,268	1,207	22,884	60.5	59.8
2005년	2,138	40,544	1,182	22,504	55.3	55.5
2006년	2,368	41,944	1,241	22,064	52.4	52.6
2007년	2,538	45,387	1,276	22,775	50.3	50.2
2008년	2,666	47,424	1,383	26,585	51.9	56.1
2009년	2,540	54,867	1,489	34,208	58.6	62.3

주 : 어업생산은 일반해면어업과 천해양식어업의 합계임(내수면 및 원양 제외)

자료 :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 연도별 계통판매율은 1998년 60%대에서 2001년 70%대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인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2007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2009년 60%대의 계통판매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위판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양식수산물의 경우는 비계통판매가 중심임
 - 양식생산물의 생산량의 70% 이상이 비계통, 즉, 산지위판장을 경유하지 않고 생산자와 수요자(중간상인을 포함) 간의 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음
 - 특히 2004년 이후 양식수산물의 비계통 판매율이 70% 이상을 상회함으로써 전체 연근해 생산량의 계통판매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13】 양식수산물의 비계통 판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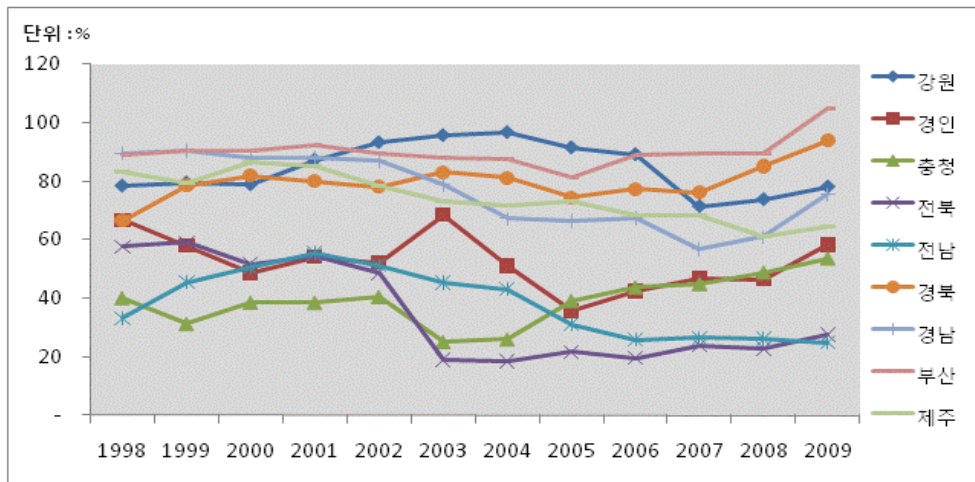
단위 : 톤

구 분	양식물 생산량	계 통 판매량	비계통 판 매	비계통 비 율	구 분	양식물 생산량	계 통 판매량	비계통 판 매	비계통 비 율
1997년	1,015,134	327,846	687,288	67.7%	2004년	917,715	291,935	625,780	68.2%
1998년	777,230	228,009	549,221	70.7%	2005년	1,041,074	273,176	767,898	73.8%
1999년	765,252	318,499	446,753	58.4%	2006년	1,259,274	322,081	937,193	74.4%
2000년	653,373	305,459	347,914	53.2%	2007년	1,385,804	345,786	1,040,018	75.0%
2001년	655,827	321,763	334,064	50.9%	2008년	1,382,098	320,245	1,061,853	76.8%
2002년	781,519	369,994	411,525	52.7%	2009년	1,313,361	319,475	993,886	75.7%
2003년	826,245	320,183	506,062	61.2%					

자료 :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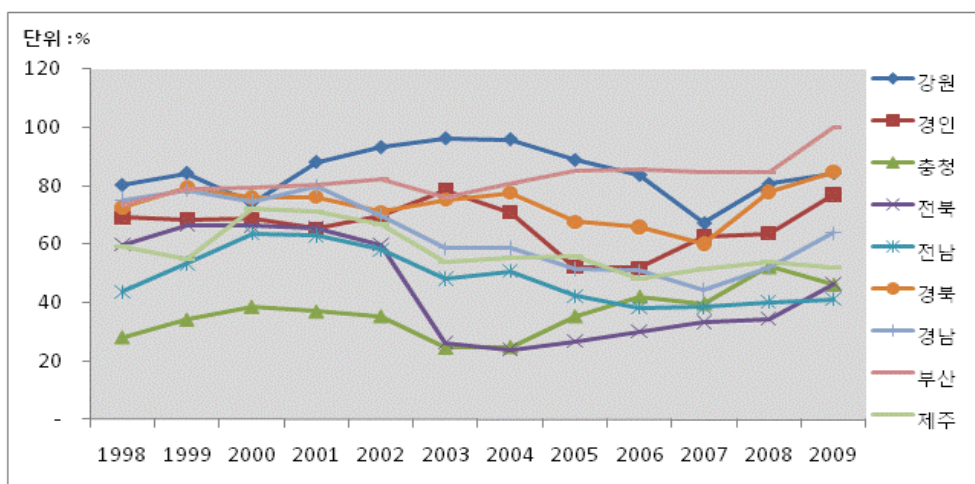
- 1998년 이후 지역별 계통판매율을 살펴보면 충청, 경북, 부산 지역의 경우 소폭 상승한 반면, 강원, 경인,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은 감소함
 - 물량 기준으로 1998년 대비 2009년 계통판매율의 경우 충청(13.6%), 부산(16.0%), 경북(27.3%) 지역의 경우 10% 이상 증가한 반면 전북(30.2%), 경남(14.3%), 제주(18.6%) 지역은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금액 기준으로 1998년 대비 2009년 계통판매율의 경우 충청(18.1%), 경북(12.2%), 부산(26.5%) 지역은 10% 이상 증가한 반면 전북(13.4%), 경남(11.2%) 지역은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지역별 계통판매율 추이(물량 기준)



자료 :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그림 3-3】 지역별 계통판매율 추이(금액 기준)



자료 :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 2009년 지역별 계통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물량 기준으로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제주가 전국 평균 이상의 계통판매율을 보였으며, 경인, 충청, 전북, 전남은 평균 이하

의 계통판매율을 보임

- 특히 부산과 경북은 90% 이상의 계통판매율을 보인 반면 전북과 전남은 20%대의 계통판매율을 보임

【표 3-14】 지역별 위판실적(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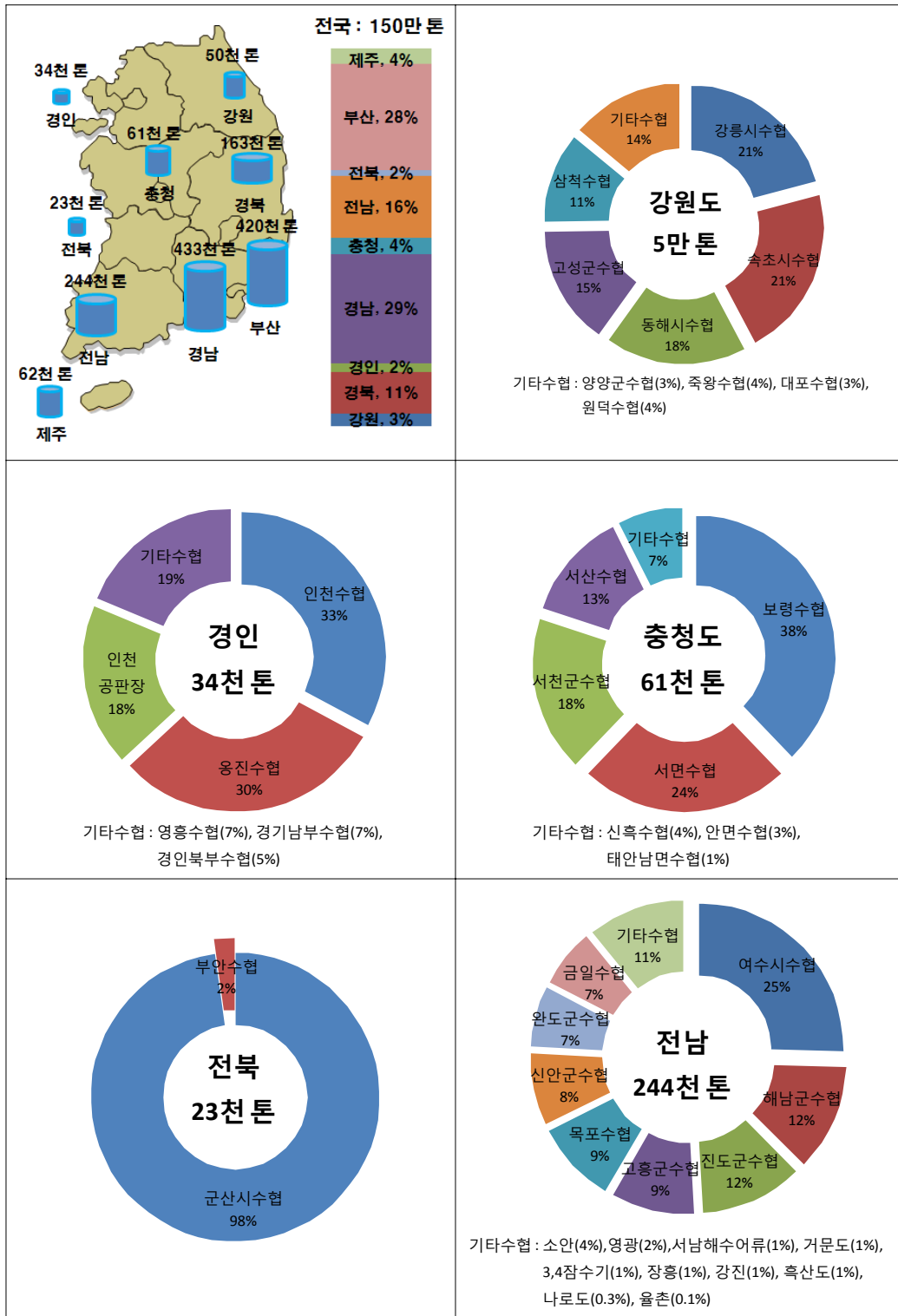
단위 : 천 톤, 억 원, %

구 분	어업생산(A)		계통판매(B)		계통판매율(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2,540	54,867	1,489	34,208	58.6	62.3
강 원	63	2,095	50	1,768	78.1	84.4
경 인	58	2,572	34	1,982	58.4	77.1
충 청	114	4,202	61	1,946	53.7	46.3
전 북	82	1,437	23	668	27.6	46.5
전 남	979	14,939	244	6,166	25.0	41.3
경 북	174	4,567	163	3,877	93.9	84.9
경 남	574	11,209	433	7,172	75.4	64.0
부 산	400	7,095	420	7,113	104.9	100.3
제 주	95	6,753	62	3,516	64.7	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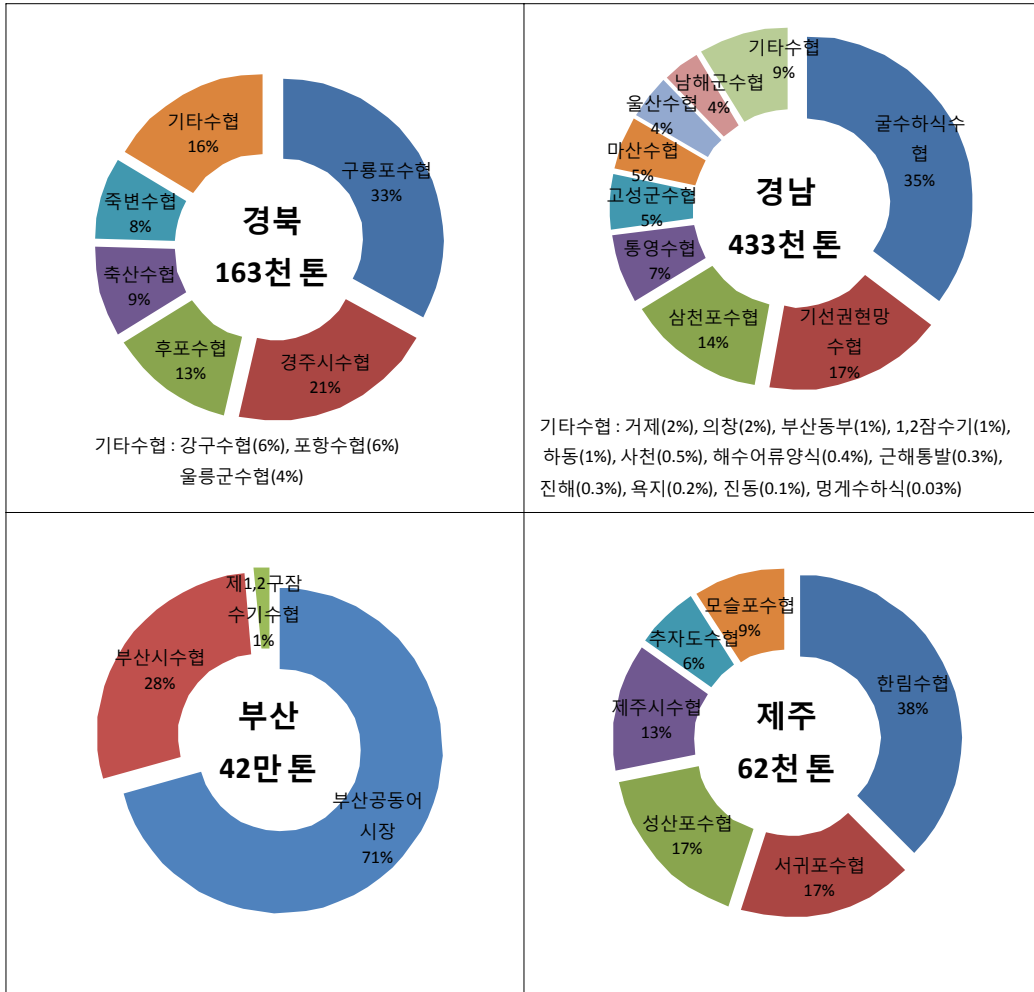
자료 :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 2009년 전체 계통 판매량 148만 9천 톤 중 경남지역이 43만 3천 톤으로 2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산 42만 톤(28.2%), 전남 24만 4천 톤(16.4%), 경북 16만 3천 톤(11%) 등의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계통 판매량의 85%를 차지함
 - 강원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량은 5만 톤으로 전국 대비 3%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속초시수협이 1만 1천 톤(2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강릉시수협 1만 톤(20.8%), 동해시수협 9천 톤(17.6%) 등의 순으로 이들 3개 수협이 강원도 전체 계통 판매량의 60%를 차지함
 - 경인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량은 3만 4천 톤으로 전국 대비 2%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인천수협이 1만 1천 톤(3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옹진수협 1만 톤(30.1%), 인천공판장 6천 톤(18.1%) 등의 순으로 이들 3개 수협이 경인 전체 계통 판매량의 81%를 차지함
 - 충청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량은 6만 1천 톤으로 전국 대비 4%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보령수협이 2만 3천 톤(37.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서면수협 1만 5천 톤(24.2%), 서천군수협 1만 1천 톤(18.0%) 등의 순으로 이들 3개 수협이 충청도 전체 계통 판매량의 80%를 차지함
 - 전북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량은 2만 3천 톤으로 전국 대비 2%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군산시수협이 2만 2천 톤(97.7%)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그림 3-4】 지역별 조합별 계통판매 비중(물량 기준)



【그림 3-4】 지역별 조합별 계통판매 비중(물량 기준)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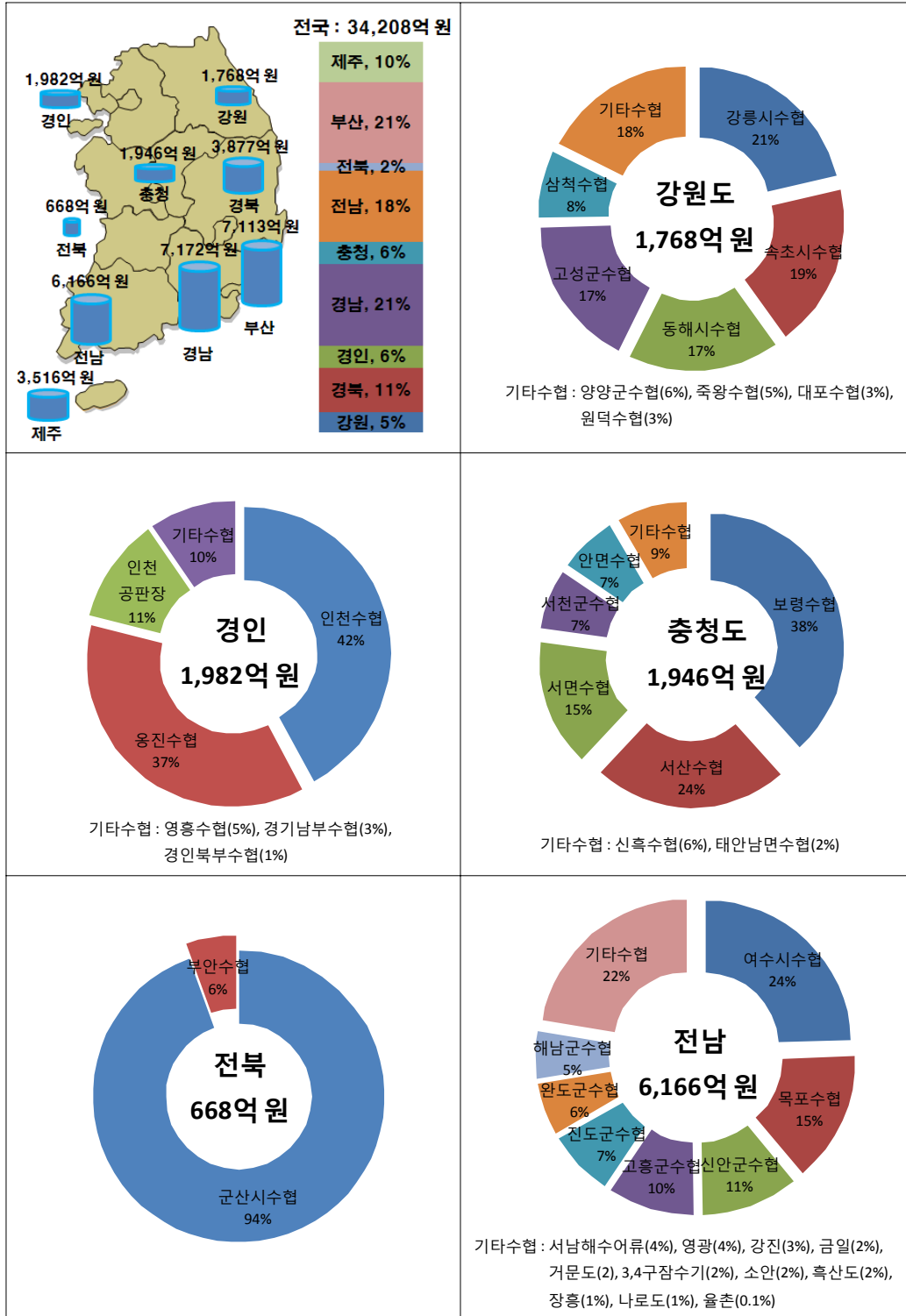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 전남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량은 24만 4천 톤으로 전국 대비 16%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여수시수협이 6만 2천 톤(2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해남군수협 2만 9천 톤(12.0%), 진도군수협 2만 8천 톤(11.5%), 고흥군수협 2만 3천 톤(9.4%), 목포수협 2만 2천 톤(9.2%) 등의 순으로 이들 5개 수협이 전남 전체 계통 판매량의 68%를 차지함
- 경북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량은 16만 3천 톤으로 전국 대비 11%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구룡포수협이 5만 4천 톤(3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경주시수협 3만 4천 톤(20.6%), 후포수협 2만 1천 톤(12.6%) 등의 순으로 이들 3개 수협이 경북 전체 계통 판매량의 66%를 차지함
- 경남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량은 43만 3천 톤으로 전국 대비 29%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굴수하식수협이 15만 3천 톤(3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기선권현망수협 7만 6천 톤(17.4%), 삼천포수협 5만 8천 톤(13.5%), 통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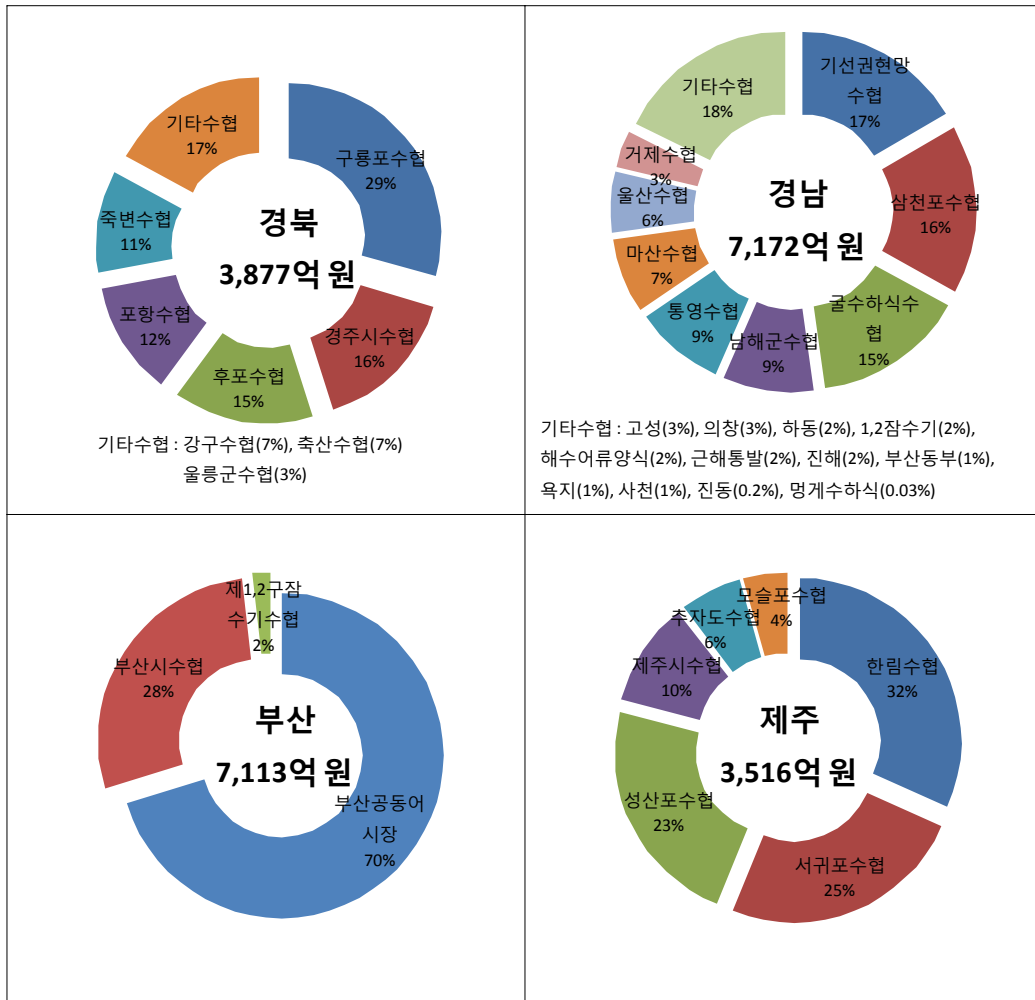
- 협 2만 9천 톤(6.7%) 등의 순으로 이들 4개 수협이 경남 전체 계통 판매량의 73%를 차지함
- 부산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량은 42만 톤으로 전국 대비 28%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부산공동어시장이 29만 7천 톤(7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부산시수협 11만 7천 톤(27.8%), 제1, 2잠수기수협 6천 톤(1.5%) 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량은 6만 2천 톤으로 전국 대비 4%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한림수협이 2만 3천 톤(37.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서귀포수협 1만 1천 톤(17.4%), 성산포수협 1만 톤(17.0%), 등의 순으로 이들 3개 수협이 제주 전체 계통 판매량의 72%를 차지함
- 2009년 전체 계통 판매액 3조 4,208억 원 중 경남지역이 7,172억 원으로 21.0%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부산 7,113억 원(20.8%), 전남 6,166억 원(18.0%), 경북 3,877억 원(11.3%) 등의 순임. 이들 4개 지역의 계통 판매액은 전체 계통 판매액의 71%를 차지함
- 강원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액은 1,768억 원으로 전국 대비 5%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강릉시수협이 376억 원(21.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속초시수협 333억 원(18.9%), 동해시수협 306억 원(17.3%), 고성군수협 306억 원(17.3%) 등의 순으로 이들 4개 수협이 강원도 전체 계통 판매액의 57%를 차지함
 - 경인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액은 1,982억 원으로 전국 대비 6%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인천수협이 834억 원(4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옹진수협 729억 원(36.8%), 인천공판장 229억 원(11.6%) 등의 순으로 이들 3개 수협이 경인지역 전체 계통 판매액의 90%를 차지함
 - 충청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액은 1,946억 원으로 전국 대비 6%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보령수협이 748억 원(3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서산수협 457억 원(23.5%), 서면수협 300억 원(15.4%) 등의 순으로 이들 3개 수협이 충청도 전체 계통 판매액의 61%를 차지함
 - 전북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액은 668억 원으로 전국 대비 2%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군산시수협이 631억 원(9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전남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액은 6,166억 원으로 전국 대비 18%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여수시수협이 1,505억 원(2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목포수협 899억 원(14.6%), 신안군수협 668억 원(10.8%) 등의 순으로 이들 3개 수협이 전남 전체 계통 판매액의 61%를 차지함
 - 경북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액은 3,877억 원으로 전국 대비 11%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구룡포수협이 1,140억 원(29.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경주시수협 610억 원(15.7%), 후포수협 579억 원(14.9%) 등의 순으로 이들 3개 수

협이 경북 전체 계통 판매액의 60%를 차지함

【그림 3-5】 지역별 조합별 계통판매 비중(금액 기준)



【그림 3-5】 지역별 조합별 계통판매 비중(금액 기준) - 계속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 경남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액은 7,172억 원으로 전국 대비 21%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기선권현망수협이 1,193억 원(1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삼천포수협 1,181억 원(16.5%), 굴수하식수협 1,056억 원(14.7%) 등의 순으로 이들 3개 수협이 경남 전체 계통 판매량의 57%를 차지함
- 부산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액은 7,113억 원으로 전국 대비 21%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부산공동어시장이 4,992억 원(7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부산시수협 1,996억 원(28.1%), 제1, 2잠수기수협 124억 원(1.7%) 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2009년 계통 판매액은 3,516억 원으로 전국 대비 10% 정도 차지했으며 이 중 한림수협이 1,115억 원(31.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서귀포수협 858억 원(24.4%), 성산포수협 810억 원(23.0%) 등의 순으로 이들 3개 수협이 제주 전체 계통 판매액의 79%를 차지함

2) 어종별 위판 동향¹¹⁾

- 1998년 이후 어종별 계통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물량 기준으로 어류, 기타수생동물은 감소한 반면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해조류는 증가하였고, 금액기준으로는 모든 어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어류의 경우 1998년 87만 톤, 1조 2,678억 원에서 2009년 82만 7천 톤, 2조 532억 원으로 물량은 연평균 0.5% 감소한 반면 금액은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갑각류의 경우 1998년 4만 5천 톤, 1,650억 원에서 2009년 5만 2천 톤, 3,328억 원으로 물량과 금액이 각각 연평균 1.3%, 6.6% 증가함
 - 패류의 경우 1998년 21만 3천 톤, 1,594억 원에서 2009년 21만 5천 톤, 2,404억 원으로 물량과 금액이 각각 연평균 0.1%, 3.8% 증가함
 - 연체동물의 경우 1998년 18만 4천 톤, 3,662억 원에서 2009년 23만 6천 톤, 6,287억 원으로 물량과 금액이 각각 연평균 2.3%, 5.0% 증가함
 - 기타수생동물의 경우 1998년 1만 2천 톤, 192억 원에서 2009년 3천 톤, 198억 원으로 물량은 연평균 10.9% 감소한 반면 금액은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해조류의 경우 1998년 4만 9천 톤, 412억 원에서 2009년 15만 7천 톤, 1,458억 원으로 물량과 금액이 각각 연평균 11.2%, 12.2% 증가함

【표 3-15】 어종별 계통판매 현황

단위 : 천 톤, 억 원, %

구 분	1998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증가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373	20,188	1,276	22,775	1,383	26,585	1,489	34,208	0.7	4.9
어 류	870	12,678	684	13,725	804	16,468	827	20,532	△0.5	4.5
갑각류	45	1,650	36	1,973	38	2,474	52	3,328	1.3	6.6
패 류	213	1,594	208	1,453	172	1,641	215	2,404	0.1	3.8
연체동물	184	3,662	189	3,943	201	4,270	236	6,287	2.3	5.0
기타수생동물	12	192	6	234	7	246	3	198	△10.9	0.3
해조류	49	412	153	1,447	160	1,486	157	1,458	11.2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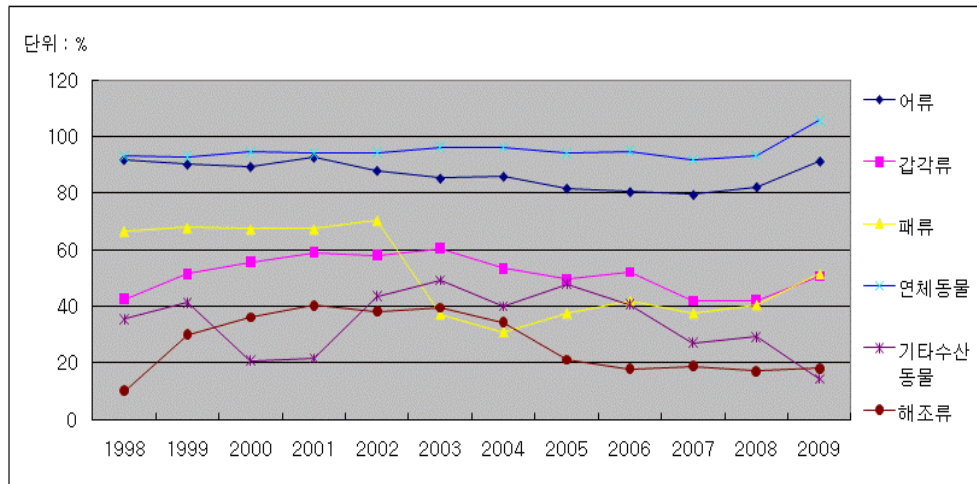
주 : 기타수생동물은 미더덕, 성게, 우렁쉥이, 해삼, 오만둥이, 기타수생동물임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 물량기준으로 어종별 계통판매율을 살펴보면 어류, 연체동물의 경우 80% 이상, 갑각류와 패류는 50%, 해조류, 기타수생동물은 50% 미만의 계통판매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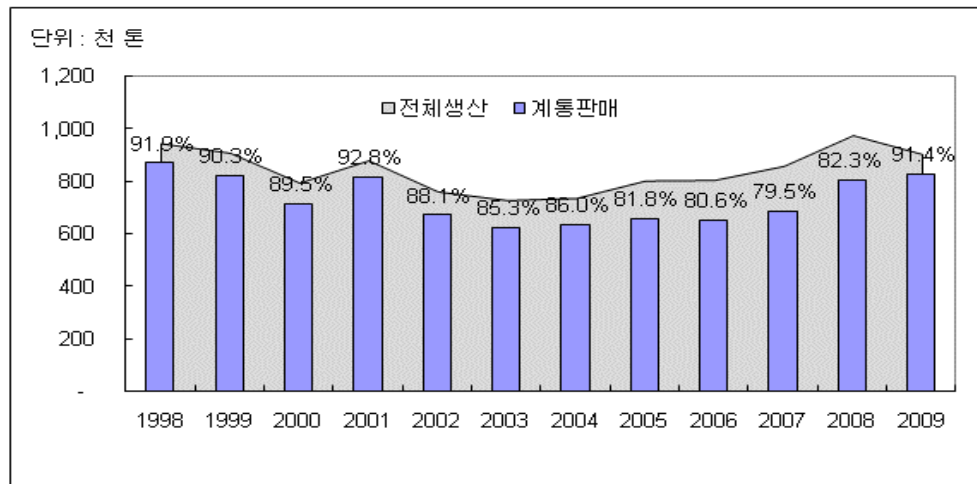
11) 어종별 계통판매율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의 어업생산통계자료와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의 수협계통판매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그림 3-6】 어종별 계통판매율(물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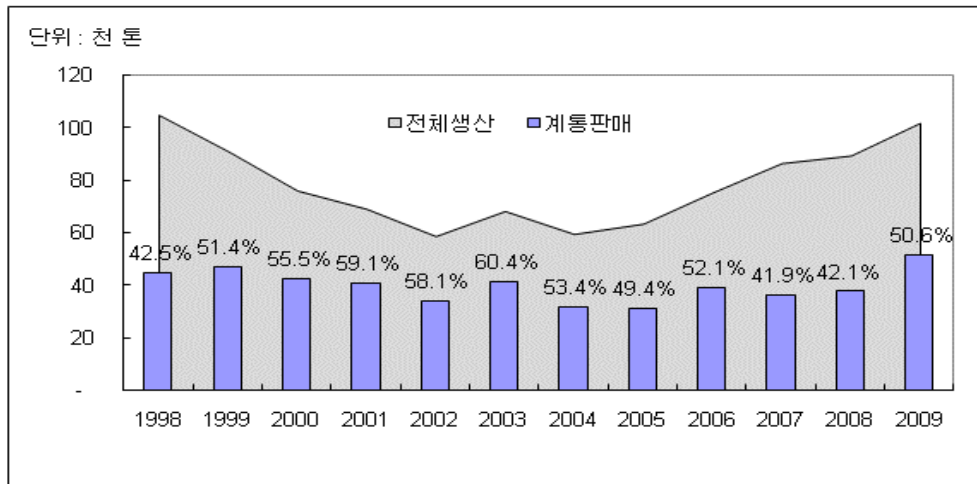
- 어류의 생산량은 1998년 94만 6천 톤에서 2009년 90만 5천 톤으로 약 4%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계통판매량도 87만 톤에서 82만 7천 톤으로 약 5% 감소함
- 계통판매율은 2001년 92.8%에서 2007년 79.5%로 감소한 후 증가추세를 보여 2009년 91.4%의 계통판매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3-7】 어류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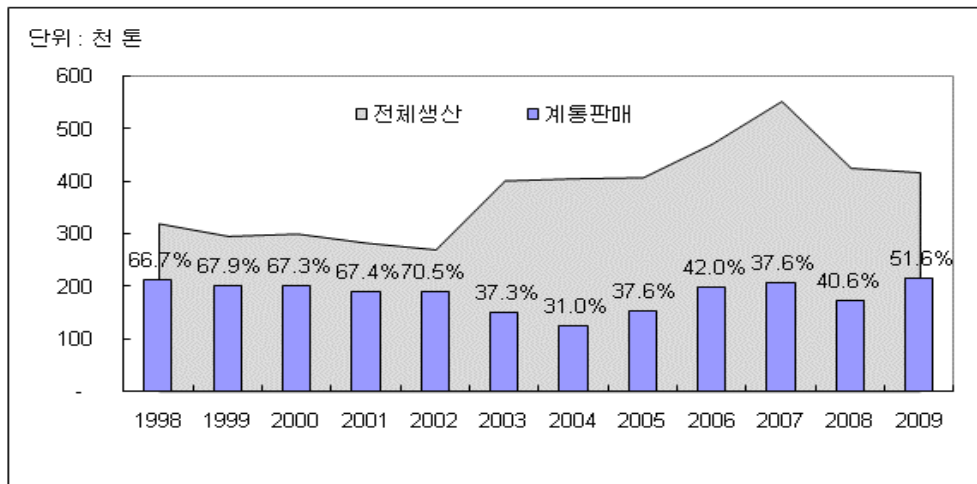
- 갑각류의 생산량은 1998년 10만 5천 톤에서 2009년 10만 2천 톤으로 약 3%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계통판매량은 4만 5천 톤에서 5만 2천 톤으로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계통판매율은 1998년 42.5%에서 2003년 6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여 2009년 50.6%의 계통판매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3-8】 갑각류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 패류의 생산량은 1998년 31만 9천 톤에서 2009년 41만 7천 톤으로 약 31%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계통판매량은 21만 3천 톤에서 21만 5천 톤으로 약 1% 증가함
- 계통판매율은 1998년 67.9%에서 2002년 7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3년 37.3%로 급감 한 후 증가 추세를 보여 2009년에는 계통판매율이 51.6%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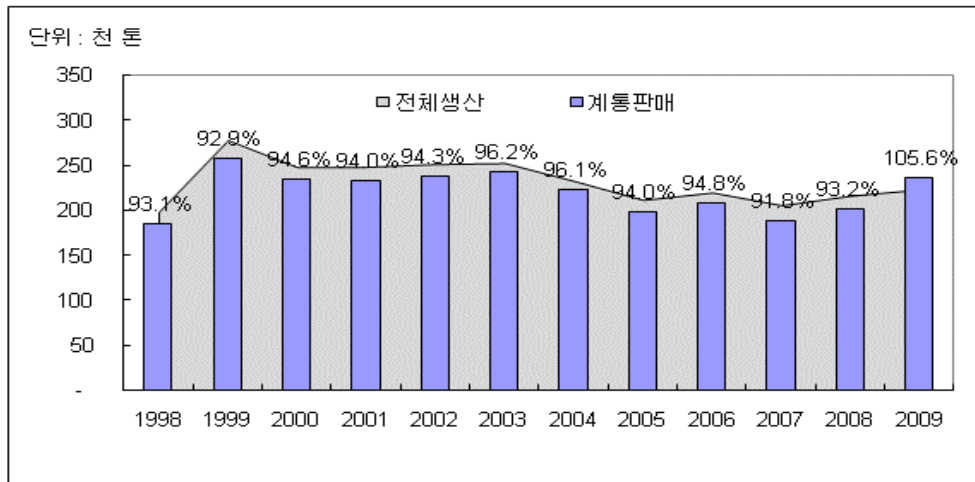
【그림 3-9】 패류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 연체동물의 생산량은 1998년 19만 8천 톤에서 2009년 22만 3천 톤으로 약 13%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계통판매량도 18만 4천 톤에서 23만 6천 톤으로 약 28% 증가함
- 계통판매율은 1998년 이후 전반적으로 90% 이상의 계통판매율을 보이고 있음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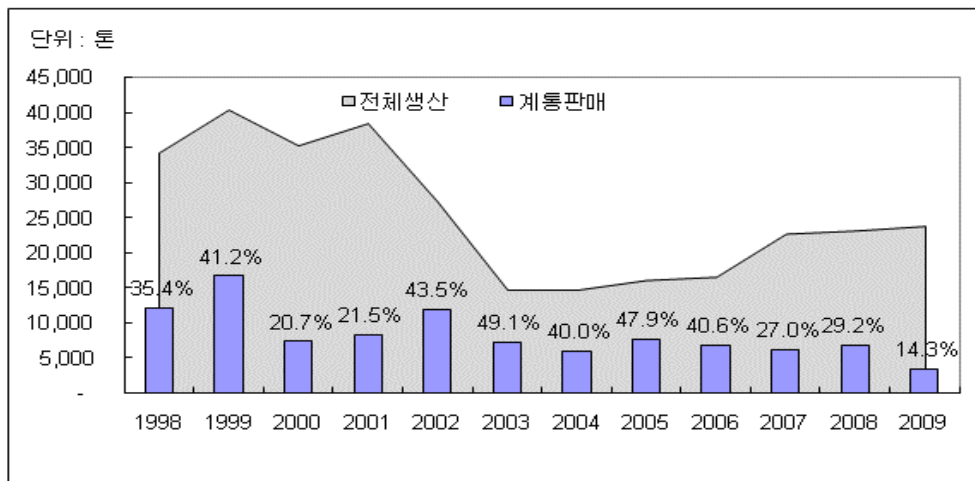
12) 2009년 연체동물의 계통판매율은 105.6%로 산출되는데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통계자료를 이용한 결과로, 참고로 수산정보포탈 상의 생산통계와 계통판매량 자료만을 이용해 계산하면 92%로 나타남(생산 : 223,212톤, 계통판매 : 204,210톤)

【그림 3-10】 연체동물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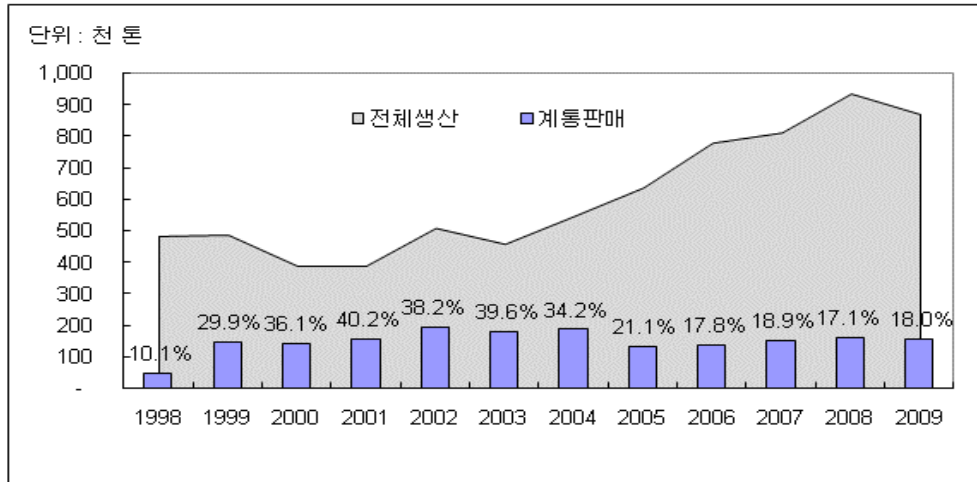
- 기타수산동물의 생산량은 1998년 3만 4천 톤에서 2009년 2만 4천 톤으로 약 31%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계통판매량은 1만 2천 톤에서 3천 톤으로 약 72% 감소하여 계통판매량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계통판매율은 1998년 35.4%에서 2003년 49.1%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9년 14.3%로 급감하였음

【그림 3-11】 기타수산동물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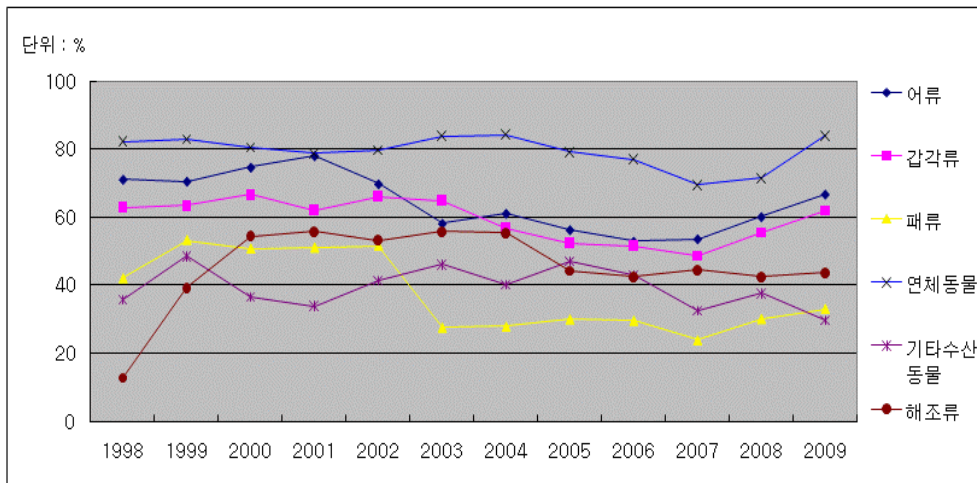
- 해조류의 생산량은 1998년 48만 2천 톤에서 2009년 87만 톤으로 약 80%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계통판매량은 4만 9천 톤에서 15만 7천 톤으로 약 225%로 증가함
- 계통판매율은 1998년 10.1%에서 2001년 40.2%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내지 정체추세를 보여 2009년 18%의 계통판매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3-12】 해조류 생산 및 계통판매(물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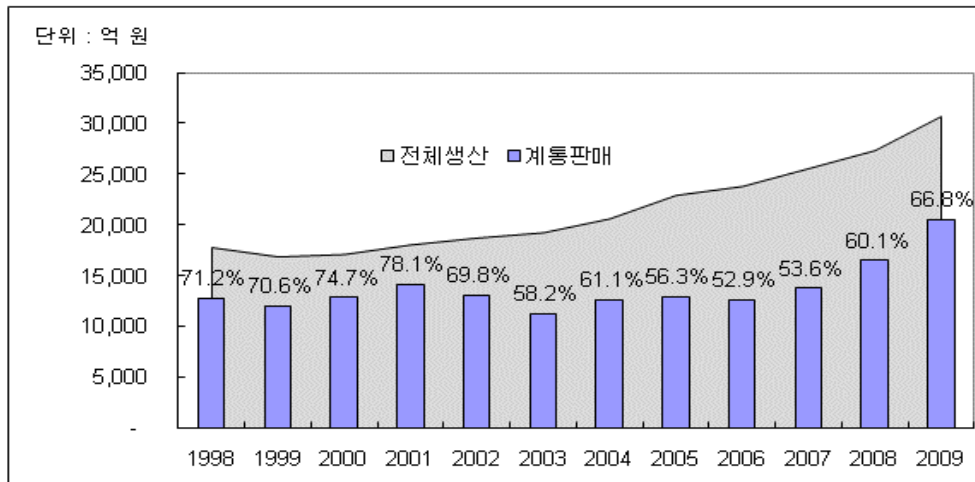
- 금액기준으로 어종별 계통판매율을 살펴보면 연체동물, 어류, 갑각류의 경우 50% 이상의 계통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해조류, 기타수산동물, 패류는 50% 미만의 계통판매율을 보임

【그림 3-13】 어종별 계통판매율(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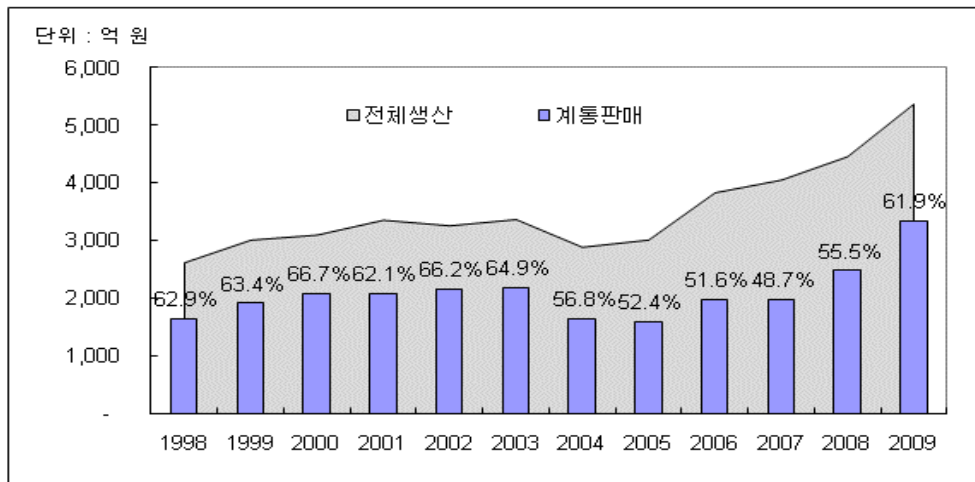
- 어류의 생산액은 1998년 1조 7,811억 원에서 2009년 3조 743억 원으로 약 73%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계통판매액도 1조 2,678억 원에서 2조 532억 원으로 약 62% 증가함
- 계통판매율은 2001년 78.1%에서 2006년 52.9%로 감소한 후 증가 추세를 보여 2009년 66.8%를 기록함

【그림 3-14】 어류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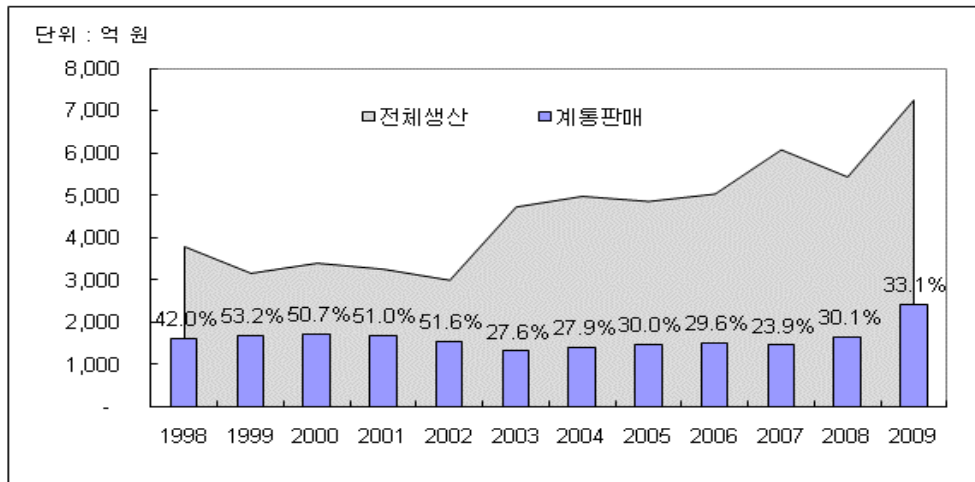
- 갑각류의 생산액은 1998년 2,622억 원에서 2009년 5,373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계통판매액도 1,650억 원에서 3,32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함
- 계통판매율은 1998년 이후 2003년 까지 60%대의 계통판매율을 기록한 후 2007년 48.7%까지 감소하였으나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09년 61.9%를 기록함

【그림 3-15】 갑각류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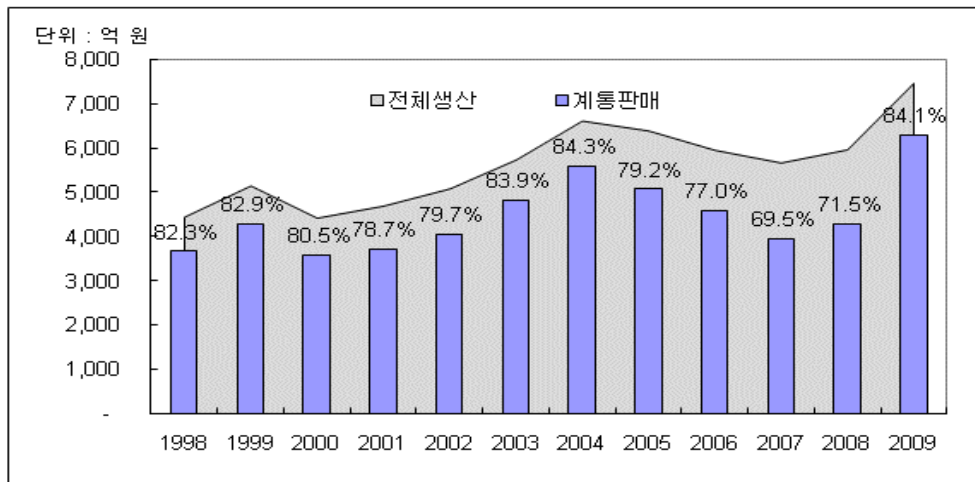
- 패류의 전체 생산액은 1998년 3,794억 원에서 2009년 7,268억 원으로 약 92%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계통판매액은 1,594억 원에서 2,404억 원으로 약 51% 증가하는데 그침
- 계통판매율은 1998년 42%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02년 계통판매율이 51.6%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09년 33.1%에 그침

【그림 3-16】 패류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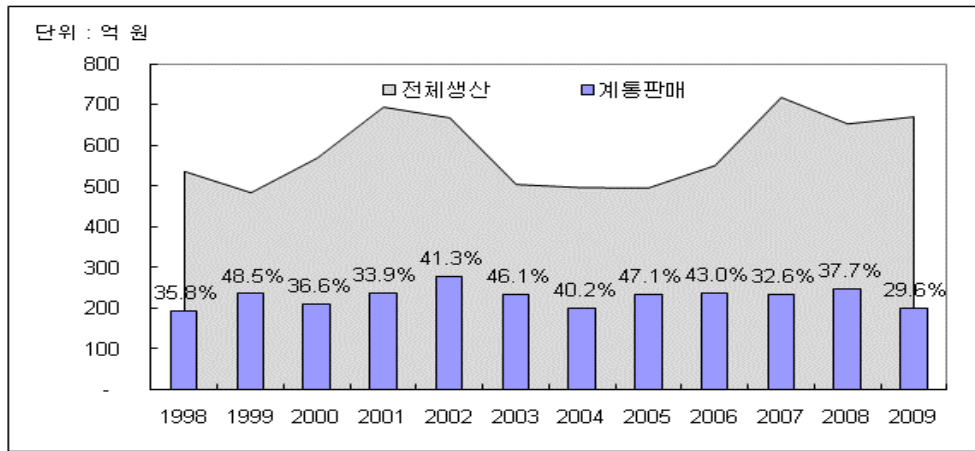
- 연체동물의 전체 생산액은 1998년 4,450억 원에서 2009년 7,479억 원으로 약 68%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계통판매액도 3,662억 원에서 6,287억 원으로 약 72% 증가함
- 계통판매율은 1998년 82.3%에서 2006년 까지 70% 이상의 계통판매율을 보였으나 2007년 69.5%로 급감한 후 증가 추세를 보여 2009년 84.1%의 계통판매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3-17】 연체동물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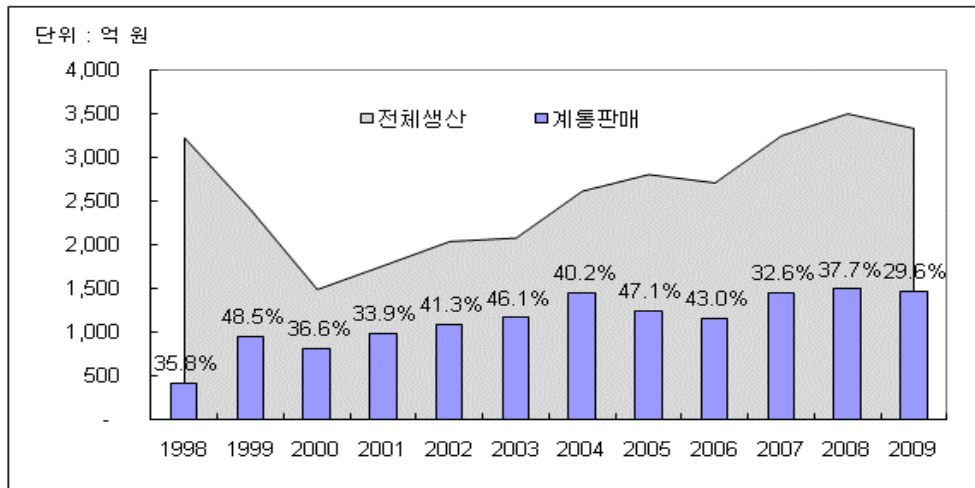
- 기타수산동물의 전체 생산액은 1998년 536억 원에서 2009년 670억 원으로 약 25%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계통판매액도 192억 원에서 246억 원으로 약 198% 증가함
- 계통판매율은 1998년 35.8%에서 2008년 까지 30~40%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 29.6%로 급감함

[그림 3-18] 기타수산동물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 해조류의 전체 생산액은 1998년 3,226억 원에서 2009년 3,335억 원으로 약 3%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계통판매액은 412억 원에서 1,458억 원으로 20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함
- 계통판매율은 1998년 12.8%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 2003년 55.8% 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2009년 43.7%의 계통판매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3-19] 해조류 생산 및 계통판매(금액기준)



3) 위판실적별 동향

(1) 위판실적 기준

- 1998년 이후 2009년까지 산지수협의 계통판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물량 기준으로는 연평균 0.7% 증가, 금액 기준으로 연평균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금액 기준으로는 36개 수협의 위판규모가 증가하였으며, 33개 수협이 감소함
- 물량 기준으로는 58개 수협의 위판규모가 증가하였으며, 11개 수협이 감소함

【표 3-16】 산지수협 계통판매 연평균 증가율 현황(1998~2009년 기준)

단위 : 개

구 분		물량 기준	금액 기준
증 가	계	36	58
	20% 이상	5	5
	11~20%	8	13
	0~10%	23	40
감 소	계	33	11
	0~10%	31	10
	11~20%	1	0
	20% 이상	1	1

주 : 1) 대포수협, 죽왕수협, 사랑수협, 진동수협, 해수어류양식수협, 영흥수협, 서남해수어류수협, 서면수협, 신흑수협, 안면수협은 1998년 위판실적이 없어 제외함

2) 사랑수협, 광양수협, 보성군수협, 약산수협, 고창군수협은 2009년 위판실적이 없어 제외함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 위판 물량 기준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수협이 5개소, 11~20% 증가한 수협 8개소, 6~10% 증가한 수협 9개소, 0~5% 증가한 수협 14개소, 0~5% 감소한 수협 22개소, 6~10% 감소한 수협 9개소, 10% 이상 감소한 수협 2개소 나타남
 - 소안수협, 해남군수협, 진도군수협의 위판물량이 1998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다른 어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김 위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반면 멩계수하식 수협은 1998년 이후 연평균 31.8% 감소하였으며 부안수협(13.8%), 서산수협(9.8%), 제1,2구잠수기수협(9.8) 등은 연평균 약 10% 정도 감소함
 - 특히 경기남부수협은 1998년 이후 위판물량이 연평균 92% 증가하였으며 소안수협(44.2%), 해남군수협(32.2%), 진도군수협(21.8%), 영광군수협(20.0%) 등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함

【표 3-17】 산지수협 위판물량 연평균 증가율

구 분	수협명(%)	개소
20% 이상 증가	경기남부수협(92.0), 소안수협(44.2), 해남군수협(32.2), 진도군수협(21.8), 영광군수협(20.0)	5
11~20% 증가	장흥군수협(17.1) 옥지수협(17.0) 고성군수협(경남)(14.1) 구룡포수협(12.4) 경주시수협(11.0) 신안군수협(10.6) 하동군수협(10.3) 고흥군수협(10.3)	8
6~10% 증가	추자도수협(9.4), 경인북부수협(8.6), 금일수협(8.1), 의창수협(7.6), 후포수협(7.6), 근해통발수협(7.6), 한림수협(6.6), 서천군수협(6.1), 보령수협(5.0)	9

【표 3-17】 산지수협 위판물량 연평균 증가율 - 계속

구 분	수협명(%)	개소
0~5% 증가	사천수협(4.9), 축산수협(4.9), 삼천포수협(4.8), 서귀포수협(4.5), 강진군수협(2.6), 인천수협(2.5), 부산시수협(2.3), 원덕수협(1.9), 죽변수협(1.2), 강릉시수협(0.9), 굴수하식수협(0.8), 울산수협(0.8), 통영수협(0.4), 남해군수협(0.2)	14
0~5% 감소	부산공동어시장(0.2), 동해시수협(0.3), 웅진수협(0.7), 성산포수협(0.9), 모슬포수협(0.9), 부산동부수협(1.0), 거제수협(1.4), 제주시수협(1.7), 기선권현망수협(1.7), 울릉군수협(1.9), 삼척수협(1.9), 고성군수협(강원)(2.2), 거문도수협(2.4), 포항수협(2.7), 흑산도수협(2.9), 양양군수협(3.0), 속초시수협(3.5), 완도군수협(3.5), 진해시수협(3.7), 강구수협(3.9), 목포수협(4.0), 군산시수협(4.8)	22
6~10% 감소	여수시수협(5.2), 울촌수협(5.3), 제3,4구잠수기수협(5.4), 나로도수협(5.9), 마산수협(7.8), 제1,2잠수기수협(경남)(7.9), 인천공판장(8.9), 제1,2구잠수기수협(부산)(9.8), 서산수협(9.9)	9
10~20% 감소	부안수협(13.8)	1
20% 이상 감소	명계수하식수협(31.8)	1

주 : 1) 대포수협, 죽왕수협, 사랑수협, 진동수협, 해수어류양식수협, 영흥수협, 서남해수어류수협, 서면수협, 신흥수협, 안면수협은 1998년 위판실적이 없어 제외함

2) 사랑수협, 광양수협, 보성군수협, 약산수협, 고창군수협은 2009년 위판실적이 없어 제외함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 위판 금액 기준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수협이 5개소, 11~20% 증가한 수협이 13개소, 6~10% 증가한 수협이 16개소, 0~5% 증가한 수협이 24개소, 0~5% 감소한 수협이 10개소, 6~10% 감소한 수협이 1개소, 20% 이상 감소한 수협이 1개소로 나타남
 - 특히 경기남부수협은 1998년 이후 위판금액이 연평균 93.2% 증가하였으며 소안수협(35.8%), 해남군수협(27.6%), 영광군수협(21.0%), 진도군수협(20.3%) 등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함
 - 반면 명계수하식수협은 1998년 이후 연평균 25.5% 감소하였으며 부안수협(7.7%)도 연평균 5% 이상 감소함

【표 3-18】 산지수협 위판금액 연평균 증가율

구 분	수협명(%)	개소
20% 이상 증가	경기남부수협(93.2), 소안수협(35.8), 해남군수협(27.6), 영광군수협(21.0), 진도군수협(20.3),	5
11~20% 증가	육지수협(17.8), 고성군수협<경남>(15.6), 사천수협(13.6), 보령수협(12.7), 신안군수협(12.5), 근해통발수협(12.1), 구룡포수협(11.5), 강진군수협(10.8), 금일수협(10.7), 추자도수협(10.4), 경주시수협(10.3), 서귀포수협(10.2), 하동군수협(10.2),	13

【표 3-18】 산지수협 위판금액 연평균 증가율 - 계속

구 분	수협명(%)	개소
6~10%	한림수협(9.5), 남해군수협(9.4), 후포수협(9.3), 서산수협(9.1), 장흥군수협(8.1), 성산포수협(7.7), 경인북부수협(7.1), 굴수하식수협(6.7), 의창수협(6.5), 인천수협(6.5), 제주시수협(5.8), 웅진수협(5.7), 부산동부수협(5.4), 축산수협(5.1), 부산시수협(5.1), 거제수협(5.0),	16
0~5% 증가	통영수협(4.9), 고흥군수협(4.6), 죽변수협(4.5), 포항수협(4.4), 강릉시수협(4.1), 거문도수협(4.1), 모슬포수협(4.1), 삼천포수협(3.9), 강구수협(3.5), 기선권현망수협(3.3), 양양군수협(3.3), 울산수협(3.1), 동해시수협(3.0), 부산공동어시장(2.9), 고성군수협(강원)(2.1), 목포수협(1.9), 진해시수협(1.7), 삼척수협(1.4), 여수시수협(1.3), 원덕수협(0.6), 서천군수협(0.6), 나라도수협(0.5), 속초시수협(0.2), 완도군수협(0.1)	24
0~5% 감소	군산시수협(0.2), 제3,4구잠수기수협(0.9), 울릉군수협(1.1), 제1,2잠수기수협(경남)(1.1), 울촌수협(3.3), 제1,2구잠수기수협(부산)(3.8), 흑산도수협(3.8), 마산수협(4.2), 인천공판장(4.5)	9
6~10% 감소	부안수협(7.7)	1
20% 이상 감소	멍계수하식수협(25.5)	1

주 : 1) 대포수협, 죽왕수협, 사랑수협, 진동수협, 해수어류양식수협, 영흥수협, 서남해수어류수협, 서면수협, 신혹수협, 안면수협은 1998년 위판실적이 없어 제외함

2) 사랑수협, 광양수협, 보성군수협, 약산수협, 고창군수협은 2009년 위판실적이 없어 제외함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2) 위판 규모 기준

- 산지수협의 규모를 위판물량 기준으로 소규모(2만 톤 미만), 중규모(2만 톤 이상~7만 톤 미만), 대규모(7만 톤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만 톤 미만의 소규모 수협이 70% 이상을 차지함
 - 특히 연간 위판물량이 1만 톤 미만인 산지수협이 42개소(2009년)로 이는 위판사업을 하고 있는 수협 전체 중 50%를 차지하고 있음
 -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05년 이후 2만 톤 미만의 소규모 수협은 감소하는 반면 2만 톤 이상 7만 톤 미만의 중규모 수협이 증가하고 있음. 즉 1~2만 톤 미만 수협이 2~3만 톤 수협으로 이동하면서 양륙량 규모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산지 수협이 복수의 위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97개의 위판장이 개설 운영되고 있고 이를 84개 수협으로 나누어 보면 1개 수협이 평균 2.3개 위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수협별이 아닌 위판장별로 위판물량을 재구분한다면 이보다도 소규모 위판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표 3-19】 산지수협의 계층별 추이(물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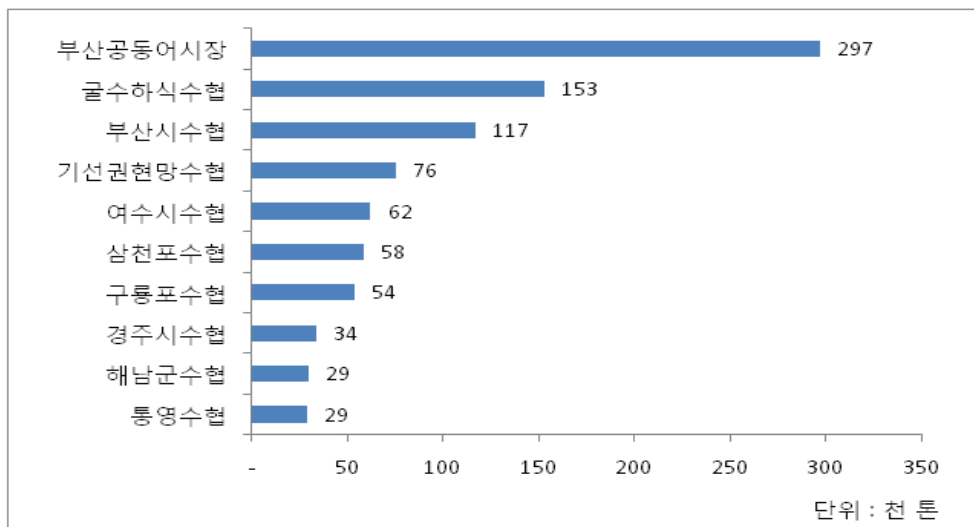
단위 : 개

구 분	1998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위판 없음	11	13	5	4	5	
소규모	소계	61	58	68	63	59
	1만 톤 미만	45	34	45	47	42
	1~2만 톤	16	24	23	16	17
중규모	소계	7	9	6	12	16
	2~3만 톤	3	6	4	8	12
	3~4만 톤	3	1	1	2	1
	4~5만 톤	0	1	1	1	0
	5~6만 톤	1	0	0	1	2
	6~7만 톤	0	1	0	0	1
대규모	소계	5	4	5	5	4
	7~8만 톤	0	0	1	0	1
	8만 톤 이상	5	4	4	5	3
합 계	84	84	84	84	84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 2009년 위판물량 상위 10개소를 정리해보면, 물량이 가장 많은 위판장은 부산공동어시장으로 29만 7천 톤이며, 다음으로 굴수하식수협 15만 3천 톤, 부산시수협 11만 7천 톤, 기선권현망수협 7만 6천 톤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0】 위판물량 상위 10개 수협(2009년 기준)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표 3-20】 위판규모별 수협 현황(2009년 물량 기준)

규 모	수협명(천 톤)
1만 톤 미만	명계수하식수협(0.1), 진동수협(0.3), 울촌수협(0.4), 태안남면수협(0.4), 부안수협(0.5), 나로도수협(0.7), 옥지수협(1), 대포수협(1), 진해시수협(1), 흑산도수협(1), 강진군수협(1), 근해통발수협(1), 양양군수협(2), 장흥군수협(2), 해수어류양식수협(2), 경인북부수협(2), 거문도수협(2), 안면수협(2), 제3,4구잠수기수협(2), 죽왕수협(2), 사천수협(2), 원덕수협(2), 신흑수협(2), 경기남부수협(2), 서남해수어류수협(2), 영흥수협(2), 하동군수협(3), 추자도수협(4), 제1,2잠수기수협(경남)(4), 영광군수협(4), 삼척수협(6), 모슬포수협(6), 부산동부수협(6), 인천 공판장(6), 울릉군수협(6), 제1,2구잠수기수협(부산)(6), 고성군수협(강원)(7), 서산수협(8), 제주시수협(8), 의창수협(8), 동해시수협(9), 거제수협(9)
1~2만 톤	포항수협(10), 웅진수협(10), 강릉시수협(10), 성산포수협(10), 강구수협(11), 속초시수협(11), 소안수협(11), 서귀포수협(11), 서천군수협(11), 인천수협(11), 죽변수협(13), 축산수협(15), 서면수협(15), 남해군수협(16), 금일수협(16), 완도군수협(17), 울산수협(18)
2~3만 톤	신안군수협(20), 후포수협(21), 군산시수협(22), 마산수협(22), 목포수협(22), 고흥군수협(23), 한림수협(23), 고성군수협(경남)(23), 보령수협(23), 진도군수협(28), 통영수협(29), 해남군수협(29)
3~7만 톤	경주시수협(34), 구룡포수협(54), 삼천포수협(58), 여수시수협(62)
7~8만 톤	기선권현망수협(76)
8만 톤 이상	부산시수협(117), 골수하식수협(153), 부산공동어시장(297)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 산지수협의 규모를 위판금액 기준으로 소규모(200억 원 미만), 중규모(2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 대규모(500억 원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수협이 40~50%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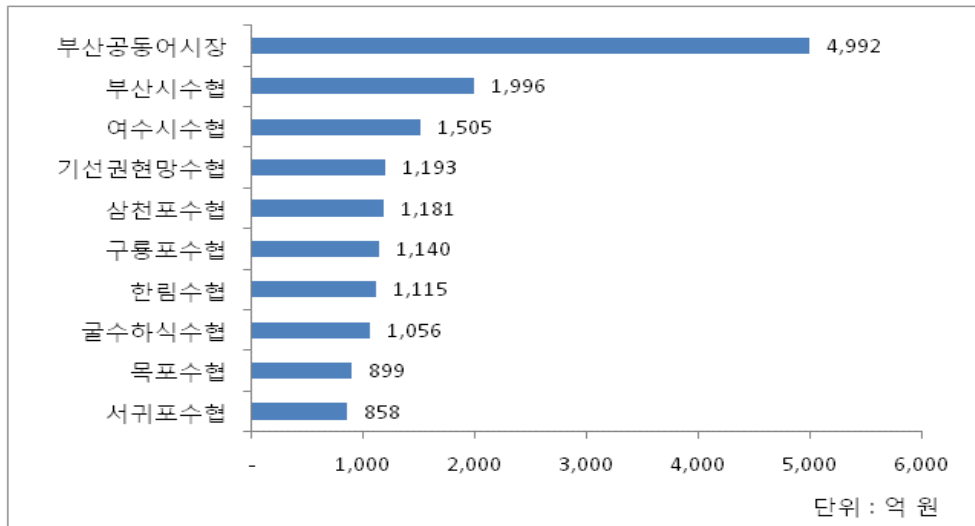
【표 3-21】 산지수협의 계층별 추이(금액 기준)

구 분		1998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위판 없음		11	13	5	4	5
소규모	소계	43	36	44	42	36
	100억 원 미만	30	19	25	26	18
	100~200억 원	13	17	19	16	18
중규모	소계	21	22	22	22	21
	200~300억 원	10	15	11	9	8
	300~400억 원	9	4	9	8	8
	400~500억 원	2	3	2	5	5
대규모	소계	9	13	13	16	22
	500~1,000억 원	6	11	10	13	14
	1000억 원 이상	3	2	3	3	8
합 계		84	84	84	84	84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 연간 위판금액(2009년) 100억 원 미만의 수협과 100~200억 원 미만의 수협이 각각 18개소로 전체 수협의 43%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어가 상승으로 인하여 1998년 이후 2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수협은 감소하는 반면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수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즉, 2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수협은 200~500억 원 미만의 중규모 수협으로, 200~500억 원 중규모 수협은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수협으로 이동함
- 특히 2009년에는 1,000억 원 이상의 수협이 2008년에 비해 5개소가 증가하였음
- 2009년 위판금액별로 상위 10개소를 정리해보면, 위판금액이 가장 많은 위판장은 부산공동어시장으로 4,992억 원이며, 다음으로 부산시수협 1,996억 원, 여수시수협 1,505억 원, 기선권현망수협 1,181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1】 위판금액 상위 10개 수협(2009년 기준)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표 3-22】 위판규모별 수협 현황(2009년 금액 기준)

규모	수협명(억 원)
100억 미만	멍게수하식수협(2), 울촌수협(5), 진동수협(18), 경인북부수협(29), 부안수협(37), 사천수협(40), 태안남면수협(48), 원덕수협(59), 경기남부수협(62), 대포수협(62), 나로도수협(65), 옥지수협(74), 장흥군수협(82), 부산동부수협(90), 죽왕수협(94), 흑산도수협(97), 양양군수협(97), 영흥수협(99)
100~200억	소안수협(100), 진해시수협(109), 근해통발수협(115), 신흑수협(118), 해수어류양식수협(121), 제1,2구장수기수협(부산)(124), 울릉군수협(126), 제3,4구장수기수협(128), 안면수협(134), 삼척수협(136), 제1,2장수기수협(경남)(137), 거문도수협(139), 금일수협(139), 서천군수협(141), 모슬포수협(151), 강진군수협(154), 하동군수협(157), 의창수협(185)
200~300억	추자도수협(218), 고성군수협(경남)(223), 영광군수협(226), 인천 공판장(229), 서남해수어류수협(241), 거제수협(254), 축산수협(260), 강구수협(274)

【표 3-22】 위판규모별 수협 현황(2009년 금액 기준) - 계속

규 모	수협명(억 원)
300~400억	서면수협(300), 고성군수협(강원)(306), 동해시수협(306), 해남군수협(324), 속초시수협(333), 완도군수협(357), 제주시수협(364), 강릉시수협(376)
400~500억	죽변수협(423), 울산수협(425), 진도군수협(451), 서산수협(457), 포항수협(466)
500~1,000억	마산수협(527), 후포수협(579), 고흥군수협(587), 경주시수협(610), 통영수협(630), 군산시수협(631), 남해군수협(635), 신안군수협(668), 웅진수협(729), 보령수협(748), 성산포수협(810), 인천수협(834), 서귀포수협(858), 목포수협(899)
1,000억 이상	굴수하식수협(1,056), 한림수협(1,115), 구룡포수협(1,140), 삼천포수협(1,181), 기선권현망수협(1,193), 여수시수협(1,505), 부산시수협(1,996), 부산공동어시장(4,992)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 종합해보면 산지수협의 계층별 위판량·위판금액 비중(2009년 기준)을 살펴보면 2만 톤 미만의 소규모 수협이 59개소로 전체 79개소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2만 톤~7만 톤 미만 수협은 16개소로 20%, 7만 톤 이상 수협은 4개소로 5%로 피라미드형 구조를 보임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판량 2만 톤 미만의 산지수협 59개소 수협의 위판물량 합계는 35만 3천 톤으로 전체 위판물량 148만 9천 톤의 23.7%에 지나지 않음
 - 반면 위판물량 7만 톤 이상의 산지수협 4개소의 위판물량 합계는 64만 2천 톤으로 전체 위판물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4개 수협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역삼각형의 이중적 구조를 보임
 - 위판금액 기준으로도 2만 톤 미만의 수협의 위판금액 합계는 13,152억 원으로 전체 위판금액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2~7만 톤 미만 수협은 11,817억 원으로 34%, 7만 톤 이상의 수협은 9,239억 원으로 27%를 차지함

【표 3-23】 산지수협의 계층별 위판규모

단위 : 개소, 천 톤, 억 원

연간 위판규모	산지수협(%)	위판량(%)	위판금액(%)
소규모(2만 톤 미만)	59 (74.7)	352 (23.7)	13,152 (38.4)
중규모(2~7만 톤)	16 (20.3)	495 (33.2)	11,817 (34.5)
대규모(7만 톤 이상)	4 (5.1)	642 (43.1)	9,239 (27.0)

주 : () 내는 비중임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www.fifis.kr)

제4장

수산물 산지위판제도의 문제점

1. 산지위판 법규의 문제점
2. 산지위판장의 문제점
3. 위판장 이해관계자의 문제인식

1. 산지위판 관련 법규의 문제점

- 위판장은 원래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어획물의 양륙제한)¹³⁾와 제21조(어획물 판매 장소의 지정)¹⁴⁾에 의거하여, 연근해에서 어획된 수산물은 반드시 산지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음
 - 이후 1999년에 동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전의 상태를 ‘의무상장제’, 삭제된 이후의 상태를 ‘임의상장제(자유판매제)’라고 함
- 하지만 의무상장제의 근거 규정이 없어진 이후, 끊임없이 의무상장제로의 회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되어 왔음
- 이하에서는 산지위판에 대한 관련 법규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1) 농안법의 산지위판 관련 법규

- 현행 농안법의 유통기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농수산물집하장의 6가지 형태임¹⁵⁾
- 한편 농안법에서 위판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형태 측면에서는 산지집하장, 거래제도와 관련해서는 도매시장과 관련이 있음

(1) 농수산물집하장

- 이전 해양수산부에서는 위판장을 농수산물집하장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있었는데, 이는 농산물집하장 중에서 경매를 실시하는 경매식 집하장이 있었기 때문임
- 농수산물집하장은 농안법의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으로 1976년 제정법 제41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에서 “농수협은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13)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어획물의 양륙제한) (99. 9. 30. 완전 삭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의 어획물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항구에 이를 양륙하여야 함 <개정 96.8.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구에 어획물을 양륙하여야 할 어업의 종류를 정하거나 어업별 어획물의 양륙 항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 <개정 96.8.8> [전문개정 91.3.28]

14)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어획물판매장소의 지정) (99. 9. 30. 완전 삭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획물과 그 제품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양륙지역의 판매장소에서 이를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함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과 그 제품을 고시하여야 함 [전문개정 96.12.31]

15) 유사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은 법 제64조(유사도매시장의 정비)와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에 근거하여 정비나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수 있는.....고속도로변 등에...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었음

- 1994년 개정시에 제39조의 2(산지집하장의 공판장 운영)을 신설하면서 “...농수산물집하장 중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001년의 농안법 개정에서는 농수산물집하장에 대해 두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남
 - 먼저 “고속도로변 등에...설치·운영한다”는 장소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다음으로 농수산물종합처리장과 농수산물집하장의 공판장 운영 조항이 삭제되면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음
 - 이는 기존 농수산물종합처리장이 선별·포장·가공 등의 축진이 목적이었다면,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는 선별·포장·가공 이외에도 규격출하·판매 등의 축진이라는 기능을 부가하였기 때문임
 - 다시 말해 농수산물종합처리장의 기능과 공판장의 거래 기능을 모두 갖춘 새로운 산지유통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자의 조항이 존치 이유를 상실하였기 때문임
- 현행 농안법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에서 집하장의 설치주체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며, 그 목적은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임
- 그러나 위판장을 산지 경매식 집하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로 인해 무리가 있는 해석이었음
 - 첫째, 위판장이 공동판매 기능 이외에도 농안법의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이 갖추어야 할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시장”임을 감안한다면, 집하 기능 중심에 일부 경매가 있는 집하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법의 적용임
 - 또한 2001년의 농안법 개정에서 농수산물집하장의 공판장 운영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굳이 ‘경매식’이라는 법에 없는 용어를 써가며 유권해석을 할 이유는 없었음
 - 둘째, 농안법에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제도가 도입되면서 단순 집하 기능에서 포장, 배송, 거래 등의 공동판매기능을 강화한 개념이 새로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화된 기능을 가진 위판장을 집하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이후 수산업법에 위판장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국내에서 유일한 농수산물유통법인 농안법에 이를 반영치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
- 위판장은 산지유통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공동판매의 발전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전략적 공동판매를 수행하고 있고, 엄연히 시장기능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함

(2)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위판장

- 농수산물집하장은 공동판매(출하)의 발달단계로 볼 때 수집기능에 초점을 맞춘 한정된 역할만을 담당하므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APC)보다 뒤쳐지는 것임
 - 농수산물 공동판매의 발달단계는 공동수송, 공동선별, 공동계산, 전략적 공동판매로 나눌 수 있으나¹⁶⁾, 집하장은 단지 첫 단계인 공동수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임
- 농안법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보면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라고 그 기능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보면, 지원시설에 집하장, 출하장, (저온)선별장, 포장장, 수송차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산지유통센터가 전략적 공동판매의 직진 단계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집하장과는 기능과 발달단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 산지유통센터는 기존의 농산물포장센터에서 진화한 것으로, 단순한 선별포장에서 벗어나 “공동규격출하, 유통정보수집전과, 계약재배, 브랜드개발 등 산지의 종합적인 농산물 유통거점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¹⁷⁾”한 것임¹⁸⁾

【표 4-1】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세부시설 내역(예시)

구 분	시설내역
건축물류	집하장·출하장·선별장·포장장, 저온선별장, 사무실·회의실·일반창고·기타 시설 등, 차압식 예냉고, 저온저장고, 품질검사실, 전처리시설(저온공조)
선별·포장장비류	선별기 및 선별시설,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어, 마늘박피기, 전처리 및 단순가공시설 등
유통시설장비류	수송차량(화물용),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에틸렌가스제거기 등

주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009

16) 발전단계로 볼 때 정책적 공동판매는 마지막 단계로 출하 시기 및 판매처의 조정, 가격전략의 구사, 홍보 등 마케팅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임(허길행 외, 『농산물 공동출하 유형별 효과 분석과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pp. 26-28)

17)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9.

18) 산지유통센터는 2008년까지 272개소,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3,571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3년까지 108개소를 추가하여 총 380개소, 5,794억 원이 지원될 예정임

- 이후 산지유통센터는 연간 처리물량 1~2만 톤 규모의 거점산지유통센터¹⁹⁾로 발전 방향을 잡고 추진되고 있음
 - 이는 공동판매의 마지막 발전단계인 전략적 공동판매²⁰⁾의 개념을 수용한 것임

【표 4-2】 위판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비교

구 분	위판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비고	
법적 근거	수산업법 시행령 43조	농안법 51조		
개설자	수협	생산자단체		
개 수	182	산지유통센터 272 (380) 거점산지유통센터 15 (30)		
공동 판매 기능	공동수송	있음	있음	집하, 수·배송
	공동선별	있음	있음	포장, 선별
	공동계산	있음	있음	
	가공	있음	일부분(예냉 등)	예냉, 냉동냉장 저차가공
	마케팅	있음	산지유통센터 : 취약 거점산지유통센터 : 강화	판매, 판촉
시장 기능	가격형성	경매, 입찰, 중도매인	없음	
	수급조절	제한적 범위	없음	
	정보전달	제한적 범위	제한적 범위	
	금융기능	대금 즉시결제 기능 중도매인은 15일 유예	없음	
지원 정책	정책명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지원 실적	206억 원	3,571억 원	'08년까지 국고 + 지방비

주 : 1) 산지유통센터의 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자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시군유통회사
 2) 개수의 ()는 목표치 (유통센터는 2013년, 거점센터는 2017년)

-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목적을 보면,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목적이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이라는 점과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라는 점임

19) 2007년까지 15개소가 지원되었고, 개소당 기준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17년까지 30개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임

20) 정책적 공동판매는 일종의 마케팅 공동화임. 즉 단순히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보다 유리한 조건에 판매하기 위해 시장별 출하물량 및 판매시기의 조정, 체계적인 판매촉진 활동, 공동 브랜드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임(허길행 외, 전계서, p.28)

- 이는 동 시설이 기존의 산지유통센터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설계된 거점이라는 점에서 수산분야에 주장하고 있는 산지거점시장²¹⁾과 매우 유사함

(3)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매매방법의 예외)

- 2006년 6월 9일 개정된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8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에 매매방법의 예외를 두고 있음
- 동 개정은 소위 ‘이중경매’, 즉, 위판장에서 1차 경매 후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수산물의 재상장경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임
 - 그러나 동 조항에서 ‘산지의 거래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어떠한 법률에 해당되는 시설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음
 - 이후 2008년 5월 8일에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산지의 거래시설을 위판장으로 정의하였으나 동 조항의 제정 목적이 위판장의 존립근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음

(4)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서 2008년 5월 8일에 제정된 이후 2009년 8월 24일 제2009-182호로 일부 개정된 동 고시는 위판장에 대한 규정을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임
 - 동 고시의 제1조(목적)에서 위판장의 법률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농안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매매방법의 예외) 제1항 제8호임
 - 또한 제2조(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농안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판장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음²²⁾
- 동 고시의 제정 배경을 보면
 -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8호 개정 이후 수산물의 산지거래시설인 위판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고시 제정이 보류되어 왔으나, 2007. 7. 27 수산업법 개정 및 2008. 1. 25 시행령 개정으로 위판장 근거 규정이 마련됨으로서 농안법상 산지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한사항을 고시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21) 산지거점시장은 1999년에 「수산물 산지도매시장(위판장) 10개년 정비계획」(강종호 외, 해양수산부, 2000. 3)에서 먼저 검토되었고, 이후 2003년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8년에 「산지 수산물 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농림수산식품부, 2008.10.)에서도 검토되었으나 아직 정책화되지는 못하고 있음

22) 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의2는 2010년 4월 동법 시행령의 제43조로 조문이 변경되었음

2) 수산업법의 산지위판 관련 법규

- 2007년 7월 수산업법 일부 개정 시에 제5장 어업조정의 제53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의 1항 10호에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200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서 제41조 2(위판장의 지정)²³⁾와 제41조의 3(위판장의 지정 취소)을 신설하면서 수산관련법에 위판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다시 만들어졌음
 - 또한 시행규칙이나 관련 하위법령은 만들어지지 않았음
- 이후 2010년의 개정에서 법률은 제6장 어업조정 등의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의 7, 시행령은 제42조(위판장의 지정)와 제43조(위판장의 지정 취소)로 내용의 변경 없이 구성의 변경이 있었음
- 조문 신설 당시의 개정안을 보면, 동 규정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조문이 제5장 어업조정에 속해 있음
 - 또한 법 53조에서는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그 밖에 어업조정을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어 단지 유통질서 확립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보다는 어업조정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시행령에서도 단지 시·도지사가 지정과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어서 위판장의 실질적인 기능과 내용에 관한 것은 없음
- 이는 수산업법의 제1조(목적)에서 동 법이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한다고 천명한 점과 제2조(정의)의 “수산업”의 범주를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동 조항에서 위판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음
 - 이에 비추어 볼 때 위판장은 수산업에 속하지 않는 업종이므로
 - 유통 그 자체의 목적보다는 수산업법의 원래취지에 부합하도록 위판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산자원의 보호 혹은 어업조정을 위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임
- 이전의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자원보호를 위한 유통질서의 유지가 목적이었던 것처럼 수산업법의 개정 내용에서도 어업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위판장의 근거가 만들어짐

23) 시·도지사는 법 제5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이하 "위판장"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음(수산업법시행령 제 41조의 2의 1항)

3) 수협법과 관련 규정의 산지위판 관련 법규

(1)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장 제60조(사업) 제1항의 2. 경제사업에는 보관, 판매, 이용·제조 및 가공, 수산물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이 위판장의 근거가 됨
 -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7조(어촌계의 사업)에서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제20조(위탁판매사업)의 1항에서는 “조합 및 중앙회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수협법의 각 조문들은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위탁판매사업 즉, 위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 반드시 위판장을 통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음

(2) 수산업협동조합의 내부 규정

- 수협에서 판매사업 혹은 위판장과 관련된 내부 규정으로는 경제사업 규정과 공판사업요령이 있음
-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규정(2006. 8. 18 제정)에 의하면, 제 4 조(정의)의1에서 “판매사업이라 함은 본회 및 회원이 구매·생산·가공한 물품을 유통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동 규정 제12조(유통시설 설치)에서는 “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집하·보관(저장)·검사·선별·포장·수송·하역·가공·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판매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가 있음
 - 제26조(판매장설치 및 운영)의 1항에서는 “물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하여 공판장·유통센터·물류센터·바다마트·기타 판매장(전자상거래 포함, 이하 ‘판매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동 경제사업 규정에서도 판매사업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시된 판매장에 위판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규정의 하위 지침인 공판사업요령에서 비로소 위판장에 대한 언급이 나타남
 - 동 요령 제1장 제3조(정의)의 1항에 의하면 “공판장은 농안법 제43조에 의거 ...

사업장을 말하며, ... 본회가 운영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의한 위판장을 포함한다(개정 2007. 3. 27)”고 되어 있음

- 또한 제3조 2항에서는 “위판장이라 함은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08. 3. 13)”고 하여, 수산업법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동 요령에서 위판장을 언급하고 있음
- 3항에서는 농안법의 경매식 집하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경매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수산물을 수집 또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경매, 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시설로써 위판장외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9. 7. 22)고 하여 위판장 이외의 어항에서 거래하던 곳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음
- 동 규정 제6절 거래방법 등에서 위판장의 거래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안법의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짐
- 수협외 위판장 관련 내부규정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나아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농안법의 시장관련 규정에 준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동 규정은 공공단체인 수협중앙회의 내부지침과 같은 의미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이나 지위를 부여하지는 못하고, 회원조합의 경우에는 단지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산지위판장의 문제점

- 제1절에서 산지위판장과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면, 제2절에서는 위판장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다루어보고자 하였음
- 위판장은 도매시장과는 달리 시장기능 이외에도 공동출하기능과 어획후처리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생산자 중심의 시장으로, 본 절에서는 이 세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음

1) 위판장의 시장기능

- 위판장은 수협의 판매기능과 도매시장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특수한 성격의 시장임
- 수협 판매사업의 기능은 ① 어획물의 적정가격의 실현, ② 수급조절, ③ 유통비용의 절감, ④ 어획물의 부가가치의 제고의 네 가지로 볼 수 있음

- 그리고 도매시장의 기능 또한 다음 4가지로 요약됨
 - 가격형성 : 산지에서 1차적 가격형성
 - 수급조절 : 넓은 범위, 다수 어종에 걸침
 - 정보전달 : 가격 및 수급정보, 산지와 소매의 중계
 - 금융기능 : 신속한 환금성이 중요시되는 어업생산에 있어서는 특히 결재
- 판매사업과 도매시장의 기능에서 공통점은 가격형성과 수급조절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음
 - 또한 정보전달과 금융기능 또한 마찬가지로 판매사업의 기능과는 별도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임. 특히 금융기능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수협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기능이며, 다른 유통업자와 구분되는 기능임
- 그러나 위판장에서 판매사업의 기능인 비용 절감과 부가가치의 제고에 관련된 것은 시장기능과는 별도로 강조되어야 하는 점으로 공동출하와 관련된 부분임. 이는 산지수협에서 생산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별도의 서비스 영역임
- 이처럼 수협의 판매사업은 도매시장으로서의 위판장의 기능과 구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자금 등과 연계된 독자적인 생산과 유통이 연계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
- 수협에서 운영되는 판매사업과 위판장 운영의 기능상의 차이는 위판장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도매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약요인임과 동시에 장점이기도 함

2) 위판장 시장기능의 한계

- 이상과 같은 위판장의 시장기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첫째, 최근 들어 위판장의 취급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어업생산량 대비 계통판매량을 살펴보면, 물량 기준으로 1998년 대비 2009년까지 약 7% 포인트 가량 감소하였음
 - 여기에 취급 규모 기준으로 대형 위판장이 감소하고 중형 위판장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규모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둘째,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위판장이 전부 개별적인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고, 소규모의 영세한 위판장 즉, 2만 톤 이하의 소규모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 때문에 이들을 연계한 유통 및 물류네트워크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셋째, 가격형성기능이 위협받고 있음
 - 전국 각 위판장의 가격형성은 동일 어종에 대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물류 및 거래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위판이 활성화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 지역별 소비선호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 여기에 산지의 기준가격이 되는 위판가격이 산지유통상인들에 의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 위판장의 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즉, 위판가격에 위판수수료를 제한 만큼의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위판장의 가격형성기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넷째, 수급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수급조절은 전국적인 규모와 지역적인 규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위판장의 정보 및 물류, 거래상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수급조절은 어려운 상황임
 - 지역적인 규모의 수급조절은 지역의 수요량에 대한 공급 조절도 있지만 홍수출하, 계절적 출하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음
 - 이는 일종의 가격지지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있으나, 분산기능이 전적으로 중도매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 때문에 수급조절기능이 취약함
- 다섯째, 중도매인의 기능이 취약해지고 있음
 - 위판장은 물류흐름으로 보았을 때 수집과 거래, 분산의 세 가지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분산을 담당하는 주체가 중도매인임
 - 2009년의 경우 3,462명의 중도매인과 434명의 매매참가인이 분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1인당 거래량이 309톤, 거래금액은 898백만 원으로 규모가 아주 적음
 - 이들은 지속적으로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거래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위판장의 반쪽 기능인 분산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

3) 공동출하 기능의 부족

- 위판장의 기능 중 판매사업의 기능인 비용 절감과 부가가치의 제고는 금융기능과 함께 위판장이 공동출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 그러나 최근 위판장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이들 공동출하 기능도 약화되고 있음

- 첫째, 물류 및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위판장에 출하하는 생산자는 위판수수료만을 부담하면 되지만 위판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과 중도매인이 부담해야 하는 다음 유통단계와의 거래비용은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물류와 대형소매점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이 증가 추세에 있어 결국 생산자수취가격이 낮아지는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 둘째, 부가가치 제고 기능이 저하되고 있음
 - 위판장에 출하된 수산물의 선별과 포장, 전처리 등의 소비자 혹은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으로 만드는 기능이 취약하여 가격형성에 제약이 되고 있음
- 셋째, 직거래의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분산이 중도매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수협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함
 - 또한 직거래를 위한 어획후처리 시설과 기능이 미비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설 등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직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특히 지역내 음식점 등 소매 수요와 소비자의 직접 구매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넷째, 관광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위판장은 대부분 항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관광지가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수요를 수요하지 못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음

4) 어획후처리 기능 및 시설의 부족

- 위판장은 선별, 포장, 전처리가공, 저장 등 어획후처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어획물의 선도를 유지하고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상품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위판장은 과거의 어획후처리 기능을 답습하고 있어 상품화 기능이 저하됨
- 첫째, 위판장 시설의 절대적 노후화 및 시설 미비
 - 어획후 처리 혹은 시장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시설과 부대 시설이 대부분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 위판장의 필수시설을 조사한 결과 주차장과 위생시설, 사무실도 없는 곳이 많으며, 대부분의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냉장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56개소이며, 저빙실을 갖춘 위판장은 43개소임

- 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염장조, 염장실, 소각시설, 수족관, 중도매인점포 등은 90% 이상이 시설을 구비하고 있지 못함²⁴⁾
- 둘째, 수산물 어획후처리 기능의 미비
 - 수산물 양륙 시 비위생적 처리로 위생상의 문제가 있으며, 어상자 문제로 인한 규격표준화의 미비, 위판장 내 위생 구획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수산물 출하 운송시의 일반 화물트럭 이용 문제, 세척수 수질 문제, 수산물의 전처리 가공시설의 미비, 냉장보관시설의 미비 문제 등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 셋째, 수산물 어획후처리 주체의 변화
 - 최근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등 소비지 대량 구매자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선별, 규격화, 포장, 단순처리 등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어획후처리 수준은 출하와 소비형태가 크게 다르고, 대부분의 처리가 산지 이후의 유통단계인 중간유통상인이나 소비지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자 중심에서 대형소매점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
- 넷째, 수산물 어획후처리 비용의 산지 전가
 - 대량구매자, 중간유통상인들이 수산물 재선별, 재포장, 전처리, 소분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얻으면서 비용은 산지에 전가하고 있음
 - 최근 유통비용 상승으로 산지 부담 비용, 즉 물류센터 이용수수료, 수송비 등도 상승, 비효율적 어획후처리의 생산자수취가격에 대한 영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음

3. 위판장 이해관계자의 문제 인식

- 제2절에서 살펴본 위판장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생산자, 수협, 중도매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음
- 설문은 생산자 191명, 수협 위판장 관계자 112명, 중도매인 178명으로 총 481명에 대해 실시하였음

1) 위판량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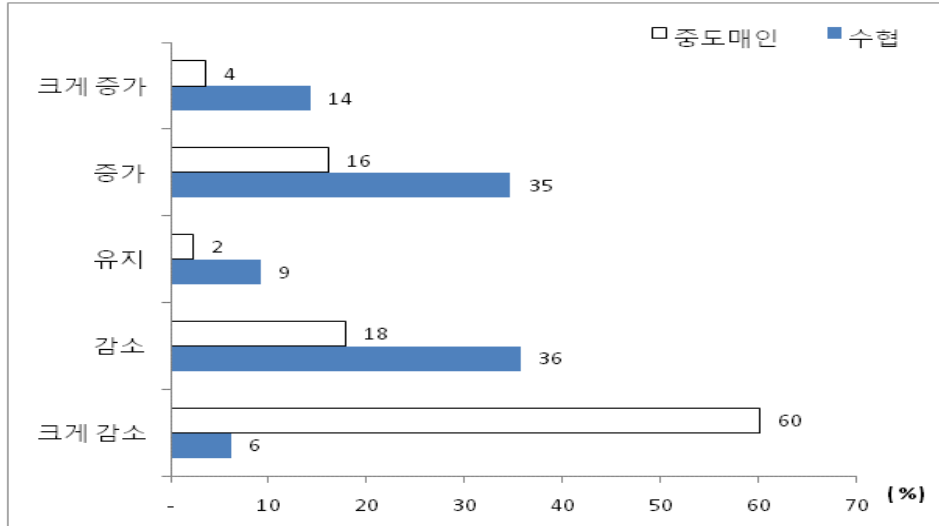
- 1997년 이후 위판량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협 관계자는 증가와 감소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중도매인은 감소했다는 의견이 많음
 - 수협관계자의 경우 증가했다는 의견(49%)이 감소했다는 의견(42%)보다 약간 높

24) 농림수산물부(2008.10) 참조

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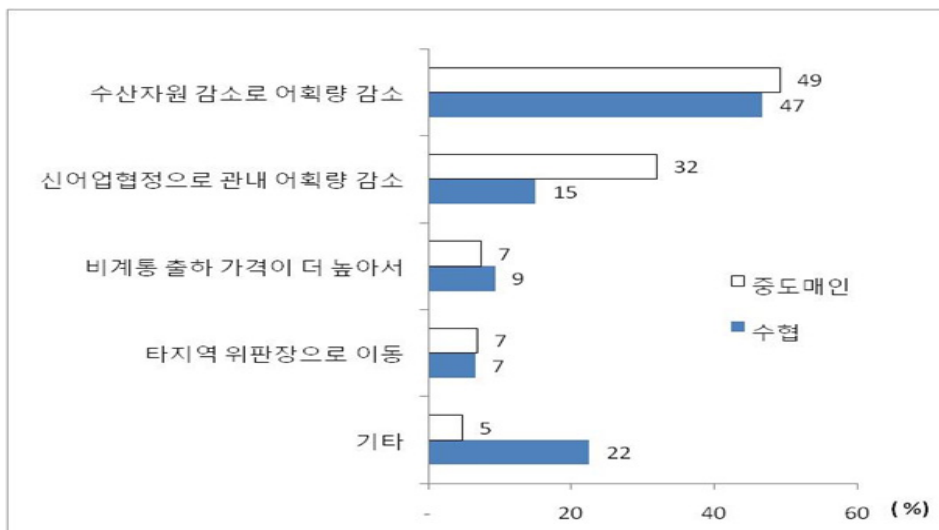
- 중도매인의 경우 감소했다는 의견이 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크게 감소했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함

【그림 4-1】 1997년 이후 위판량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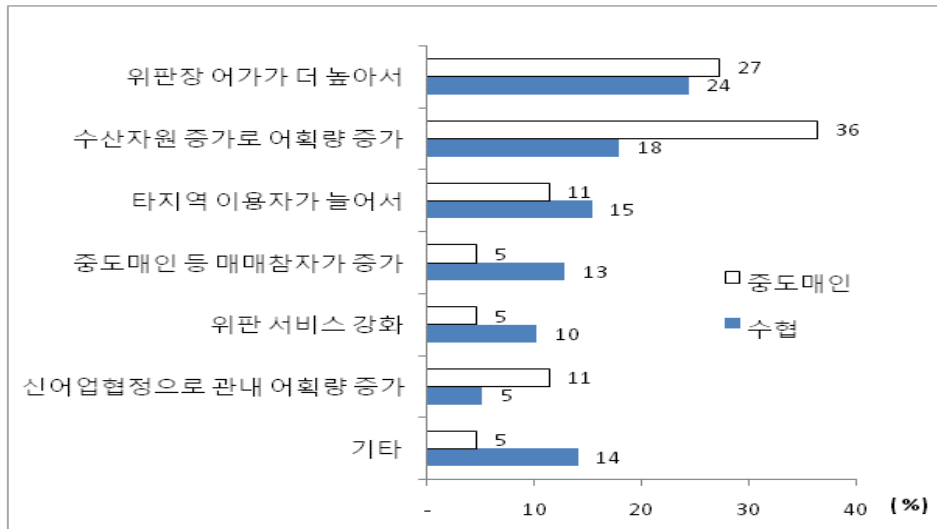
- 위판량 감소 원인에 대한 인식은 수협 관계자와 중도매인 모두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인식하고 있음
 - 수협 관계자와 중도매인 모두 수산자원 감소가 위판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기며, 신어업협정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함

【그림 4-2】 위판량 감소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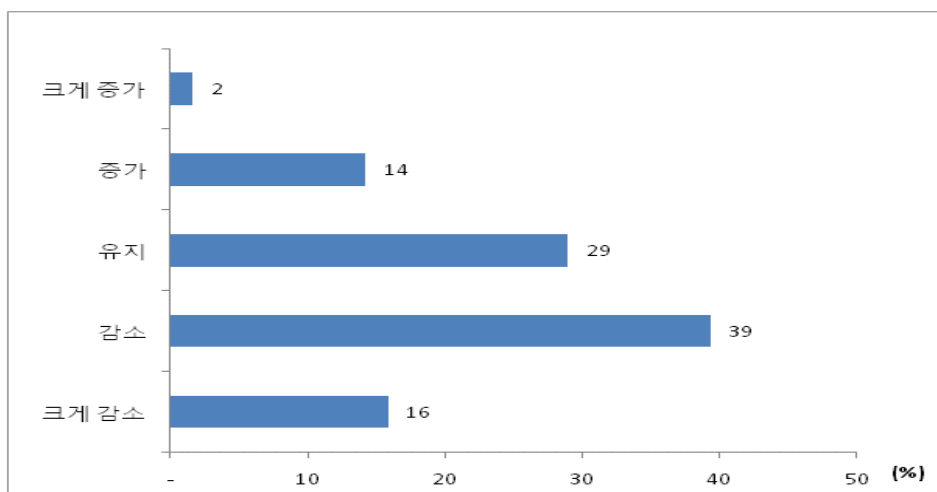
- 위판량 증가 원인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어가가 더 높아서라는 응답을 하였고, 중도매인은 수산자원 증가로 인한 어획량 증가를 지적하였음

【그림 4-3】 위판량 증가 원인



- 1997년 이후 어업인들의 위판동향을 조사한 결과 위판물량이 감소하였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위판물량을 감소했다는 의견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했다는 의견은 16%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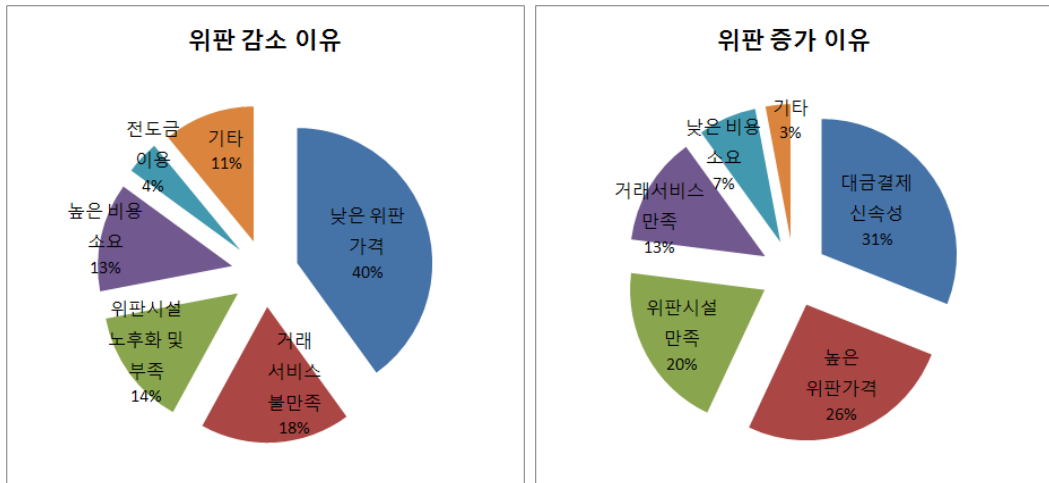
【그림 4-4】 1997년 이후 수협으로의 위판량 변화



- 어업인들의 위판물량 감소 또는 증가의 요인으로서, 감소의 경우 낮은 위판가격이, 증가는 대금결제 신속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위판물량을 감소시킨 어업인의 경우 위판을 감소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낮은 위판가격(40%)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거래서비스 불만족(18%), 위판시설 노후화 및 부족(14%) 등을 선택함
- 한편 위판을 증가시킨 어업인의 경우 대금결제 신속성(31%)을 가장 큰 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높은 위판가격(26%), 위판시설 만족(20%) 등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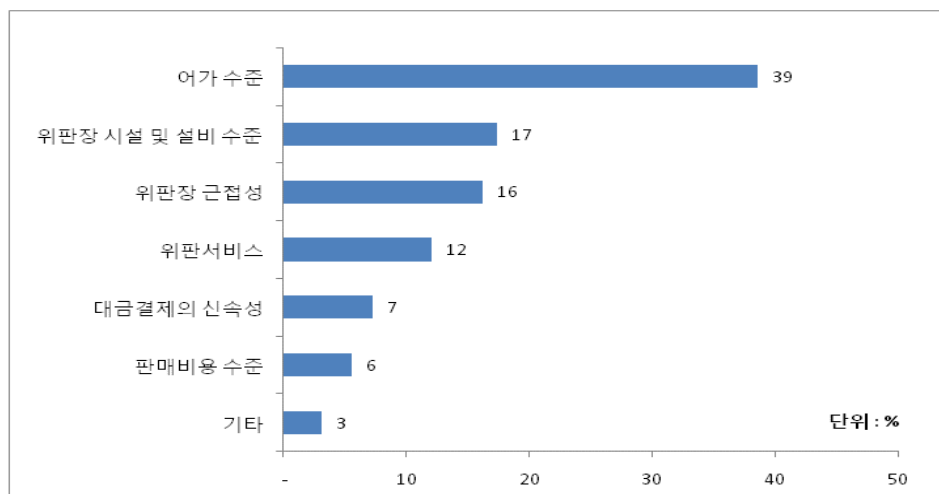
【그림 4-5】 어업생산자의 위판량 증감 이유



2) 위판장 관련 요인분석 평가

- 어업인들이 위판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어가이며, 다음으로 위판장 시설 및 설비 수준, 위판장 근접성, 위판 서비스, 대금결제의 신속성 등으로 나타남

【그림 4-6】 어업인들의 위판장 선택 요인



- 위판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 위판장과 관련된 유무형의 주요 요인(18개)에 대해 5점 척도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는데, 어업인과 수협관계자는 위판수산물의 가격(각각 3.6점, 3.7점)을, 중도매인은 신속한 대금 결제(3.5점)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함
 - 어업인은 위판 수산물의 가격 외에도 우수 중도매인 확보 유무, 경매·입찰제도 등 가격결정의 공정성 및 공개성, 선도·위생·안전성 시설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신속한 대금 결제와 활어취급 가능 부가시설 요인도 중요하게 평가하였음
 - 반면 수준, 소분·포장·가공처리·보관 등 부가서비스 시설, 위판수수료 수준, 어장과 위판장과의 인접성 등에 대해서는 여타 요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음
 - 수협관계자는 위판수산물의 가격 외에도 실력있는 중도매인의 확보, 신속한 대금 결제도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음
 - 또한 선박 접안시설 및 안전성 확보, 얼음 및 유류 공급 등 서비스 지원과 같이 수협의 서비스 요인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소분·포장·가공처리·보관 등 부가서비스 시설, 수협의 직판장·직매장 보유 유무, 위판수수료 수준, 수협의 공동구매·지도사업과의 연계성의 중요도 등에 대해서는 여타 요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음
 - 중도매인은 신속한 대금 결제 이외에 선도·위생·안전성 시설, 경매·입찰제도 등 가격결정의 공정성 및 공개성, 위판수산물의 가격, 양륙·진열·선별 등 위판서비스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함

【표 4-3】 위판장 이용시 각 사항별 평가(5점 척도)

구 분	어업인	수 협	중도매인
3.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판 수산물의 가격 • 실력있는 중도매인 확보 유무 • 경매, 입찰제도 등 가격결정의 공정성 • 선도·위생·안전성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판 수산물의 가격 • 실력있는 중도매인 확보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대금 결제
3.3~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대금 결제 • 활어 취급 가능 부가시설 • 중도매인 숫자 • 얼음, 유류 공급 등 서비스 지원 • 위판업무의 신속성 • 양륙, 진열, 선별 등 위판서비스 • 수협의 공동구매, 지도사업과의 연계성 • 기계화, 양륙 자동화, 물류기기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대금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 위생, 안전성 시설 • 경매, 입찰제도 등 가격결정의 공정성, 공개성 • 위판 수산물의 가격 • 양륙, 진열, 선별 등 위판서비스

【표 4-3】 위판장 이용시 각 사항별 평가(5점 척도) - 계속

구 분	어업인	수 협	중도매인
3.0~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접안시설 및 선박 안전성 확보 • 물류 편리성 • 수협 직판장·직매장 보유 유무 • 어장과 위판장과의 거리 • 위판수수료 수준 • 소분, 포장, 가공처리, 보관 등 부가서비스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접안시설 및 선박 안전성 확보 • 얼음, 유류 공급 등 서비스 지원 • 경매, 입찰제도 등 가격결정의 공정성, 공개성 • 위판업무의 신속성 • 어장과 위판장과의 거리 • 양륙, 진열, 선별 등 위판서비스 • 중도매인 숫자 • 선도, 위생, 안전성 시설 • 활어 취급 가능 부가시설 • 물류 편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편리성 • 위판업무의 신속성 • 선박 접안시설 및 선박 안전성 확보 • 얼음, 유류 공급 등 서비스 지원 • 위판수수료 수준
2.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 양륙 자동화, 물류기기 시스템 • 수협의 공동구매, 지도사업과의 연계성 • 위판수수료 수준 • 수협 직판장·직매장 보유 유무 • 소분, 포장, 가공처리, 보관 등 부가서비스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분, 포장, 가공처리, 보관 등 부가서비스 시설 • 어장과 위판장과의 거리 • 실력있는 중도매인 확보 유무 • 기계화, 양륙 자동화, 물류기기 시스템 • 중도매인 숫자 • 활어 취급 가능 부가시설
2.4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협의 공동구매, 지도사업과의 연계성 • 수협 직판장·직매장 보유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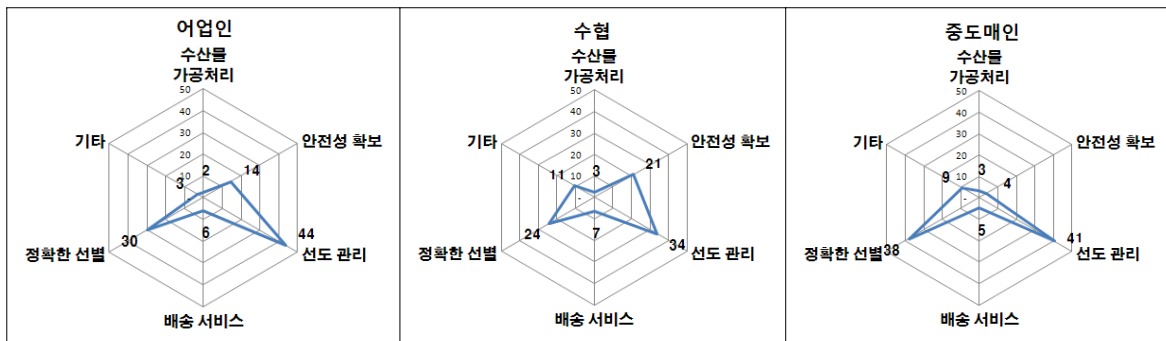
주 : 5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중요하지 않음, 2점 중요하지 않음, 3점 : 보통, 4점 : 중요, 5점 : 매우 중요)

3) 위판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 위판장 이용 구매자들이 중요시 하는 점으로 어업인, 수협관계자, 중도매인 모두 선도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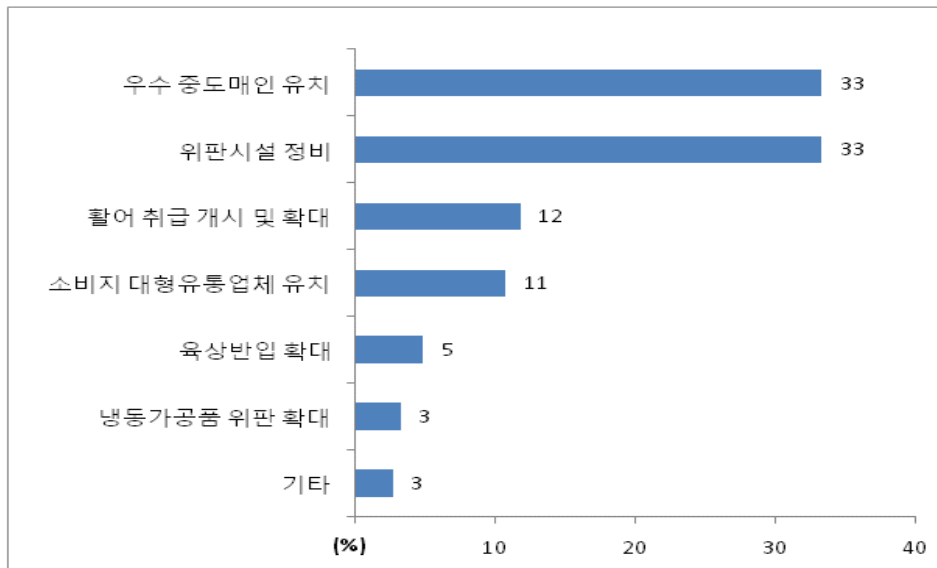
【그림 4-7】 위판장 이용 구매자들이 중요시 하는 점

단위 : %



- 어업인은 선도 관리(44%), 정확한 선별(30%), 안전성 확보(14%) 순으로 응답함
- 수협관계자는 위판장 이용 구매자들이 중요시 하는 점으로 선도 관리(34%), 정확한 선별(24%), 안전성 확보(21%) 순으로 응답함
- 중도매인은 선도 관리(41%), 정확한 선별(38%), 배송 서비스(5%) 순으로 응답함
- 한편 수협관계자는 수협 위판장의 수산물 위판 및 집하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 우수 중도매인의 유치와 위판시설 정비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음
 - 이외에 활어의 취급 및 확대와 소비자 대형유통업체의 유치가 각각 12%, 1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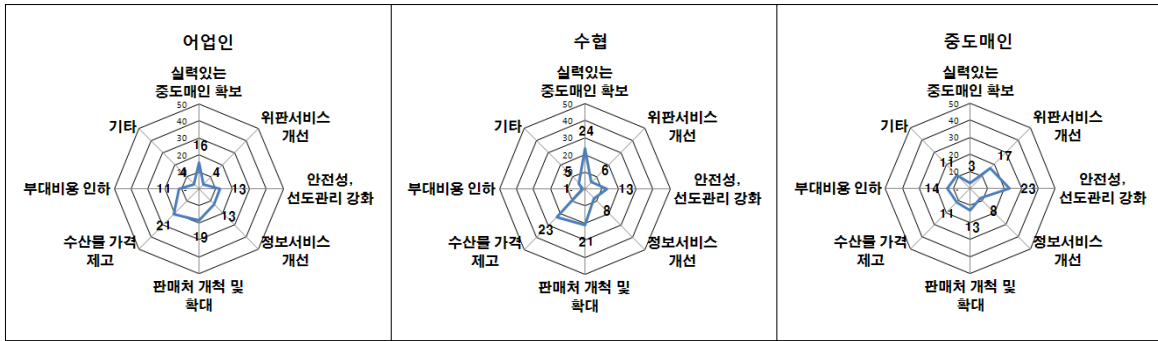
【그림 4-8】 수협의 위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



- 산지위판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어업인은 수산물 가격제고, 수협관계자는 우수 중도매인 영입, 중도매인은 안전성, 선도관리 강화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선택하여 서로 간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어업인은 위판수산물의 가격 제고가 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산물 판매처 개척 및 확대(19%), 우수 중도매인 확보(16%)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수협관계자는 우수 중도매인의 확보와 위판수산물의 가격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24%, 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산물 판매처 개척 및 확대(21%), 안전성, 선도관리 강화(13%) 등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함
 - 중도매인은 안전성, 선도관리 강화가 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위판서비스 개선(17%), 위판장 부대비용 인하(14%)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4-9】 위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개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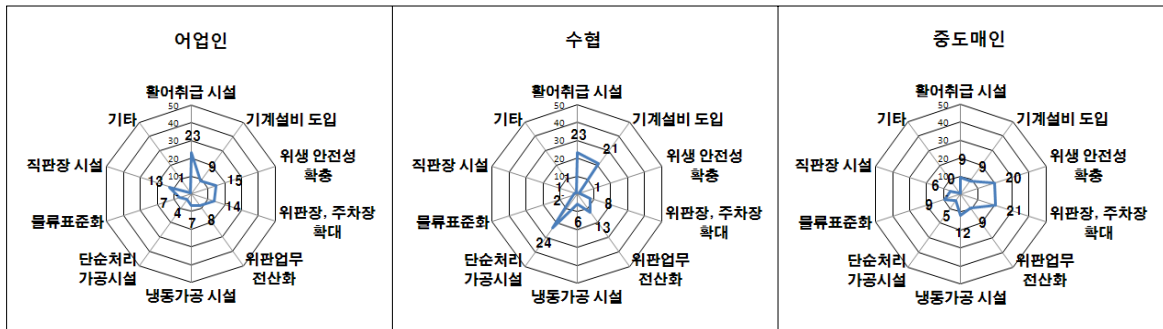
단위 : %



- 위판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우선순위에서는 어업인과 수협관계자는 활어취급시설 확충을, 중도매인은 위판장 및 주차장 면적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어업인은 활어 취급시설의 신설·확충을 지적한 경우가 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안팎으로 강화되는 실정으로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여 위생 안전성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5%로 나타났고, 위판장과 주차장의 면적 확대(14%), 직판장·직매장시설의 신설 또는 확충(12%) 등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0】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우선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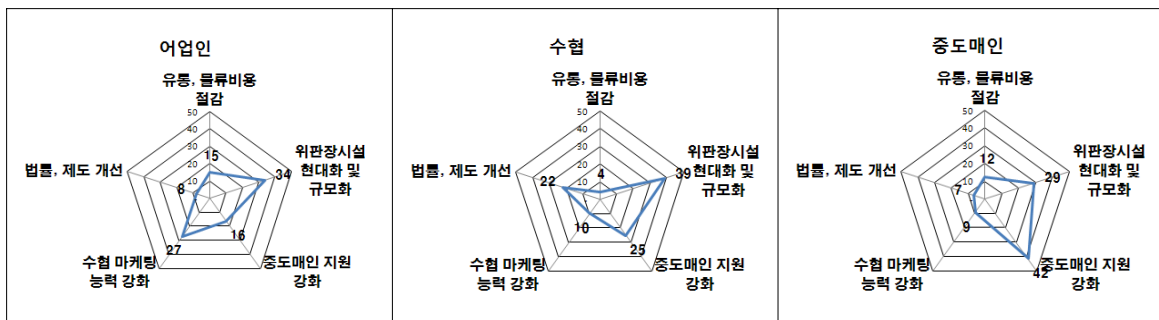
주 : 기계설비는 자동선별기, 컨베이어벨트 등 양류자동화 기기임

- 수협관계자는 활어취급 시설 신설·확충과 단순처리·가공시설의 확충을 지적한 경우가 각각 24%로 가장 많은데, 이는 최근 들어 산지에 대한 물류 기능 요구와 활어 양류 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중도매인은 위판장과 주차장의 면적 확대가 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위생 안전성 확충(20%), 냉동가공시설 신설·확충(12%) 등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위판 활성화를 위한 정부나 수협의 시급한 과제로 어업인과 수협관계자는 위판장 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응답하였고, 중도매인은 중도매인 지원 강화라고 답하였음

- 어업인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4%로 가장 많고, 수협의 마케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7%로 조사됨
- 수협관계자는 위판장 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고, 중도매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25%)하고 법률 및 제도의 개선 필요(22%)는 답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중도매인은 중도매인 지원 강화가 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위판장 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9%를 차지함

【그림 4-11】 위판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수협의 시급한 과제

단위 : %



주 : 중도매인의 경우 기타 1%를 제외함

제5장

국내외 선진사례

1. 일본의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2. 일본의 어항어장 기반정비사업
3. 일본 사례
4. 국내 사례

1. 일본의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1) 일본 산지유통의 삼중고

- 일본 수산업은 생산량의 감소, 수산물 소비량의 감소, 대형마트의 저가수산물 지향 등 3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음
 - 일반적으로 생산의 지속적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 감소로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상하고 있음
 - 또한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해 대형마트 등 대량구매자들이 저가의 수산물 혹은 가격 인하를 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지의 수산물유통도 산지가격의 지속적 하락, 수익성 하락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생산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유통구조로 인해 어업인 수취가격의 하락, 어업수익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수산청은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여 ‘수산물 산지판매력 강화 사업’, ‘국산 수산물 공급 안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지의 생산자(단체)들의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2) 주요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1) 국산 수산물 공급 안정 사업

- 동 사업은 일본의 국산 수산물에 대해 산지·소비지간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유통 비용 절감, 어업경영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임
- 사업내용
 - 국산 수산물의 직거래 추진 : 생산자단체가 생산자로부터 국산 수산물을 매취하여 소매업자 등의 실수요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매취대금의 금리, 보관경비, 가공경비를 지원함
 - 사료용 국산 수산물의 직거래 추진 : 생산자단체가 사료용 국산 수산물을 매취하여 양식업자 등과 직거래를 할 경우 매취대금 금리, 보관경비, 가공경비를 지원함
 - 국산 수산물의 민간 구매비축 : 생산자단체가 어획량이 집중되어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산 수산물을 매취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비 어획시기에 발출할 경우에 매취대금의 금리, 보관경비, 가공경비를 지원함

(2) 수산물 산지판매력 강화 사업

○ 사업목적

- 일본 국산 수산물의 대부분은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을 경유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생산자(단체)의 판매활동은 활발하지 않음
- 한편, 소비자는 평소 구입하는 수산물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산지의 판매력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needs에 생산자가 직접 대응하는 방법으로 수산물의 안정공급을 실현함과 동시에 생산자 수취가격의 제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5-1】 산지 판매력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내용
산지 판매력 전략 수립·실천사업	협의회 설치	관계자 협의회 개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
	전략 수립	유통, 판매 전문가를 활용한 판매전략의 수립
	판매 청부인 파견	유통, 판매 전문가를 활용한 현지 지도, 어업자, 수협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 연수회 개최
산지 판매마인드 양성사업	판매 연수	수협 직원 등이 소매점 등에서 판매 연수
	직원 연수	수협 직원 등의 판매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수회 개최
고부가가치화 촉진사업	신상품 개발	국산수산물의 품질 특성을 살린 신상품 개발을 위해 원료 구입, 성분분석, 가공 등을 행하고, 시제품 생산
	선도관리 실증시험	생산, 유통, 판매를 연결하는 최적의 선도관리방법 확립을 위해 새로운 선도관리방법을 검토하여 기존 방법과의 선도변화 비교 등의 실증시험 실시
	신물류수단 실증시험	생산, 유통, 판매의 각 단계와의 제휴 등 최적 물류경로의 확립을 위해 신물류경로의 검토, 기존 물류경로와의 비교 등의 실증시험 실시
	신동결·보관 수단실증시험	생산, 유통, 판매를 연결하는 최적 동결, 보관방법의 확립을 위해 신동결, 보관방법 검토, 기존 방법과의 품질변화 비교 등의 실증시험 실시
	신수송 자재 개발	신상품 대응, 기존 수송자재 개선을 위해 최적 수송자재 개발, 기존 수송자재와의 편리성 비교 등의 실증시험 실시
	지적재산 관리	보조금 사업의 결과물인 신상품 관련 지적재산(특허, 영업비밀 등)의 보호, 관리방법 검토, 확립 등의 실증시험 실시
신시장 창출사업	신시장 조사	다양해지는 소비자 needs 등의 정보를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물의 신시장 등을 분석
	집출하 등 지도	수산물유통 전문가를 파견하여 시장관계자에게 집출하의 현지 지도를 하고, 어업자, 수협, 수산물유통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 연수회 개최
	판매전략	영업활동 및 보다 효과적인 신규 판로개척 등의 방법 개발
정보 수발신 추진사업		유통, 서비스의 정보시스템 개발과 필요한 기기의 정비, 개발한 시스템의 실증 시험 등을 실시

① 지역 유통플랜 구축사업

- 각 지자체나 현 어련 등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산지소(地產地消)의 촉진과 소매점, 외식산업과의 제휴 등을 포함하여 해당 산지의 수산물 판매 및 유통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경비(협의회 개최, 선진지 시찰, 인쇄비 등)을 지원함

② 산지 판매력 육성사업

-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해 이하의 사업에 대한 필요 경비 지원
- 사업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 중에서 필요한 것을 조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표 5-2】 유통가공업과 산지의 연계 촉진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내용
고부가가치화 촉진사업	신상품 개발	국산수산물의 품질 특성을 살린 신상품 개발을 위해 원료 구입, 성분 분석, 가공 등을 행하고, 시제품 생산
	선도관리 실증시험	생산, 유통, 판매를 연결하는 최적의 선도관리방법 확립을 위해 새로운 선도관리방법을 검토하여 기존 방법과의 선도변화 비교 등의 실증시험 실시
	신물류수단 실증시험	생산, 유통, 판매의 각 단계와의 제휴 등 최적 물류경로의 확립을 위해 신물류경로의 검토, 기존 물류경로와의 비교 등의 실증시험 실시
	신동결·보관 수단실증시험	생산, 유통, 판매를 연결하는 최적 동결, 보관방법의 확립을 위해 신동결, 보관방법 검토, 기존 방법과의 품질변화 비교 등의 실증시험 실시
	신수송 자재 개발	신상품 대응, 기존 수송자재 개선을 위해 최적 수송자재 개발, 기존 수송자재와의 편리성 비교 등의 실증시험 실시
	지적재산 관리	보조금 사업의 결과물인 신상품 관련 지적재산(특허, 영업비밀 등)의 보호, 관리방법 검토, 확립 등의 실증시험 실시
신시장 창출사업	신시장 조사	다양해지는 소비자 needs 등의 정보를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물의 신시장 등에 대해 분석
	집출하 등 지도	수산물유통 전문가를 파견하여 시장관계자에게 집출하의 현지 지도를 하고, 어업자, 수협, 수산물유통 관계자 등 대상으로 현지 연수회 개최
	판매전략	영업활동 및 보다 효과적인 신규 판로개척 등의 방법 개발
정보 수발신 추진사업		유통, 서비스의 정보시스템 개발과 필요한 기기의 정비, 개발한 시스템의 실증 시험 등을 실시

주 : 산지 판매력 육성사업의 일부를 제외하면 내용 동일

③ 유통가공업과 산지의 연계 촉진사업

- 유통업자, 가공업자가 지역 생산자인 수협 등과 연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 사업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 중에서 필요한 것을 조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④ 산지시장 개혁사업

- 시장 개설자, 도매법인 등이 산지시장의 통폐합(산지시장의 기능 또는 물리적 통폐합, 산지시장을 폐지하고 소비지시장에 통합 등) 등의 산지시장 개혁을 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 사업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 중에서 필요한 것을 조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표 5-3】 산지시장 개혁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내용
산지시장 개혁 구상 계획 등 사업	구상 수립	산지시장의 개혁을 위한 구상을 만드는 협의회 개최
	유통실태조사	유통실태 등에 대해 어업자, 수협, 수산물유통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석
	집출하 등 지도	어업자, 시장관계자 등에 대해 선도관리와 처리 등에 대해 현지 지도, 산지시장 개혁 실현의 본격 실시를 위한 설명회 및 인재 육성을 위한 현지 연수회 개최
산지시장개혁 실증사업	유통전략수립	거래처의 영업활동 등 보다 효과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방법의 개발 등의 실증시험 실시
	선도관리 실증시험	산지시장 통폐합 형태에 따른 최적의 선도관리방법 확립을 위해 새로운 선도관리방법 검토하여 기존 방법과의 선도변화 비교 등 실증시험 실시
	신물류수단 실증시험	산지시장의 통폐합 형태에 따른 최적 물류경로의 확립을 위해 신물류 경로의 검토, 기존 물류경로와의 비교 등의 실증시험 실시
	신동결·보관수단 실증시험	산지시장의 통폐합 형태에 따른 최적 동결, 보관방법의 확립을 위해 신 동결, 보관방법 검토, 기존 방법과의 품질변화 비교 등의 실증시험 실시
	신수송 자재 개발	산지시장 개혁에 따른 새로운 도입 규격의 수송자재 개발과 기존 수송자재 개선을 위해 최적 수송자재 개발, 기존 수송자재와의 편리성 비교 등의 실증시험 실시
	클레임 대응	직접 판매한 판매처 등의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연수 등
	전자거래시스템 개발	전자거래 도입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개발한 시스템 실증시험 실시

-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는 제출된 과제제안서 등을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수산청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 선정된 과제제안자 중에서 보조금 교부 후보자를 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특정함

3) 주요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의 시사점

- 수산청의 산지유통 개선 정책은 기본적으로 생산자(단체)의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선도 관리 등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키워드로서 ‘지산지소’, ‘직거래’, ‘생산과 가공, 유통의 3장 연계’를 들 수 있음
- 또한 지원 대상 범위에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정책임
 - 정책사업의 지원은 최소 가족단위까지 설정함으로써 대상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음
- 정책의 내용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다양한 사업의 내용 중에서 취사선택하여 자기 형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정책실행의 자유도를 높여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음
- 최근의 특기할 만한 변화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 민주당 집권 이후 정책의 실행 성과에 대한 평가가 1년 단위의 수치적인 성과평가로 바뀌어 즉시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재편되고 있음
 - 산지의 미이용 혹은 저이용 수산물에 대해 민간업체 중심으로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도매인의 전국 네트워크(선어의 달인), 생산자 전국 네트워크(Enjoy Fisherman)가 만들어져 역할 재정립, 전국 규모의 정보교류, 사업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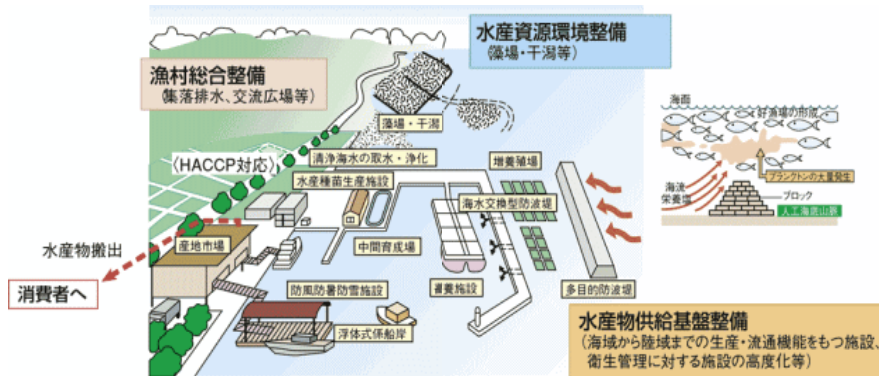
2. 일본의 어항어장 기반정비사업

- 어항어장 기반정비사업은 수산기본계획의 여섯 가지 정책목표 중 ‘수산물의 안정공급을 위한 가공·유통·소비 대책의 전개’와 ‘어항·어장·어촌의 종합적 정비와 수산업·어촌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와 연관이 있음
 - 가공·유통·소비 대책의 전개는 유통거점의 정비 및 어촌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유통경로의 개발이라는 두 가지 하위목표와 연관이 있고
 - 어항·어장·어촌의 종합적 정비는 수산물 공급기반의 정비라는 하위목표와 연관됨
-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규모 산지위판장과 연관되는 정책은 어항어장 기반정비사업이 연관성이 아주 높는데, 중앙정부의 사업이 가공유통과가 아닌 어항어장정비부

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 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위판장이 어항의 일부라는 점과 연계개발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이 작용하고 있음

【그림 5-1】 일본의 어항어장 기반정비사업의 개념도



- 이하에서는 산지위판장의 직접적인 관련사업인 일본의 수산물 공급기반사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함

1) 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 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은 일본 주변수역의 어업 지위 제고와 생산성 향상 및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목표로 자원관리형어업·기르는어업의 추진과 소비자 needs에 맞는 수산물의 안정공급을 목표로 함
- 동 사업의 하위목표와 관련 정책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지역밀착형 어항 및 어장 만들기 : 지역 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 수산물유통거점 만들기 : 광역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 수산물유통의 효율화 : 어항 관련 도로 정비사업
 - 수산물의 품질·위생 대책 :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사업
 - 폐각 등의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어항어장의 정비 : 수산계 부산물 활용 추진 모델 사업
- 위의 다섯 가지 사업 중 위판장과 연관되는 것은 광역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산물 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사업임
 - 광역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은 주로 시설사업으로 시장시설의 현대화가 주된 내용임
 -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사업은 위판장의 시설 개선과 위생대책의 두 가지임

2)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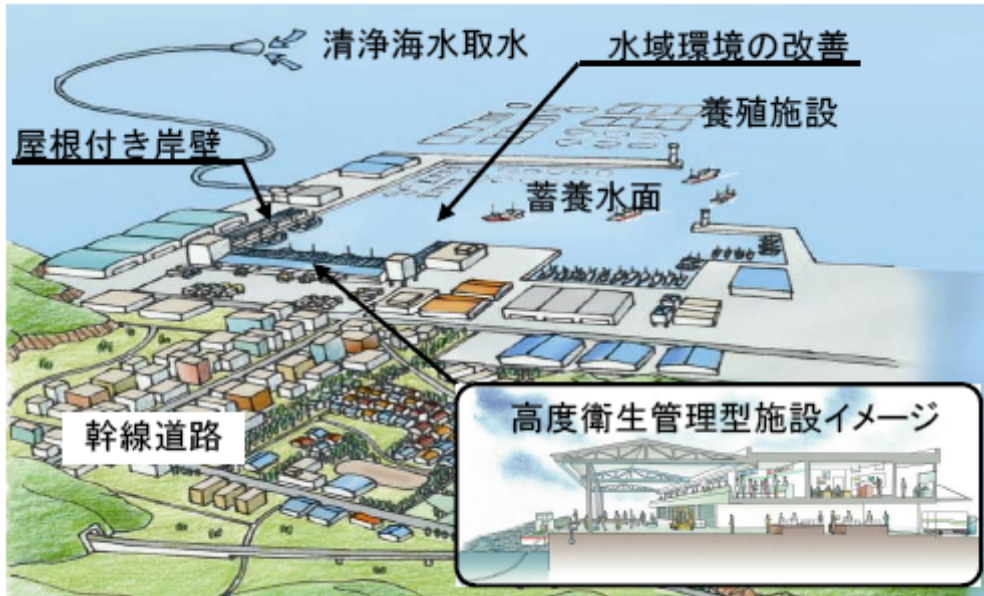
- 동 사업은 이전 ‘지역 수산 종합 위생관리 대책 추진사업’이 개칭된 것으로 산지시장의 통폐합 등 수산물유통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산물의 안정공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의 집출하 거점인 어항과 적극적으로 수산물 수출을 하고자 하는 어항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의 효율화, 품질·위생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시설정비를 추진하는 것임
 - 동 사업을 통해 일본 수산청은 고도 위생관리 대책 하에서의 수산물 출하 비율을 2004년의 23%에서 2011년에 약 50%로 상승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업내용은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나뉨
 - 하드웨어사업에서 비공공사업이 대부분 위판장 시설에 관련된 것이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비용임

【표 5-4】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의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하드웨어	공공사업	어장·양식장의 오니준설, 어항 내 해수교환, 청정해수 도입시설, 방풍 방설 방서시설, 조수 등 침입 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도로 등의 정비
	비공공사업	경매장 시설, 수산 선도유지시설, 가공처리시설, 차량 소독시설, 세정시설, 심층수 등 활용시설, 냉동탑차, 어체선별기, 화장실, 세면장 등의 정비
소프트웨어		수산물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기에 대해 기능상 또는 구조상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 동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음
 - 수산물의 생산부터 양륙, 유통·가공까지 일련의 위생관리에 대해 유통기능 고도화 추진체제가 확보된 곳일 것
 - 수산물의 생산부터 양륙, 유통·가공까지 일관된 공급시스템하에서 거점적 역할을 하는 곳일 것
 - 지역 내에서 공공사업인 수산기반 정비사업과 비공공사업의 각종 수산관계사업이 실시되고 있거나 예정된 곳일 것
 - 동 사업은 정비대상 지역이 수산물의 유통거점 어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구여야 하며, 주변에 보완적 역할을 할 어항을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가 있음

【그림 5-2】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의 개념도



- 동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어획물의 효율적 양륙을 위한 안벽, 어류 이송시설의 정비
 - 양륙 후에 어획물을 신속하게 유통할수 있는 어항 도로의 정비
 - 안정된 조업을 위한 미끼 등의 보관과 어획물 출하조정을 위한 보관기능을 담당할 축양시설 등의 정비
 - 취수, 급수 등의 청정해수 도입시설 및 어항 정화시설의 정비
 - 수산물 품질 유지를 위한 방풍·방설·방서시설, 새나 쥐 등의 침입방지 시설 정비
 -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매장(부대시설 포함)의 정비(단,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한 위판장의 부대시설은 경매장과 일체인 시설과 경매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임)

【표 5-5】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의 시설별 신청자격

시 설 명	자 격 요 건(어느 쪽인가를 만족시킬 것)	
청정해수 도입시설, 조수(鳥獸)등 진입 방지 시설, 어류이송시설 및 오수 정화 시설	수산물 취급량이 원칙적으로 5,000톤 이상일 것	어협 등의 지역브랜드 취득, 농상공 등과 제휴 추진 또는 수출촉진대책 추진, 또한 수산물 취급금액이 10억 엔 이상
경매장	수산물 취급량이 8,000톤 이상(시장 통합 후의 합계도 포함) 또한 취급금액이 14억 엔 이상	
어항정화시설	수산물 취급량이 원칙적으로 1,000톤 이상	

- 사업실시의 주체는 지방공공단체와 수산업협동조합이며, 보조 50%, 자담 50%의 국고보조사업임

3) 광역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 광역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은 광역어항 정비사업과 광역어장 정비사업이 있음
 - 광역어항 정비사업은 제3종 어항, 제4종 어항 등 어선의 이용이 전국적이거나 비교적 광범위한 어항과 그 주변 어장의 계획적 정비를 함으로써 수산물의 생산·유통의 거점을 만들어 소비자의 needs에 맞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함
 - 광역어장 정비사업은 공동어업권 구역 이외의 넓은 어장을 계획적, 일체적, 대규모로 정비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함
- 이 두 가지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광역어항 정비사업은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거점 정비를 위해 제3종 어항, 제4종 어항 등 「어선의 이용이 전국적이거나 비교적 광범위한 어항」의 어항시설 정비 및 공동어업권 구역 내 등 지선의 당해 어항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장 시설의 정비
 - 광역어장 정비사업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동어업권 구역 이외의 「이용범위가 광범위한 어장시설」을 대규모로 정비함
- 사업의 채택요건은 다음과 같음
 - 광역어항 정비사업은 1개 사업 당 사업비가 3억 엔을 넘는 것으로서 어항시설 사업비가 3억 엔을 넘으며, 정비 결과 어항의 항세가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것
 - 광역어장 정비사업은 1개 사업 당 사업비가 3억 엔을 넘는 것(근해의 경우는 10억 엔), 각 어장의 시설 규모와 수혜자가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것

4)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 인증제도

(1) 수산식품 품질고도화 협의회

- 수산식품 품질고도화 협의회는 일본 수산업계가 식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needs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유통, 가공의 각 분야 및 관련 산업계의 뜻을 모아 수산식품에 관한 모든 분야의 참여자들을 회원으로 하며, 수산물의 품질위생관리에 관한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결집하는 한편, 민관학연의 연계를 통해 각종 과제에 적

절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품질관계정보의 수집·제공, 품질위생관리지침의 작성, 인제의 육성, 지도체제의 정비 등을 수행함
- 또한 HACCP의 인정 심사, 강습회 개최 등을 통해 HACCP의 보급을 주도함
- 협의회는 주요 역할을 수산업의 각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생산자 :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 각 업종별 수산식품 품질위생관리지침 제공 및 교육 실시
 - 산지시장 : 우량위생품질관리시장·어항 인증기준 제공 및 인증, 산지시장 품질·위생관리 교육, 산지시장용 가이드라인 제공
 - 가공업자 : HACCP 지도 및 인증, 수산가공 품질·위생관리 교육 실시, 안전, 안심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품질·위생관리 매뉴얼 제공
 - 수출업자 : 對중국 및 對EU, 對러시아 수산식품 수출 가이드라인 제공
 - 기타 양식수산물의 이력추적제 가이드라인 제공
- 우량위생품질관리시장·어항 인증 사업은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사업의 결과물 중에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우수한 위판장을 인증해 주는 사업임

(2)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 인증제도

- 동 사업은 수산물의 위생품질관리가 뛰어난 산지시장을 인증하고 공표함으로써 선진사례를 널리 보급하고, 각 산지시장이 이들 인증시장을 모델로 위생품질관리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에 사단법인 일본수산회가 만든 제도임
- 인증의 흐름은 먼저 산지시장이 인증을 신청하면, 위생관리 전문가에 의한 사전 지도를 받은 후 이를 개선한 경우 인증을 위한 심사를 하게 됨
 - 인증을 위해 인증위원회가 개최되며, 이 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으로 인증을 받게 됨

【그림 5-3】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의 관리단계



【그림 5-4】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 사례(미에현 鳥羽磯部어업 위판장)



【그림 5-5】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 인증서 (미에현 鳥羽磯部어협 위판장)



3. 일본 사례

1) 시모노세키도매시장

(1) 시장의 개요

- 1933년 개장된 동 시장은 1973년 지방도매시장으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신시장이 개장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신시장의 개설 시에 마리나와 피셔맨 워프, 수족관 등 친수공간 및 판매, 전시공간을 함께 설계하여 개장함으로써 현재 연간 1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시장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음
- 거래되는 수산물은 60%가 양식수산물이며, 최근 어선어획물의 생산량 감소, 수산물의 가격 하락 등에 의해 취급물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급금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그림 5-6】 시모노세키도매시장의 전경



피셔맨 워프
(관광적거래, 음식점)

해향관
(큐슈 최대의 수족관)

(2) 수산관광시장으로서의 활성화

- 지역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시 설계된 수족관 등 주변 관광시설과의 연계, 시장 옥상의 정원화와 일반인 개방으로 주변 관광과 경관 감상을 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시장 건물 2, 3층 주차장 확보 및 별도 주차빌딩 건설로 관광객들의 접근성 확보
- 관광객은 여름과 가을에 집중되며, 시장축제를 하고 있고, 매주 금, 토, 일의 3일은 이벤트를 개최하여 조리한 수산물을 관광객이 사먹을 수 있도록 함
- 입주한 120명의 상인 중 40개 업체가 소매만을 하고 있으며, 중도매업체와 소매업체의 업무시간이 달라 시장의 혼잡은 최소화되고 있음

(3) 문제점 및 시사점

① 문제점

- 동 도매시장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최초 시모노세키 시민들의 장터로서 산지도매기능과 함께 소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진 시장이었음
- 신시장 개장 이후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큐슈의 관광명소로 부상하였으며, 관광객들의 수산물 구매도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관광시장으로 명성을 얻으면서 큰 변화와 문제점을 안게 됨
 - 지역민들의 친숙한 동네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관광시장이 되면서 관광객 위주의 상품구성, 가격 상승으로 지역민들에게 외면 받게 되었고, 지역 소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지역민들은 대형마트로 구매처 변경)
 -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면서 관광객 위주의 상품구성(수입수산물, 냉동수산물, 타지역 반입품 등)이 되었으나, 시장에 상장하지 않는(도매거래나 수수료 지불이 없는) 상인들의 무단 반입 수산물이 크게 증가
 - 한 개의 도매장 내에 도매를 하는 중도매인과 소매를 하는 도매상이 혼재하면서 대립과 갈등 발생
 - ※ 중도매인은 세원 노출, 시장사용료 등을 지불하고 있으나, 소매상인들은 무자료 거래로 시장사용료만 내고 있음
- 관광시장으로서 집객과 매상, 지역 발전 기여에는 성공하였으나, 수산시장으로서의 기능 및 지역주민과의 전통적 관계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모순이 발생하였고 이의 해결에 고심하고 있음

②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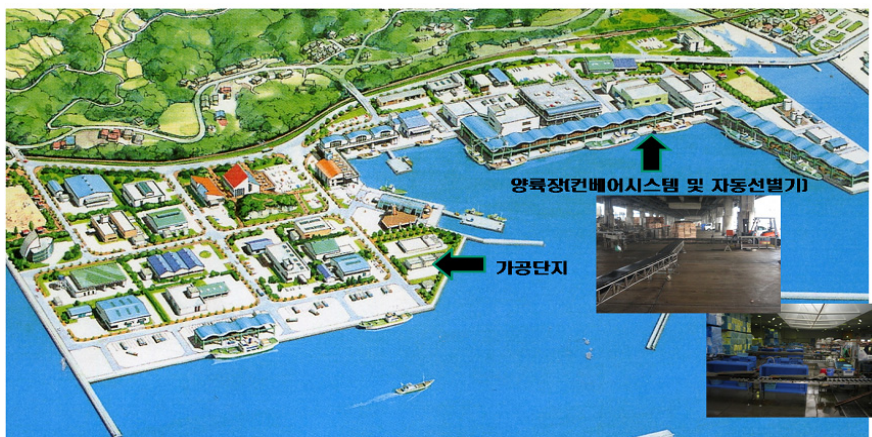
- 관광시장으로서 주변의 친수공간 및 시설들과 함께 개발된 동 시장은 건설 목적의 하나인 관광객의 집객에 성공하였음
- 그러나 시장 본연의 역할과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지속에 실패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임
 - 도매와 소매의 미분리 : 기존의 지역주민 대상 소매시장에서도 도소매의 혼재가 있었으나, 현재의 상황은 지역 정서를 같이하지 않는 이질적인 관광객들이므로 소매공간의 구획 혹은 장소분리가 필요함
 - 시장 본연의 기능에 대한 배려 부족 : 도소매가 혼재되고 관광객 중심의 소매운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시장 자체의 거래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소매에 대한 관리 능력 부재 : 현재의 소매상인들은 시장과 주변 관광시설들이 창출한 관광객 집객효과를 향유할 뿐으로 이들이 시장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음 최초 구상 시에 이러한 점이 배려되지 않아 지역사회 기여라는 한 측면만의 역할 한계가 발생함

2) 마츠우라어시장(서일본어시장주식회사)

(1) 시장의 개요

- 일본 마츠우라어시장은 1979년에 개설된 일본원양선망조합이 개설한 생산자시장으로서 기지임

【그림 5-7】 나가사키현 마츠우라(松浦)어시장의 전경



- 고등어, 전갱이의 양륙량은 일본에서 손꼽히며, 소형선망, 연안어업도 양륙하고 있음

- 2003년 3월에 일본 전국 최초로 위생시설이 완비된 출하시설인 ‘오사카나돔(おさかなドーム)’을 설치하고, 시장에서 사용하는 해수의 무균화, 양륙 수산물에 살균해수를 사용하는 등 고선도 유지시스템의 도입으로 HACCP에 대응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추
- 시장에서 사용하는 해수는 전량 자외선 살균해수를 사용함으로써 위생안전에 대한 수준을 한 단계 높임

(2) 시장의 현대화 및 가격 유지 노력

① 시장의 현대화 과정

- 동 시장은 1983년에 자동선별기를 도입하였으나, 생산자들의 반발로 약 10년에 걸쳐 정착시켰음
 - 최초 부산공동어시장과 같이 바닥에서 선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시간과 비용, 위생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양륙, 선별의 자동화를 시도하였음
 - 피쉬펌프, 자동선별기, 컨베어시스템 등의 도입은 일본 최초로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상이었으나, 폐쇄적인 생산자의 인식을 극복하지 못해 초기에 난항을 겪음

【그림 5-8】 나가사키현 마츠우라(松浦)어시장의 양륙 및 선별과정



- 정착 이후 효율적 선별 및 처리로 인해 비용 및 양륙시간의 절감이 이루어지자 생산자들의 양륙이 증가하였음
- 이후 2003년에 양륙, 선별된 수산물의 재입상 과정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상처리 및 저온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타 시장과는 차별적인 양륙, 처리 능력을 갖춘 시장으로 발돋움하였음

② 가격 유지를 위한 시장의 노력

- 동 시장은 양륙 수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첫째, 자회사를 통한 물량 조절
 - 동 시장의 개설자인 일본원양선망조합은 자회사인 선망상사를 만들어 양륙된 수산물의 가격 상황에 따라 일정 이하의 가격에서 경매를 중단하고 잔량을 전량 매입함으로써 가격 및 수급조절을 시행
 - 자회사를 통한 물량조절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상승효과가 발생함
- 둘째, 적극적인 어황정보 제공
 - 수산청의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각 선단의 어획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물량조절과 가격안정 시행
 - 정보제공은 동 시장의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생산자, 타시장 관계자, 유통업자 등 원하는 이들에게 공개되고 있어 양륙량의 예측이 가능해 짐
 - 정보수집은 각 선단의 직접 입력과 시장 직원들의 전화 수집이 있으며, 제공방법은 핸드폰, PC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음
- 정보수집을 위해 생산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자들은 동 정보를 보고 당일의 어획량과 양륙장소를 정하고 있음

(3) 시장 현대화의 성과 및 시사점

① 시장 현대화의 성과

- 첫째, 양륙량의 증가
 - 시설 개선 및 효율성 증대, 구매자 평가의 향상으로 선망 관련 타 시장이 양륙량의 급감하는 가운데, 타 시장에 비해 오지에 있어 입지가 불리한 동 시장은 다소의 감소는 있었으나 꾸준히 양륙량이 유지되고 있음
- 둘째, 다양한 상품화 성공
 - 시설 현대화로 인해 직접적인 가격상승의 효과는 보지 못했으나, 이전에는 어체 손상으로 사료용으로 쓰던 소형어를 식용으로 상품화할 수 있어 전체적인 수익성 증가에 기여함
 - 규격화가 가능해 짐으로써 전체적인 매출 상승을 가져왔으며, 출하처의 평가가 상승하여 꾸준한 거래가 가능해짐

- 셋째, 브랜드 효과 창출
 - 출하되는 스티로폼 박스에 동 시장의 마크를 넣음으로써 타시장의 동종 출하품에 비해 선호도가 상승함
 - 이는 선별 이외에도 위생적 저온처리시설을 통한 고선도 유지의 효과가 더 큰 작용을 하였음
- 넷째, 비용 및 시간 절감
 - 양륙 및 선별 자동화, 위생적 처리시설 도입으로 양륙시간 및 포장, 배송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선도 제고를 통해 상품성이 향상됨

② 시사점

- 생산자 개설시장인 동 시장은 시장의 시대적 변화 수용이 시장의 운영 및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 수 있는 곳임
- 동 시장의 현대화 과정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개방적 사고방식을 가진 직원들의 존재로 현 전무를 중심으로 전근대적이었던 기존의 방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여 도입하였음 특히 이들이 생산자단체의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음
 - 둘째, 적극적인 전략의 개발과 정부지원의 도출 및 활용으로 시장의 개설 및 시설도입 등의 단계에서 관련 업체들과 연계하여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고서로 엮어 수산청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꾸준히 설득하였다는 점임
 - 셋째, 타 업계에 비해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생산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설득함으로써 정착을 시켰다는 점임
 - 최근에는 플라스틱 어상자의 도입을 시도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2년간에 걸친 교체작업에 들어갔음

3) 후쿠오카시도매시장 선어시장

(1) 시장의 개요

- 1955년에 개장된 동 시장은 양륙량 10만 톤 규모의 일본 큐슈지역의 중심적인 도매시장임
- 동 시장의 선망 및 저인망의 직접 양륙 이외에도 큐슈 각지의 지방도매시장으로부터 수산물이 반입되는 시장이며, 중국어선의 직접 양륙, 한국 및 주변국의 수입수산물도 반입되고 수출도 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능을 갖춘 시장임

- 동 시장은 2006년 신시장을 건설하여 개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거점시장화의 추진

① 시장의 거점시장기능 강화와 현실적 한계

- 수산업의 3중고로 인해 동 시장도 취급량 감소, 가격 하락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 시장은 2010년에 농림수산성의 제9차 중앙도매시장 정비 계획에 의거하여 거점시장으로 지정되었으며, 규슈의 중심시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규슈 인근지역 및 주변국의 관광과의 연계도 고려하고 있음
- 한국, 중국, 동아시아 등과 인접한 지리적 입지로 인해 수산물 수출입 중심시장으로의 육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규슈 및 서일본의 수산물유통 리더 역할과 부산과의 통일경제권 형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주변국과의 연계 및 관광과의 연결이 쉽지 않아 새로운 역할의 부여에는 난항을 겪고 있음
- 또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생적인 처리시설 등에 대한 설비 부족으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는 배송장을 개조하여 처리 및 배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구매자들 중 소형 소매점, 음식점들의 구매가 많아지면서 원어보다는 간편한 조리가 가능하고 부산물이 없는 처리된 수산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중도매인 점포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② 관광시장으로서의 시도 및 지역민과의 교류

- 동 시장은 월 1회 중도매인 점포를 개방해서 시민/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에 자극 받아 인근에 장외시장을 계획 중임
- 후쿠오카어식보급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어식문화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시장방문을 유도하면서, 이들이 직접 생선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일한 다량의 수산물을 납품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난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3) 시사점

- 동 시장은 산지시장이면서 소비시장의 특성을 고루 갖춘 시장이며, 수출입 기능도 담당하는 다기능 시장임
- 그러나 수산업의 3중고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 미흡하여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으며,
- 비교적 최근에 신시장을 개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이는 미래 시장의 기능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있으나, 현재 위치에서 신시장을 건설하는 방식을 택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걸림으로써 새로운 시장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음
- 동 시장은 국제적 시장으로의 변화, 관광 등을 연계한 시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이지 못함

4. 국내 사례

1) 위판장 활성화 사례의 제유형

- 수산물 위판사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각 수협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음
- 위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협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판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었는데, 조사대상인 각 수협이 실시·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어가 안정화, 위판물량 확보, 위판시설의 신설·개선을 통한 효율화, 거래의 건전성 확보와 어업인에 대한 위판서비스 강화로 구분지을 수 있음
 - 어가 안정화는 어업인, 수협관계자, 중도매인 등 위판사업 관계자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어가를 적정 수준에서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들임.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 출하, 가격지지 사업, 경매 경쟁을 통한 어가 제고 등의 직접적 방안과 수산물의 인지도 제고, 안정적 판로 확보와 같은 간접적 방안으로 구분됨
 - 위판물량 확보의 경우 계통출하 물량의 안정적 확보·확대에 관련된 사업으로, 위판방식 다양화, 생산자 확보, 조합원의 계통출하 우선 관행과 같은 직접적 방안과 어업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자금, 어업활동 등)의 간접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표 5-6】 수협의 산지위판사업 활성화 사례 유형

수협명	어가 제고	위판물량 확보	위판시설의 신설·개선		거래의 건전성 확보	위판서비스 강화
			위판장	관련시설		
하 동	홍수출하 방지	신규위판대상 어종의 생산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활동 지원, 신규어종 편입			지정거래인제도	
삼천포	지정경매사제도	신규어선세력 유치		진입로 정비	신규 중도매인 영입	
진 해			위판장 신설 및 현대화			
마 산			활어위판장 신설			
진 동			활어위판시설 도입		한도내 거래	양식활어 구매, 판매를 통해 주요 위판어종과의 구색 견비
부산시	홍수출하 방지	신규위판방식 도입			신규 중도매인 영입, 한도초과 낙찰 금지	관련 인력 채신
신안군	신안군브랜드 사업 적극 참여					생산현장과의 유대감 형성, 위판회수 확대
서 천		신규어종 편입, 포장박스 지원			중도매인 영입	생산현장과의 유대감 형성
보 령		판매선급금 지원	활어수조 확대			계통출하물 방문 수집, 시매매 방지 지도반 구성
구룡포	지역특산품 축제 적극 참여	대체어장 모색	활어위판장 신설			조합원 복지 향상 지원
포 항	안정적 판로 확보		위판장 현대화			
강 구	브랜드 사업, 지역축제 참여					
경 주	안정적 판로 확보	외지선박 유치		어업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		
죽 왕	홍수출하 방지, 안정적 지역 관광수요 확보	조합원의 계통 출하 우선 관행			부실중도매인 정리	
속 초	어가지지 목적 자금 지원, 안정적 지역 관광수요 확보	출하장려금 지급	신규어종 유통센터 건설 추진			활어차 유치 영입
대 포	안정적 지역 관광수요 확보	조합원의 계통 출하 우선 관행			한도내 거래	지역 활어상인과 유통업자간의 거래 관리

- 위판시설의 신설·개선은 크게 위판장 시설의 신설 또는 현대화·규모화, 부대시설의 확충이 있음
- 거래의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거래의 기본을 이루는 중도매인의 건전성 확보와 중도매인수 확대를 통한 거래규모 확대 등이 있음
- 어업인에 대한 위판서비스 강화는 위판과 관련하여 수협이 제공하는 제서비스의 다양화로, 세부적으로는 인적 유대감 강화, 수집·위판서비스 확대, 그리고 간접적으로 위판사업 활성화에 연계되는 제활동 등이 있음

(1) 어가의 안정적 유지

- 양류물의 계획 출하는 수산물의 대량 생산과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 급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의 협의나 해당 품종에 대한 출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가가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하동군수협 : 관내 양식수산물 출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계획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홍수출하를 미연에 방지
 - 부산시수협 : 수요량 기준으로 어업인들과 협력하여 일일 양류량을 설정함으로써 홍수출하를 방지
 - 죽왕수협 : 위판되는 어획물의 성격에 따라 수협과 생산자가 협의 하에 출하시기, 물량, 방식 등을 조정하여 어획물의 단가 보전에 노력
- 가격지지는 어가를 지지할 목적으로 거래참여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활동임
 - 속초수협 : 거래참여자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수발기금과 자체자금을 이용하여 수매목적의 자금을 지원
- 수산물의 인지도 제고는 브랜드화나 지역 축제 참여 또는 홍보를 통해 해당지역 수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어가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신안군수협·구룡포수협 : 신안군(신안수협브랜드 활용), 구룡포(구룡포 특산물 축제 활용, 전광판을 이용한 지역수산물 홍보)
 - 강구수협 : 생산자 단체인 자망협회가 주축이 되어 ‘영덕대게 브랜드’를 완료, 특허청으로부터 단독 디자인 및 상표를 등록·판매
- 안정적 판로 확보는 지역 혹은 인근에 계통출하되는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소비처를 확보함으로써 어가 유지에 기여하는 사례임
 - 대포수협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라는 특수성 상 위판장에 형성된 횃집, 식당 등의 관광지에 위판물량의 상당량을 판매

- 기타사항으로 경매 활동에 있어 경매를 주관하는 경매사들 사이에 경쟁구도를 두어 어가를 관리하는 사례로, 삼천포수협이 ‘지정경매사 제도’가 이에 해당됨
 - 삼천포수협 : 2007년부터 선어(고등어·오징어)에 대해 지정경매사제도를 운영, 2명의 경매사 각각에 담당선단을 지정하여 경매와 관련해 경쟁을 유도

(2) 위판물량의 안정적 확보

- 위판방식·생산자의 신규 확대는 위판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신규 생산자 또는 어종의 확대를 통해 위판물량을 확보하는 활동임
 - 하동수협 : 관내 양식(축양) 어종의 위판을 적극 추진하여 최근 연간 2,500~3,000톤 정도의 양식물량을 위판
 - 삼천포수협 : 신규어선(대형선망, 대형트롤, 쌍끌이어업)을 유치하고자 관계자의 지속적 접촉과 함께 어선이 위판할 수 있도록 관련환경을 정비
 - 경주시수협 : 어업기반시설 및 어업인 편의 시설 확충으로 외지선박 유치 도모
 - 서천수협 : 주요 수산자원의 변화에 대응하여 멸치위판사업을 신규로 시작, 군·수협에서 멸치 포장박스비를 지원하는 등 위판여건 조성
 - 부산수협 : 아귀위판, 자연산 활어위판, 자갈치위판장 야간경매 도입으로 위판장 활성화
- 어업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은 출어자금이나 출하장려금과 같이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영어자금을 지원하거나 어업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위판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하동수협 : 지역의 새로운 역점 사업으로 도입된 축양사업과 관련해 현실성을 반영하여 실효성있고 어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지원과 축양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활동(치어 입식, 양식기술, 경영 교육 등)을 지원
 - 보령수협 : 2000년대 초반부터 신용상태가 건전한 어민들을 대상으로 출어기 객주의 전도자금 사용대신 판매선급금을 지원하기 시작, 2007년부터 확대 지원
 - 속초수협 : 소속 생산자협회에 출하장려금 예산을 연단위로 책정, 정액으로 지급
- 기타 활동으로 조합원의 계통출하 우선 관행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계통 출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죽왕과 대포수협의 경우 이에 해당됨
 - 두 수협의 경우 관광지라는 특성 상 주말이나 휴가철 관광수요가 형성되는 곳으로, 조합원 중에서도 횃집, 식당, 판매점 등 자가 점포를 운용하는 곳이 있더라도 자가 어획물을 우선 위판하고 여타 업자와 마찬가지로 중도매인 등을 통해 수산물을 구매

(3) 위판시설의 신설 및 개선

- 이는 앞선 어가 제고나 물량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위판장 시설의 신설 내지는 현대화·규모화와 이에 관련된 제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음
 - 최근 활어 위판시설에 대한 생산자의 요구가 확대되면서 이를 반영한 수협이 상당히 관찰(마산, 진동, 보령, 구룡포, 속초(예정) 등)
 - 위판장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접근성·편의성 등을 개선한 사례로는 삼천포와 경주(진행 중) 등이 있는데, 삼천포수협의 경우 대형 어선들이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입로 정리 등 관련시설을 정비하고, 신규사업(오징어가공단지)의 유치를 추진

(4) 위판거래 참여자의 건전성 확보

- 위판장 거래의 또 다른 주체인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자와 관련하여 사례로 살펴본 수협 중에서는 거래의 안전·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실 중도매인을 정리하거나 한도내 거래를 엄격히 준수하는 사례(진동, 부산, 죽왕, 대포 등), 그리고 어대금 결제의 안전성을 수협이 보장하는 사례가 있음
 - 하동수협 : 양식수산물 위판사업과 관련해 어대금 결제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지정거래인 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자의 어대금 결제를 수협이 담보
- 위판거래 위축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는 중도매인의 신규 확충에 노력하는 수협도 관찰되었음
 - 삼천포수협 : 현재 수산자원의 분포가 2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변화하면서 신규어종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을 신규로 영입하고 기존어종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에 대해 신규어종을 취급토록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자금력이 있는 중도매인을 신규로 영입
 - 부산시수협 : 2008년 어업인의 요청으로 시작된 아귀위판의 신규 실시와 관련해 기존 아귀 유통업자들을 중도매인으로 영입

(5) 위판서비스 강화

- 생산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인적 유대감을 강화하거나 관련 인력의 쇄신을 통해 서비스를 강화한 사례로, 부산수협, 신안군수협 등이 이에 해당됨
- 수집·위판서비스 확대로 생산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조사대상 수협 중에서는 보령수협의 사례를 들 수 있음

- 보령수협 : 서해안의 멸치 생산이 증가하자 건멸치 위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직원들이 직접 생산업자를 방문하여 포장 및 벤딩 작업을 지원하여 물량을 전량 수집
- 그리고 위판사업은 아니지만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윈윈효과를 누리하고자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조사됨
 - 구룡포수협 : 외국인선원 숙소 건립, 어려운 조합원에 대한 쌀 지원 등 조합원 복지 향상 지원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
 - 진동수협 : 활어위판시설 도입(2009년 6월)으로 위판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양식활어 구매로 구색을 갖추어 인근 활어횃집 등 판매처를 확보
 - 대포수협 : 지역의 관광기능을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역 활어판매상인의 요청에 따라 타지역 양식활어의 거래에 수협이 참여, 유통업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관리

2) 부산·경남지역

(1) 진해시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²⁵⁾

○ 위판사업 역사

- 진해시 수협은 1922년 진해어업조합으로 설립되어 1977년 진해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음
- 진해시 수협은 현재 속천위판장(2008년 신축 이전)과 제덕위판장(1991년 개설) 2개 위판장을 운영 중임
- 주로 활어, 선어를 위판하며 주요어종으로는 문어, 대구, 봉장어, 가자미 등임

속천위판장



- 소속조합 : 진해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진해시 대죽동45번지
- 개 장 일 : 2008. 12 3
- 위판장지정일 : 2008. 4. 3
- 주요취급부류 : 활어, 선어류
- 주요어종 : 도다리, 가자미

25) 이하 본문에 게재된 각 위판장의 전경사진 및 기본사항은 수협중앙회의 '2009년 위(공)판장 현황(2010.5.)'을 이용하였음

제덕위판장



- 소속조합 : 진해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진해시 제덕동 174-52
- 개 장 일 : 1991. 11. 28
- 위판장지정일 : 2008. 4. 3
- 주요취급부류 : 활어류
- 주요어종 : 송어, 뽕락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속천위판장은 2008년 신축된 위판장으로 대지 1,608㎡, 건물 1,000㎡ 규모로 주차장,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등 주요시설과 제빙, 저빙, 냉장 등의 이용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음
- 1991년 개장한 제덕위판장은 대지 577.5㎡, 건물 188.1㎡ 규모로 주차장, 위생시설, 사무실 등의 주요시설은 있지만 이용가공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위판장 관계자 현황은 중도매인 18명, 매매참가인수 2명, 경매사 2명으로 구성됨
- 위판수수료의 경우 선어, 활어, 냉동은 4.5%, 패류는 0.5%, 2%, 4% 수준으로 관내외 어업인들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음

【표 5-7】 진해시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위판장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물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유개	무개					
속 천	1,608	1,000	536.5		608		28	82	26
제 덕	577.5	188.1	141.9		99		6.6	16.5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5-8】 진해시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구 분	제빙		저빙		냉동		냉장	
	T/D	㎡	M/T	㎡	T/D	㎡	M/T	㎡
속 천 위판장	13	70.06	220	67.4			2,080	1,284.18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5-9】 진해시수협외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비고
		자격증 보유	자격증 미보유	
18	2	2	-	속천위판장, 제덕위판장 공동 운영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5-10】 진해시수협외의 위판수수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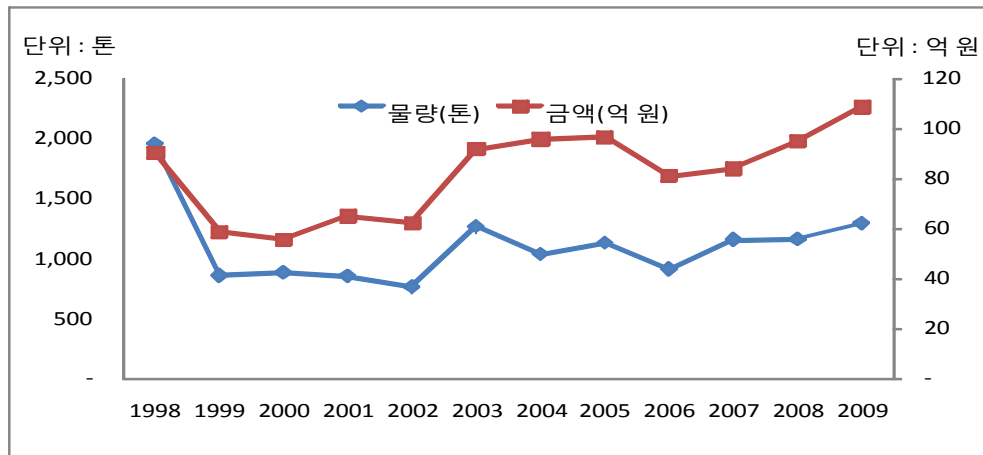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4.5	4.5	4.5	0.5, 2, 4		4.5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 1997년 이후 위판물량 및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후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물량은 연평균 3.7%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연평균 1.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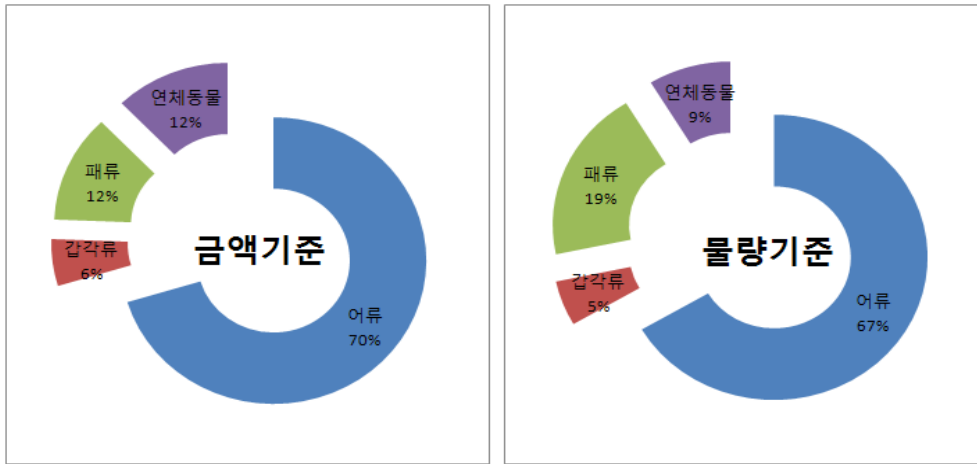
【그림 5-9】 진해시수협외의 수산물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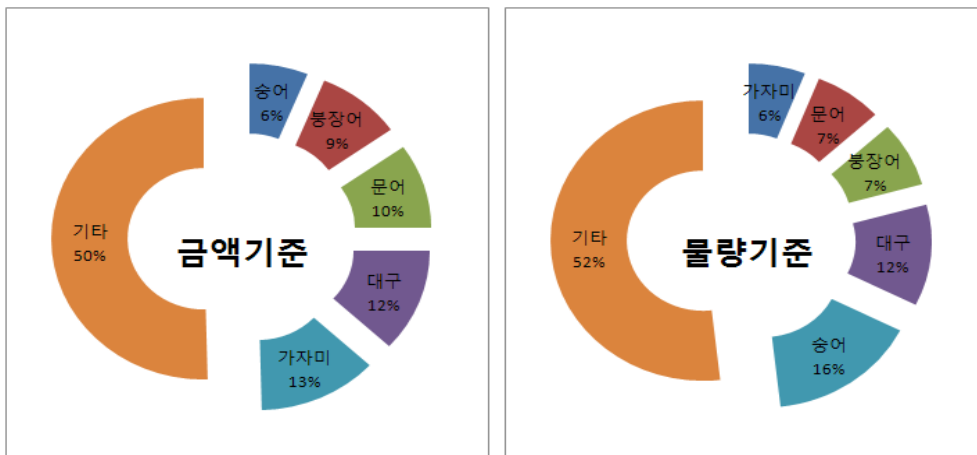
- 진해시수협은 어류 중심으로 위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연체동물, 패류 등도 위판하고 있음
- 진해시수협의 주요 위판 어종은 가자미, 대구, 문어, 붕장어, 송어 등으로 이들 6개 품목이 전체 위판액의 50%를 차지함

【그림 5-10】 진해시수협외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그림 5-11】 진해시수협외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 신규어종 위판

- 진해시수협은 1997년 이후 위판물량 감소함에 따라 2003년부터 대구, 감성돔, 노래미 등 신규어종 위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표 5-11】 진해시수협외의 신규어종 위판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 구	4	12	9	9	12	16	12
감성돔	1	2	3	3	2	2	3
노래미	1	3	3	4	4	2	3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 특히 대구의 경우 진해와 인접한 거제도 송진리 일대에서 생산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 조업어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2003년 4억 원에서 2009년 12억 원의 위판실적을 기록함
- 위판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통인의 매매참가인 참여 유도
 - 진해수협은 예전부터 거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판이 이루어지고 타지역 어민들의 신규위판은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관내 지역 어민들의 위판은 50% 정도로 나머지 50%는 사매매로 이루어지고 있음
 - 관내 지역의 위판율을 높이기 위해 사매매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해시수협 매매참가인으로 참여시키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가공공장 설립 및 위판장 신규 건립(80억 원(자담 30억 원, 보조 50억 원))
 - 진해수협은 2010년 1월 가공공장을 완공하여 운영 중임. 현재 가공공장 운영은 초기단계로 뚜렷한 실적은 없는 상태이나 2~3년 후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진해시수협(속천위판장)은 위판장, 수협건물, 가공공장 등을 매립지에 신규 건설하여 2008년 12월부터 신규위판장에서 위판을 실시하고 있음

【표 5-12】 진해시수협 속천위판장의 위판 실적

단위 : 톤, 백만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속천위판장	611	4,445	755	5,587	838	6,397	2007년 대비 물량 37.2%, 금액 43.9% 증가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신규 위판장의 경우 넓은 주차장, 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실, 중도매인사무실 등) 등이 구비되어 있어 위판장 시설 개선으로 인한 위판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2007년 대비 물량 37.2%, 금액 43.9% 증가)

③ 시사점

- 수산자원 변동으로 인해 생산이 증가한 신규어종에 대한 위판노력 강화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연근해 인근 수산자원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산자원 변동은 산지 수협 위판사업의 위험요인이자 기회요인임
 - 즉, 수산자원 변동으로 인해 기존에 생산되는 어종이 감소하여 위판이 감소할 수도 있고 신규어종 생산 증가로 인해 위판이 증가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산지수협에서는 기존 어종의 위판 제고뿐 만 아니라 수산자원 변동으로

인해 신규로 생산이 증가하는 어종을 위판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위판장 시설 보수 및 개선 강화

- 현재 대부분 산지위판장의 경우 노후화되어 있으며, 주차장, 위생시설, 중도매인 사무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추지 못해 위판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데, 진해시 속천위판장의 경우 시설 개선으로 인한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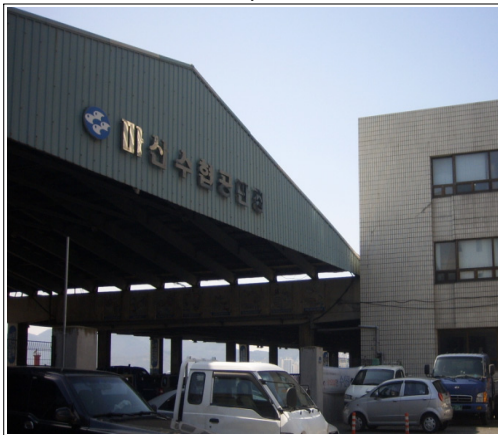
(2) 마산시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마산시 수협은 1944년 마산어업조합으로 설립되어 1989년 마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음

본소위판장



- 소속조합 : 마산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마산시 동성동 310-1
- 개 장 일 : 1991. 5. 31
- 위판장지정일 : 2008. 4. 3
- 주요취급부류 : 냉동 및 선어
- 주요어종 : 갈치, 삼치, 조기 등

원전위판장



- 소속조합 : 마산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마산시 구산면 22-15
- 개 장 일 : 2009. 10. 1
- 위판장지정일 : 2009. 10. 1
- 주요취급부류 : 활어 및 패류
- 주요어종 : 도다리, 문어 외 잡어

- 마산시수협은 현재 본소위판장(1991년 신축 이전)과 원전위판장(2009년 개설)을 운영 중임
- 본소위판장은 주로 조기, 감치, 삼치 등의 선어류를 위판하고, 원전위판장은 도다리, 문어, 잡어 등의 활어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본소위판장은 1991년 개설된 위판장으로 대지 7,175㎡, 연면적 7,623㎡ 규모로 주차장,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등 주요시설과 제빙, 저빙, 냉동, 냉장 등의 이용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음
 - 2009년 개장한 원전위판장은 대지 4,180㎡, 건물 432㎡ 규모로 주차장, 위생시설, 사무실 등의 주요시설은 있지만 이용가공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3】 마산시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위판장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물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유개	무개					
본 소	7,175	7,623	5,141	2,034	1,785	360	360	165	3,263
원 전	4,180	432	432		30		30	15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5-14】 마산시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구 분	제빙		저빙		냉동		냉장	
	T/D	㎡	M/T	㎡	T/D	㎡	M/T	㎡
본 소 위판장	60	407	600	314	30	106	2,300	1,613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장 관계자 현황은 본소위판장의 경우 중도매인 67명 경매사 3명, 원전위판장은 중도매인 34명, 경매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15】 마산시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비고
			자격증 보유	자격증 미보유	
본 소	67	-	3	-	
원 전	34	-	1	-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수수료의 경우 본소위판장, 원전위판장 모두 어종에 관계없이 4% 수준임

【표 5-16】 마산시수협외의 위판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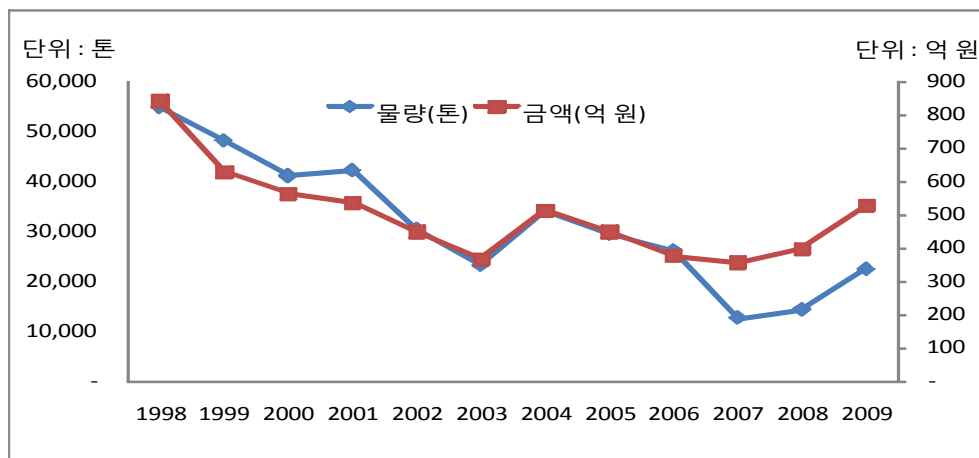
단위 : %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4%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 1998년 이후 위판물량 및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07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9년 마산시수협 위판실적은 22,368톤, 527억 원으로 1998년 대비 물량과 금액이 각각 59.2%, 37.3% 감소함
- 1998년 이후 마산시수협외의 위판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어업구조조정(한중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저인망 및 안강망 어선세력 감소에 기인함
- 2007년 이후 위판실적이 증가한 것은 연안어업의 위판 증가와 삼치, 조기 등의 일본 수출 증가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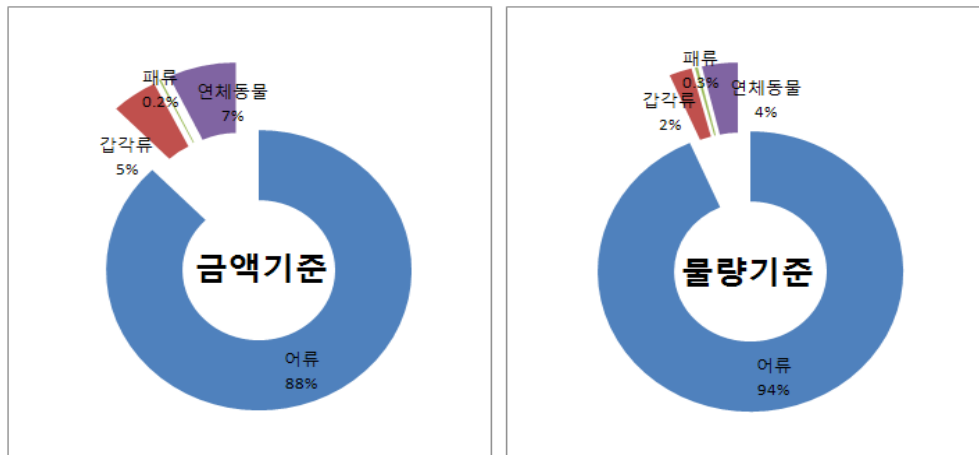
【그림 5-12】 마산시수협외의 수산물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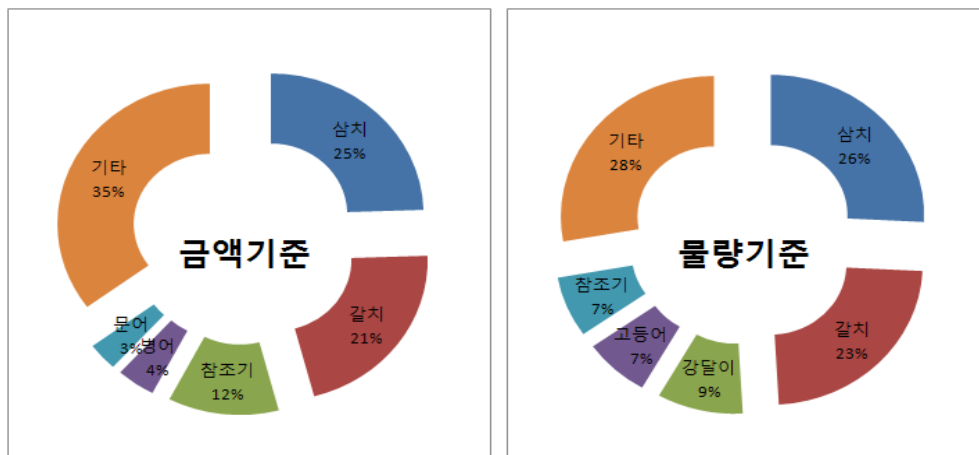
- 마산시수협외는 어류 중심으로 위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연체동물, 갑각류 등도 위판하고 있음
- 주요 위판 어종은 삼치, 갈치, 참조기 등으로 이들 3개 품목이 전체 위판액의 58%를 차지함

【그림 5-13】 마산시수협이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그림 5-14】 마산시수협이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 신규위판장 개설

- 마산시수협은 정부의 어업구조조정 사업에 따른 저인망 및 안강망 어선세력 감소 등 수산업에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활어를 취급할 수 있는 신규 위판장(원전위판장)을 개설함
- 원전위판장은 주로 활어와 패류를 취급하며 2009년 10월 개장한 후 2달 동안 50톤, 3억 6천만 원의 위판실적을 기록하였고, 2010년 위판사업계획은 875톤, 26억 원으로 마산시수협 위판사업 운영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표 5-17】 마산시수협 원전위판장의 위판실적 및 2010년 사업계획

단위 : 톤, 백만 원

2009년		2010년 사업계획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50	360	875	2,600	2009년 실적은 10~12월 3개월 실적임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신규어종 위판 및 양식 혼합 위판 유도

- 마산시수협은 1997년 이후 위판물량 감소함에 따라 2003년부터 꼴뚜기, 꼼치, 민꽃게, 망치고등어 등 신규어종 위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특히 꼴뚜기와 꼼치의 경우 2009년 현재 9억 원 이상의 위판실적을 기록함

【표 5-18】 마산시수협의 신규어종 위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꼴뚜기	93	257	321	385	313	546	923
꼼 치	-	-	863	619	735	1,064	950
민꽃게	-	-	-	-	-	-	343
망치고등어	-	-	-	-	-	-	14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 마산시수협은 연근해 수산물의 신규어종 위판 노력뿐 만 아니라 약 4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양식 혼합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힘쓰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양식 혼합 위판사업에 있어 중도매인들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위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양식 혼합을 위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③ 시사점

○ 수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위판사업 실시

- 최근 대내외적으로 한중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정부의 저인망 및 안강망 어선감척사업,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TAC 품목 지정 등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저인망 및 안강망 어선의 위판에 의존하던 위판형태로는 위판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음
- 이에 기존 위판 어종뿐 만 아니라 신규어종에 대한 위판 노력을 강화해 활어 취급이 가능한 위판장을 신규 개설하는 등의 노력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3) 하동군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하동군수협은 1922년 하동해태어업조합으로 설립되어 1977년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음
- 하동군수협은 현재 본소위판장(2000년 신축 이전)과 갈사위판장(1993년 개설), 재첩위판장(1992년 개설)을 운영 중임
- 본소위판장과 갈사위판장은 주로 송어, 감성돔, 전어, 갑오징어 등 활어를 위판하고, 재첩위판장은 재첩을 위판하고 있음

본소위판장



- 소속조합 :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 위치 :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11
- 개 장 일 : 2000. 10. 17
- 위판장지정일 : 2008. 4. 3.
- 주요취급부류 : 활어, 패류
- 주요어종 : 송어, 감성돔, 낙지, 전어, 농어

갈사위판장



- 소속조합 :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 위치 :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47-12번지
- 개 장 일 : 1993. 12. 26
- 위판장지정일 : 2008. 4. 3
- 주요취급부류 : 활·패류
- 주요어종 : 송어, 넙치, 전어, 갑오징어, 게

재첩위판장



- 소속조합 :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 위치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5-7번지
- 개 장 일 : 1992. 10. 26
- 위판장지정일 : 2008. 4. 3
- 주요취급부류 : 재첩
- 주요어종 : 재첩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본소위판장은 2000년 신축된 위판장으로 대지 300㎡, 연면적 261㎡ 규모로 주차장, 오물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음

【표 5-19】 하동군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위판장 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 물 처리장	위 생 시 설	사무실	중매인 사무실
			유개	무개					
본 소	300	261	261		496	10	17	13	94
갈 사	물량장			180.7			7	174	
재 첩	물량장			311	40.4		45	220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갈사위판장은 1993년 개장한 물량장으로 위생시설과 사무실을 갖추고 있음
- 재첩위판장은 1992년 개장한 물량장으로 주차장, 위생시설, 사무실을 갖추고 있음
- 위판장 관계자 현황을 살펴보면 본소위판장은 중도매인 27명, 경매사 1명, 갈사 위판장은 중도매인 10명, 매매참가인 10명, 경매사 1명, 재첩위판장은 중도매인 6명, 매매참가인 6명, 경매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20】 하동군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비고
			자격증 보유	자격증 미보유	
본 소	27	-	1	-	
갈 사	10	10	-	1	
재 첩	6	6	-	1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수수료의 경우 활어와 패류(재첩 포함)는 5%, 건어는 2.7% 수준임

【표 5-21】 하동군수협 위판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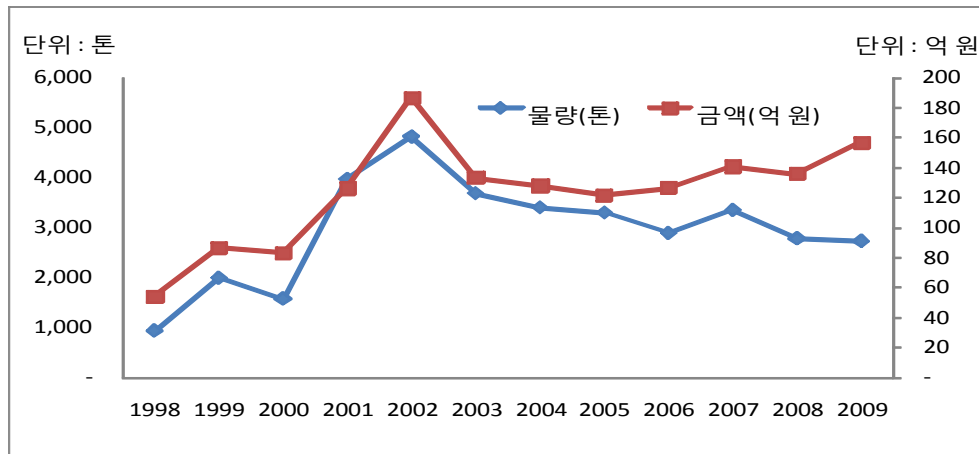
단위 : %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	5	-	5	2.7	-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 하동군 수협의 위판실적은 1998년 자유판매제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를 보여 2002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위판물량은 정체 내지 소폭 감소, 위판금액은 정체 내지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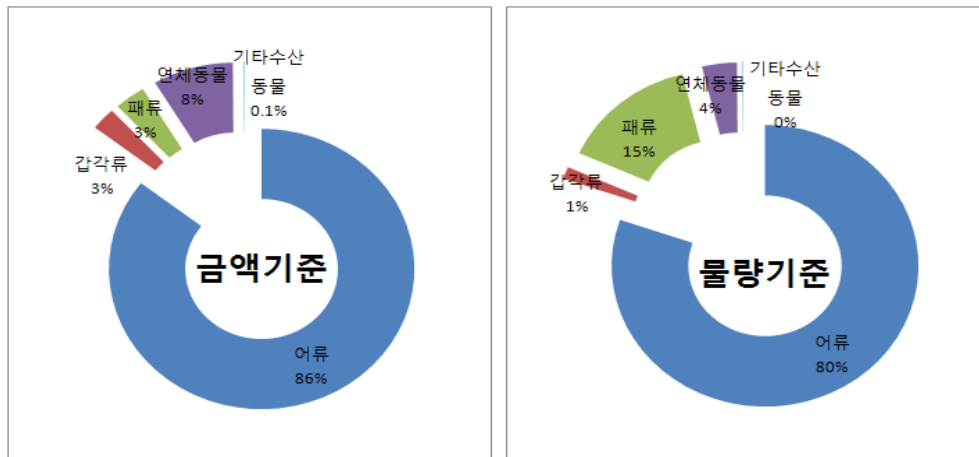
【그림 5-15】 하동군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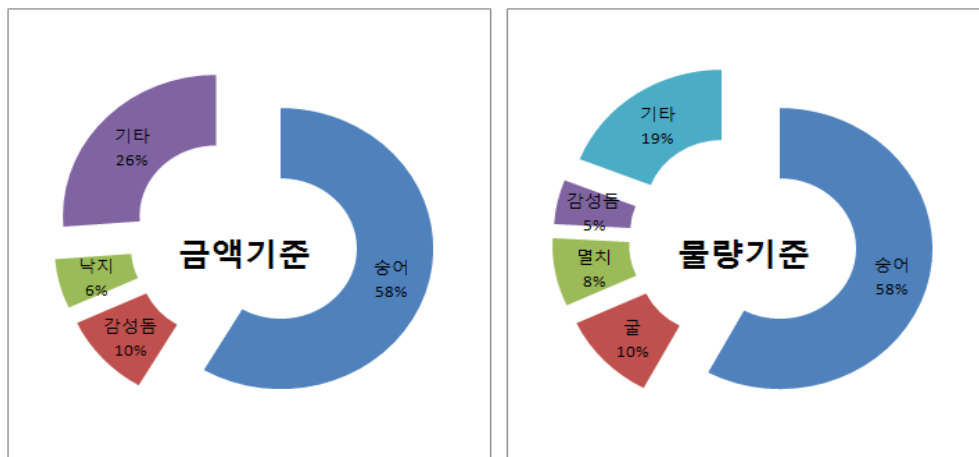
- 1998년 이후 2002년 까지 위판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넙치, 조피복락, 숭어 등의 양식 어종의 위판실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 주요 양식 어종 위판금액 변화(1998년→2002년) : 넙치(37백만 원→519백만 원), 조피복락(6억 원→ 27억 원), 숭어(2억 원 → 59억 원)
- 하동군수협은 어류 중심으로 위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연체동물, 패류 등도 위판하고 있음
- 주요 위판 어종은 숭어, 감성돔, 낙지 등으로 숭어의 위판비율이 58%를 차지함

【그림 5-16】 하동군수협이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5-17】 하동군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내부자료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 수협직원들의 자체적인 노력

- 하동군수협은 위판율을 높이기 위해 수협 유통과장이 직접 경매사로 참여하여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어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
- 그러나 자연산 수산물의 경우 하동군 수역이 협소하고 자원량 감소로 인해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위판실적이 감소하였지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약 70%를 위판하고 있음

○ 관내 양식 어종을 적극적으로 위판

- 하동군 수협은 입지적으로 불리한 자연환경과 수산자원 감소로 인하여 위판사업이 위축되자 하동연안이 축양(해상가두리)조건이 뛰어난 점을 고려하여 1990년대

- 후반부터 참승어 어종을 위주로 해상가두리 축양 사업을 개척함
- 축양사업은 많은 자금과 기술, 유통에서 문제가 있지만 하동군 수협이 전폭적인 지원과 수협, 어업인, 유통인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성공적으로 위판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수협의 적극적인 축양어업인 지원 사업과, 신규 해상가두리어장 개발로 전통적인 어업기술을 갖고 있는 유희어업인들의 어업생산활동 참여 유도로 인해 최근 연간 2,500~3,000톤 정도의 양식물량이 위판되고 있음
 - 승어 위판의 경우 1998년 2억 원 수준에서 2009년 85억 원으로 34배 증가하였으며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총 생산량의 70% 이상을 위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5-22】 하동군수협의 승어 위판액 추이

단위 : 톤,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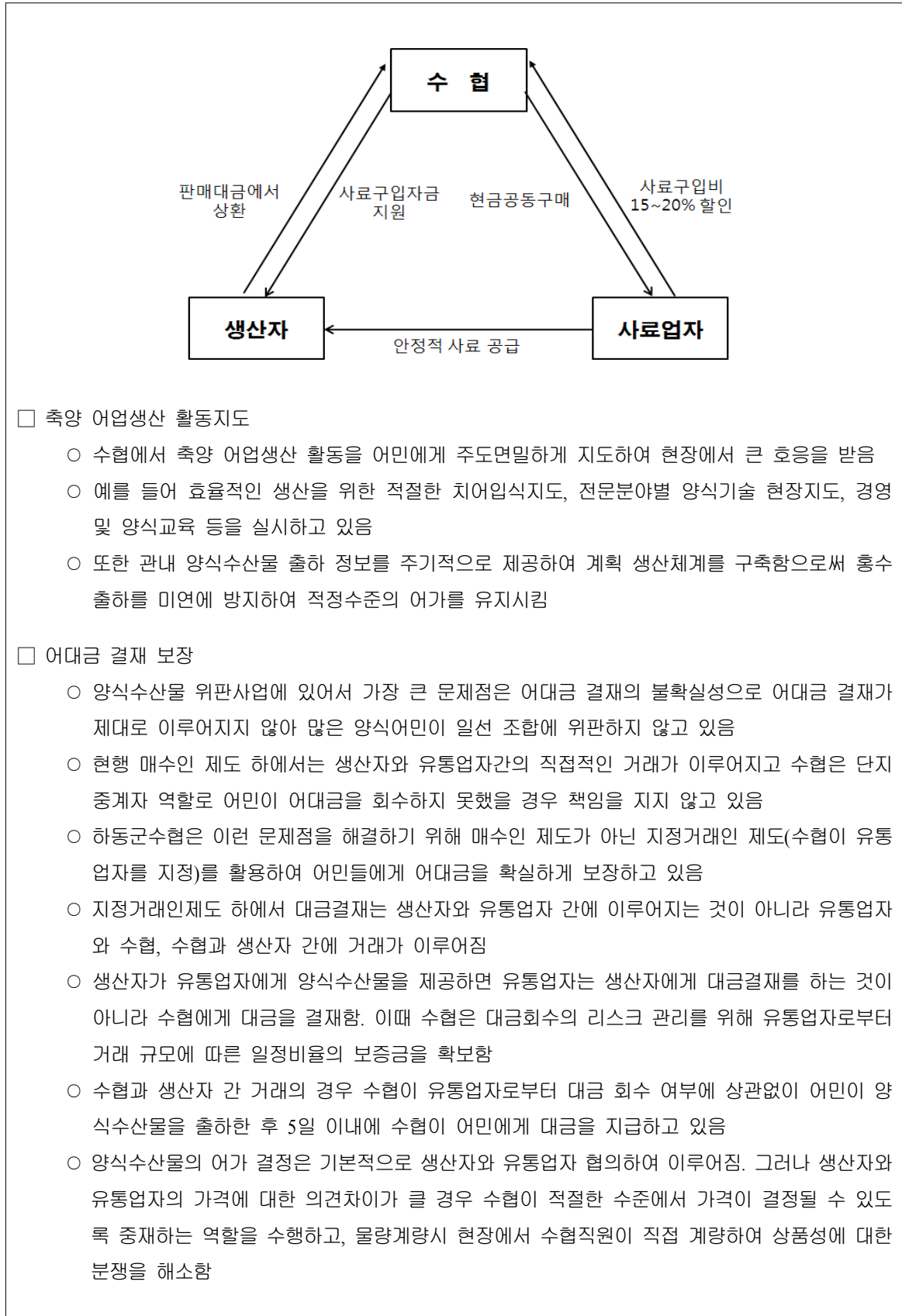
구 분	1998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
위판물량	40	1,553	1,585	1,839	1,460
위판금액	246	5,902	5,912	8,435	8,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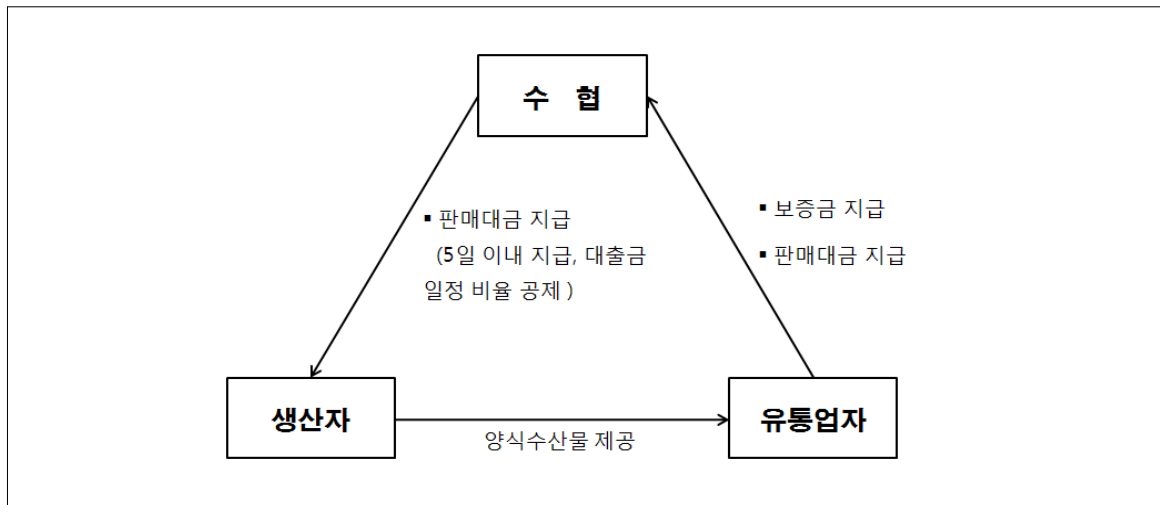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하동군수협의 해상가두리 축양 사업 지원 사례

□ 축양사업자금의 안정적 공급

- 축양사업은 다른 어업에 비해 소요자금이 고액(1인당 최소 5억 원 내지 15억 원)으로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으로는 축양사업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하동군수협은 기존 담보제도에서 벗어나 실정에 맞는 담보제도를 운영함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에 맞추어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에 준하는 금액을 근거로 대출해 줌. 또한 어업권을 담보로 한 대출 뿐 만 아니라 축양 중에 있는 어류를 대상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즉, 하동군수협은 관내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자금, 일반사업자금 등을 기본적으로 유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축양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운영자금 중 사료구입자금(1인당 1억 원내지 10억 원)을 부동산과 함께 축양어류를 정식 담보화하여 저리(6.5% : 일반시중은행 금리 9%)로 지원함
- 축양사료 구입에 있어 어민들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협이 현금공동구매(약 100억 원)를 실시하여 사료비를 15~20% 가량 절감함
- 한편 어민들에 대한 수협의 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리스크 관리는 어민들이 양식수산물을 출하할 때 판매대금에서 대출금이 있는 어민들의 경우 일정부분을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함





○ 신규어종 위판

- 하동군수협은 2002년 이후 위판물량 감소함에 따라 2004년부터 가자미, 감성돔, 민꽃게 등 신규어종 위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특히 감성돔의 경우 하동군 관내에서 양식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성돔을 적극적으로 위판하여 2004년 8백만 원에서 2009년 14억 원으로 약 189배 증가함

【표 5-23】 하동군수협의 신규어종 위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자미	297	41	423	220	323	297
감성돔	8	675	1,060	1,660	951	1,421
민꽃게	-	-	-	-	58	15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③ 시사점

○ 양식수산물의 위판 제고를 위한 활동

- 최근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과 양식기술 발달로 인하여 양식수산물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근해 어획물과 비교해 비계통출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계통출하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4) 삼천포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삼천포수협은 1926년 삼천포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되어 1994년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음
- 삼천포수협의 위판사업은 1965년 선어 위판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971년 건어위판장 신축, 1985년 활어위판장을 개설하여 건어 및 활어까지 위판하기 시작함
- 현재 삼천포수협은 선어(1965년 개설), 활어(2004년 신축 이전), 패류(1985년 개설), 건어(2005년 신축 이전) 4개 위판장을 운영 중임
- 주요 위판 어종으로 선어위판장은 고등어, 오징어, 활어위판장은 조피볼락, 열기, 패류위판장은 개조개, 낙지, 건어위판장은 건멸치 등이 위판되고 있음

선어위판장



- 소속조합 :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사천시 서동 311-17
- 개 장 일 : 1965. 12. 25
- 위판장지정일 : 2008. 4. 3
- 주요취급부류 : 선어류 외
- 주요어종 : 고등어, 오징어, 삼치

활어위판장



- 소속조합 :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사천시 서동 322-61
- 개 장 일 : 2004. 4. 21
- 위판장지정일 : 2008. 4. 3
- 주요취급부류 : 활어류 외
- 주요어종 : 조피볼락, 열기

패류위판장



- 소속조합 :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사천시 서동 311-17
- 개 장 일 : 1985. 11. 1
- 위판장지정일 : 2008. 4. 3
- 주요취급부류 : 패류, 연체동물 외
- 주요어종 : 개조개, 낙지, 문어

건어위판장



- 소속조합 :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사천시 동금동 579-7
- 개 장 일 : 2005. 6. 13
- 위판장지정일 : 2008. 4. 3
- 주요취급부류 : 건어류 외
- 주요어종 : 건멸치, 건홍합, 건새우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1965년 개설된 선어위판장은 1996년 개·보수되었으며 대지 11,156㎡ 규모로 주차장, 오물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등 주요시설과 냉동, 냉장 등의 이용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음
- 활어위판장은 1985년 개장한 후 2004년 신규위판장으로 이전하였으며 대지 432㎡, 연면적 4,108㎡ 규모로 주차장,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등의 주요시설을 구비하고 있음
- 1985년 개장한 패류위판장은 대지 1,998㎡ 규모로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음
- 건어위판장은 1971년 개장한 후 2005년 신규위판장으로 이전하였으며 대지 654㎡, 연면적 693㎡ 규모로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음

【표 5-24】 삼천포수협 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m²

구 분	위판장 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 물 처리장	위 생 시 설	사무실	중매인 사무실
			유개	무개					
선 어	11,156		3,646	1,000	1,206	165	49	49	49
활 어	432	4,108	441		3,130		66	82	41
패 류	1,998		932				16	33	33
건 어	654	693	661				16	49	49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5-25】 삼천포수협 의 가공시설 현황

구 분	제빙		저빙		냉동		냉장	
	T/D	m ²	M/T	m ²	T/D	m ²	M/T	m ²
선 어 위판장					60	195	3,000	2,112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장 관계자 현황은 선어위판장의 경우 중도매인 28명, 경매사 2명, 활어위판장은 중도매인 19명, 경매사 2명, 패류위판장은 중도매인 17명, 경매사 1명, 건어 위판장은 중도매인 31명, 매매참가인 2명, 경매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판수수료의 경우 패류와 건어의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선어, 활어, 패류, 건어 모두 4.3% 수준임

【표 5-26】 삼천포수협 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비고
			자격증 보유	자격증 미보유	
선 어	28	-	2	-	
활 어	19	0	2	-	
패 류	17	-	1	-	
건 어	31	2	1	-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5-27】 삼천포수협 의 위판수수료

단위 : %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4.3	4.3	-	4.3(2.15)	4.3(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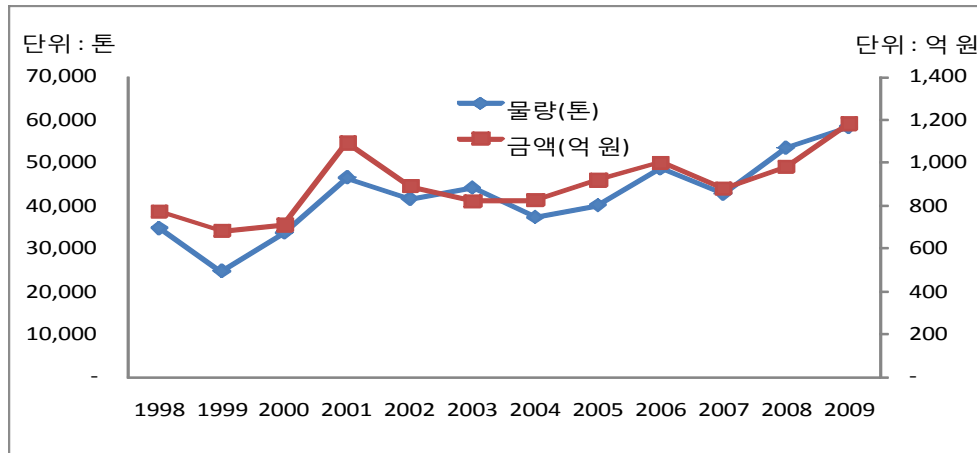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 삼천포수협의 위판실적은 1998년 이후 소폭 감소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8년 이후 위판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이유는 관내·외 대형선망, 대형트롤, 쌍끌이 어선세력 유치로 인한 오징어, 고등어, 삼치 등의 위판 증가에 기인함
- 2009년 위판실적은 58,309톤, 1,181억 원으로 1998년 대비 물량과 금액이 각각 68.2%, 53.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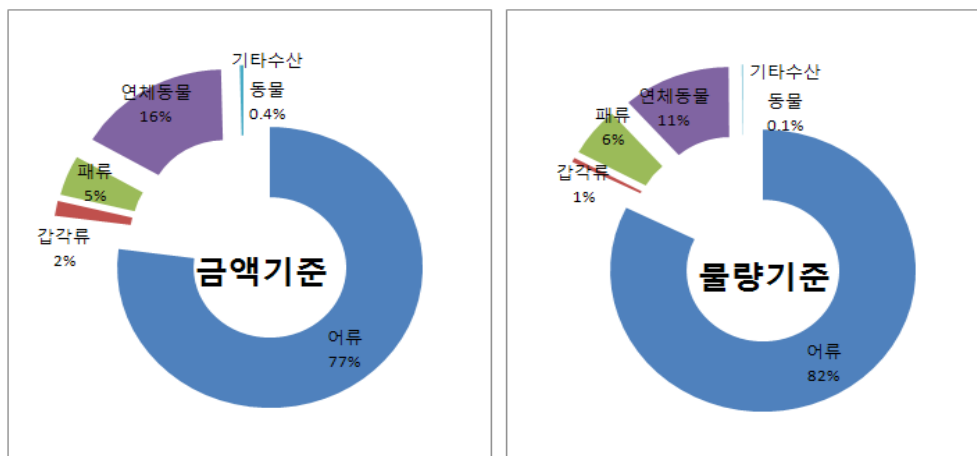
【그림 5-18】 삼천포수협이 수산물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 삼천포수협은 어류 중심으로 위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체동물과 패류 등도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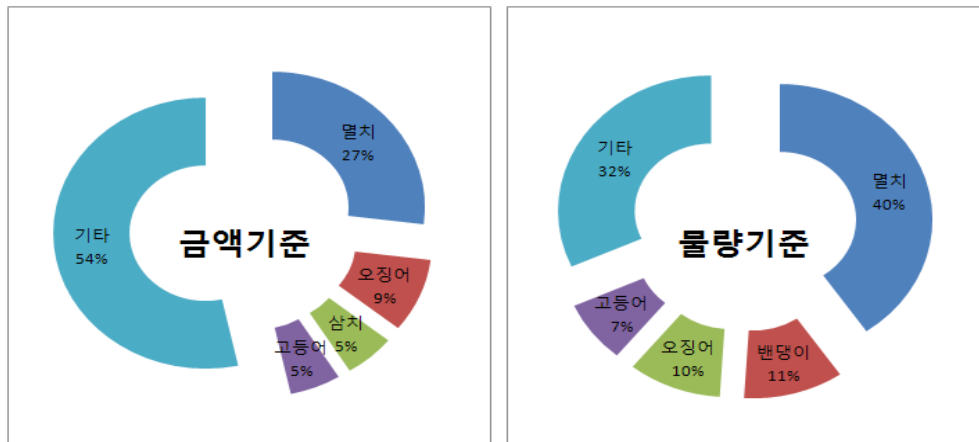
【그림 5-19】 삼천포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 주요 위판 어종은 멸치, 오징어, 삼치, 고등어 등으로 이들 4개 품목이 전체 위판액의 46%를 차지함

【그림 5-20】 삼천포수협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 대형선망, 대형트롤, 쌍끌이 어선세력 유치

- 삼천포수협은 기존 쥐치의 위판실적이 감소하자 대형선망, 대형트롤, 쌍끌이 어선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오징어, 삼치, 고등어 등을 위판함
- 대형선망, 대형트롤, 쌍끌이 어선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삼천포수협 직원과 냉동공장 관계자가 직접 선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들 세력이 삼천포수협에 위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구체적으로 위판장 진입로를 정리하여 대형선박이 위판장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량의 물량이 들어와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위판시설 및 냉동시설과 선별작업능력이 우수한 인력(약 130명)이 갖추어져 있음
- 더욱이 사천시청에 오징어 가공시설 공단 설립을 요청하여 현재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오징어 가공시설 공단이 설립된다면 향후 삼천포수협의 위판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중도매인 정리 및 영입

- 1990년대 삼천포수협 중도매인들은 쥐치를 다루는 중도매인들이 중심이었으나 쥐치위판이 감소하자 활동하지 않는 중도매인들이 많았음
- 이로 인해 위판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삼천포수협은 2000년대 이후 위판이 급증하는 오징어, 고등어, 삼치 등을 취급하는 중도매인 영입 및 기존 쥐치 중도매인들을 오징어, 고등어 등을 취급하도록 전환시켜 위판사업을 활성화시킴
- 특히 중도매인 영입과 관련하여 삼천포 수협은 자금력이 풍부한 중도매인 영입에 노력한 결과 2003년과 2006년 자금력이 풍부한 중도매인을 영입하여 2009년 현재 2명의 중도매인 위판액이 삼천포수협 전체 위판액의 6.6%를 차지함

【표 5-28】 삼천포수협이 대형 중도매인 위판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중도매인 A 위판취급 액	788	3,708	3,300	3,595	4,040	5,277	5,103
중도매인 B 위판취급 액	-	-	-	59	1,289	2,284	2,733
전체 위판액 차지비율(A+B)	1.0	4.5	3.6	3.7	6.1	7.7	6.6

자료 : 삼천포수협

○ 지정경매사제도 운영

- 삼천포수협은 2007년부터 선어(고등어·오징어)에 대해서는 지정경매사제도를 운영하여 2명의 경매사가 각자 지정된 선단에 대해 경매를 실시함
- 지정경매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두 경매사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시켜 적정수준의 어가유지와 선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짐

○ 신규어종 위판

- 삼천포수협은 2003년부터 밴댕이, 노래미, 성대류, 청어, 보구치 등의 신규어종 위판이 증가하고 있음
- 이들 어종이 2003년 이후 위판되고 있는 이유는 어종 표준화 정책에 따라 이들 어류를 기타 어류가 아닌 각 세분화된 어류로 분리되면서 통계로 집계된 것도 있지만 대형기선저인망 등의 대형 어선 유치로 인해 이들 어종의 위판이 증가함
- 특히 거제 매물도 어장에서 많이 생산되는 청어를 위판하여 2003년 2백만 원에서 2009년 826백만 원으로 약 548배 증가한 실적을 보임

【표 5-29】 삼천포수협의 신규어종 위판 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밴댕이	0.4	8	403	559	43	852	3,315
노래미	539	1,334	1,607	1,684	1,517	1,315	981
성대류	34	50	104	181	302	464	625
청 어	2	0	5	7	160	665	826
보구치	-	-	2	1	6	293	653
민꽃게	-	-	-	-	-	374	62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③ 시사점

○ 어선 유치를 위한 제기반의 조성

- 위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선세력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데, 삼천포수협의 경우 대형 어선세력의 위판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량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지 및 냉동 시설 구비, 생필품 및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 등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한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어선세력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우수한 중도매인 영입 및 관리

- 위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민들을 위판사업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판되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중도매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삼천포수협은 위판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도매인의 신규영입이나 취급품목의 전환 유도 등을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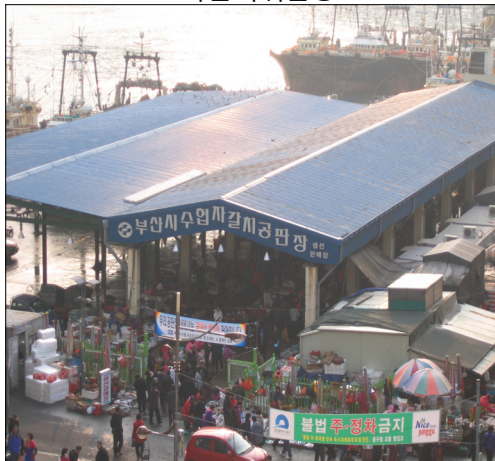
(5) 부산시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부산시수협은 1922년 부산어업조합으로 설립되어 1973년 부산시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음
- 부산시수협은 1966년 자갈치위판장을 개장하면서 위판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남포항위판장(1968년), 다대위판장(1985년), 낙동집하장(1995년), 민락위판장(1999년)을 개설하여 현재 5개 위판장을 운영 중에 있음

자갈치위판장



- 소속조합 :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중구 남포동 5가117-7
- 개 장 일 : 1966. 8. 20
- 위판장지정일 : 2008. 4. 16
- 주요취급부류 : 선어
- 주요어종 : 오징어, 가자미, 아귀

다대위판장



- 소속조합 :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사하구 다대동 798-1
- 개 장 일 : 1985. 1. 10
- 위판장지정일 : 2008. 4. 16
- 주요취급부류 : 선어
- 주요어종 : 고등어, 갈치, 전갱이

남포항위판장



- 소속조합 :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중구 남포동 1가
- 개 장 일 : 1968. 7. 10
- 위판장지정일 : 2008. 4. 16
- 주요취급부류 : 건멸치
- 주요어종 : 건멸치

낙동집하장



- 소속조합 :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강서구 명지
- 개 장 일 : 1995. 1
- 주요취급부류 : 해태
- 주요어종 : 해태

민락위판장



- 소속조합 :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수영구 민락동 113-32
- 개 장 일 : 1999. 7. 27
- 위판장지정일 : 2008. 4. 16
- 주요취급부류 : 활어, 선어
- 주요어종 : 오징어 아귀

- 주요 위판 어종으로는 자갈치위판장은 오징어, 가자미, 아귀 등의 선어, 다대위판장은 고등어, 갈치, 전갱이 등의 선어, 남포항위판장은 건멸치, 낙동집하장은 해태, 민락위판장은 오징어, 아귀 등의 활·선어를 위판하고 있음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1966년 개장한 자갈치위판장은 대지 2,788㎡, 연면적 1,136㎡ 규모로 오물처리장,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음
- 1985년 개장한 다대위판장은 대지 15,020㎡, 연면적 1,717㎡ 규모로 오물처리장, 사무실 등의 주요시설은 있지만 이용가공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968년 개장한 남포항위판장은 대지 656㎡, 연면적 1,349㎡ 규모임
- 1995년 개장한 낙동집하장은 대지 1,936㎡, 연면적 2,310㎡ 규모로 주차장, 사무실, 중매인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음
- 1999년 개장한 민락위판장은 대지 8,990㎡, 연면적 1,050㎡ 규모로 주차장, 사무실이 있음

【표 5-30】 부산시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위판장 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 물 처리장	위 생 시 설	사무실	중매인 사무실
			유개	무개					
자갈치	2,788	1,136	1,111			162		144.99	
다 대	15,020	1,717	1,701			188		50	
남포항	656	1,349	463					196	
낙 동	1,936	2,310	1,936		330			3.3	40
민 락	8,990	1,050	672		241.5			378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장 관계자 현황은 자갈치위판장의 경우 중도매인 34명, 매매참가인 3명, 경매사 4명, 다대위판장은 중도매인 19명, 매매참가인 29명, 경매사 2명, 남포항위판장은 중도매인 65명, 경매사 2명, 낙동집하장은 중도매인 11명, 매매참가인 8명, 경매사 1명, 민락위판장은 중도매인 11명, 경매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31】 부산시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비고
			자격증 보유	자격증 미보유	
자갈치	34	3	3	1	
다 대	19	29	2	-	
남포항	65	-	2	-	
낙 동	11	8	1	-	
민 락	11	-	1	-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수수료의 경우 선어는 3.5~4%, 활어와 건어는 4%, 냉동은 3% 수준임

【표 5-32】 부산시수협의 위판수수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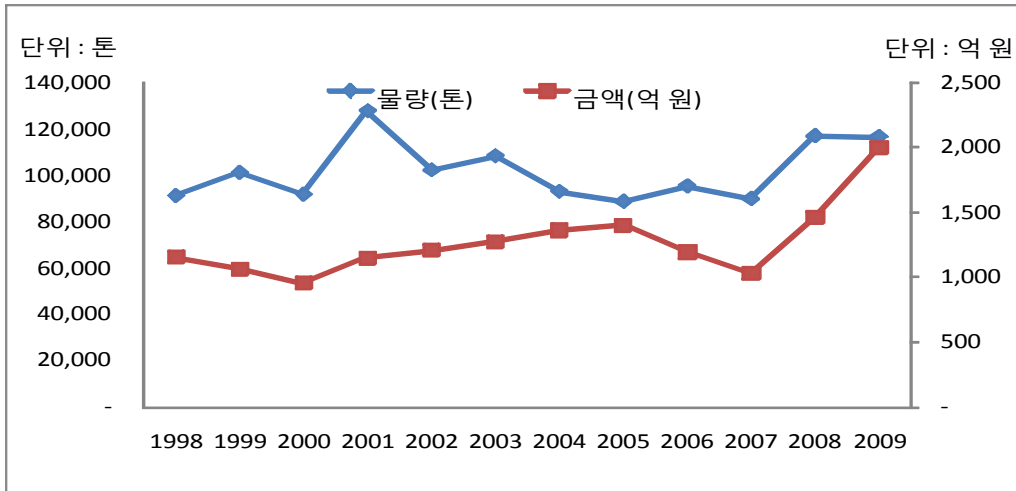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3.5~4	4	3	-	4	-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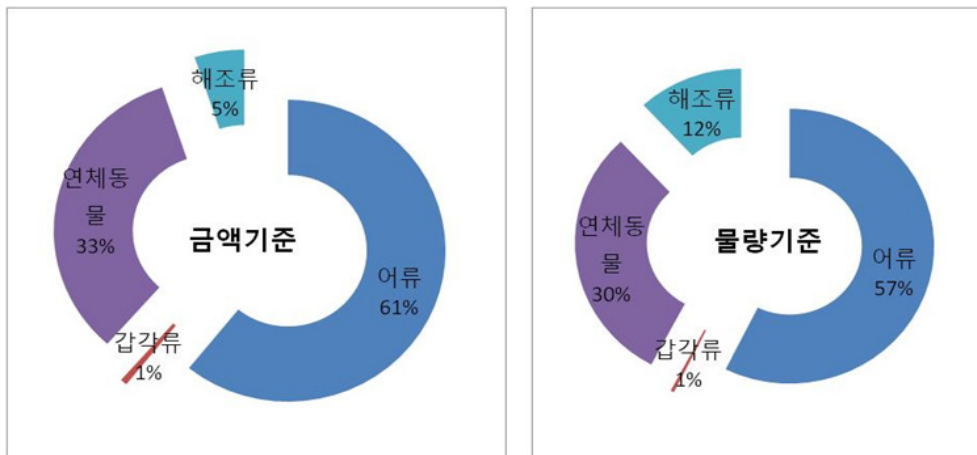
- 1997년 이후 위판물량의 경우 2001년 12만 8천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07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됨
- 위판금액은 2000년 이후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2007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함
- 2009년 위판실적은 11만 7천 톤, 1,996억 원으로 1998년 이후 위판물량은 연평균 2.3%, 금액은 연평균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시수협은 어류와 연체동물 중심으로 위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해조류와 갑각류 등도 위판하고 있음
- 주요 위판 어종은 오징어, 멸치, 고등어 등으로 이들 3개 품목이 전체 위판액의 60% 이상을 차지함

【그림 5-21】 부산시수협이 수산물 위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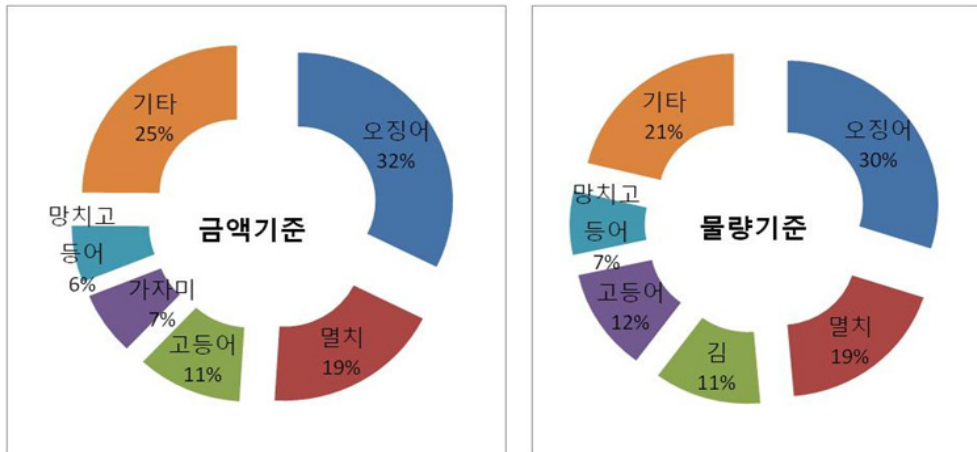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그림 5-22】 부산시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그림 5-23】 부산시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및 시사점

- 부실조합의 위기로 위판 활성화의 계기 마련
 - 부정과 비리사건으로 부실조합이 된 부산시수협은 2007년 10월 현조합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섬
 - 상호금융을 축소하면서 잉여인력을 자갈치, 다대, 민락 위판장에 배치하고, 기존 위판장 직원들을 전보, 구조 조정함
 - 위판에 문외한 이었던 금융직원들이 위판장 현황을 파악하면서 신규 위판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추진
- 다양한 신규 위판 도입
 - 아귀위판, 자연산 활어위판, 자갈치위판장 야간경매 도입으로 위판장 활성화
 - 아귀위판은 2008년에 어업인들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으며, 기존 아귀 유통업자들을 중도매인으로 영입
 - 수요량 기준으로 어업인들과 협력하여 일일 양륙량을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흥수출하를 막고, 가격안정 및 제고

【표 5-33】 부산시수협의 아귀 위판실적

단위 : 톤, 천 원

구 분	물 량	금 액
2008년	1,336	5,443,229
2009년	747	5,470,690
2010.3.31	272	1,350,958

- 활어위판은 2008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공동어시장 인근 방파제에서 활어차를 가지고 위판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어업인들의 반응이 좋아 꾸준히 물량 증가

【표 5-34】 부산시수협의 활어 위판실적

단위 : 톤, 천 원

구 분	물 량	금 액
2008년	741	1,441,426
2009년	1,019	2,446,552
2010.03.31	394	946,309

- 야간경매는 2008년 1월에 자갈치위판장에서 시작되었으며, 관내 어선보다는 기장, 삼천포, 서산 등지에서 차량으로 육상 반입되는 수산물이 대부분임
- 이전에는 야간(pm 10:00)에 무단으로 유통상인들이 자갈치위판장을 점유하여 거래하던 것을 중단시키고, 상인들을 중도매인으로 영입하여 위판함

【그림 5-24】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의 야간경매



- 신규 중도매인의 지속적 영입과 미수금 한도초과 0% 달성
 - 신규 위판 및 능력 있는 중도매인 영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타 수협과 달리 중도매인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2007년 이후 신규 중도매인 27명 영입)
 - 중도매인들과 협력하여 한도를 초과한 낙찰 금지 등의 노력으로 2008년 미수금 0% 목표 달성

(6) 진동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진동수협은 1935년 진동어업조합으로 설립되어 1961년 마산어업조합으로 합병되었으나 2002년 다시 분리되어 진동수산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됨
 - 진동수협은 현재 광암위판장(1979년 개설)과 고현위판장(1980년 개설)을 운영 중임
 - 주로 활어, 선어를 위판하며 주요어종으로는 도다리, 장어, 대구, 전어 등임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광암위판장은 1979년 개장한 위판장으로 대지 1,700㎡, 연면적 673㎡ 규모로 주차장,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등 주요시설과 냉동, 냉장 등의 이용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음
 - 1980년 개장한 고현위판장은 대지 397㎡, 연면적 165㎡ 규모임

광암위판장



- 소속조합 : 진동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마산시 진동면 요장리
- 개 장 일 : 1979. 7. 1
- 위판장지정일 : 2008. 4. 3
- 주요취급부류 : 활 선어
- 주요어종 : 도다리 장어 대구 전어

고현위판장



- 소속조합 : 진동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마산시 진동면 고현리
- 개 장 일 : 1980. 7. 4
- 위판장지정일 : 2008. 4. 3
- 주요취급부류 : 활 선어
- 주요어종 : 갯가재 대구 봉장어등

【표 5-35】 진동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m²

구 분	위판장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물 처리장	위생 시설	사무실	총매인 사무실
			유개	무개					
광 암	1,700	673	673		60		5	30	7
고 현	397	165.28	165.28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5-36】 진동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구 분	제빙		저빙		냉동		냉장	
	T/D	m ²	M/T	m ²	T/D	m ²	M/T	m ²
광 암 위판장					10	40	100	582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장 관계자 현황은 광암위판장은 중도매인 5명, 경매사 1명, 고현위판장은 중도매인 12명, 경매사 1명으로 구성됨
- 위판수수료의 경우 선어, 활어 모두 5% 수준임

【표 5-37】 진동수협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비고
			자격증 보유	자격증 미보유	
광 암	5	-	-	1	
고 현	12	-	-	1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5-38】 진동수협 위판수수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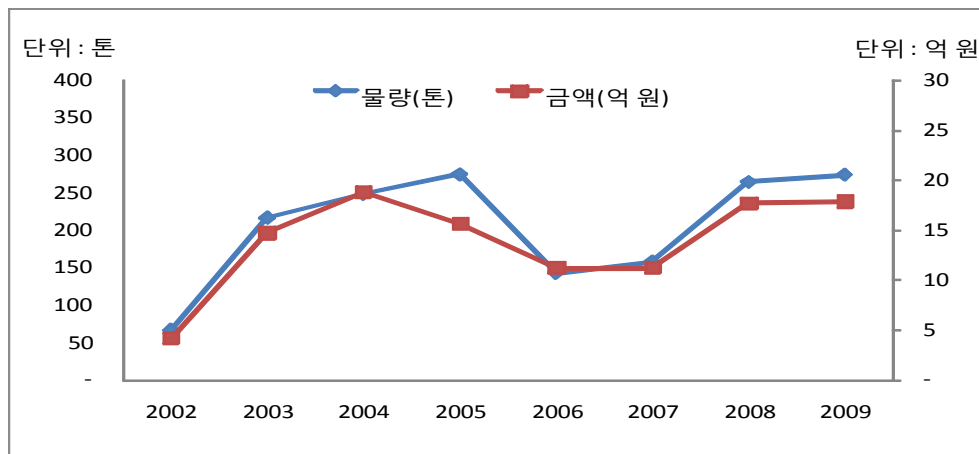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5	5	-	-	-	-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 진동수협의 위판실적은 2002년 개장한 이후 2004년까지 증가 추세 보인 후 감소 하였으나 2007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위판실적은 274톤, 18억 원으로 2002년과 비교해 위판물량은 313%, 위판 금액은 33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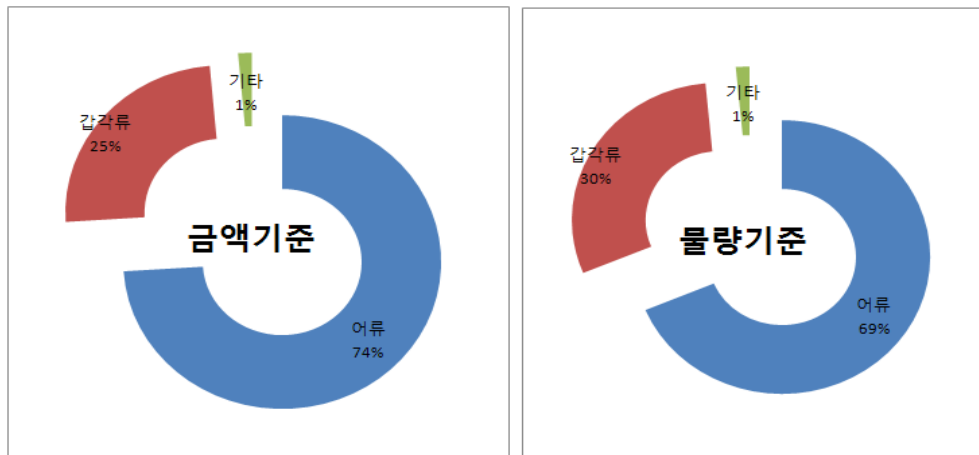
【그림 5-25】 진동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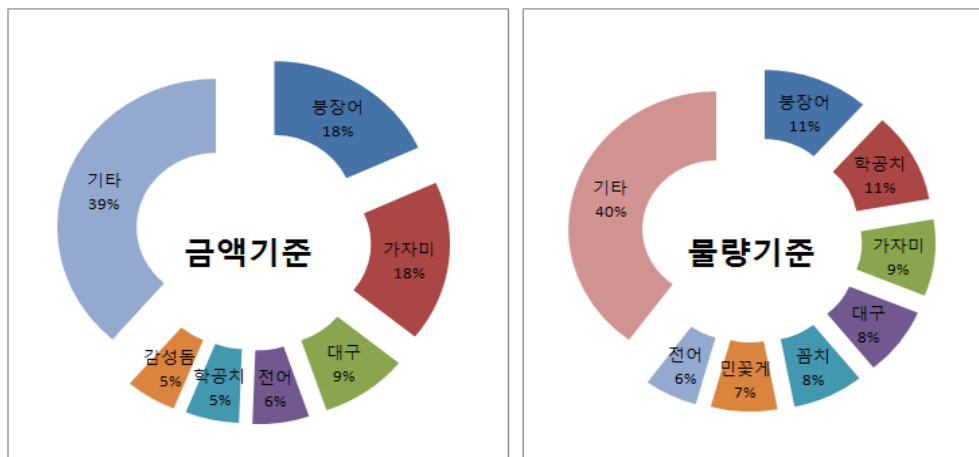
- 진동수협은 어류와 갑각류 중심으로 위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어류의 위판 비중이 높음
- 주요 위판 어종은 봉장어, 가자미, 대구, 전어, 학공치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위판되고 있음

【그림 5-26】 진동수협이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그림 5-27】 진동수협이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및 시사점

○ 활어시설 도입을 통한 활어 신규 위판

- 2009년 경남도의 지원 1억 원, 자비 1억을 투입하여 활어수조, 활어차(4.5톤)를 도입하여 어업인들이 물차에 판매하던 자연산 활어를 위판하도록 유도
- 자연산 활어는 활어차 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장기 외상거래, 대금결제 지연 및 부도, 낮은 어가 등의 문제 상존
- 2009년 6월 활어위판시설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을 수협 위판으로 전환하고, 양식활어 구매로 구색을 갖추어 인근 활어횃집, 주변 시군 활어업자에 판매
- 거래 횃집이나 활어업자는 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거래하고, 위판수수료는 5%로 조합장이 매일 활어위판 등 위판상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열성적으로 진행(2009년 6월~2010년 3월까지 1억 5천만 원 위판)

3) 전라지역

(1) 신안군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신안군수협은 1965년 무안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되어 1977년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음
- 신안군수협의 위판사업은 1978년 목포 건어물 공판장을 인수하면서 시작, 2001년 송공위판장, 2007년 송도위판장을 개설하여 현재 3개 위판장을 운영 중임
- 주요 위판 어종으로 송도위판장은 민어, 새우젓 등 활선어와 젓갈류를 송공위판장은 송어, 물김 등 활선어와 해조류를 건어물위판장은 톳 등을 위판하고 있음

송도위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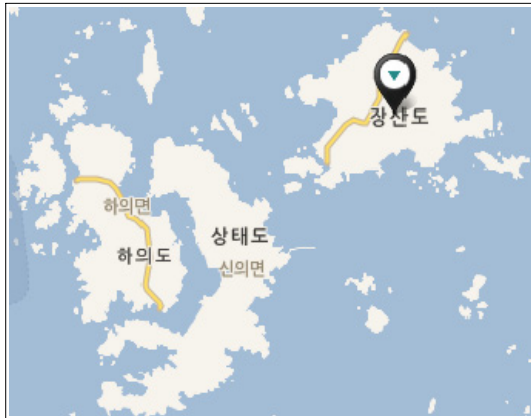
- 소속조합 :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 위치 :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571-15
- 개장일 : 2007. 05. 02
- 위판장지정일 : 2008. 04 .25
- 주요취급부류 : 활선어, 젓갈류
- 주요어종 : 민어, 병어, 새우젓

송공위판장



- 소속조합 :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산215-5
- 개 장 일 : 2001. 04. 18
- 위판장지정일 : 2008. 04 .25
- 주요취급부류 : 활선어, 해조류
- 주요어종 : 민어, 송어, 물김

건어물위판장(현장위판)



- 소속조합 :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 위치 : 장산, 신의, 하의어촌계
- 개 장 일 : 1979. 08. 18
- 주요취급부류 : 건어류
- 주요어종 : 톳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송도위판장은 2007년 신축된 위판장으로 대지 20,420㎡, 연면적 3,952㎡ 규모로 주차장, 오물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음
- 송공위판장은 2001년 신축된 위판장으로 대지 2,644㎡, 연면적 986㎡ 규모로 주차장,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음
- 건어물위판은 특별한 위판장 시설 없이 9월에서 10월 동안 한시적으로 현장경매가 이루어짐

【표 5-39】 신안군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위판장 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 물 처리장	위 생 시 설	사무실	중매인 사무실
			유개	무개					
송 도	20,420	3,952	3,080		659	241	40	692	-
송 공	2,644	986	66	240	632	-	6	30	-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장 관계자 현황은 송도위판장의 경우 중도매인 37명 경매사 3명, 송공위판장은 중도매인 4명, 경매사 2명, 건어물위판장은 중도매인은 없이 경매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40】 신안군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비고
			자격증 보유	자격증 미보유	
송도위판장	37	-	1	2	
송공위판장	4	-	-	2	
건어물위판장	-	-	-	1	9~10월 한시적 경매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수수료의 경우 선어, 활어, 패류, 건어 모두 4.5% 수준임

【표 5-41】 신안군수협 위판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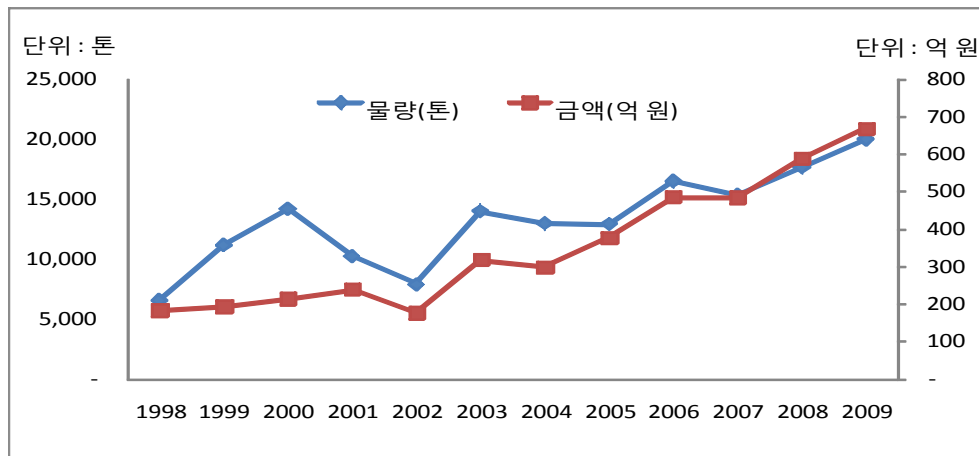
					단위 : %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4.5	4.5		4.5	4.5	4.5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 신안군수협의 위판실적을 살펴보면 1998년 이후 2002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09년 현재 19,934톤, 668억 원으로 1998년 대비 물량은 202%, 금액은 265% 증가함
- 1998년 이후 위판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새우젓 위판 확대뿐 만 아니라 2001년과 2007년 신규 위판장을 개장하여 기존 건어물 위판에서 활어 위판을 시작하였기 때문임
- ※ 어류의 위판금액 변화 : 1998년(8억 원)→2005년(93억 원)→2009년(216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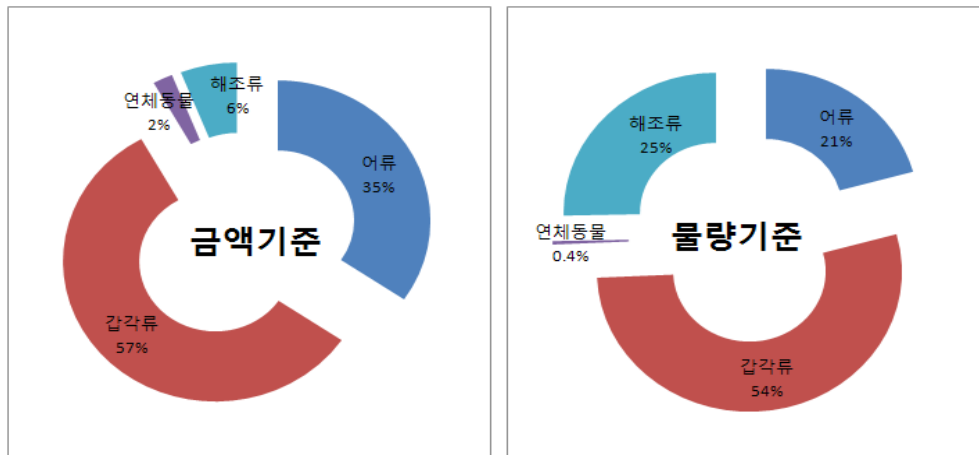
【그림 5-28】 신안군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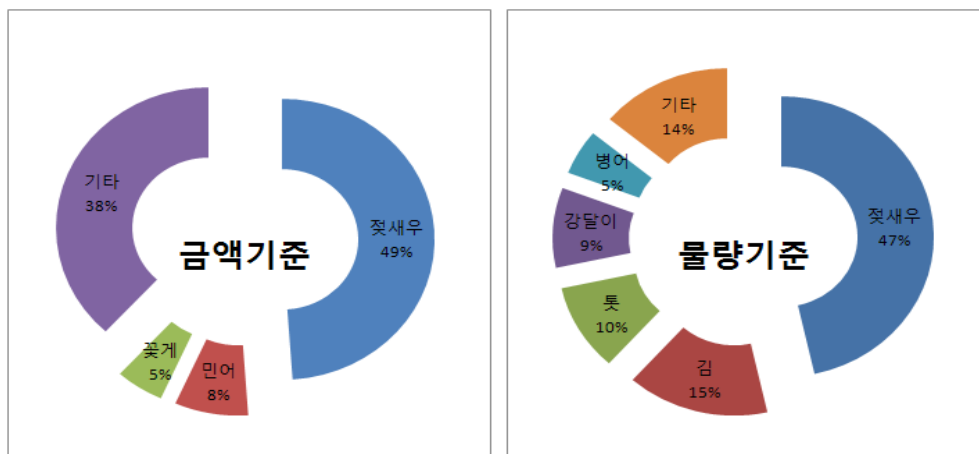
- 신안군수협은 갑각류 중심으로 위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어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 어류의 위판액 차지 비중 변화 : 1998년(4.4%)→2005년(42.4%)→2009년(34.5%)
- 주요 위판 어종은 젓새우, 민어, 꽃게 등으로 젓새우의 위판비율이 약 50% 정도를 차지함

【그림 5-29】 신안군수협이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그림 5-30】 신안군수협이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 어민들이 위판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신안군수협은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위판 할 수 있도록 신안수협브랜드를 활용하여 어가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 신안군 인근 수역은 민어, 병어, 농어 등 각종 어류의 서식지로 신안수협은 수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 생산되는 수산물을 바로바로 위판해서 당일 산지에서 소비지로 이송해 신선도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관리함
- 또한 수협직원들이 어민들이 조업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업을 독려하고 수시로 어민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등 어민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함

- 새우젓을 위판하는 어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기존 주 1회에서 2010년부터는 주 2회로 확대하여 실시함

○ 신규어종 위판 및 위판 회수 증가

- 신안군수협은 초창기 새우젓을 중심으로 위판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997년 이후 선어뿐만 아니라 활어까지 매우 다양한 어종을 위판함
- 새우젓 위판의 경우 기존 주 1회(목요일) 위판을 실시하였으나 2010년부터 주 2회(월요일, 목요일) 위판을 실시하여 어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함

③ 시사점

○ 수산물 품질 관리를 통한 어가 체고 노력

- 신안군수협은 적절한 어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선도 확보는 물론 소비자가 불만족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환불이나 교환해주는 사후 보상체계를 시스템을 마련함
- 또한 매년 병어축제, 새우젓축제 등을 개최함으로써 신안군수협 수산물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함
- 신안군수협은 철저한 수산물 품질관리, 지역특산물 축제를 통한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하여 위판사업 활성화를 추진함

(2) 목포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목포수협은 1937년 목포 어업조합으로 설립되어 1977년 목포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음
- 위판사업은 1979년 새우젓 공판장을 개설하면서 시작하였으며 이후 1896년 종합어시장인 서부공판장을 개설하여 현재 2개 위판장을 운영 중임
- 주요 위판 어종으로 동부위판장은 조기, 갈치, 병어 등 선어류를 서부위판장은 새우젓 등 젓갈류를 위판하고 있음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동부 위판장은 2006년 개장한 위판장으로 대지 2,581㎡, 연면적 1,779㎡ 규모로 위생시설, 사무실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음
- 서부위판장은 1986년 개장한 위판장으로 대지 4,155㎡, 연면적 6,281㎡ 규모로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등의 주요시설과 제빙, 저빙, 냉동, 냉장 등의 이 용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음

동부위판장



- 소속조합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목포시금화동4-2번지
- 개 장 일 : 2006. 09. 01
- 위판장지정일 : 2008. 04. 25
- 주요취급부류 : 선어류
- 주요어종 : 조기, 갈치, 병어 외

서부위판장



- 소속조합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목포시금화동15-1번지
- 개 장 일 : 1986. 12. 04
- 위판장지정일 : 2008. 04. 25
- 주요취급부류 : 젓갈류
- 주요어종 : 새우젓

【표 5-42】 목포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m²

구 분	위판장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물 처리장	위생 시설	사무실	중매인 사무실
			유개	무개					
동 부	2,581	1,779	1,918	-	-	-	27	27	-
서 부	4,155	6,281	2,860				57	281	384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5-43】 목포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구 분	제빙		저빙		냉동		냉장	
	T/D	m ²	M/T	m ²	T/D	m ²	M/T	m ²
서 부 위판장	40	119	1,200	152	30	258	850	1,111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장 관계자 현황은 동부위판장의 경우 중도매인 28명, 매매참가인 1명, 경매사 6명, 서부위판장은 중도매인 13명, 경매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판수수료의 경우 선어, 기타(새우젓) 모두 4.5% 수준임

【표 5-44】 목포수협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비고
			자격증 보유	자격증 미보유	
동 부	28	1	6	-	
서 부	13	-	3	-	동부위판장 공동운영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5-45】 목포수협의 위판수수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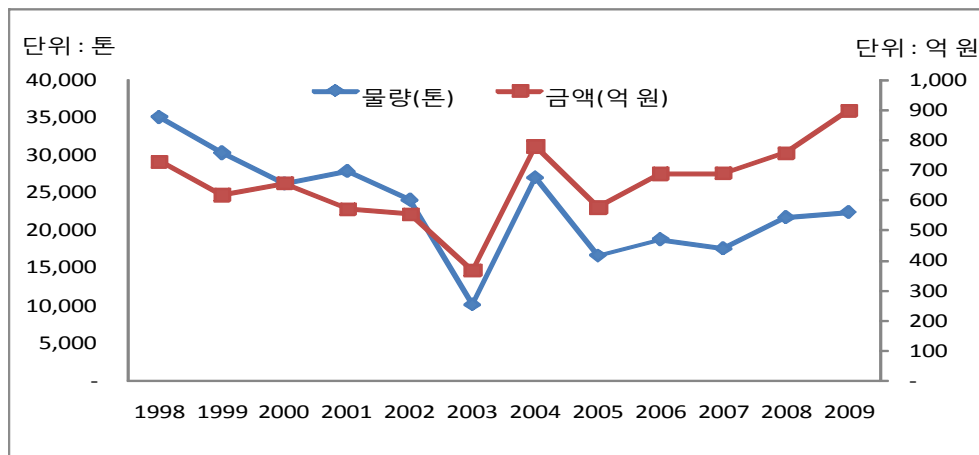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4.5	-	-	-	-	4.5(새우젓)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 목포수협의 위판실적을 살펴보면 1998년 이후 2003년 까지 위판물량 및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음
- 2009년 위판실적은 22,437톤, 899억 원으로 1998년 대비 물량은 36%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23% 증가함
- 1998년 이후 위판 물량은 감소한 반면 위판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어선감축 정책으로 인하여 근해어업 어선세력 감소로 위판 물량이 감소하였지만 위판 금액은 최근 어가 상승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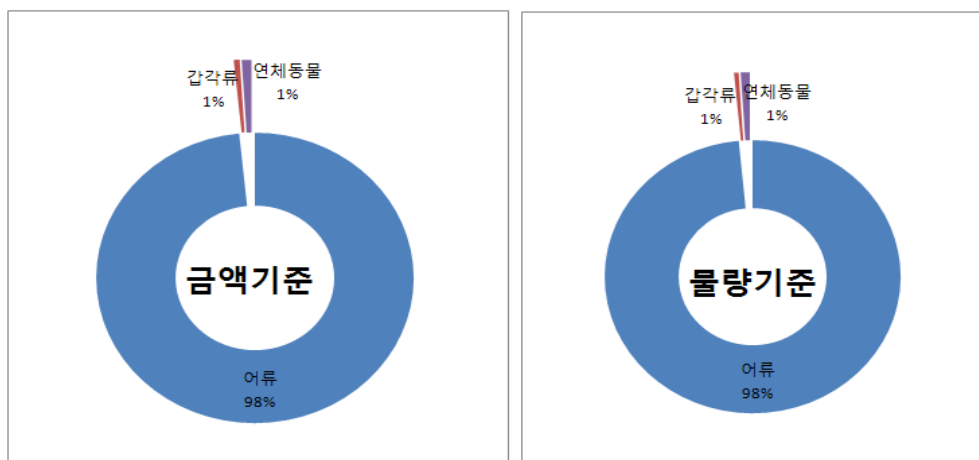
【그림 5-31】 목포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 목포수협이 품종별 위판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에서는 어류 외에도 갑각류가 10% 내외를 차지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 갑각류의 위판이 감소하면서 2009년 현재 어류가 전체 위판 금액 및 물량에서 98% 이상을 차지함
 - 2000년 이후 갑각류의 위판실적 감소는 갑각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젓새우 생산의 감소와 더불어 젓새우 위판량의 상당량이 신안군수협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임
- ※ 갑각류의 위판액 비중 변화 : 1998년(13.4%)→2005년(6.2%)→2009년(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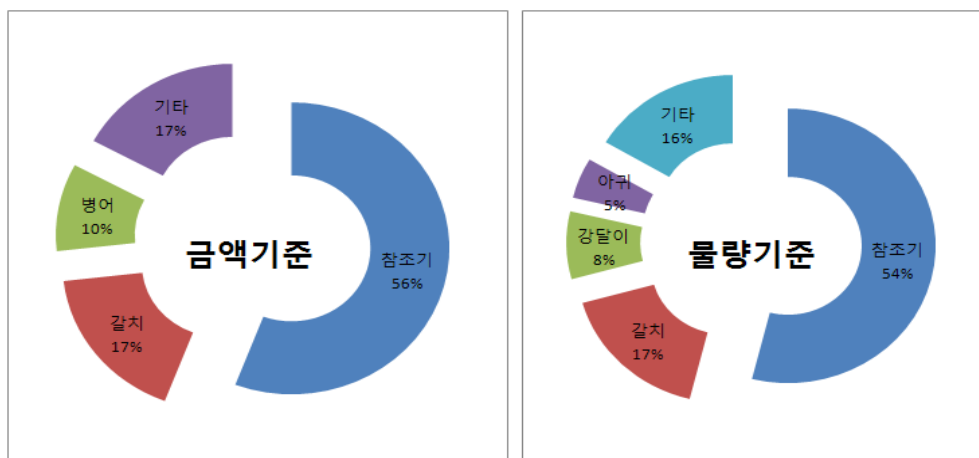
【그림 5-32】 목포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 목포수협의 주요 위판 어종은 참조기, 갈치, 병어 등의 선어로 이들 3개 품목이 전체 위판량의 80% 이상을 차지함

【그림 5-33】 목포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및 시사점

- 관내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위판장 제고 활동
 - 목포수협은 관외 어선 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내 어업인과의 위판수수료, 위판조성금 등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않음
 - 관내 어인들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 위판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 신규 시설 투자 및 신규어종 위판
 - 목포수협은 150억 원(시비)을 투자하여 신규 활어 위판장을 2011년 1월 개장할 계획임
 - ※ 2002~2003년 어민들의 요청으로 인해 활어위판을 시작했지만 어민들의 위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됨
 - 하지만 2011년 개장되는 신규 활어위판장은 소형어선들이 많이 밀집한 북항 쪽에 위피하여 입지여건이 좋으며 회센터 운영까지 계획되어 있어 위판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목포수협은 신규위판장 개설뿐 만 아니라 기존의 목포수협 및 위판장이 북항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북항 쪽에 부지가 확보된 상황으로 5년 이내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판장이 이전되면 입지적 여건 개선으로 인하여 위판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4) 충청지역

(1) 서천군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서천수협은 1939년 장항어업조합으로 설립되어 1976년 강경어업협동조합을 합병하여 1977년 장항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한 후 1998년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음
 - 위판사업은 1982년 위판장 및 사무실을 개축하면서 시작하였으며 이후 1993년 위판장을 신축하여 현재 1개 위판장을 운영 중임
 - 주요 위판 어종으로 멸치, 넙치, 소라, 꽃새우 등의 선어와 건어류를 위판하고 있음

장항위판장



- 소속조합 :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서천군 장항읍창선1리 332-54
- 개 장 일 : 1994. 05. 099
- 위판장지정일 : 2008. 04. 28
- 주요취급부류 : 선어, 건어류
- 주요어종 : 멸치, 넙치, 소라, 꽃새우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장항위판장은 1993년 신축된 위판장으로 대지 1,459㎡, 연면적 1,459㎡ 규모로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음
- 위판장 관계자는 중도매인 18명, 매매참가인 1명, 경매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판수수료의 경우 선어, 활어, 패류, 건어 모두 5% 수준임

【표 5-46】 서천군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

위판장 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 물 처리장	위 생 시 설	사무실	중매인 사무실
		유개	무개					
1,459	1,459	1,459		-	-	17	284	132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5-47】 서천군수협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비고
			자격증 보유	자격증 미보유	
장항위판장	18	1	1	1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5-48】 서천군수협의 위판수수료

단위 : %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5.0	5.0	-	5.0	5.0	-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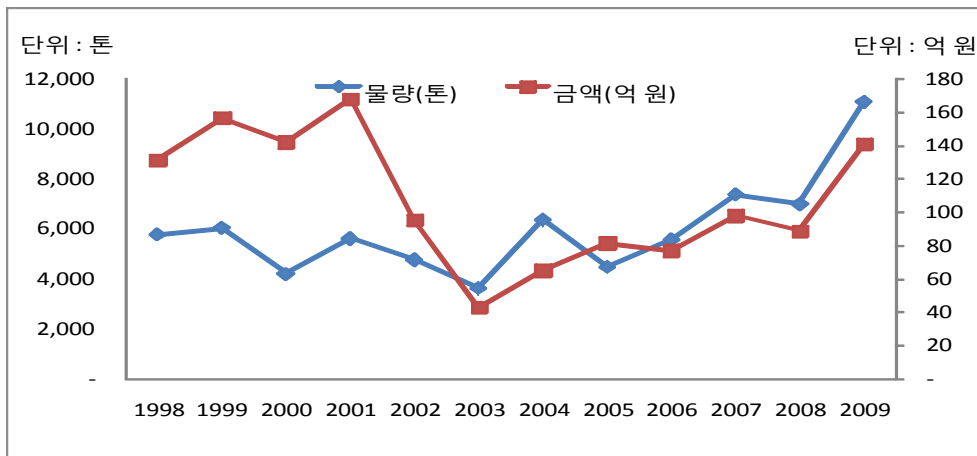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 서천군수협의 위판실적을 살펴보면 물량의 경우 1998년 이후 2003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09년 현재 11,047톤으로 1998년 이후 연평균 6.1% 증가함

- 금액의 경우 2001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09년 현재 141억 원으로 1998년 이후 연평균 1.6% 증가함
- 2001년 위판금액이 168억 원에서 2002년 95억 원으로 급속히 감소한 이유는 꽃게, 젓새우 등의 갑각류 위판량 감소와 주요 위판 어종인 멸치어가 하락에 기인함
- ※ 멸치어가 비교 : 2001년(1,092원/kg)→2002년(1,274원/kg)→2003년(736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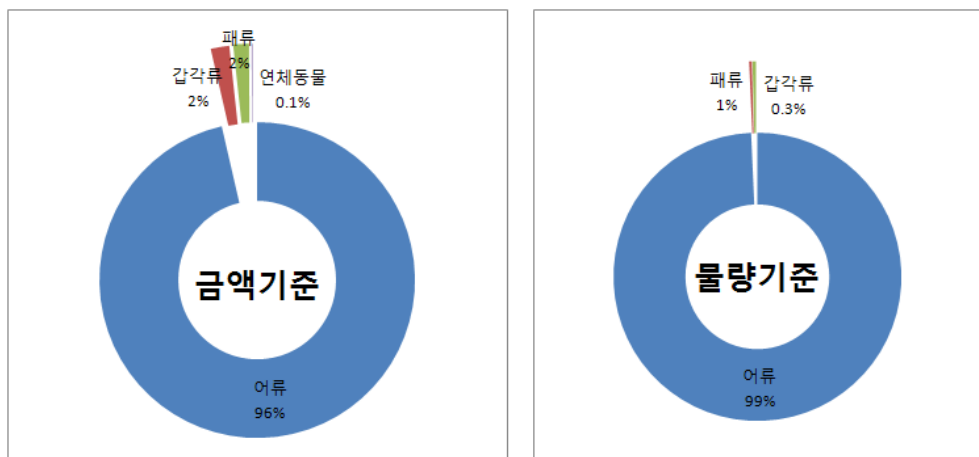
【그림 5-34】 서천군수협외의 수산물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fis.kr)

- 서천군수협외의 품종별 위판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에서는 어류 외에도 갑각류가 30% 내외를 차지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 갑각류의 위판이 감소하면서 2009년 현재 어류가 전체 위판 금액 및 물량에서 96% 이상을 차지함
- ※ 갑각류의 위판액 비중 변화 : 1998년(30.6%)→2005년(10.5%)→2009년(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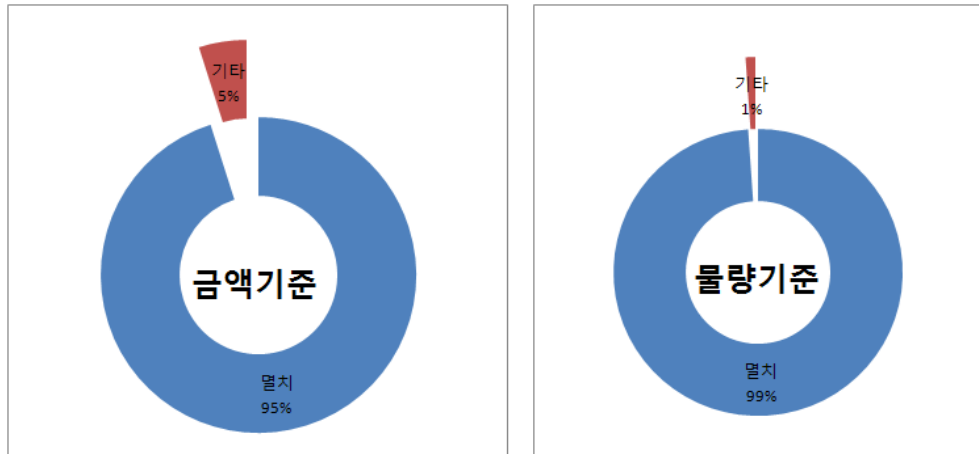
【그림 5-35】 서천군수협외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 서천군수협이 주요 위판 어종은 멸치로 전체 위판액의 95%, 위판량의 99%를 차지함

【그림 5-36】 서천군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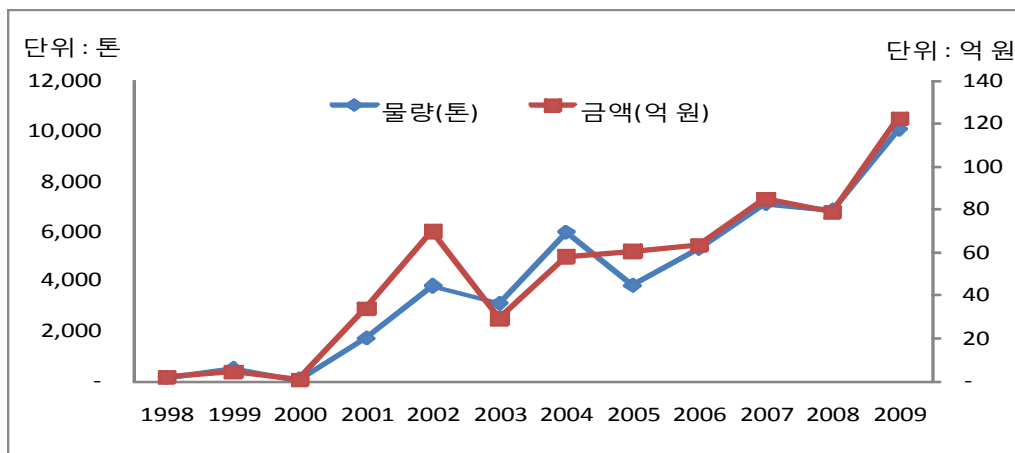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내부자료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 어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규어종 위판

- 서천군수협은 1980년대 후반에는 안강망에 의한 선어 중심으로 위판사업을 운영되었지만 정부의 어선 감축정책으로 인하여 1990년대부터 선어의 위판량이 감소함
- 이에 서천군수협은 기존 남해안 지역에서 서식한 멸치가 서해안 지역에도 생산이 증가하자 2000년대 초 멸치 위판사업을 시작하였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멸치 위판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됨

【그림 5-37】 서천군수협의 멸치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 멸치위판 확대를 위하여 서천군수협 직원 들이 직접 선주들을 찾아서 위판을 독려,

- 우수한 중도매인 영입, 군 및 수협에서 멸치 포장박스 지원 등 위판여건을 조성함
- 이에 따른 결과로 멸치 위판은 1998년 2억 원에서 2009년 122억 원으로 연평균 45.8% 증가함

(2) 보령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보령수협은 1962년 보령어업조합으로 설립되어 1995년 보령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음
- 보령수협은 현재 선어위판장(2004년 개설), 건어위판장(2009년 신축), 활어위판장(1995년 개설)을 운영 중임

현포동위판장



- 소속조합 : 보령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충남 보령시 신북동 950-86외 3필지(활선어), 2240외 4필지(건어물)
- 개 장 일 : 선어, 활어 : 2004. 06. 24
건어 : 2009. 08. 10(신축)
- 위판장지정일 : 2008. 04. 28
- 주요취급부류 : 활어, 선어, 건어류
- 주요어종 : 아구, 대구, 멸치 외



오천집하장



- 소속조합 : 보령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700-8
- 개 장 일 : 1993. 08. 31
- 주요취급부류 : 선어(패류)
- 주요어종 : 키조개 외

- 주요 위판 어종으로 대구, 가자미 등의 선어, 주꾸미, 광어 등의 활어, 멸치, 건새우 등의 건어, 키조개, 소라 등의 패류를 위판하고 있음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현포동위판장은 선어와 건어 위판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지 18,765㎡, 연면적 2,815㎡ 규모로 주차장, 오물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등의 주요시설과 제빙, 저빙, 냉동, 냉장 등의 이용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음
- 오천집하장 1993년 개설한 위판장으로 대지 482㎡, 연면적 737㎡ 규모로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음

【표 5-49】 보령수협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위판장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물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유개	무개					
현포동	18,765	2,815	2,815		6,438	16	16	49	33
오 천	482	737	737	-	-	9	13	33	16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5-50】 보령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구 분	제빙		저빙		냉동		냉장	
	T/D	㎡	M/T	㎡	T/D	㎡	M/T	㎡
현포동 위판장	25	165	200	165	10	49	1,000	561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장 관계자 현황은 현포동위판장의 경우 중도매인 60명, 경매사 4명, 오천집하장은 중도매인 9명, 경매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51】 보령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비고
			자격증 보유	자격증 미보유	
현포동	60	-	2	2	
오 천	9	-	-	1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수수료의 경우 선어, 활어, 패류, 건어 모두 4.5% 수준임

【표 5-52】 보령수협의 위판수수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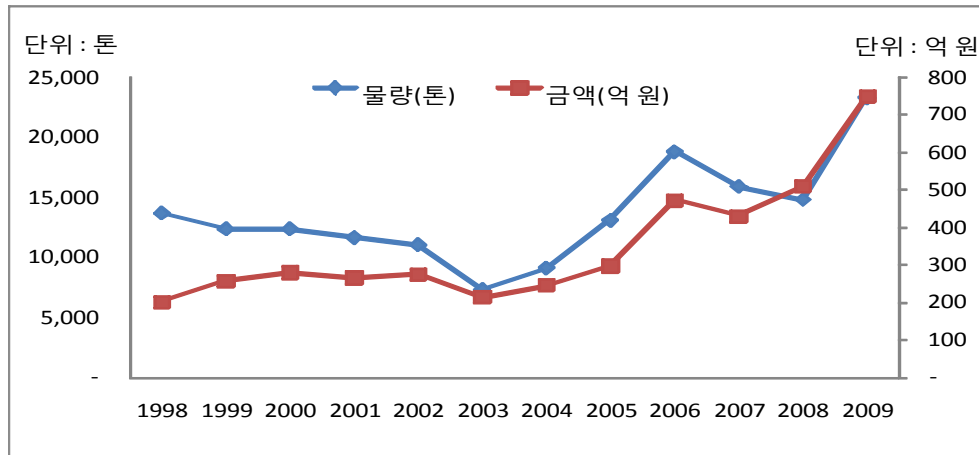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4.5	4.5	-	4.5	4.5	4.5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 보령수협이 위판실적을 살펴보면 1998년 이후 2003년까지는 정체 내지 감소 추세를 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09년 현재 23,295톤, 748억 원으로 1998년 대비 물량은 70.5%, 금액은 272.8% 증가함

【그림 5-38】 보령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fis.kr)

- 2003년 이후 위판실적이 급속하게 호전된 이유 수산물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계통출하 실적향상을 위한 조합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가자미, 넙치, 대구, 멸치, 꽃게, 키조개 등이 많이 위판됨
- 특히 멸치의 경우 2003년 2억 원에서 2009년 100억 원으로 연평균 90% 이상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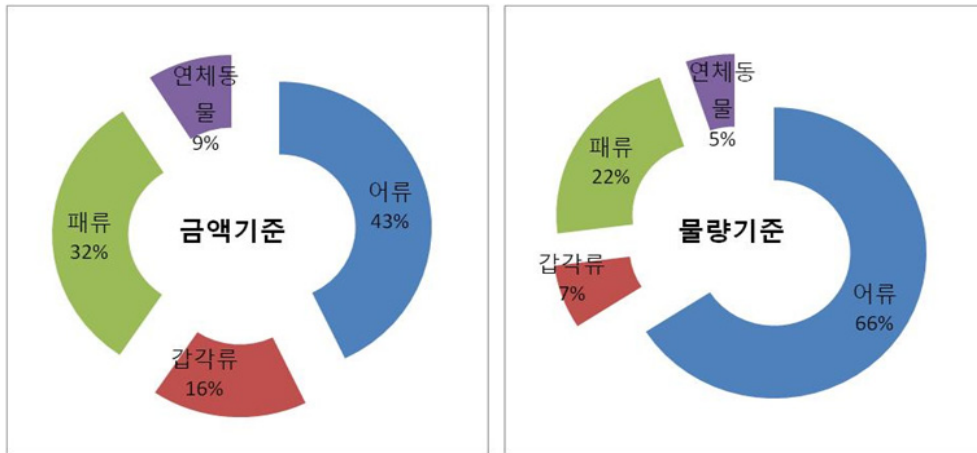
【표 5-53】 보령수협의 주요 어종 위판액 추이

구 분	단위 : 억 원, %							연평균 증가율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자미	3	7	18	58	31	33	25	44.9
대 구	15	35	41	55	58	33	75	30.5
멸 치	2	40	79	78	52	44	100	90.3
꽃 게	12	6	5	24	16	35	66	32.1
꽃새우	19	10	13	27	23	26	34	10.1
키조개	63	67	60	100	103	161	214	22.6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 보령수협은 어류 중심으로 위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도 상당부분 위판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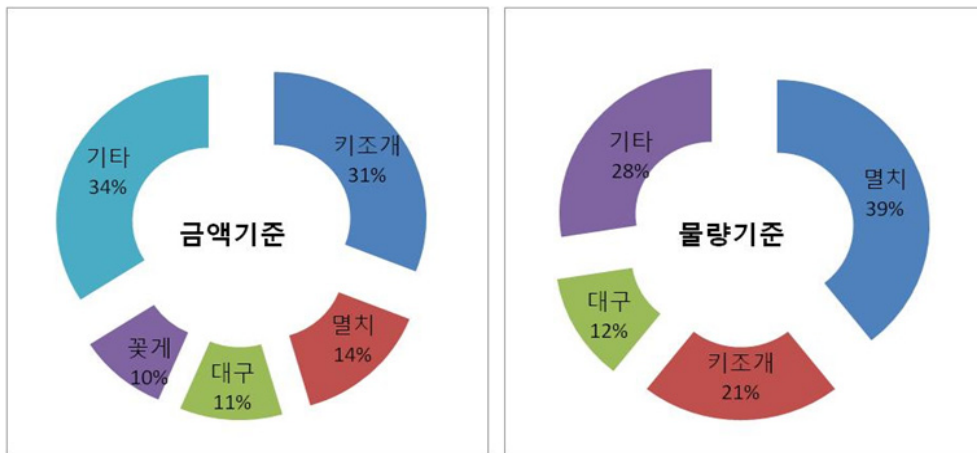
【그림 5-39】 보령수협이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 주요 위판 어종은 키조개, 멸치, 대구, 꽃게 등으로 이들 4개 품목이 전체 위판액의 66%를 차지함
- 보령수협에서 키조개 위판 비중이 높은 이유는 키조개는 수협을 통해 거래되어야 하는 TAC 품목으로 해삼, 전복을 주로 잡던 잠수기 선박을 2006년부터 키조개어업으로의 전환을 설득하여 어획량이 증가함

【그림 5-40】 보령수협이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 출어시 객주의 전도자금 사용대신 판매선금금 지원
 - 보령수협은 출어기 객주의 전도자금 사용대신 판매선금금을 지원하여 사매로 빠지는 물량을 수협 위판으로 유도하고 있음

- 선급금 지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신용상태가 건전한 어민들을 대상으로 소액지원하였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선급금을 확대 지원함
- 선급금 지원 대상은 보령수협에 위판을 하고 있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어업인으로 전체 어업인중 1/3, 대형선박(20톤 이상)의 80% 이상이 사용 중에 있음
- 선급금 운영은 연이자 11.5%로 지원되며 기간은 3개월, 최고한도는 1억 원 이내임
- 연도별 선급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 매년 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2007년 28억 원에서 2009년 5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5-54】 보령수협의 선급금 지원 현황

구 분	단위 : 억 원,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전체지원금액	28	34	56	74
지원대상자	100	105	110	98
1인당 평균지원액	0.28	0.32	0.51	0.75

자료 : 보령수협

- 어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위판 실시
 - 보령수협은 어민들의 위판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년 중 무휴 24시간 위판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성어기인 4~6월, 10~11월에는 타부서 직원까지 동원하여 어종선별을 도와 신속하게 위판업무를 처리함
 - 특히 건멸치의 경우 수협직원이 생산업자 집을 직접 방문하여 포장 및 벤딩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전량 수집하고 있음

보령수협의 건멸치 위판 사례

- 건멸치 포장지원 및 전량 수집
- 보령수협은 서해안 지역의 멸치 생산량이 증가하자 건멸치 위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직원들이 직접 생산업자 집을 방문하여 포장 및 벤딩 작업을 지원하는 등 전량 수집하고 있음
 - 건멸치 포장지원 및 수집을 위해 보령수협은 건멸치 위판이 시작되는 7월~11월 까지 7개 수집조(3명 1개조(수협직원 1명, 향운노조 2명))를 구성하여 일과시간이 종료 된 후부터 매일 건멸치를 수집하고 있음
 - 건멸치 수집 확대를 위해 기존 운반 차량(2002년 구입)외 2006년 3대, 2008년 1대, 2010년 2대를 구입하여 현재 7대의 차량이 건멸치 수집에 사용되고 있음
 - 또한 건멸치 수집시 생산업자를 직접 만나서 멸치 가격 및 생산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 즉 멸치 위판가격이 낮을 경우 왜 가격이 낮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위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함

- 건멸치 위판실적은 2005년 1,237톤, 79억 원에서 2009년 1,113톤 99억 원으로 위판량은 감소하였지만 어가 상승으로 인해 위판금액은 증가함

멸치수집 차량 구입 내역

구 분	규 모	취득일자
화물자동차	1000KG	2002. 3. 1
화물자동차	1000KG	2006. 6.21
화물자동차	1000KG	2006. 6.21
화물자동차	1000KG	2006. 6.21
화물자동차	3500KG	2008. 8.27
화물자동차	1000KG	2010. 5. 3
화물자동차	1000KG	2010. 5. 3

자료 : 보령수협

건멸치 위판실적

단위 : 톤, 백만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위판량	1,237	1,253	943	835	1,113
위판금액	7,860	7,491	5,091	4,398	9,947

자료 : 보령수협

○ 활어위판 장려 및 여건 조성

- 전 직원이 친분관계에 따라 사매매를 자제토록 어업인을 개별 설득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리함
- 사매매 방지를 위한 지도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항주변을 순회하여 사매매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위판하도록 설득함
- 관내 어업인 뿐 만 아니라 부산 및 여수 등 타지역을 직접출장 방문하여 근해연승, 대형선망(트롤), 근해자망 등의 선박을 적극 유치함
-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활어 위판실적은 2005년 460톤, 38억 원에서 2009년 1,037톤, 13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표 5-55】 보령수협의 활어 위판실적

단위 : 톤, 백만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위판량	460	886	918	931	1,037
위판금액	3,854	8,767	7,672	11,017	13,007

자료 : 보령수협

- 활어위판장 내에 불법노점상 들이 점유하고 있던 부지를 법률소송을 통해 다시 확보하고, 이동식활어탱크를 지속적으로 확충(2009년 15개, 2010년 10개, 전체 43개)하여 밀식을 방지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이었던등 부지이 위판 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함

※ 불법노점상과의 법률소송 : 2006년 소송을 걸어 2009년 승소

※ 이동식활어탱크 : 개당 가격 100만원, 처리능력 200kg

- 또한 경매제도를 2010년부터는 일괄경매에서 일부현물입찰 제도로 전환하여 경매에 대한 어민들의 만족도를 높임
- 일괄경매의 경우 당일 첫 경매에서 나온 가격이 그 날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데 반해 일부현물입찰의 경우 하루 수시로 경매를 실시하여 가격에 차등을 두어 어민들이 자기가 위판하는 물량에 대해 수궁할 수 있도록 함
- 이 같은 위판여건 조성으로 인해 전년대비 활어 위판실적은 2009년 90억 원에서 2010년 190억 원으로 100억 원 이상 증가함

【표 5-56】 보령수협이 활어 위판 현황(전년대비)

단위 : 원

구 분	2009. 7. 11	2010. 7. 11	증감
활 어	9,003,192,090	19,039,108,380	10,035,916,290

자료 : 보령수협

5) 경북지역

(1) 구룡포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구룡포수협은 1922년 구룡포어업조합으로 설립되어 1962년 구룡포어업협동조합으로 개편함
- 현재 2009년에 신축한 활어위판장을 비롯해 6개 위판장을 운영중임
- 대부분 활어, 선어를 위판하며 주요 어종으로는 오징어, 대게 등임

활어위판장



- 소속조합 :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2, 16
- 개 장 일 : 2009. 11. 30
- 위판장지정일 : 2008. 4. 21
- 주요취급부류 : 활·선어류
- 주요어종 : 오징어

선동위판장



- 소속조합 :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1, 12
- 개 장 일 : 2005. 7. 26
- 위판장지정일 : 2008. 4. 21
- 주요취급부류 : 냉동류
- 주요어종 : 오징어

트롤위판장



- 소속조합 :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7 - 275번지
- 개 장 일 : 2000. 9. 1
- 위판장지정일 : 2008. 4. 21
- 주요취급부류 : 선어류
- 주요어종 : 오징어

잡어위판장



- 소속조합 :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2번지
- 개 장 일 : 1998. 1. 10
- 위판장지정일 : 2008. 4. 21
- 주요취급부류 : 선어, 활어, 패류
- 주요어종 : 대게, 문어, 가자미

장기위판장



- 소속조합 :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9-2번지
- 개 장 일 : 2002. 7. 1
- 위판장지정일 : 2008. 4. 21
- 주요취급부류 : 활어, 선어류
- 주요어종 : 아귀, 문어

대보위판장



- 소속조합 :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886-52, 117
- 개 장 일 : 2006. 6. 1
- 위판장지정일 : 2008. 4. 21
- 주요취급부류 : 활어, 선어류
- 주요어종 : 방어, 문어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최근에 신설된 활어위판장을 비롯한 6개 위판장을 운영 중이며, 오징어를 대량취급하기 때문에 활어위판장, 잡어위판장, 장기위판장에는 유개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표 5-57】 구룡포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m²

구 분	위판장 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 물 처리장	위 생 시 설	사무실	중매인 사무실
			유개	무개					
활 어	18,842	658	658		6,611			82	49
선 동	물량장			4,165	1,322				148
트 롤	물량장			5,134	1,652			23	20
잡 어	5,428	1,649	1,649		165		50	33	248
장 기	3,315	750	750		81	-	7	73.65	132
대 보	13,597	167.03	0		165		14	20	14.5

- 6개 위판장 모두 오물처리장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가공시설의 경우 트롤위판장에 제빙, 저빙, 냉동, 냉장처리시설을 갖춘

【표 5-58】 구룡포수협외의 가공시설 현황

제빙		저빙		냉동		냉장	
T/D	m ²	M/T	m ²	T/D	m ²	M/T	m ²
15	168	466	179	5	28	1,248	629

- 위판장의 인적구성은 활어, 선동, 트롤위판장은 중도매인 30명을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잡어위판장과 장기위판장, 대보위판장의 중도매인 수는 각 각 33명, 18명, 17명임
- 위판수수료율은 활선어 및 냉동수산물의 위판수수료는 4%이며, 기타는 5%임

【표 5-59】 구룡포수협외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구 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비고
			자격증 보유	자격증 미보유	
활어, 선동, 트롤	30	-	-	1	공동운영
잡 어	33	-	-	1	
장 기	18	-	-	1	
대 보	17	1	-	1	

단위 : 명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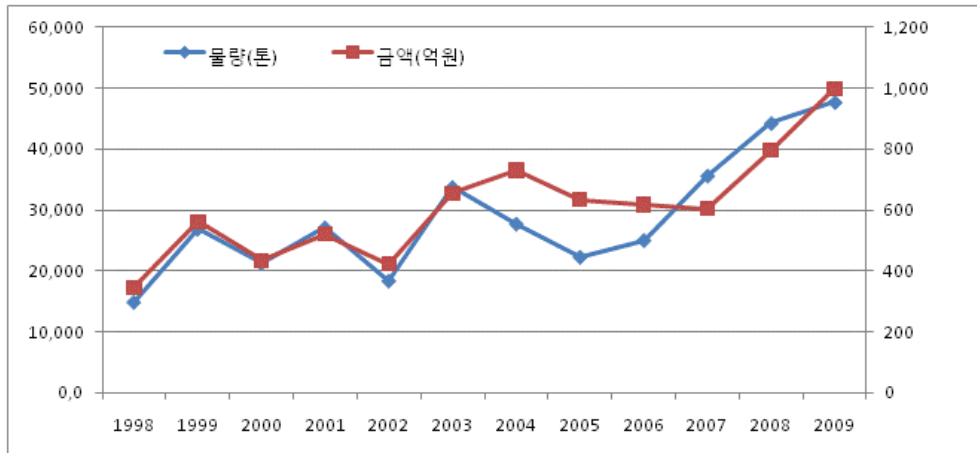
【표 5-60】 구룡포수협외의 위판수수료

단위 : %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4	4	4	-	-	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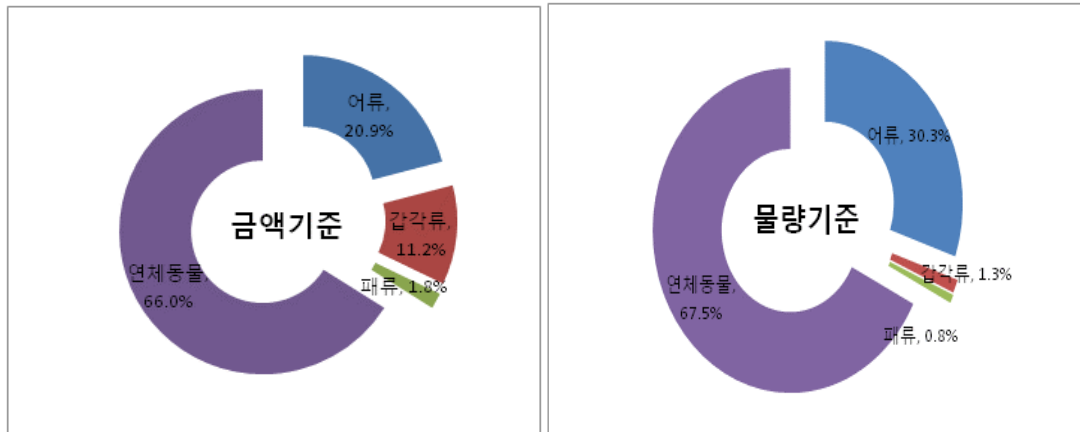
- 구룡포수협 위판고는 2007년도 606억 원, 2008년 800억 원, 2009년 9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오징어 가격 호조로 2009년 900억 원의 위판고를 달성, 사상 최고의 위판액을 기록함
- 1922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상 최고액의 위판고로 '효자' 어종은 오징어로, 2008년 오징어는 2만7천 톤, 위판액은 379억 원에 이르렀으며, 2009년에는 3만1천톤, 595억 원의 위판고(금액 기준 90% 차지)를 기록함
- 주로 위판되는 어종은 연체동물이 전체 물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오징어가 대부분임

【그림 5-41】 구룡포수협이 수산물 위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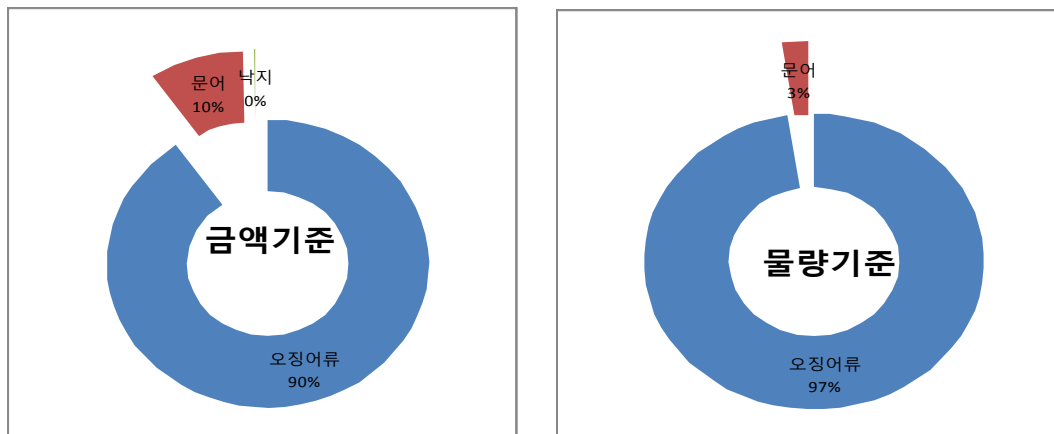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그림 5-42】 구룡포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5-43】 구룡포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5-61】 구룡포수협이 오징어 및 문어 생산 추이

단위 : 톤, 억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오징어	16,901	412	20,005	377	21,682	285	27,753	379	31,382	595
문 어	110	12	212	22	650	49	753	57	795	62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 어류 중에서는 청어의 생산 비중이 70% 이상(2009년 물량 기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어의 위판물량과 금액은 위탁물량은 2007년에 접어들면서 크게 증가하였음

【표 5-62】 구룡포수협이 청어 생산 추이

단위 : 톤, 억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청어	726	13	993	16	9,051	52	10,548	82	10,775	93

주 : *의 연평균증감률은 물량기준임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 오징어 활어 위판장 신설(4억 5천만 원)
- 지역 수산물의 본격적인 홍보를 위해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연일읍 유장리에 야간 LED조명을 이용한 전광판을 설치함
 - 구룡포 지역이 대게 및 오징어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근지역에 소비시장을 뺏겨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임
- 또한 ‘구룡포 특산품 축제’를 통해 구룡포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과메기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생산된 대게, 오징어, 문어 등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체험 행사도 제공하고 있음
- 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한 신뢰 구축
 -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조합원 2,300명에게 20kg 쌀 1포씩 지원(사업비 1억 원)함
 - 선원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를 위하여 외국선원숙소 완공(178평, 총사업비 5억 원, 120명 숙소)
- 지구온난화 및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동해안 어장 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어종 개발을 위한 제주도 성산포수협과 협약을 체결함

③ 시사점

- 위판 확대를 위해 구룡포 수협은 어업기반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어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활어, 잡어 등 특화된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에 시작된 오징어 활어 위판은 2009년 위판액 기준 5.5%(49억) 차지하였음
 - 오징어 물량이 많아 채낚기 어선들이 몰릴 경우에는 구룡포수협 직원 70여명이 새벽 6시부터 3개조로 나뉘어 하역작업을 도와주는 등 서비스를 개선함
- 그 외에도 위판량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 및 어촌계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위판판매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2) 포항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1912년 영일어업조합으로 발족하였으며, 1977년 포항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음
 - 포항수협에는 동빈활어위판장을 비롯해 3개 위판장이 운영 중이며, 현재 죽도시장위판장은 현재화 작업으로 인해 공사 중임
 - 주요 위판 어종은 문어, 오징어, 대게, 청어 등임

죽도위판장



- 소속조합 : 포항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포항시 북구 죽도동 557-7
- 개 장 일 : 1961. 4. 1
- 위판장지정일 : 2008. 4. 21
- 주요취급부류 : 선어류
- 주요어종 : 문어, 오징어, 콩치

죽도시장위판장



- 소속조합 : 포항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포항시 북구 죽도동 557-6외 4필지
- 개 장 일 : 1961. 4. 1
- 위판장지정일 : 2009. 10. 22
- 주요취급부류 : 선어류
- 주요어종 : 문어, 오징어, 콩치

동빈활어위판장



- 소속조합 : 포항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포항시 북구 동빈동 148번지
- 개 장 일 : 1993. 6. 1
- 위판장지정일 : 2008. 4. 21
- 주요취급부류 : 활어류
- 주요어종 : 가자미, 쥐치 등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포항수협은 죽도위판장, 죽도시장위판장, 동빈활어위판장 등 3개 위판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죽도시장위판장은 현재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이용가공시설은 죽도위판장에 제빙, 저빙, 냉동,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음

【표 5-63】 포항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m²

구 분	위판장 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 물 처리장	위 생 시 설	사무실	종매인 사무실
			유개	무개					
죽 도	1,234	365	1,083		1,349		23	208	331
죽도시장	2,777	944	1,671	484		258		686	
동빈활어	1,744	212	182	30	1,351		25	48	139

【표 5-64】 포항수협외의 가공시설 현황

구 분	제빙		저빙		냉동		냉장	
	T/D	m ²	M/T	m ²	T/D	m ²	M/T	m ²
죽도 위판장	20	235	600	149	20	83	1,280	985

- 위판장 인적구성은 죽도·죽도시장 위판장과 동빈활어위판장의 중도매인수가 각각 49명과 11명임

【표 5-65】 포항수협외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도매인수	매매참가인수	경매사수		비고
			자격증보유자	자격증 미보유자	
죽도	49		2		죽도와 죽도시장 공동운영
죽도시장					
동빈활어	11		2		

- 죽도시장과 동빈활어 위판장의 위판수수료는 선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에 동일 4.8%를 부과하고 있으나 냉동제품의 경우 죽도시장은 동빈활어 위판장보다 0.8%포인트 낮은 4%를 부과함

【표 5-66】 포항수협외의 위판수수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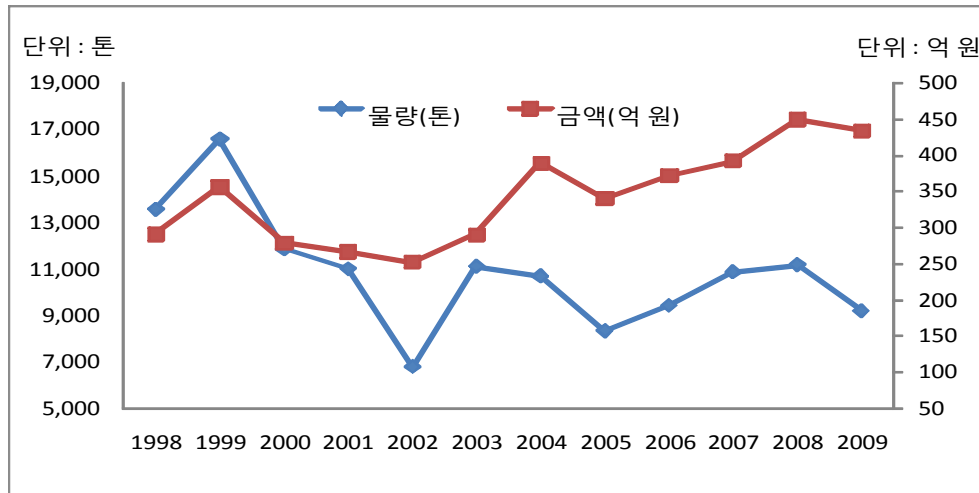
구 분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죽도시장	4.8	4.8	4	4.8	4.8	4.8
동빈활어	4.8	4.8	4.8	4.8	4.8	4.8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판장 현황」, 2010.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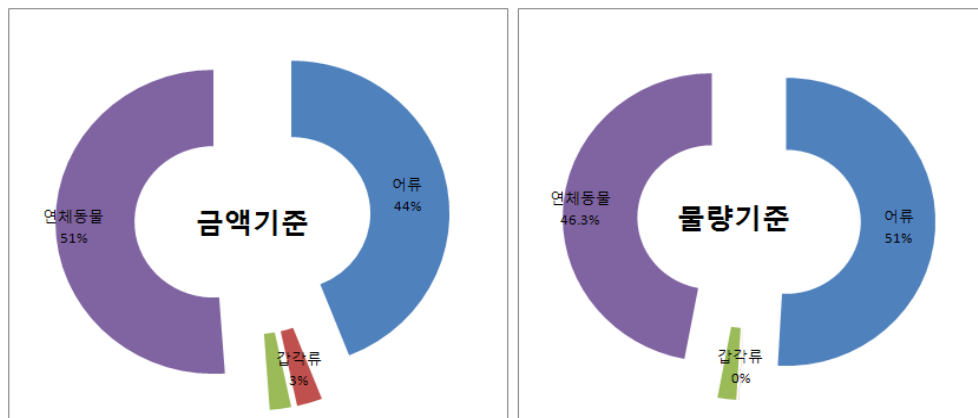
- 포항수협은 98년 이후 2009년까지 위판물량은 연평균 3.5%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위판액은 꾸준히 증가해 2009년 434억 원(연평균 3.7% 증가)임
- 위판물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판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포항수협 위판물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오징어 등의 어가 상승 요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위판어종은 어류와 연체동물 비중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체동물의 75%는 문어가 차지임
- 어류는 가자미, 삼치, 멸치, 아귀 등 다양한 어종이 위판되고 있음

【그림 5-44】 포항수협이 수산물 위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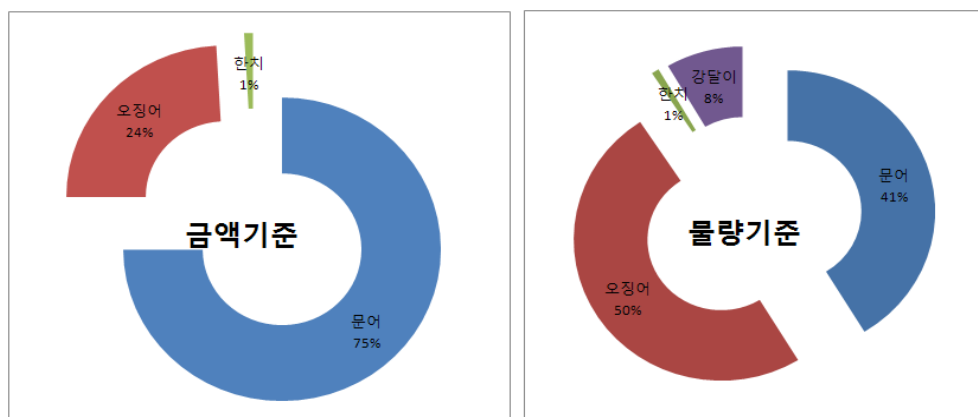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그림 5-45】 포항수협이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5-46】 포항수협이 주요 위판품목(연체동물)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 죽도시장 위판장 현대화

- 포항수협은 죽도시장 위판장 현대화를 통해 어선의 신속한 접안 및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기대하고 있음

죽도시장 위판장 현대화 사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위판장, 사무실, 어업인대기실, 휴게실, 활어보관시설, 해수공급시설, 간이냉동·냉장시설, 판매대 등이 마련될 예정임 ▪ 사업기간 : 2009. 1월 ~ 2010. 12월 ▪ 총 사업비 : 49억 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p>※ 2009년 13억 원, 2010년 36억 원(죽도시장 위판장시설 : 10억 원, 송도어선부두 위판장 : 39억 원)</p>

【그림 5-47】 죽도시장 회타운 전경



- 포항수협은 위판장과 죽도시장회타운이라는 소비처가 인접하고 있어 생산자들의 위판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경상북도 지역 위판율 : (2009년) 81%)
- 향후 위판장 건립이 완공될 경우 위판율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③ 시사점

○ 위판율 제고를 위한 위판장 현대화 작업은 수협 자체의 노력보다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테라노바 사업의 일환임

- 포항시 전체를 관광상품화 할 경우 대규모의 수산물 소비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수산물 위판율이 제고될 가능성은 높음
- 이는 수산물 위판율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볼거리, 체험하기 등의 다양한 요소를 결합시켰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포항수협 현대화 사업 이후의 효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포항수협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일개 수협의 위판사업만으로는 위판율을 신장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판장을 이용하는 어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 소비지 확충을 통한 판매처 확보 등이 수협 위판장 이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일선 수협들은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축제 및 체험행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포항시 테라노바 프로젝트
철강산업 위주로 개발된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포항의 자연환경을 재조명하여 산업도시와 생태도시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도시, 멋들어진 명품도시로 거듭나게 하며, 도시의 공간구성물 자체를 관광 상품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도시마케팅 전략의 일환임

(3) 강구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강구수협은 강구위판장과 창포위판장 2개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포위판장은 최근인 2008년에 개설됨

강구위판장



- 소속조합 : 강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강구면 강구리 256-48
- 개 장 일 : 1962. 4. 1
- 위판장지정일 : 2008. 4. 21
- 주요취급부류 : 활어, 선어류
- 주요어종 : 오징어, 대게

창포위판장



- 소속조합 : 강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745-3
- 개 장 일 : 1994. 11. 1
- 위판장지정일 : 2008. 4. 21
- 주요취급부류 : 활어류
- 주요어종 : 가잠

- 강구수협위판장과 창포위판장 모두 주차장이나 위생시설 등은 갖추고 있지 않으나 우천이나 무더위에도 상품 훼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개시설을 갖추고 있음
- 가공시설은 강구수협위판장의 경우 제빙, 저빙, 냉동, 냉장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음
- 강구수협 위판장 중도매인수 19명, 창포위판장 중도매인수 6명임

【표 5-67】 강구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m²

구 분	위판장 규모(m ²)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 물 처리장	위 생 시 설	사무실	중매인 사무실
			유개	무개					
강 구	677	302	205	472				5	
창 포	540	142	142	398					

【표 5-68】 강구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구 분	제빙		저빙		냉동		냉장	
	T/D	m ²	M/T	m ²	T/D	m ²	M/T	m ²
강 구 위판장	28	155	300	109	18	73	330	215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표 5-69】 신안군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비고
			자격증 보유	자격증 미보유	
강 구	19		1		
창 포	6			1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수수료율은 선어, 활어, 패류, 건어 및 기타 수산물에 대해서는 4.8%의 위판수수료를 적용하고 냉동수산물의 위판수수료는 4%임

【표 5-70】 강구수협의 위판수수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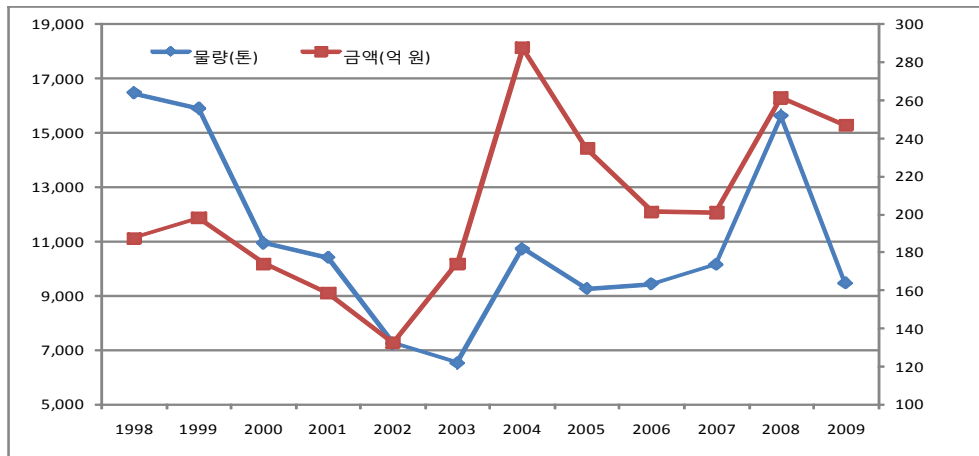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4.8	4.8	4	4.8	4.8	4.8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 강구수협의 1998년 위판물량은 1만 6천 톤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져 2003년에는 6천 톤으로 떨어짐(연평균 약 17% 감소)
- 2003년부터 위판물량은 서서히 회복되어 2008년 1만 5천 톤을 기록해 1998년 수준과 비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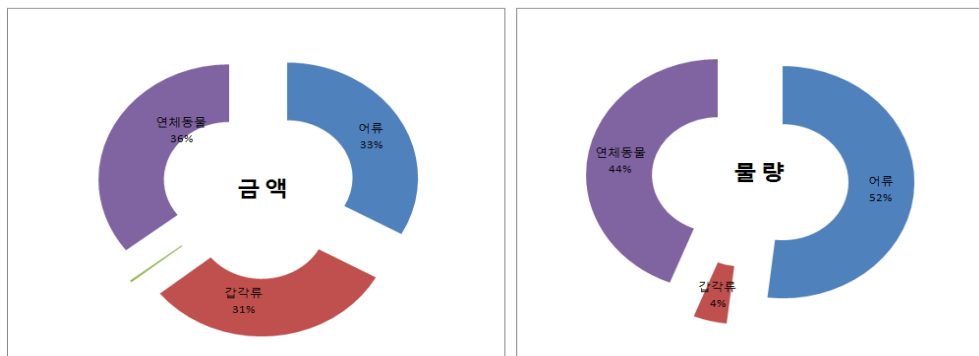
【그림 5-48】 강구수협이 수산물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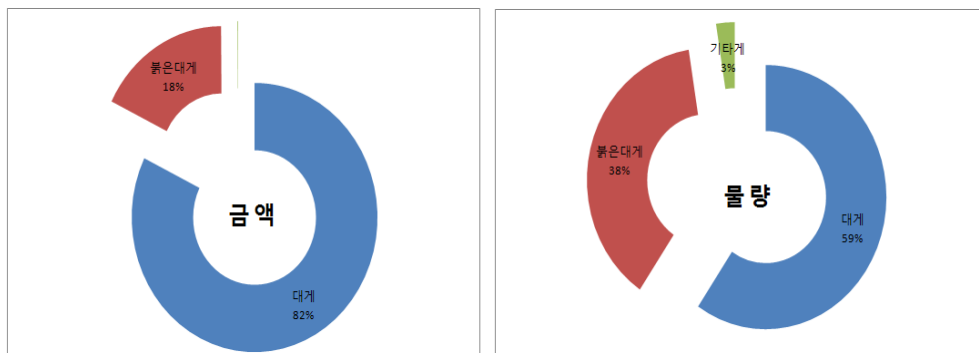
- 위판의 가장 큰 특징은 갑각류의 비중이 물량 기준으로는 4%로 매우 낮지만 금액비중으로는 전체의 31%를 차지할 만큼 고가로 위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요 위판어종은 오징어와, 갑각류의 대표적인 위판 어종은 대게, 붉은대게임

【그림 5-49】 강구수협이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그림 5-50】 강구수협이 갑각류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 영덕대게 브랜드 사업

- 위판액의 30%를 차지하는 대게의 위판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단체인 자망협회가 주축이 되어 ‘영덕대게 브랜드’ 작업을 5년전부터 시행, 디자인 및 상표 등록함
- 특허청으로부터 단독 디자인 및 상표를 등록, 현재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위판된 대게에 한해 녹색 완장 부착

- 강구수협에 등록된 어선이 생산·위판한 대게에 한해서만 녹색완장 상표를 부착하여 타지 대게와의 차별화에 주안점을 둠
- 위판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대게는 노란색 완장을 부착하여 위판대게와 확연히 구분짓고 있음

- 해당 위판대게의 어가도 타지역보다 높아 생산자들의 위판의지가 높음
 - ※ 강구수협 대게 한상자당 가격이 27,132원으로 구룡포수협 보다 약 1.5배 높음
- 그 결과 2003년 위판실적 173억 원에서 2009년 296억 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위판액이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위판대게의 품질정보 전달 서비스

- 수협에서 위판되는 대게의 품질 정도를 정확하게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품 대게’ 위판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음
- 대게가 ‘알이 찼다’. 또는 ‘60% 정도, 80% 정도 알이 찼다’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구매자들에게 알려줌

○ 영덕대게축제와 연계한 위판을 제고 기여

- 대게 잡기, 대게 세계요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요소를 제공하고 있음



○ 위판장을 찾는 생산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

- 오징어 배의 하역 인력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오징어 성어기에는 강구수협 전 직원이 새벽에 하역 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③ 시사점

- 수협에서 위판한 대게의 철저한 품질관리 및 브랜드화를 통한 명품 대게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고취함
 - 타지역에서 저가의 품질이 떨어지는 대게를 영덕대게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영덕대게의 이미지 손상방지와 소비자들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 또한 강구수협 인근에 대게 소비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수협 위판대게와 비계통위판 대게를 차별화(차별화된 브랜드 부착)하여 판매시킴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위판 인센티브를 제공
 - 또한 강구지역의 대게 어가가 인근 지역보다 높아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4) 경주시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1922년 개장된 경주수협은 2008년 위판장으로 지정됨
 - 경주수협은 감포위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감포항 내 대형 활·선어 유통 판매센터인 수산물 위판장을 건립 중에 있음



- 소속조합 :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369-14
- 개 장 일 : 1922. 11. 1
- 위판장지정일 : 2008. 4. 21
- 주요취급부류 : 선어
- 주요어종 : 오징어

- 대지면적 1,370㎡의 감포위판장에는 경매장 유개장이 250㎡, 무개장이 1,120㎡이며, 그 외 주차장 및 위생시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음

【표 5-71】 경주시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m²

위판장 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 물 처리장	위 생 시 설	사무실	중매인 사무실
		유개	무개					
1,370	250	250	1,120	100		3	10	

- 총 공사비 64억이 투입된 제빙냉동공장은 부지 면적 1,300평에 연 건축면적 1,011 평으로 얼음 공급 전용부두와 일일냉동 32톤(4,400상자), 냉장 2.061톤(20만 상자), 일일 얼음생산 40톤(290장), 얼음 저장 993톤(7,300장) 규모로 동해안의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빙공장으로는 최대 최신 시설임
- 특히 제빙냉동공장은 월성원자력에서 총공사비 64억 중 55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음

【표 5-72】 경주시수협의 가공시설 현황

제빙		저빙		냉동		냉장	
T/D	m ²	M/T	m ²	T/D	m ²	M/T	m ²
39.15	77.24	993	91	32.26	51.4	2,061	393.45

- 선어, 활어, 냉동 수산물에 대해 4.5%의 수수료를 책정함

【표 5-73】 경주시수협의 위판수수료

단위 : %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4.5	4.5	4.5			4.5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장 종사자수는 중도매인수 22명과 매매참가인수 1명이 있음

【표 5-74】 경주시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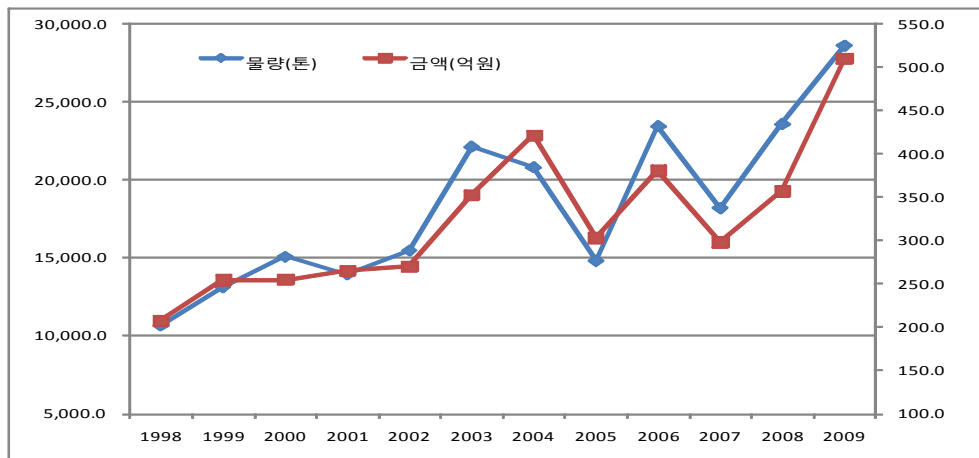
단위 : 명

중도매인수	매매참가인수	경매사수	
		자격증보유자	자격증미보유자
22	1		2

○ 위판동향 및 특징

- 경주시 수협의 위판물량은 1998년 약 1만 여 톤(금액기준 207억)에서 2009년 2만 8천 톤(509억 원)으로 연평균 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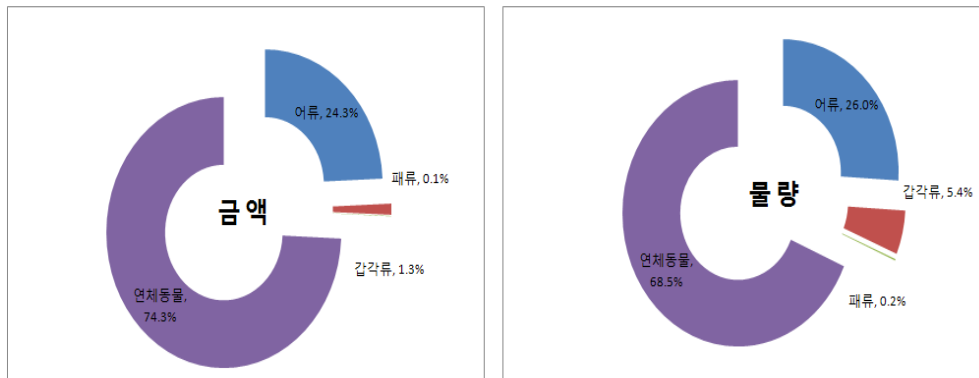
【그림 5-51】 경주시수협이 수산물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 주로 위판되는 어종은 오징어, 낙지 등 연체동물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오징어 위판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5-52】 경주시수협의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5-53】 경주시수협의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 위판고 상승에는 최근의 오징어 어가 상승도 일부 원인일 수도 있지만 경주수협의 적극적인 외지선 유치 및 위판시설 현대화 노력, 그리고 관광수요와의 연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 어업기반시설 및 어업인 편의 시설 확충으로 외지선박 유치 도모
 - 제빙냉동공장 준공, 수산인 회관 준공, 어선수리소 개보수공사 완료, 수산물 직판장 개보수 완료, 위판장 내 폐수처리시설 올해 준공 예정(자담 30%)임
- 활어유통센터 완공 예정(내년 3월)
 - 총사업비 50억 원(국비 20억 원, 도비와 시비 15억 원, 경주시수협 부담금 15억 원)을 들여 2층 규모의 2개동 2,825㎡ 규모로 1층은 활선어 위판장, 2층에는 특산물 시식 판매기능을 갖춘 대형 수산물유통판매장임



- 활어유통센터 설립을 통해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감포에서 싱싱한 특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동해 최대의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현재 경주시내와 감포를 잇는 도로공사 진행되고 있음)

활어유통센터 조경도

③ 시사점

- 외래선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위판장을 개보수하는 등 최고의 위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도시라는 특수성을 살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어유통센터 건립 등을 통해 관광, 수산물 위판기능, 먹거리 등 다기능적인 수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6) 강원지역

(1) 죽왕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1978년 죽왕법인 어촌계를 설립한 뒤 2000년 5개 어촌계가 법인화하여 죽왕수협으로 승인되었음
- 죽왕수협은 고성군 중 죽왕면만 관할하는데 5개 어촌계(가진리, 공현진리, 오호리, 문암1리, 문암2리)를 대상으로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음

가진리위판장



- 소속조합 : 죽왕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46-1
- 개 장 일 : 2001. 12. 31
- 위판장지정일 : 2008. 05. 09
- 주요취급부류 : 활어, 선어류
- 주요어종 : 넙치, 방어, 송어 등

공현진위판장



- 소속조합 : 죽왕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431-20
- 개 장 일 : 2008. 01. 24
- 위판장지정일 : 2008. 05. 09
- 주요취급부류 : 활어, 선어류
- 주요어종 : 가자미, 방어, 송어, 도루묵, 임연수어 등

오호항위판장



- 소속조합 : 죽왕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9-30
- 개 장 일 : 2008. 01. 01
- 위판장지정일 : 2008. 05. 09
- 주요취급부류 : 활어, 선어류
- 주요어종 : 가자미, 넙치, 임연수어, 멍게, 도루묵 등

문암1리위판장



- 소속조합 : 죽왕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1리 10-76
- 개 장 일 : 2002. 12. 31
- 위판장지정일 : 2008. 05. 09
- 주요취급부류 : 활어, 선어류
- 주요어종 : 가자미, 대구, 방어 등,

문암2리위판장



- 소속조합 : 죽왕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134-37
- 개 장 일 : 1979. 04. 21
- 위판장지정일 : 2008. 05. 09
- 주요취급부류 : 활어, 선어류
- 주요어종 : 가자미, 넙치, 대구, 방어, 도루묵 등

- 소속 조합원의 구성을 보면 유자망(중심적), 정치망, 구획어업, 형망(주로 겸업) 등인데, 전체 조합원은 약 310명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 중 약 70%만이 조업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고성수협외의 경우 채낚기어업이 중심으로 주력업종과 어획물 구성이 상이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각 어촌계에 위치한 어항을 중심으로 5개 위판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현대화된 시설을 구비하고 있음

【표 5-75】 죽왕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m²

구 분	위판장 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 물 처리장	위 생 시 설	사무실	종매인 사무실
			유개	무개					
가진리	892	496	496	-	-	-	-	-	-
공현진항	3,505	1,211	1,211	-	-	-	-	-	-
오호항	740	572	572	-	-	-	-	-	-
문암1리	569	394	394	-	-	-	-	-	-
문암2리	390	165	165	-	-	-	-	-	-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은 약 20여명으로,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이 활어 차로 5개 위판장을 이동하며 입찰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함
- 중도매인은 활어유통상인이자, 위판물량 중 대량으로 어획되는 선어도 주로 중도매인이 담당함
- 매매참가인의 대부분은 지역의 횃집으로, 주로 활어 경매에 참여함
- ※ 시작부터 어촌계 어항을 중심으로 경매
- 위판수수료율은 선어와 활어에 대해 각각 5%로 운영되고 있음

【표 5-76】 죽왕수협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중도매인수	매매참가인수	경매사수		비 고
		자격증보유자	자격증미보유자	
9	10	-	1	가진리위판장에서 총괄 운영

【표 5-77】 죽왕수협의 위판수수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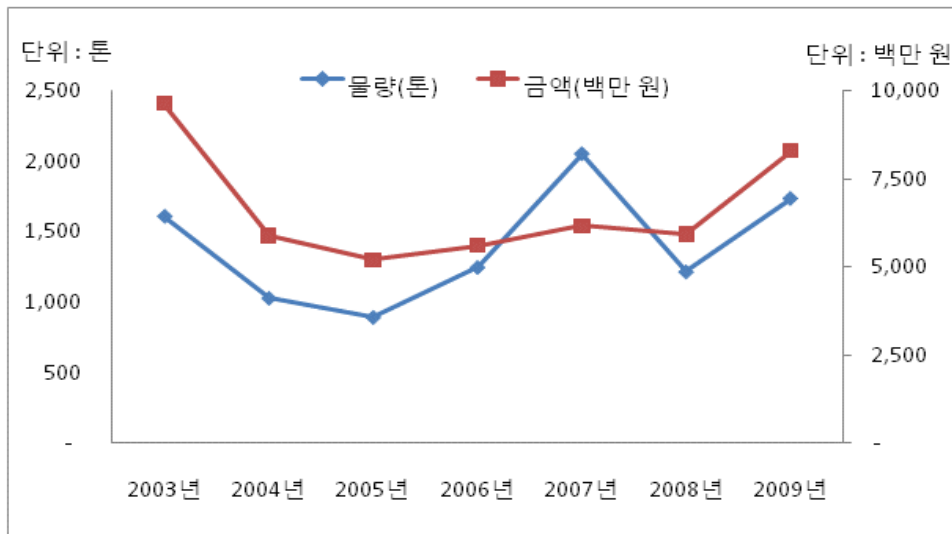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5.0	5.0	-	-	-	-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 위판규모는 60억 원(1,200톤)으로 강원도 관내에서도 작은 편으로, 위판물량은 2007년까지 증가하다 2008년에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는 등 연도별 편차가 있으나, 위판액은 어가 상승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09년에는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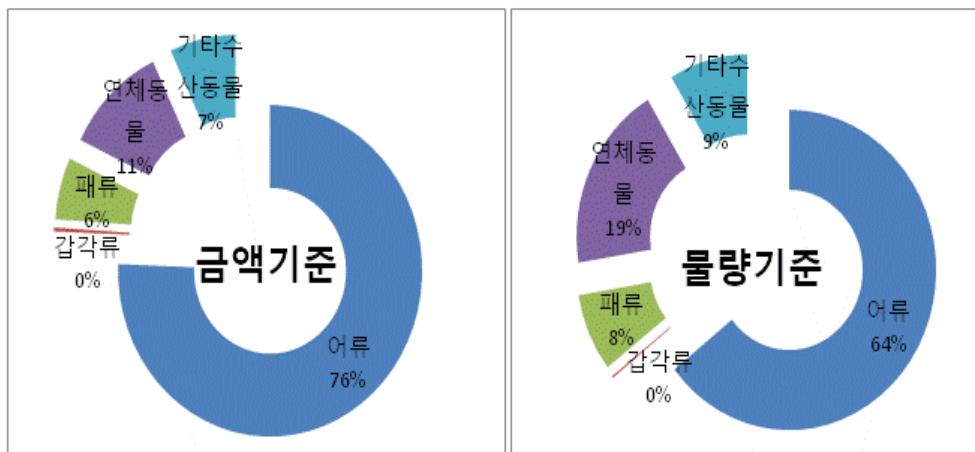
【그림 5-54】 죽왕수협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 품종별로는 어류가 중심이며, 그 중에서도 활어가 중심적으로 어획물 구성비를 보면 활어와 선어의 구성비중이 각각 80 : 20으로 활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5-55】 죽왕수협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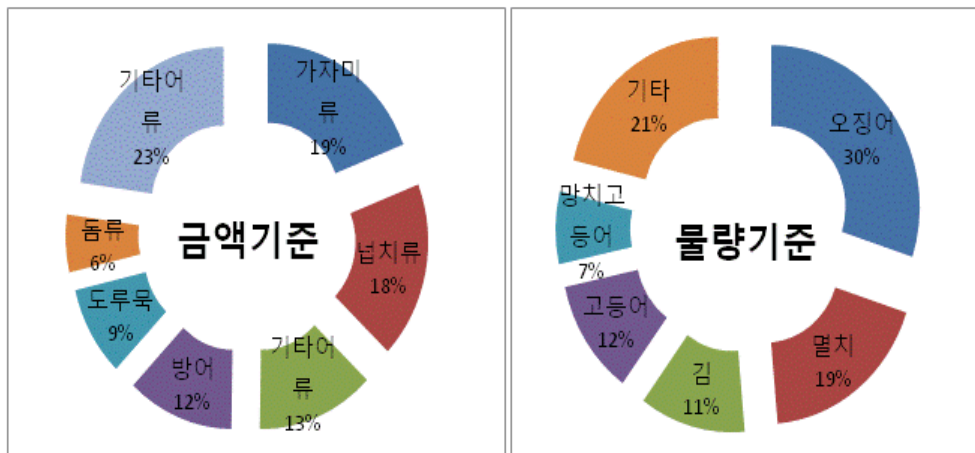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 주요 활어는 가자미·넙치류(가자미, 넙치) 중심, 기타 활어(방어, 송어 등)이며, 선어의 경우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볼락 등이 양륙되고 있음

- 위판물량의 대부분은 관내 소비 내지는 강원도 내에 판매하는 실정으로 과거에는 위판물량의 30~40%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판매하였으나, 최근에는 활어차가 때때로 입차하는 정도로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5-56】 죽왕수협이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 조합원의 계통출하 우선 관행

- 어획물 집하는 관내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관내 어획물의 99%가 관계자는 계통출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관행적으로 관내 조합원의 암묵적 합의를 바탕으로 어획물의 대부분이 계통출하되는데 따른 것으로, 실제 어업인이 횃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판매물을 수협 입찰을 거쳐 구매하고 있음
 - ※ 단, 어획 상황에 따라 때때로 다른 방식으로 출하되기도 하는데, 패류(패류형망)의 경우 형망단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직매하는데, 단, 외부상인의 가격이 높은 경우 형망단체가 수협을 경유하지 않고 직매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죽왕수협은 관내 조합원의 계통출하가 중심적이거나 때에 따라 인근 수협의 휴무일에 타지역 조합원이 활어를 위판하는 경우도 있음

○ 부실 중도매인의 정리

- 현재 중도매인의 대금결재는 15일 단위로 구매한도는 담보물을 바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과거 중도매인의 미수금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 문제 중도매인은 청산한 상태로 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음
 - ※ 한도 초과시는 거래 정지

③ 시사점

- 조합원의 계통출하에 대한 관행 유지
 - 죽왕수협은 지역적 특수성, 안정적 판로 확보, 수협과 조합원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됨
 - 양륙물이 활어 중심적이면서 지역적으로 특수성을 지닌 가운데 관내 조합원들의 ‘전량위탁합의(일부 예외)’를 바탕으로 수협과 긴밀한 관계 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됨
- 수협과 생산자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홍수출하 방지
 - 소량 다품종의 활어 중심으로 위판규모가 여타 수협에 비해 소규모이나, 위판되는 어획물의 성격에 따라 수협과 생산자와의 협의 하에 출하시기, 물량, 방식 등을 조정하여 어획물의 단가 보전에 노력하는 것도 유효하게 작용하였음
 - ※ 정치망 : 축양장을 이용해 물량 및 단가 수준에 따라 출하 조정을 유도
- 건전한 거래참가자 확보
 - 중도매인에 의한 한도초과 거래도 과거 문제 중도매인을 정리한 뒤, 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문제 발생 소지를 제거
- 관광수요를 바탕으로 한 소비시장 확보
 - 관광지로서 알려져 주말, 휴가철 등 성수기 관광수요가 높은 편으로 위판물량 대부분이 관내 또는 인근지역에서 소비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보유하고 있음

(2) 속초시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1968년 속초 본소(중앙동) 위판장을 시작으로 동명항, 사진항 위판장을 개설하여 한때 5개 위판장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2개소를 정리하고 현재 3개소(본소(중앙동), 동명항, 사진항)에서 위판사업을 운영함
 - 조합원은 500명 가량이나,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50~300명 수준으로 주요 어업은 오징어채낚기, 유자망(활어), 연승(참가자미, 문어 등), 동해구기선저인망(45~50t), 잠수기(성게, 멍게, 해삼 등) 등임
 - ※ 소속 생산자협회에 출하장려금 예산을 연단위로 책정하여 정액 지급

속초항위판장



- 소속조합 :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 위치 : 속초시 중앙동 482-251
- 개 장 일 : 1968. 04. 01
- 위판장지정일 : 2008. 05. 09
- 주요취급부류 : 활어,선어,냉동류
- 주요어종 : 오징어 외

동명항위판장



- 소속조합 :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속초시 동명동 1-131
- 개 장 일 : 1991. 11. 11
- 위판장지정일 : 2008. 05. 09
- 주요취급부류 : 활어류
- 주요어종 : 가자미 외

사진항위판장



- 소속조합 :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속초시 장사동 548-9
- 개 장 일 : 2008. 07. 31
- 위판장지정일 : 2008. 05. 09
- 주요취급부류 : 활어류
- 주요어종 : 넙치 외

【표 5-78】 속초수협 조합원의 어업종사 현황(2009년 기준)

단위 : 명

어업종류	경영자수	종사자수	합계
오징어채낚기	75	43	118
유자망	97	10	107
연안복합	92	13	105
정치망	1	1	2
기 타	120	61	181
합 계	385	128	513

자료 : 속초시수협 내부자료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선어를 중심으로 하는 속초항위판장(본소)의 경우 1968년부터 개장한 시설로 현재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보수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태이며, 동명항과 사진항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활어위판장이 운영되고 있음
- 동명항 위판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활어위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협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새벽6부터 어선 입항 때마다 입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
- ※ 동명항은 수도권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곳으로 항 전체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판매장, 횃집 등 전문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명항 위판장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활어회센터가 함께 위치해 있어 위판되는 어류는 전량 동명항에서 소비됨(1층 : 활어판매소(수협 조합원 운영), 2층 : 전문식당)

【표 5-79】 속초수협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위판장 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 물 처리장	위 생 시 설	사무실	종매인 사무실
			유개	무개					
속초항	4,074	512	545			83		40	224.4
동명항	7,574	198	198	4,956				18	
사진항	195			195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위판장의 인적구성을 보면 속초항의 경우 총 20명의 매매참가인이 있으며, 동명항과 사진항에는 각각 28명, 14명의 매매참가인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음
- ※ 중도매인의 경우 전문 취급어종은 있으나 물량이 적어 잡어류까지 다양하게 취급

【표 5-80】 속초수협 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도매인수	매매참가인수	경매사수		비 고
			보유자	자격증미보유자	
속초항	10	10		2	
동명항		28		1	
사진항		14		1	

자료 : 수협중앙회, 「2009년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0.5.

- 경매는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새벽 6시 20분부터 9시에 집중 이루어지며, 오후 1시까지 어선 입항에 따라 실시되며, 위판수수료는 4.5%임

【표 5-81】 속초수협 의 위판수수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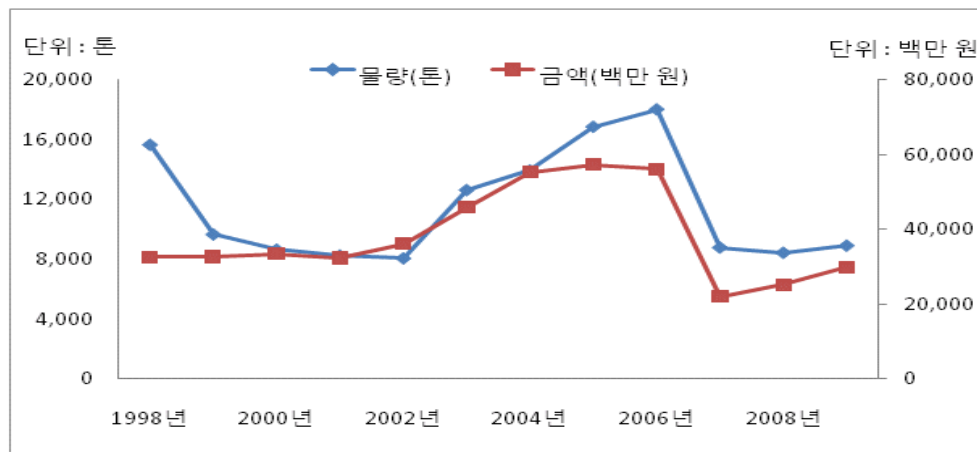
단위 : %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4.5	4.5	4.5	4.5	4.5	4.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 속초시수협의 위판고는 약 290억 원(2009년 기준) 가량으로, 2006년까지 560억 원 까지 증가하였다가 오징어 어황 부진으로 현재의 200억 원대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2006년 이후 위판금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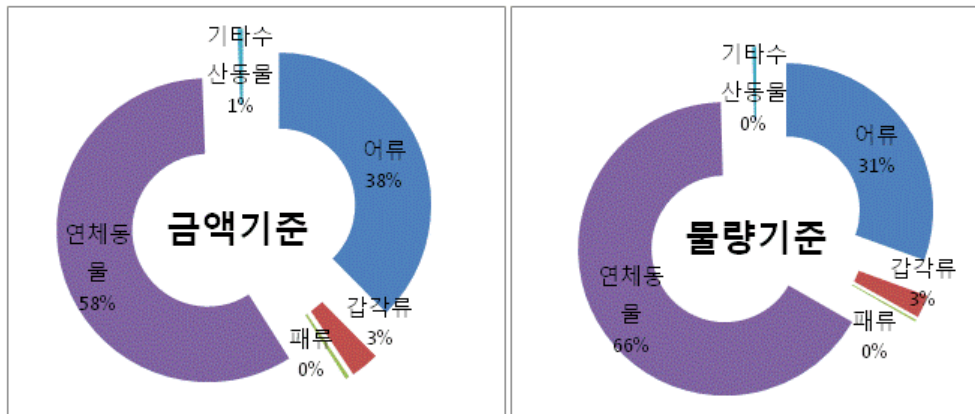
【그림 5-57】 속초수협 의 수산물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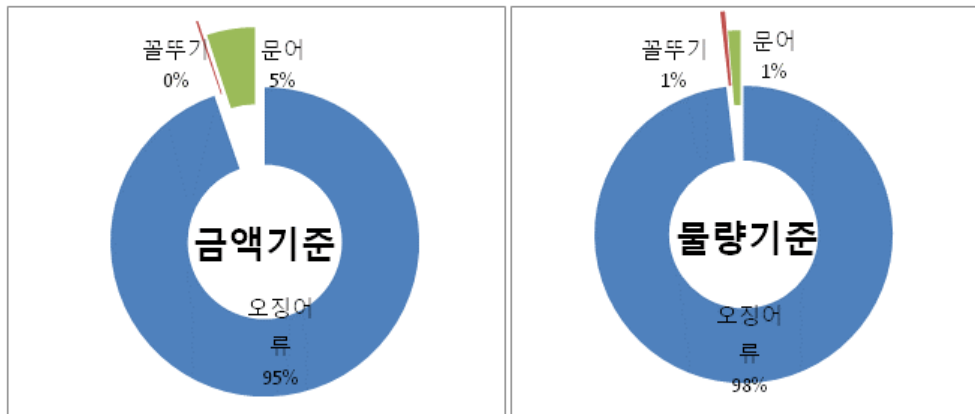
- 주요 위판어종은 오징어를 중심으로 한 연체동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활어의 위판도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5-58】 속초수협이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그림 5-59】 속초수협이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 위판장 별로 양륙물의 구성이 차이가 있어 각 위판장 특성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음
 - ※ 속초본소(신냉·신동 수산물(오징어) 중심), 동명항(활어), 사진항(활어)
- 수입수산물 또는 타지역 반입 수산물은 전무하며, 관내 수산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주요 판매처는 어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본소에서 생산되는 오징어의 경우 관내 소비와 함께 미사리, 서울, 수도권, 대전 등 수도권 지역으로 출하되며 선동오징어의 경우 군납이나 식자재용으로 주로 대도시로 판매됨

② 위판장 활성화 활동

- 매수인에 대한 자금 지원 등으로 가격지지 유도
 - 거래참여자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수발기금(23억 원)과 자체자금을 이용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함

- ※ 오징어 대량어획시 거래참여자에 자금을 지원, 자금은 수발기금과 자체자금으로 구성되는데 2009년의 경우 총액 70억(수발기금 23억)을 이용
- 또한 어가 지지를 위해 입찰 전 인근지역(구룡포, 고성 등)의 단가와 물량 등을 조회해서 중도매인과 사전협의를 한 뒤 가격을 일정한 수준에서 지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 관광지라는 특성 상 어가는 타지역보다 높게 형성되는 편
- 중앙동 위판장의 경우 수발기금을 이용한 위판물 예약판매제를 실시하고 있음
- ※ 수발기금(23억 원)을 활용해 사업을 공모하여 신청자 중 거래실적(5년), 거래상태 등을 고려해 거래액의 20~30%에 해당하는 수입보증금을 수협이 받아둔 뒤 위판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도매인의 자금 이용이 높은 편임
- 신규사업 유치를 통한 위판율 제고 모색
 - 현재 홍계활어유통시설(위판장) 건설을 추진 중으로 현재 부지매립 진행, 홍계위판장까지 건설될 경우 관광수요를 바탕으로 한 관광형 위판장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
 - ※ 홍계(연중조업)는 약 20척으로 위판장은 수협 자체사업으로 진행, 도비와 시비의 지원이 있음
 - 한편 성어기에 활어차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향후 활어차 유치를 위해 해양심층수를 활어차에 공급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중임
 - ※ 정부에 해양심층수 공급을 위한 모터시설 지원 요청 검토 중

③ 시사점

- 오징어 가격지지 관련 자금 지원
 - 오징어 어획이 중심인 본소 위판장의 경우 위탁물 예약판매제 등과 관련해 거래참여자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가 지지 및 판로 확보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지역 관광수요를 활용한 위판율 제고
 - 동명항의 경우 관광객 수요에 철저히 맞추어 인근 활어센터 운영인이 매매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관광형 소형위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불거리라는 측면에서 위판장 시설도 관광적 성격을 부여하였음
 - 위판수산물은 활어회센터 등을 판매처로 하면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였음
 - 향후 홍계유통시설이 완공될 경우 관광형 위판장으로서의 입지를 굳고히 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3) 대포수협

① 수협의 위판사업 개요 및 특징

○ 위판사업 역사

- 2001년 속초수협에서 분리·독립, 현재 대포항 구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나 2010년 대포신항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이전 예정임
- ※ 대포항은 수산물 자유판매제를 계기로 현재의 상가가 형성되기 시작해 관광객 수요를 배경으로 현재의 상태로 발전(어촌계원의 직판매장으로 발전하여 운영)하였음
- 조합원은 약 240명으로, 그 중 170명이 조업 활동 중임

대포항위판장



- 소속조합 : 대포수산업협동조합
- 위 치 : 속초시 대포동 421-1
- 개 장 일 : 1968. 04. 01
- 위판장지정일 : 2008. 05. 09
- 주요취급부류 : 활어, 선어류
- 주요어종 : 오징어, 가자미등

○ 위판장 시설 현황 및 특징

- 위판장 시설은 난전이 위치한 바닷가에 난전과 함께 자리잡고 있음
- ※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식당, 판매점, 난전 등이 함께 형성(약 100여개)되어 있음
- ※ 난전상인은 주로 어촌계원이며, 수협이 속초시에서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받아 어촌계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음
- 위판장 시설수준은 부족한 편으로, 관광객 대상 판매노점이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어선이 입항할 때 작은 공간에서 즉시 실시됨
- 대포수협 위판장의 중도매인수는 3명, 매매참가인수는 1명으로 거래참여자가 매우 적은 편임
- ※ 드물기는 하나 선어가 많이 잡힐 때는 가격 형성 차원에서 인근 중도매인을 섭외해서 거래에 참가

【표 5-82】 대포수협 의 위판장 시설 현황

단위 : m²

위판장 규모				주요시설				
대지	연면적	경매장		주차장	오물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유개	무개					
1,289		165	1,124					

【표 5-83】 대포수협 의 위판장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중도매인수	매매참가인수	경매사수		비고
		자격증보유자	자격증미보유자	
3	1		2	

- 입찰은 오전 6시 이후부터 어항 입항에 따라 수시 입찰(주말 : 1시까지 입찰)되며, 위탁판매수수료는 4.5%(조합원)~5%(비조합원)임

【표 5-84】 대포수협 의 위판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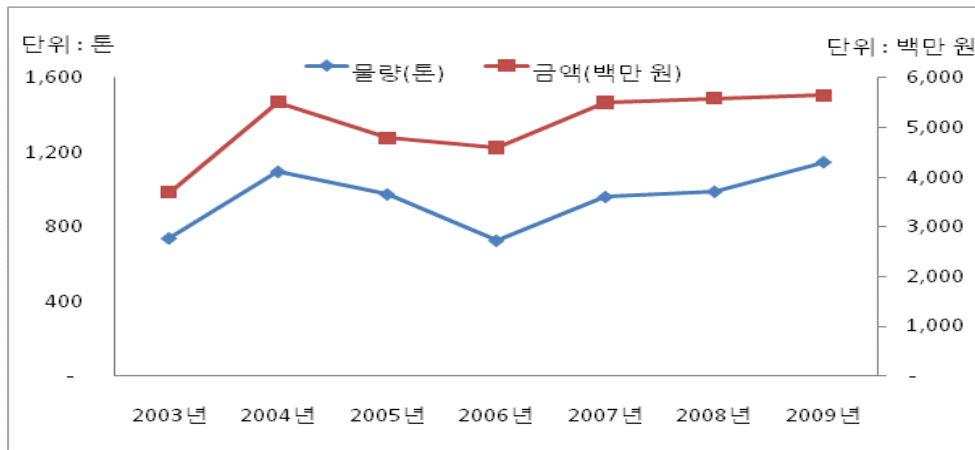
단위 : %

선어	활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4.5	4.5	-	-	-	4.5

○ 위판사업의 동향 및 특징

- 소규모이나 건설한 편으로 위판실적은 증가세로, 과거 45~50억에서 현재 50~60억(800~900톤)으로 증가하였음
- 주요 거래품목은 어류가 50% 이상의 높은 비중이며 연체동물도 30% 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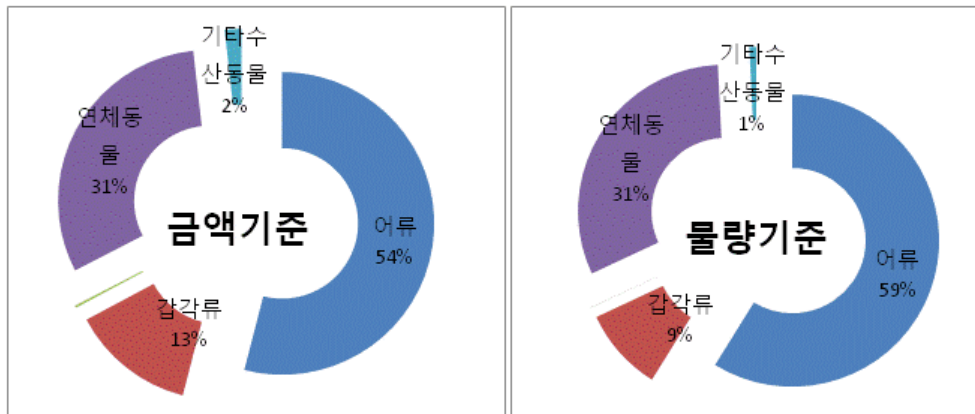
【그림 5-60】 대포수협 의 수산물 위판 실적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i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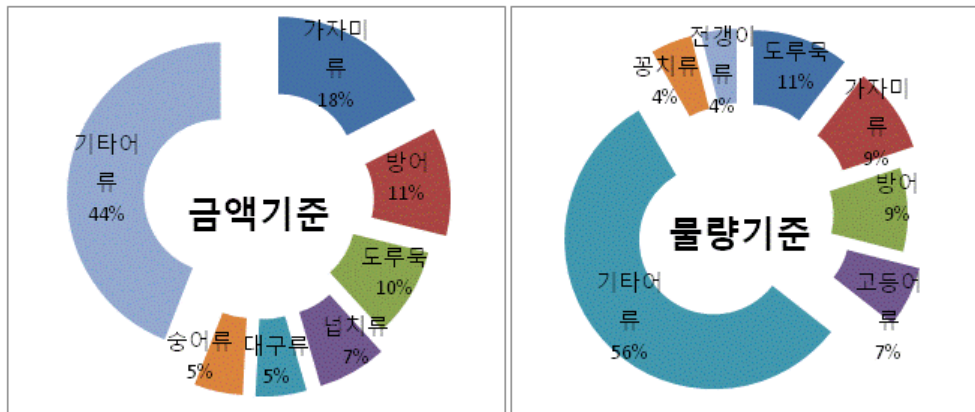
- 세부어종은 어류의 경우 가자미·넙치류, 방어, 송어류이며, 연체동물은 오징어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어획물은 주로 활어와 선어 형태로 양륙되며, 각각 60:40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5-61】 대포수협외 품종별 위판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5-62】 대포수협외 주요 위판어종 구성비(2009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 주요 어업은 연안유자망(85%), 정치망·소형채낚기·기타어업(각각 5%) 등으로, 소속조합원의 위판율이 9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홍게통발(80~90톤 급, 2척)은 현재의 대포항에 입항이 불가능하여 타지역(속초)으로 입항
- 타지역 어선(정치망 등)의 경우 고성, 양양 소속 6척 가량이 어가 문제로 대포항에 위판하고 있음
- 수협 양륙물은 지역 관광소비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음
 - ※ 활어 : 관내 소비 70%, 타지역 판매(속초 또는 수도권) 30%
 - ※ 오징어 : 물량이 많을 경우 외지로 판매하기도 하나 3척 뿐인 만큼 대부분 관내 소비

② 위관장 활성화 활동

- 조합원의 어획물 계통출하 관행 유지
 - 앞서 살펴본 죽왕수협과 마찬가지로 어획물은 무조건 상장이 원칙으로, 조합원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도 중도매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함
- 수협의 양식수산물 거래 관리
 - 수산물 식당·판매점(난전 포함)의 판매물은 대부분 수협 양륙물이 중심이나, 관광지라는 특성 상 양식수산물을 구비하는데 이에 수협이 관여함
 - ※ 2009년의 경우 광어와 우럭이 각각 120톤씩, 총 240톤이 거래(관내 어획물의 약 10% 수준)
 - 이는 10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상인들이 매년 활어유통업자(매년 약 2~4개 업체)를 설정하게 되는데, 활어유통업자와 수협이 상인의 거래대리자로서 활동함
 - 즉, ‘활어유통업자-중도매인-수협-판매상’의 거래구조로, 수협이 품질 관리와 가격 안정·조정이라는 측면에서 활어유통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대리자로 활동,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kg 당 400원의 수수료를 수수함(약 3~3.5% 수준)
 - 수협은 활어 유통업자에게 월 2회 대금을 지급함

③ 시사점

- 지역 관광수요를 바탕으로 양륙물의 판매처 확보
 - 대포항의 경우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잘 활용해 관광수요를 대상으로 한 활어 중심의 위관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음
 - 속초의 동명항 위관장과 달리 위관장 시설이 특별하지는 않으나, 항내의 소매기능이 위관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신항 이전으로 관광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맞추어 수협에서도 활어수조사업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향후 동향에 관심이 요구됨
- 수협의 양식수산물 거래 참여
 - 특히 지역의 관광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상인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양식수산물의 거래를 수협이 게재·관리, 인근 상가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임

제6장

수산물 산지위판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 산지위판제도의 개선 방안
2. 산지위판장의 활성화 방안

1. 산지위판제도의 개선 방안

1) 산지위판제도의 법제화

(1) 법제화의 의의와 추진 방향

-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판장과 관련된 법규는 법규의 복잡함과 불명확성으로 대변될 수 있음
- 먼저 법규의 복잡함은 위판장과 관련된 규정이 수산업법, 농안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걸쳐 있다는 점으로 명확한 법체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음
 - 이는 위판장이 가진 기능이 단순히 시장이나 생산자 공동출하의 장이라는 점 이외에도 수산자원관리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시장이나 공동출하기능과 자원관리기능은 각각의 법률 성격에 맞게 정의 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각 법에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 수산물 시장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부분은 그 운용이나 시설,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 다음으로 위판장과 관련된 법규의 불명확성은 위판장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 운용, 지위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한 법규가 없기 때문임
 - 현재 위판장에 대한 명확한 명칭이 드러나 있는 법규는 어항법을 제외하면 수산업법이 유일하고, 농안법에서는 법률에 명시된 산지의 판매시설을 농림수산물부 고시에서 위판장이라고 정의하는 수준임
 - 다시 말해 위판장의 수산자원관리 측면의 법규는 수산업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수협법에서는 판매사업에 대한 것이므로 위판장을 적시한다고 보기 힘들며
 - 유통측면의 법규는 농안법과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단순한 매매방법의 예외에 대한 것뿐이므로
 - 위판장의 개설과 폐쇄에 대한 것은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운용해야하는지와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치 않음
- 현재 위판장의 운영에 대한 것을 비교적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 것이 수협중앙회의 공판사업요령임
 - 동 요령은 위판장의 정의부터 거래방법, 중도매인에 관련된 것까지 농안법의 시장에 대한 내용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동 요령은 수협중앙회라는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구속력을 가지나, 언제든지 임의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고

- 또한 회원조합의 경우에는 법규와 같은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서의 의미가 강함

【표 6-1】 위판장 관련 법률 현황

구 분	법규의 성격	내 용	비 고
수산자원 보호령	부령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어획물의 양륙제한), 제21조(어획물 판매장소의 지정)	1999. 9. 30. 삭제 자유판매제 시작
농안법	법률	현행 농안법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 1976년 제정 : 고속도로변 등 설치 - 1994년 개정 : 제39조의 2(산지집하장의 공판장 운영) - 2001년 개정 : 고속도로변 등 설치 삭제, 산지집하장의 공판장 운영 삭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신설	
	시행규칙	제28조(매매방법의 예외)제1항 제8호 산지의 거래시설에서...수산물 매매	산지거래시설의 정의가 없음
	고시	2008년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에 관한 고시 신설 - 산지거래시설을 위판장으로 명시 2009년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로 개정 고시	
수산업법	법률	2007년 개정 : 제5장 어업조정 제53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의 1항 10호 -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신설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그 밖에 어업조정 목적
	시행령	2008년 개정 : 제41조 2(위판장의 지정)와 제41조의 3(위판장의 지정 취소) 신설 2010년 개정 : 제43조와 제44조로 조문 개정	
수산업 협동조합법	법률	제5장 제60조(사업) 1의 2. 경제사업 - 보관, 판매, 이용·제조 및 가공, 수산물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판매사업의 기능을 규정
	시행령	제7조(어촌계의 사업) :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제20조(위탁판매사업)의 1 :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공공단체 규정	규정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규정(2006. 8. 18) - 제 4 조(정의)의 1 : 판매사업은유통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판매 - 제12조(유통시설 설치) : 유통시설을 설치·운영 - 제26조(판매장설치 및 운영)의 1 : 공판장·유통센터·물류센터·바다마트·기타 판매장 등을 설치·운영	법률적인 구속력 없음
	요령	수협중앙회의 공판사업요령 - 제1장 제3조(정의)의 1과 2 : 위판장을 정의함 - 제3조의 3 : 경매식 집하장 정의 - 제6절 거래방법 등 : 위판장의 거래제도 규정	

주 : 수산자원보호령은 2009년 4월 22일에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흡수·통합됨

-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판장이 수산물 산지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위와 기능이 불명확하고 복잡함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법제화 방안

- 수산업법 상에 있는 관련 조항은 위판장의 개설이나 폐쇄, 자원관리 목적을 위한 일부 영업제한의 근거는 되지만 유통과 관련한 법률로 보기는 어려움
- 법제화를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이 있음
 - ① 수산업법의 하위법령으로 ‘(가칭)위판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
 -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의 판매사업에 관련된 조항을 근거로, 동 법에 위판장에 관한 조항을 만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판장의 설치, 운영, 거래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삽입하는 방안
 - ③ 농안법을 개정하여 위판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만드는 방안
 - 세부적으로 첫째, 법률에 1개 조항을 신설하고, 위판장의 거래는 도매시장을 준용, 시설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 혹은 시행규칙을 두는 방안, 둘째, 법률에 별도 장(가칭, 수산물산지시장)을 신설해 법률 근거를 두는 방안이 있음
- 상기의 세 가지 안에 대한 장단점을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6-2]이며, 결론적으로 최적안은 농안법에 1개 조항 신설 후, 추후에 별도 장으로 만드는 방안임

【표 6-2】 위판장 관련 법률의 법제화 장단점

구 분	방 법	장 점	단 점
수산업법	(가칭)위판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설치 및 폐쇄에 대한 규정이 있어 제정 용이	· 수산업법의 성격에 맞지 않음 · 자원관리 목적의 내용에 한정될 수 있음
수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 위판장의 본질이 수협의 판매사업이므로 사업성격에 맞음	· 협동조합법에 시장에 대한 규정을 한 선례가 없음 · 시설 및 운용을 삽입하기에는 법 성격 차이 있음
농안법	본조 조항 신설	· 유통법이면서 생산자 공동출하를 규정한 농안법의 성격에 맞음 · 미래지향적 기능 부여 가능함	· 농업부분과의 조율이 필요함 · 시장의 성격을 가지므로 운용상 한계가 있음(경매사, 시설기준 등)

- 수산업법의 하위 지침으로 만드는 방법은 법률에 이미 위판장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동 조항의 목적을 자원관리에 두고 있는 만큼, 수산물시장기능과 생산자 공동출하를 위한 목적의 지침을 두기에는 법 성격과 괴리가 있음
- 수협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와 시설로서 위판장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경우 위판장의 본질이 수협의 판매사업이므로 사업성격에 맞음

- 그러나 국내 및 외국의 협동조합법에 시장에 대한 규정을 한 선례가 없으며, 동법이 생산자 및 수산가공인을 위한 법이므로 중도매인 등 유통관계자를 포함하는 시설 및 운용을 삽입하기에는 법의 성격에 차이가 있음
- 농안법에 위판장과 관련한 1개의 조문을 삽입하는 경우는 동법이 유통법이면서 생산자 공동출하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법의 성격에 맞고, 각종 지원이나 정부계획 수립 시에 유통측면을 반영할 수 있어 미래지향적 기능 부여가 가능함
 - 그러나 위판장이 시장의 성격을 가지므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운용상 한계가 있고, 이 경우 농림수산물부 내 농업부분과의 조율이 필요함
 - 특히 위판장이 현 경매사들의 자격소지자 부족과 시설기준에 기존 농안법 시장과 차이가 심한 것 등의 적용상의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위판장의 성격이 시장기능과 공동출하기능의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농안법을 기준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농안법의 법률에 1개 조문을 신설하고, 관련되는 시설기준이나 거래방법 등은 조문에 특례조항을 두고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충돌을 피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음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경우 법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3에서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기준 등은 농림수산물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자유판매제와 관련하여 수산업법에서 자원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만듦으로서 위판장의 수산물유통 기능과 자원관리에 관한 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임

(3) 법률개정(안)

- 위판장에 대한 법률 조항을 농안법에 신설할 경우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넣는 것이 적합함
 - 이는 위판장의 성격이 수협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산지의 수산물유통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와 같이 비슷한 성격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 ① 위판장의 기능
 - 시장기능, 공동출하 및 어획후 처리에 관련된 기능을 언급할 필요가 있음

② 부지 확보 및 시설물 설치

- 기본적인 부지 확보 및 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것에 부가하여 항만 및 어항부지의 확보, 도로망 개설 등에 관한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항만부지에 관한 것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만법 상 배후시설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법률해석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③ 시장기능 증 운영 및 거래에 관련 된 사항

-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8조·제39조·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2조 규정을 준용함
- 단, 공판장은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에서 “다만, 공판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제45조의 개설자는 도매시장 내 공판장의 경우 지자체이지만 독립적인 공판장의 경우는 농협임. 따라서 위판장의 경우는 개별 위판장 개설자인 단위수협이 전부 개설자가 되므로 모두 개별적인 운영 및 거래방법의 예외를 두면 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수협중앙회가 별도의 위판장업무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④ 중도매인 등의 법률적 지위

-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및 경매사를 법률 조문에 포함시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운용 등에 관해서는 농안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함
- 이 경우 이들의 지위는 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및 경매사들의 지위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단, 경매사의 경우에는 농안법의 경매사 자격에 관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자격증 소유자의 비율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에 자격증을 소정의 교육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⑤ 시설기준, 부대시설 등

- 법률 조문에 이를 전부 담을 수가 없고,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산지유통센터의 사례와 같이 별도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지유통센터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시설기준이 언급되어 있음

○ 농안법 신설 조항(안) : 제52조(수산물 위판장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및 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 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위판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

는 자 혹은 수산물 위판장의 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위판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공동출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항만 및 어항부지의 사용 등 입지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수산물 위판장 중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매시장 혹은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수산물 위판장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8조·제39조·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산물 위판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판장의 경우에는 수협중앙회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시설기준, 부대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제한적 의무상장제의 도입

(1) 의무상장제의 법률적 제약

-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의무상장제는 동법의 취지가 수산자원관리에 있고, 강행규정인 만큼 위판장을 제외한 거래는 위법이었음
- 그러나 관련조항이 삭제된 이후의 현재 상태에서는 유통 혹은 공동판매의 목적으로 다시금 양륙장소 지정 및 지정된 장소 이외의 거래 금지를 도입할 경우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 헌법상의 자유권에 해당하는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나 사회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개인적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동시에 그 헌법적 보장은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본질적 요소라는 의미에서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짐
- 즉, 강행규정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전면적인 의무상장제를 시행할 경우 사매매를 하고 있던 상인들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결국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됨

- 이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에 속하는 사안은 가능한데,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어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사실상 법적으로 공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60%를 넘지 않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예외조항에서 산업합리화 연구개발, 불황극복, 산업의 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식적인 예외로 인정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
- 부당한 공동행위 중 의무상장제 시행 시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음
 - 제19조 1의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1의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1의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따라서 공동판매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전례가 없고,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면적인 거래의 제한이 아닌 협동조합에 한해 60% 미만의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전면적인 의무상장제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판례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의 판매사업은 상행위로 보지 않지만 중도매인은 상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결국 중도매인들의 독점이 되어 전면도입은 어려움

(2) 자원관리 목적의 의무상장제 도입 가능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무상장제의 전면적 도입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허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사항에 속하지도 못하므로 어려움

① 자원관리와 위판장의 상호 보완성

- 본 연구의 제안 배경이었던 의무상장제 제도입은 검토가 가능하나 자유판매제 폐지는 동 제도가 실체가 없는 경우이므로 본 연구에서 검토 대상이 아님
 - 수산자원보호령의 불법어획물 관리 조항을 근거로 시행되었던 양륙항 지정은 동 조항의 삭제로 근거를 잃음

- 자유판매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를 논할 수 없음
- 수산업법 제53조에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그 밖에 어업조정 목적을 위해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장소로서 위판장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법 취지에 부합된다면 제한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 위판장은 그 목적이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어업인들의 거래를 돕기 위한 수산물시장의 목적, 공동출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 자원관리를 위한 감시·감독의 장으로서의 목적이 있음
 - 특히 자원관리 목적의 경우 치어나 불법어업을 통한 불법 어획물 유통 제재, 자원관리를 위한 어획량 통제 등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 따라서 TAC 어종이나 불법 어획이 많은 특정어종 혹은 업종을 대상으로 양륙항을 지정하는 방안 등 자원관리의 본연의 목적으로 필요성이 증명되는 경우는 제한적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하에서는 제한적 도입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음

② 제한적 의무상장제 도입의 법률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배분량의 관리)는 총허용어획량(TAC)에 대한 배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 행정관청은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포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또한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이 경우 어업인은 해당 어획물을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해야 함
-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에서 수산자원회복과 관련되는 경우 판매장소의 지정이 가능하므로 다음의 경우에도 도입 가능성이 있음
- 먼저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경우로,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의 내용)에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음

-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자원남획의 정도가 심하거나 치어, 체장제한을 어긴 업종에 대한 감시·감독
- 또한 자원회복계획 대상 어종 중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어종의 경우 치어 남획이 많거나 체장제한 미만의 어종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에도 도입 대상이 될 수 있음

(3) 자원관리형 위판장의 도입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면적인 의무상장제 도입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수산업법 제53조,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 제40조를 근거로 할 경우 제한적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도입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① TAC 대상어종의 모니터링에 제약이 있는 지역
 -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에서 판매장소의 지정과 생산자의 지정된 판매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교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사매매의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지정업종 이외에서 어획하는 경우에도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지역의 경우는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에 대해 강제적으로 양륙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② 수산자원관리수면이 지정된 경우의 해당 지역
 -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의 내용)에 어업행위 등의 제한·금지, 남획이나 체장제한 위반에 대한 감시·감독이 가능함
 - 여기에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바다목장이나 인공어초 시설로 인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지역을 이용하는 업종과 조성 대상어종의 어획과 방류치어의 어획 위험이 있는 구획성 정치어업 등에 대해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
 - ③ 치어 남획이나 불법 어업의 징후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 TAC 대상어종의 어획 업종이나 관리수면에서 조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치어 남획이나 불법 어업의 징후가 있는 경우도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제2항의 4에서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40조의 적용을 받음

- 제14조(포획·채취금지),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23조(어구의 사용금지),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가 관련됨
 - 최근 오징어, 청어 등의 치어 남획이 많아 사료어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 갈치의 치어인 풀치, 전갱이의 소형어인 메가리 등에 대한 어획량이 많아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치어 남획이나 불법어업의 정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④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지역적 자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 자율관리어업은 자율규약을 통해 어장환경의 보호나 자원관리, 질서유지를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기는 하지만 일정 지역 내에 혹은 광역에 걸쳐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에도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제34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가 관련되며, 자율규약의 준수가 우선적이지만 제7조 제2항의 4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함
- ⑤ 기타 지역 어업인들이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지역
- 이상에서 언급한 지역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어업인들이 특정 어종이나 지역에 대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 판매장소의 지정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절 어업자협약 등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제7조 제2항의 4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함

3) 자율적 의무상장제의 도입

(1) 도입 방안

- 앞서 살펴본 법률에 근거한 자원관리 목적의 제한적 의무상장제 도입과는 달리 별도로 수협과 조합원, 혹은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스스로 의무상장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음
- 먼저 자율관리공동체의 경우 자율관리규약에 위반자에 대한 제재(자체벌금 부과, 자격 및 권리제한 등)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제2항의 4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율적인 의결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수협과 조합원의 경우 정관에 포함시키거나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합원 전원의 의무상장을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두 가지 모두 얼마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실시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2) 자율관리공동체 의무상장 실시의 법적 효력

- 자율관리공동체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동 제재가 수산업법, 혹은 수산자원관리법의 법률 제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닐 경우 법률적 강제 사항이라고 보기는 힘들
- 따라서 강제성은 약하나 자율관리공동체의 결속이 강하고, 효과가 높을수록 의무상장의 효과도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관련사례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음

① 탄도 통발 자율관리 공동체

- 넙치, 볼락의 채포금지체장(17cm), 금어기(7~8월), 통발 제한 등 어선 중심 공동체이며, 위판 의무화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을 젊은 층의 주도로 활성화시킴
- 어린고기가 잡히면 자연스럽게 방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획물의 위판을 수협직원의 참여하에 이루어지게 하여 전 회원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분위기 정착에 노력을 기울임

② 하전 자율관리공동체

- 바지락 주 생산지로 바닷길조성, 종패살포관리, 휴면어장지정을 통한 자원관리종패 공동구매 및 위생 설비를 갖춘 제품생산과 계통출하로 소득 증대
- 바지락 자동포장시설을 이용하여 위생적이고 소비자 기호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생산단가를 낮추었으며, 수협을 통한 계통 판매를 함으로써 경쟁력이 향상되었음
- 이러한 노력으로 하전 공동체는 연평균 어가 소득이 21백만 원에서 40백만 원을 상회할 만큼 소득이 향상된 공동체로 바뀌었음

③ 남해 멸치유자망 자율관리공동체

- 플라스틱 어획물 처리 상자를 이용한 위생가공으로 소득 증대, 협회를 구성하여 자체 TAC 실시와 계통 출하로 어가 안정, ‘미조 해산물축제’ 개최로 먹거리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 수협에 전량 계통 출하함으로써 어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나무상자 대신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였음
- 남해 멸치유자망 공동체의 평균 어가소득이 2001년 45백만 원에서 다음해인 2002년도는 60백만 원까지 상승하여 자립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음

④ 속초 연안망 자율관리공동체

- 연승, 유자망 어선간 양망시간 조정으로 조업분쟁 해결, 수요일 휴무제 실시와 1일 위판량 제한으로 생산량 조절, ‘양미리 축제’와 어촌관광 사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소득 개발
- 2001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매주 수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1일 위판량을 적당 20kg(활어)으로 제한하여 활어 생산량과 소비 물량을 맞춤으로서 적정어가를 유지하였음
- 이상의 네 가지 사례는 자율관리공동체가 수협계통출하를 활용하여 전량위판하여 성공한 사례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더라도 자율적 의무상장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3) 수협의 정관 혹은 총회의결에 의한 의무상장제 실시의 법적 효력

- 수협에서 조합원과 협심하여 의무상장제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함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조합원의 책임)에서 위판장 이용에 대한 의무와 조합원 자격에 대한 조항이 있어 의무상장제 시행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음
 - 즉, 제25조의 2항에서 ‘조합원은 지구별 수협의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32조(제명)의 1항에서 ‘지구별 수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위판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 1년 이상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지구별 수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임
- 또한 1년 이상 위판장 이용실적이 없거나 동법 제25조 2항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총회에서 제명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지구별 수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판장을 이용한 계통출하는 수협의 조합원에게는 수협법에 의해 의무로 규정지어져 있고, 미이용 시에는 제명의 사유가 됨
- 문제는 의무상장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임

- 의무상장제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제제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업이용의 제한, 제명의 두 가지가 있음
- 먼저 사업이용의 제한에 대해 수협법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 제한에 관한 조항은 없고, 다만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에 대한 제한은 있음
 - 동법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에서 ‘지구별 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이는 결국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제한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판장 이용과 관련하여 타 사업의 이용 유무를 제한할 수는 없음
- 다음으로 제명에 관한 것은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첫째, 조합원이 위판장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총회에서 과연 제명에 대한 의결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이는 소속 조합원과 수협의 의지 문제이므로 법적인 제명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실질적 제명이 가능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임
 - 둘째, 제명의 요건으로 1년 이상의 사업 미이용은 반드시 위판장 이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타 사업을 이용하면 됨
 - 또한 지구별 수협에 대한 의무 미이행은 제25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100% 위판장에 출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이행으로 볼 수는 없는 법률적 해석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수협법에 따라 정관에 위판장 이용과 이에 따른 제명을 규정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나 제한적이고, 사업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판장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수협법 제25조를 근간으로 의무상장제의 자율적 도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행의 완성도 여부는 얼마나 조합원들이 협조해 주는 지에 달려 있음

2. 산지위판장의 활성화 방안

1) 정부의 지원체제 전환

(1) 기능별 위판장 분류 및 육성

- 개방화 시대에 수입수산물과 경쟁하고 가격결정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 위판장을 위판장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기능에 맞는 차별화된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위판장별 수급동향, 경영실태,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가지(광역유통형 위판장, 자원관리형 위판장, 관광중심형 위판장, 조건불리형 위판장)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우수 위판장 중심의 육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유통형 위판장**은 주요 소비처로의 수산물 공급이 가능한 위판장으로 주요 소비처로의 공급능력 확대를 통한 산지 수산물의 공급기지화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 및 고차가공시설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등으로 광역유통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원관리형 위판장**은 TAC 어종, 남획 및 고갈 대상 어종 등 자원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어종이나 수산자원관리수역 지정 수역, 치어남획 및 불법어획 가능성이 높은 지역(또는 어업)과 관련되는 위판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대상어종을 전량 위판하는 것을 원칙(사매 금지)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관리형 위판장으로 지정될 경우 여타 위판장 보다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 하는 등 중점 육성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자원관리형 위판장에서 출시되는 품목에 대한 브랜드화를 유도함으로써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이 경우 해당 위판장에 대해서는 위판수수료 할인, 브랜드화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어업인이 사매매를 선호하는 이유가 수협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큰 이유였던 만큼 자원관리형 위판장에 전량위판하는 경우 수수료의 일정부분에 대해 자원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광중심형 위판장**은 관광지 주변에 위치해 소비자가 찾아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위판장으로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위생관리 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오물처리장, 정화조, 위생시설 및 주차시설, 휴게시설 등). 더 나아가 관광중심형 위판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의 관광명소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지역 관광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위판장 방문 유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건불리형 위판장**은 지역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도서나 도로 여건이 열악한 위판장으로 조건불리 극복을 위한 운반선, 운반차 등 수산물의 수집·배송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능별 위판장 유형화는 추후 위판장의 여건, 특성 및 전망 등 전국 산지위판장의 수급동향, 경영실태, 시설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능별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능별 유형화에 따른 시범실시 후 우수 위판장 중심의 확대 실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비지 유통구조가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광역유통형 위판장은 시장 지배력과

독자의 거래 경로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지에 대한 판매,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원관리형 위판장, 조건불리형 위판장에 대해서는 수협 매수제품의 브랜드 사업 지원, 수집·배송 등과 관련된 운송사업 지원, 위생·품질관리 관련 사업체 등록 등 관련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6-3】 유형별 산지위판장의 특성 및 지원 방향

구 분	기능 및 특성	지원방향
광역유통형 위판장	주요 대도시 소비처로의 수산물 공급이 가능한 광역 거점 위판장	산지 수산물의 공급기지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 고차가공시설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등 지원
자원관리형 위판장	TAC 어종, 불법어업 대상어종, 남획 및 고갈 대상 어종 등 자원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위판장	우선적 자금지원, 위판수수료 할인 등 중점 육성 정책을 마련,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브랜드화 유도
관광중심형 위판장	관광지 주변에 위치해 소비자가 찾아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위판장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위생관리 시설 및 편의시설(오물처리장, 정화조, 위생시설 및 주차 시설, 휴게시설 등) 확충,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개발, 지역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명소로 유도
조건불리형 위판장	지역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도서나 도로 등 물류 여건이 열악한 위판장	조건불리 극복을 위한 운반선, 운반차 등 산지 수집·배송 관련 사업 지원

(2) 우수사례 발굴과 인센티브 제공

- 위판을 제고, 업무 효율화 등 일선 수협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위판 활성화관련 우수사례의 발굴 정례화를 통해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타 위판장의 분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발굴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위판시설 및 자금지원 등의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위판장에 대한 차년도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판매량이 많고 신규 판매처 발굴 등 실적이 우수한 중도매인에 대해 위판조성금 등 장려금 확대, 정부자금의 사용 금액 상향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마련

- 위판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 강화를 통해 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산지위판장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능별 위판장 분류를 중심으로 산지위판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기능을 고려하여 유형별 위생관리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위판장(예 : 광역유통형위판장)은 주요 소비처로의 공급기지화라는 측면에서 위생관리와 저온유통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위판장 건립 및 시설 개선 지원체제도 유형별 기능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유형내에서도 위판 활성화 등 경영 우수수협(위판장)에 대한 차등지원 체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자부담 비율(30%)을 우수위판장에 대해서는 하향 적용하는 등 실적 대비한 차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위생관리 시설과 관련해서 위판 활성화 유인 차원에서 우수위판장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대폭 완화(예 : 10%)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4) 중도매인 관련 탄력적 지원 방안 모색

- 일본의 산지시장 활성화 사례에서 보았듯이 산지활성화를 위한 지원시 지원대상에 산지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수협)만을 포함하기 보다는 정책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산지위판가격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지중도매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중도매인의 거래한도 및 연체이자는 중도매인의 경영책임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하지만 홍수출하에 대한 가격지지, 어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적절한 생산자 수취가격 지지와 위판장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큼
 - 현재 중도매인의 외상거래 한도는 수협중앙회의 공판사업요령 제14조(외상거래 한도) 1항의 “중도매인의 외상거래한도는 기본한도와 신용한도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외상거래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사업채권 관리업무방법서(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0. 4. 27)”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동 규정에서도 외상거래의 신용한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연체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따라서 위판장 특성 및 중도매인 실적을 고려하여 연체기간 및 이자율의 탄력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산지 수산물 수급 안정화(수취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 매수인의 능력이 시장의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인이나 현 여건으로는 신규 매수인(또는 매매참가인) 모집이 용이하지 않음
 - 따라서 수협의 매수기능을 강화·확대하거나 또는 신규로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위판장 중도매인의 한도초과 문제는 대부분 일시다확성 어종의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수협과 중도매인이 협력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홍수출하시 긴급수매자금의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일시다확성 어종의 홍수출하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중도매인에게 긴급수매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수매비추제도를 활용하여 일정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어가지지를 위해 수협의 선집행, 후보고의 형태로 긴급수매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산지 물류기반 확충

- 최근 소비지 대형수요처가 확대되면서 구매력이 증대하고 있고 시장 지배력·교섭력 높아져 산지의 가격결정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산지의 가격결정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바, 소비지 물류연계 조직(소비지물류센터 혹은 광역유통형위판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지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가격 결정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역유통형위판장을 중심으로 산지시장의 규모화가 이루어지면 주요 거점별 물류기능이 원활화 될 수 있으나 물량집적 및 배송은 대도시를 전부 커버할 수 없고, 각 산지시장에서 소비지로 집산되는 물량의 처리가 어려움
 - 따라서 각 산지시장의 물류를 집적하여 소비지 배송이 원활화될 수 있도록 광역유통형위판장의 육성뿐만 아니라 대도시 소비지 인근에 수산물 소비지물류센터를 도입하여 산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체제의 구축 시, 대형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대응, 대량구매자(외식업체, 단체급식업체, 식자재업체), 재래시장 등에 대한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동 물류센터는 위판장뿐만이 아닌 어촌계, 가공업체, 양식업체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수협의 자구노력 강화

(1) 위판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어업인들이 위판장에 위판하지 않는 이유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 가격과 전도금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가격의 경우 사매매 상인들이 위판장과 동일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위판수수료 만큼의 가격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 전도금은 출어경비를 위한 것으로 용자의 성격이어서 이를 해결할 경우 수협에 위판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산지위판장에 위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협에 위판하는 어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수협법 제71조 3항에 의한 이용고 배당의 확대, 영어자금에 대한 우선권 부여, 정책자금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전도금의 경우 위판을 원하는 어업인들이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어자금 등을 포함한 특별 용자자금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가격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도매인에 대한 유인책 마련도 중요한 바 실적이 우수한 중도매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함
 - 이 경우 위판 조성금 등 장려금 확대, 정부자금 사용금액 상향 및 이자율 조정 등의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위판장 내 물류비용의 절감방안 마련

- 위판장에 위판하는 어업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결재의 안정성, 양륙서비스, 판매서비스 등이 있지만 최근에는 사매매 상인들이 냉동탑차 등을 이용하여 직접수집에 나서는 등 수집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따라서 위판수수료만큼의 가격 보장을 위해 어업인들에 대한 수집서비스의 강화, 위판장 내 물류설비의 확충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함
- 특히 항운노조 수산물지부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중심의 위판장 내 물류비용 절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일정 부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어상자의 경우도 플라스틱 어상자의 보급과 일정 비용의 지원, 스티로폼 박스에 대한 지원 등 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 개념을 도입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산물의 물류효율성이 농산물에 비해 낮는데 어종별로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어상자, 물류체계 등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 표준화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²⁶⁾

(3) 위생관리 및 가격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최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수산물의 위생관리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바가 큰 만큼 산지위판장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위생 및 품질 관리 노력을 증대할 시점임
 - 조사 결과 수협 담당자, 중도매인, 어업인 모두 위판장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선도관리라고 응답한 점으로 볼 때 품질 및 위생관리가 위판장 활성화의 선결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위판장 내 오물처리장, 정화조 설치 등 위생관리시설의 확대 도입과 수산물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한 어상자 이용의 확대방안 모색과 더불어 선도관리를 위한 위판장 저온관리 시설 도입 및 선도유지에 도움이 되는 용기개량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별, 어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수산물 규격화 문제도 대중어종을 중심으로 연차별 규격화 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전자경매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어업인 설문조사 결과 위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어업인 수취가격의 하락이었던 만큼 위판 활성화의 가장 큰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지위판가격 제고를 위해서는 수협차원의 노력 확대가 필수적임
 - 어업인 수취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산지 직거래 확대, 우수 소비처(판매처) 확보, 우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4) 어업인 및 조합원에 대한 위판서비스 제고

- 위판 활성화와 관련 어업인 수취가격 이외에도 어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유무도 중요한 요인임
 - 따라서 위판제도 역시 어업인 중심의 위판서비스 제공체제 구축에 중심이 두어져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어업인을 찾아가는 위판서비스 시스템으로 개선할

26) 도매시장 경유의 경우 평균 물류비용 중 소모성 비용의 하나인 감모비가 수산물은 평균적으로 전체 물류비의 25%를 차지하는 반면, 농산물은 평균적으로 6.7%인 것으로 나타나 농산물에 비해 수산물의 물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위판시스템 개선을 위한 위판장과 어업인(조합원)간의 소통채널 구축도 위판장 이용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됨
 - 상시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대 어업인 신뢰회복 및 위판률 제고방안(위판장, 조합원간 자율적 위판제고 방안 마련 모색 등)을 모색 할 수 있으며 지역별 어종별 위판시세 제공과 같은 위판장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관련 홍보(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산지위판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위판사업을 효과적으로 기획·입안할 수 있는 운영 담당자(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함
 - 위판사업을 비롯해 산지위판장의 기능 확대 및 효율화와 관련해 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위판장의 거래시스템 다양화

- 현 위판장의 거래체계는 경매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가공품, 양식활어 등의 거래가 어렵고, 전처리된 수산물의 거래 또한 수용하기 쉽지 않아 위판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현재의 거래방법 이외에도 수의매매, 정가매매 등 거래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산시스템의 개선은 거래정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거래망의 구축, 사이버도매시장의 구축 등을 통한 수·발주시스템 개선에도 활용 가능하며
 - 구매자에 대해 전산구매, 구매한 상품의 배송 현황, 리콜, 물류센터에 대한 세부 주문, 배송지에 대한 세부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 질 것임

3) 장단기 추진 로드맵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산지위판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 어업인 등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다양한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음
 - 그러나 이들 방안을 동시에 단기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측면에서 산지위판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향을 단기

와 중장기로 구분해 보면

- 우선 단기적으로는 산지위판장의 법적 근거문제가 중요하므로 위판장 관련 법률 개선안 마련 및 농안법 개정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활성화 관련해 기능별 위판장 분류 및 육성안 마련, 우수사례 발굴 정례화 및 지원 방안 마련, 중도매인 관련 지원 방안 마련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협 자체적인 자구노력 강화란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 위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마련, 어업인 및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방안 마련, 위생관리, 선도관리 및 가격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위한 기반 구축에 중심을 두고 산지위판장의 유형별 위생관리 기준 마련과 실행을 통해 산지위판장의 위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산지위판장의 어업인 수취가격 안정이란 측면에서 산지 수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체제 마련과 광역유통형 위판장(혹은 소비지 물류센터) 중심으로 소비지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 물류기반 확충 방안 마련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수협차원에서도 물류 표준화 등 위판장 내 물류비용 절감 방안 마련과 더불어 위판장 거래시스템 다양화 방안 모색을 통해 위판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6-4】 위판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추진 로드맵

구 분	단 기	중장기
제도 개선	· 위판장 관련 법률개선안 마련 및 농안법 개정 추진	· 위판장 유형별 위생관리 기준 마련 및 연차별 적용
활성화 지원	· 기능별 위판장 분류 및 육성안 마련 · 우수사례 발굴 정례화 및 지원 방안 마련 · 중도매인 관련 지원 방안 마련	· 산지 수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체제 마련 · 소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 물류기반 확충
수협 자구 노력	· 위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방안 마련 · 어업인 및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고 · 위생관리 및 가격제고 방안 마련	· 위판장 내 물류비용 절감 방안 마련 · 위판장 거래시스템 다양화 방안 마련

참 고 문 헌

-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9.
- 농림수산물식품부, 「산지 수산물 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2008.10.
- _____, 「수산업 연차보고서」, 각 년도.
- _____,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
- _____, 「해양수산물통계」, 각 년도.
- 박성쾌 외,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가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해양정책연구 제23권 1호
- 수협중앙회, 「수산물 위[공]관장 현황」, 1999~2010.
- 이남수, “국내 시푸드 산업의 현황 및 전망”, 「KMI 해양수산물동향」, 2007.8.3.
- 장영수, “대형할인점의 수산물유통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물경영학회, 2004.
- _____, “수산물 산지중도매인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물경영학회, 2007.
- _____, 「수산물유통론」, 부경대학교 수산물기업연구소, 1997.9.
- 정명생 외, 「주요 어류의 소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년도.
- _____, 「물가연보」, 각 년도.
- _____,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
- _____, 「장래인구추계」, 200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년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국제 수산물전망대회」, 2010.
- 해양수산부, 「WTO/DDA 대비 어업인·어촌 지원대책 세부실천방안 수립(2차년도)」, 2007.12.
- 허길행 외, 「농산물 공동출하 유형별 효과 분석과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財)漁價安定基金, 「水産物の産地市場機能の強化に向けて」, 2005.3.
- 多屋勝熊, 「水産物流通と魚の安全性—産地から消費地まで」, 東京水産大學第26回公開講座, 2001.4.
- 中居 裕, 「水産物市場と産地の機能展開」, 1996.
- 出村雅春, “水産物流通の変化と産地の対応(新たな産地市場の構築に向けて)”, 「農林金融」, 2002.2.
- _____, “沿岸水産物をめぐる流通構造の変化と漁協の販賣対応”, 「農林金融」, 2001.6.

수산물 산지위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國井勝規・平井純一, “卸賣市場の機能低下による水産物卸賣業界の再編”, 「知的資産創造」
2009.6.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수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fifis.kr)

수산정보포탈 홈페이지(www.fips.go.kr)

수산정보포탈 홈페이지(www.fips.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www.jfa.maff.go.jp)

부 록

1. 인식도 조사 결과
2.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규정
3. 공판사업 요령
4. 산지위판제도 관련 법률

<부록 1> 인식도 조사 결과

□ 대상 : 어업인, 수산업협동조합, 중도매인

□ 목적 : 산지위판장 개선 및 활성화 관련 현황 및 활성화 관련 의견
조사

□ 기간 : 2010년 4월~6월

□ 설문 유형 및 문항수

설문대상	설문유형	문항수	응답매수
어업인	현황	10	191
	평가 및 문제점	10	
수협담당자	현황	15	112
	평가 및 문제점	16	
중도매인	현황	8	178
	평가 및 문제점	14	

1. 어업인

1) 표본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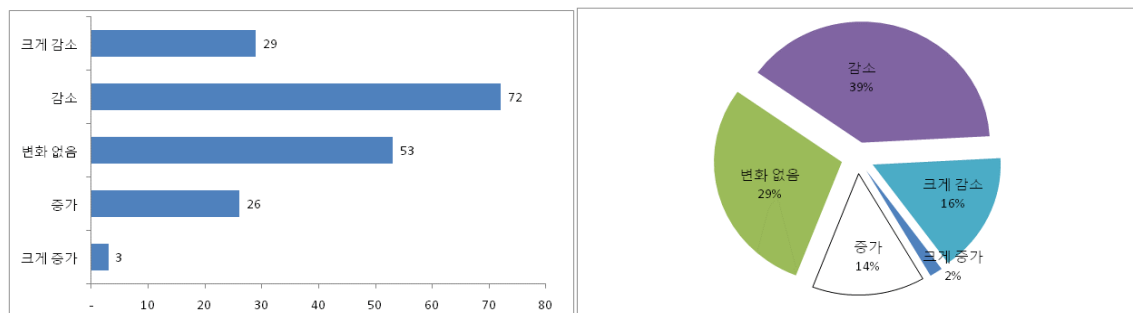
- 산지위판제도 개선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총 191명 으로부터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응답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은 연안어업이 135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근해어업은 24명으로 13%를 차지함
 - 해당업종에 대한 종사기간은 10~20년 사이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하의 비교적 신규어업인도 26%에 이르렀음
 - 어업인이 생산한 어획물의 계통출하율은 81%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절반에 이르렀으며, 다음으로 41~80% 수준도 23%로 나타남
 - 생산자가 속한 조합 위판장에 대한 위판 비중이 어느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81% 이상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많아 소속된 조합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응답자 중 타지역 조합을 주로 이용하는 어업인은 6%에 불과하였음
 - 계통출하시 주로 이용하는 위판장의 개수는 1개소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3개소가 24%로 조사됨
 - 10년 전과 비교해서 주로 이용하는 위판장이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하다는 답변이 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구 분		응답자수	비중
합계		191	100%
연령	30대 이하	37	19%
	40대	94	49%
	50대	55	29%
	60대 이상	3	2%
	무응답	2	1%
주요 종사어업	연안어업	135	71%
	근해어업	24	13%
	양식어업	1	1%
	연안+양식	14	7%
	무응답	17	9%
해당업종 종사기간	10년 이하	49	26%
	10~20년	8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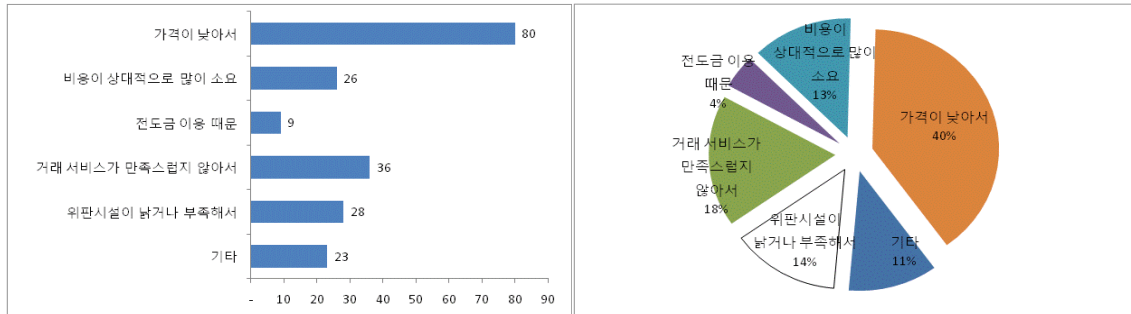
	20~30년	40	21%
	30년 이상	18	9%
	무응답	1	1%
주요 조업지역	남해	40	21%
	동해	105	55%
	서해	46	24%
어획물의 계통출하율	없음	19	10%
	~40%	32	17%
	41~80%	43	23%
	81%~	97	51%
소속조합에 대한 위판 비중	81%~	126	66%
	51~80%	11	6%
	50% 미만	11	6%
	타지역수협	11	6%
	무응답	32	17%
주요 이용 위판장 갯수	1개	100	52%
	2~3개	45	24%
	4개 이상	14	7%
	무응답	32	17%
10년전과 비교해 이용하는 위판장의 변화	변화 없음	154	81%
	다른 위판장으로 변화	28	15%
	무응답	9	5%

2) 수산물 위판 관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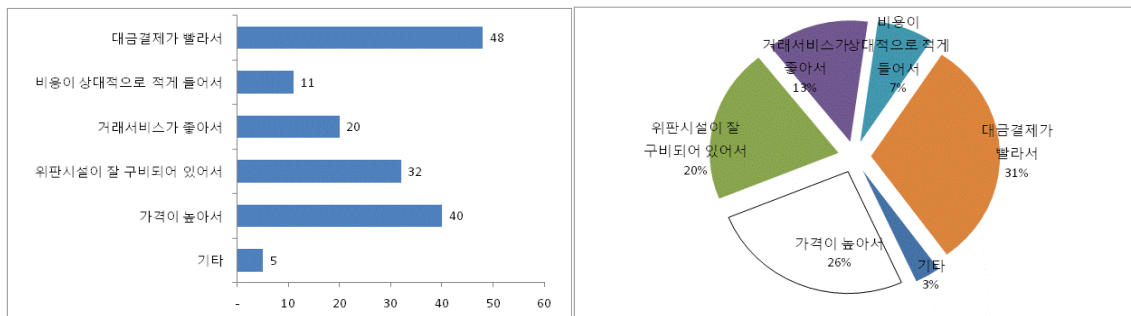
- 199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체 생산량 중에 위판장에 출하하는 물량에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는 줄었다고 답한 반면, 증가하였다는 응답자는 16%에 그쳤음



- 계통출하하는 물량이 줄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어가가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각각 18%, 1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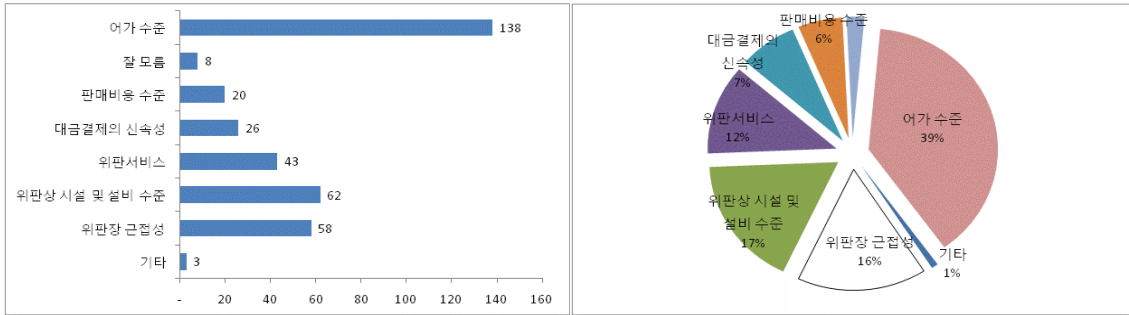
- 계통출하하는 물량이 늘었다고 답변한 사람의 경우 대금결제가 빠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어가가 높다는 의견도 각각 26%, 20%로 나타남



- 두 가지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어가와 위판장 시설 수준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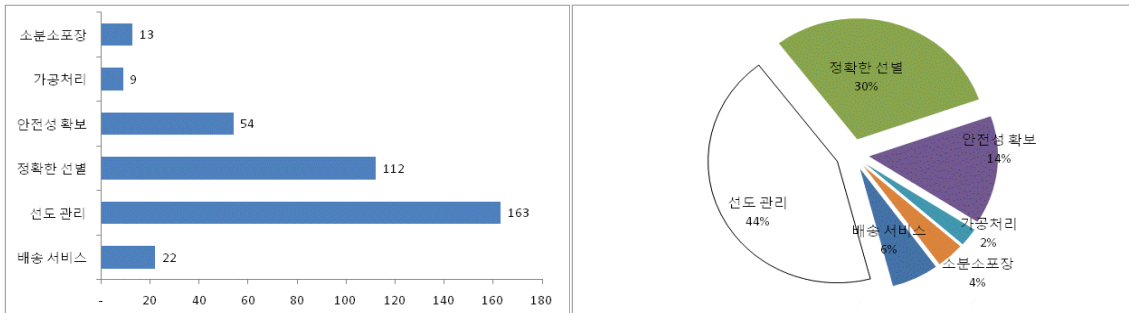
3) 위판사업 관련 요인별 평가

- 어획물 양륙과 관련해 위판장을 선택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어가의 수준이라는 답변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위판장 시설 및 설비 수준이 17%, 위판장의 근접성과 위판 서비스가 각각 16%, 12%로 조사됨



- 최근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어획물의 선도 관리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정확한 선별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다음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라는 응답도 1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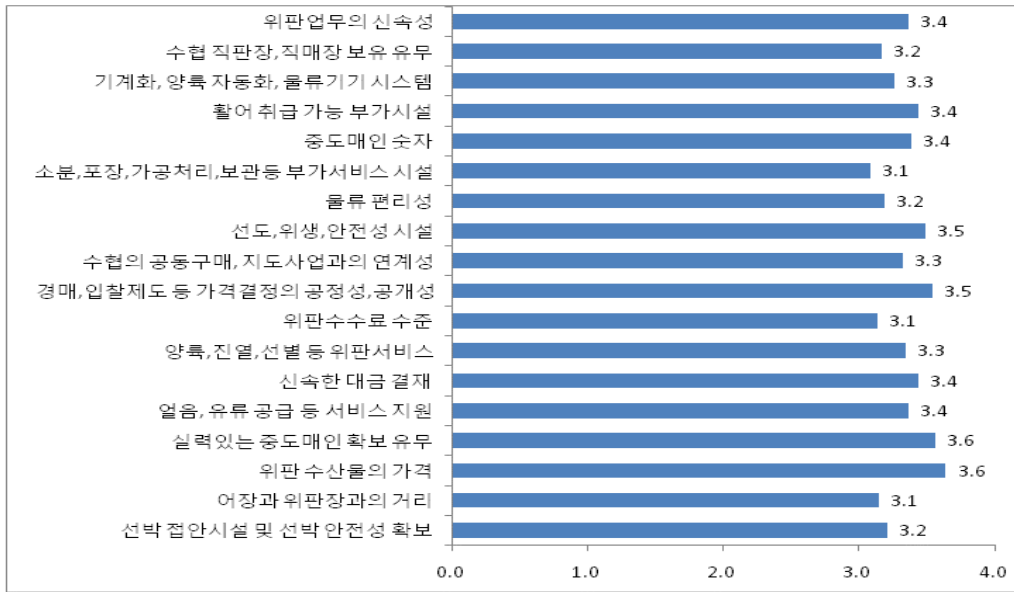


- 한편 위판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 위판장과 관련된 유무형의 주요 요인에 대해 5점 척도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는데 제시한 18개 요인 중 위판수산물의 가격을 가장 중요하다(3.64점)고 평가하였으며, 경매·입찰제도 등 가격결정의 공정성 및 공개성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앞선 조사내용과 마찬가지로 어가를 계통출하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음

- 다음으로 위판장의 선도·위생·안전성시설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또한 활어취급 가능 부가시설 요인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설문대상자 중 연근해어업인의 비중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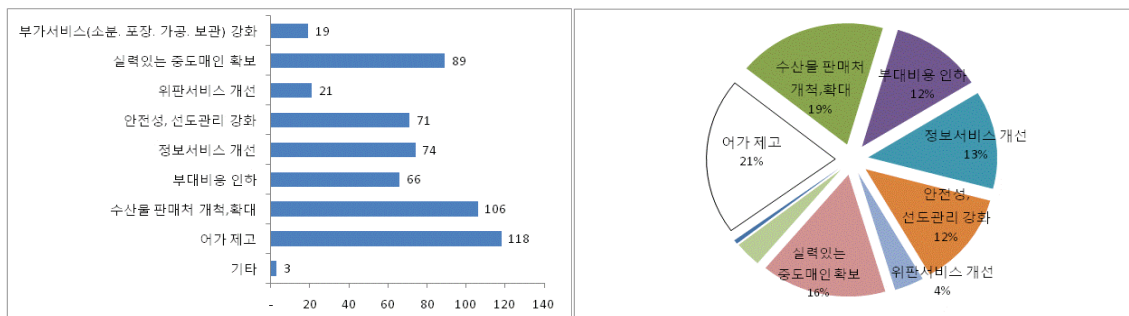
- 이외에 위판업무의 신속성, 신속한 대금 결제와 같은 서비스 관련 요인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음

- 반면 어장과 위판장과의 인접성이나 위판수수료 수준, 소분·포장·가공처리·보관 등 부가서비스 시설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여타 요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음



4) 위판사업 활성화 관련 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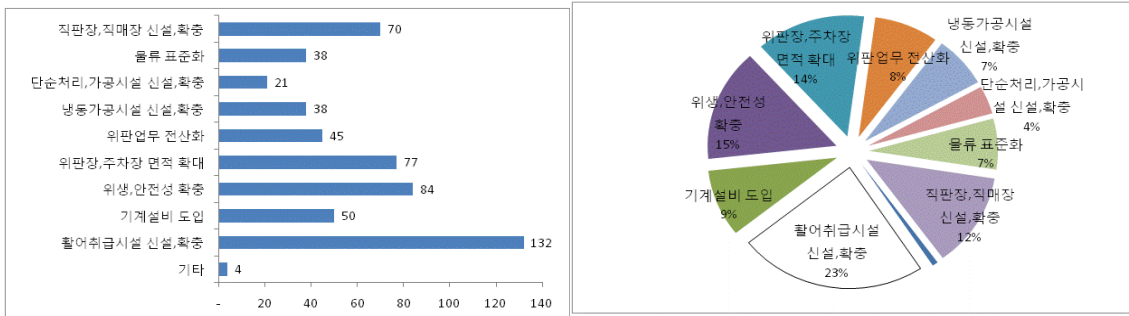
- 산지위판장의 기능에 한정하여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조사(복수응답) 결과, 앞선 질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판수산물의 가격 제고를 요구하는 의견이 21%로 가장 높음
 - 수협의 수산물 판매처 개척·확대(19%)와 위판장 거래의 근거를 이루는 실력있는 중도매인의 확보(16%)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들은 일정 수준의 어가를 담보하는 데 관련된 요인이라는 특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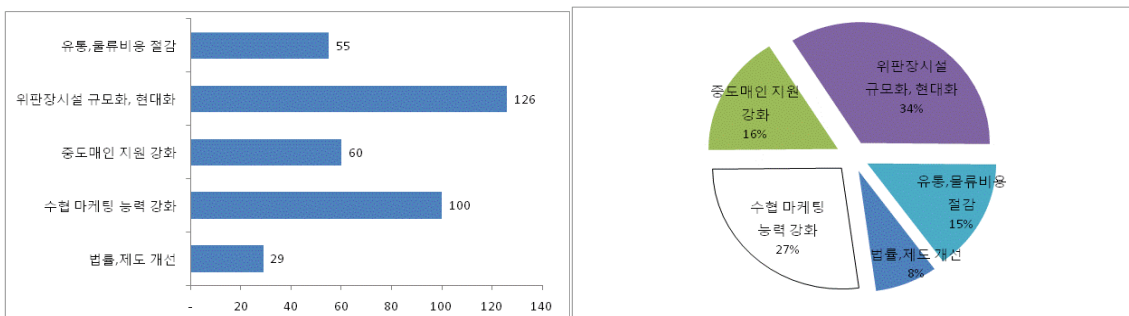
- 산지위판장의 시설측면에 한정하여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앞선 요인분석에서 지적된 바처럼 활어취급시설의 신설·확충을 지적한 경우가 전체의 23%로 가장 많았음
 - 이는 수산물 소비시장의 다양화로 생선회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활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

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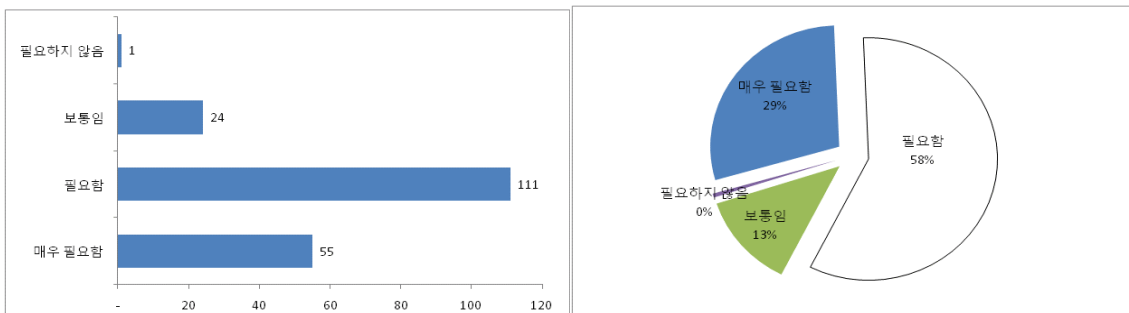
- 다음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안팎으로 강화되는 실정으로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여 위판장의 위생 안전성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5%로 나타났으며, 위판장과 주차장의 면적 확대(14%), 직판장·직매장시설의 신설 또는 확충(12%) 등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지위판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수협이 시급히 해야 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위판장 시설의 규모화·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으며, 수협의 마케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7%로 조사됨



- 한편 최근 물류와 관련된 기능의 강화 요구가 소비지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지 인근에 생산자를 위한 물류센터(소분·포장·보관·배송)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8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2. 수협

1) 표본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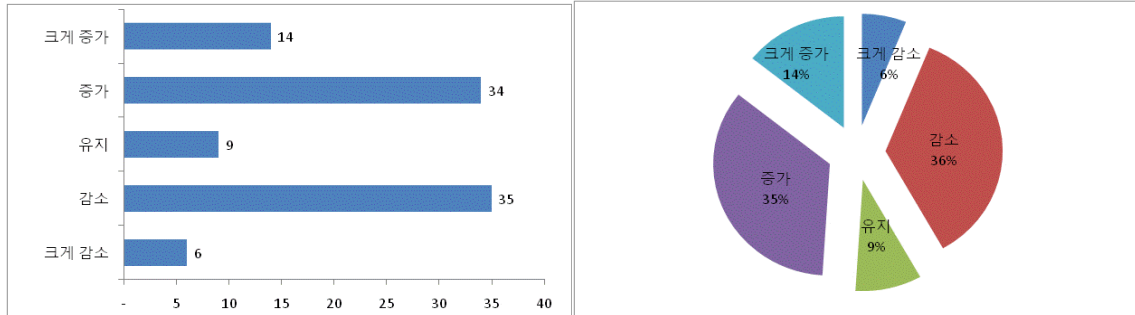
- 수협 위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총 112대로, 수협기준으로는 총 74개소에 이룸
 - 연령별로는 30대가 전체 응답자의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0대가 29%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남이 각각 27%와 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응답자 중 위판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1960년에 시작한 곳이 24%로 가장 많았으며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에 위판사업을 개시한 곳도 20%에 이룸
 - 설문에 참여한 수협 중 위판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수산물은 활어, 선어, 패류 등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위판수수료율은 3~5% 수준이 전체 응답자의 83%로 가장 많았으며, 5~7%도 9%로 나타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위판사업 이외에 수행하는 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없는 것으로 조사(74%)되었으나, 시행하는 경우에는 냉동·가공이 13%로 나타남
 - 연간 위판실적 중 관내 조합원의 위판실적은 80% 이상이라는 답변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0~80%인 경우도 18%로 높게 나타남
 - 최근 생산 단계에 있어서도 수산물의 위생·안전,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위판장이나 관련 가공시설 등에 HACCP 또는 이외의 품질·규격관리제도를 도입했느냐에 대해 도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6%로 가장 많았으며 도입한 경우는 약 13%로 조사됨

구 분		응답자수	비중
합 계		112	100%
연령	20대	33	29%
	30대	49	44%
	40대	26	23%
	50대	1	1%
	무응답	3	3%
지역	경인	4	4%
	강원	13	12%
	경남	30	27%
	경북	14	13%
	부산	8	7%
	전남	28	25%
	전북	2	2%
	제주	7	6%
	충남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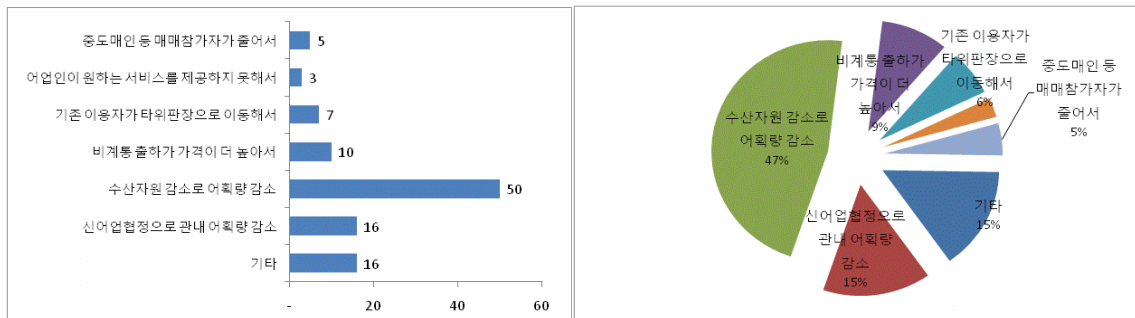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비중
위판사업 수행 유무	한다	105	94%
	하지않는다	7	6%
위판사업 시작 시기	1960년대	27	24%
	1970년대	17	15%
	1980년대	20	18%
	1990년대	20	18%
	2000년대	22	20%
주요 취급 수산물	활어	41	37%
	선어	22	20%
	냉동	3	3%
	가공	8	7%
	패류	11	10%
	해조류	9	8%
	기타	1	1%
	복수	15	13%
위판수수료 비율	1%미만	2	2%
	1~3%미만	2	2%
	3~5%미만	93	83%
	5~7%미만	10	9%
	7% 이상	3	3%
	무응답	2	2%
위탁사업 이외 수행사업(복수응답)	없음	83	74%
	가공냉동	14	13%
	직판점운영	4	4%
	직거래	5	4%
	기타	3	3%
연간위판실적 중 조합원의 위판실적	무응답	3	3%
	20%미만	12	11%
	20~40%미만	16	14%
	40~60%미만	12	11%
	60~80%미만	20	18%
	80% 이상	50	45%
위판물 중 주력어업/양식업의 비중	무응답	2	2%
	20%미만	13	12%
	20~40%미만	10	9%
	40~60%미만	15	13%
	60~80%미만	28	25%
	80% 이상	40	36%
HACCP나 품질·규격관리제도 도입 유무	무응답	6	5%
	HACCP 도입	4	4%
	HACCP 이외 도입	10	9%
	없음	85	76%
	무응답	13	12%

2) 수산물 위판 관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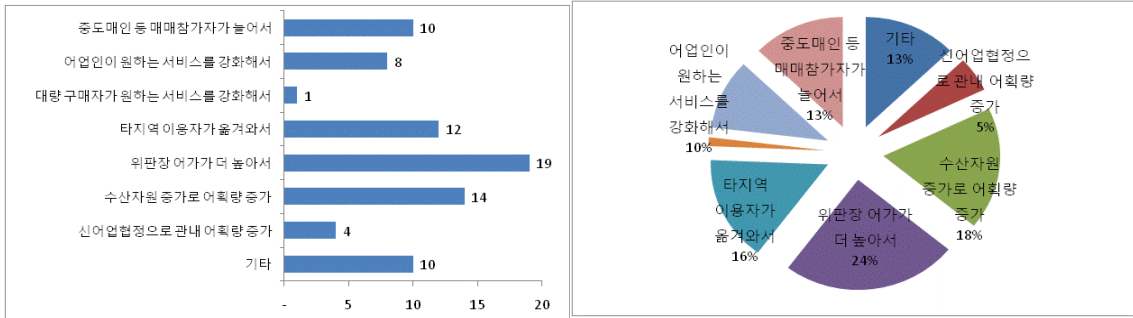
- 199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체 생산량 중에 위판장에 출하하는 물량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0% 가까이가 늘어났다고 답변하였으며, 줄었다는 응답도 42%로 늘어났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아 어업인과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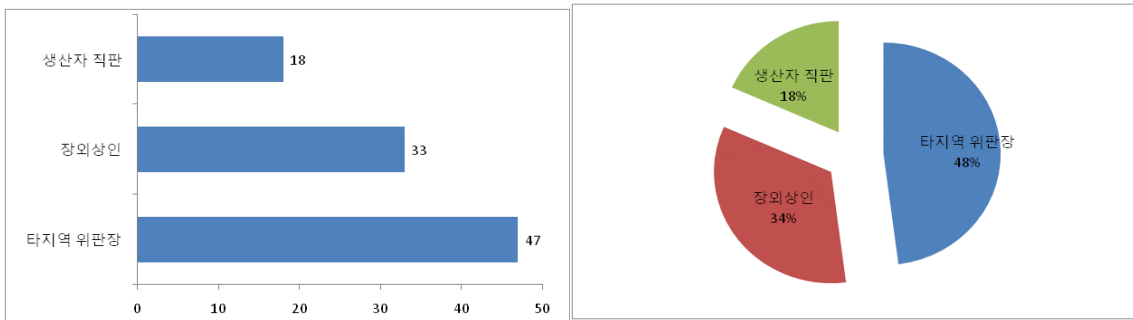
- 계통출하하는 물량이 줄었다는 수협 의 경우 그 원인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관내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으며, 신어업협정으로 관내 어획량이 감소하였다는 의견이 다음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수산자원의 감소를 계통출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음
 - 반면 어가의 문제라고 답한 경우는 전체의 9%를 차지하였음



- 반면 계통출하하는 물량이 증가한 수협에서는 타지역 위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어가를 위판량 증가의 요인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24%를 차지하였으며, 수산자원 증가 또는 신어업협정으로 인한 관내 어획량 증가 등 자원 증가를 요인으로 꼽은 경우도 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외에도 타지역 위판장 이용자가 이동해 왔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16%에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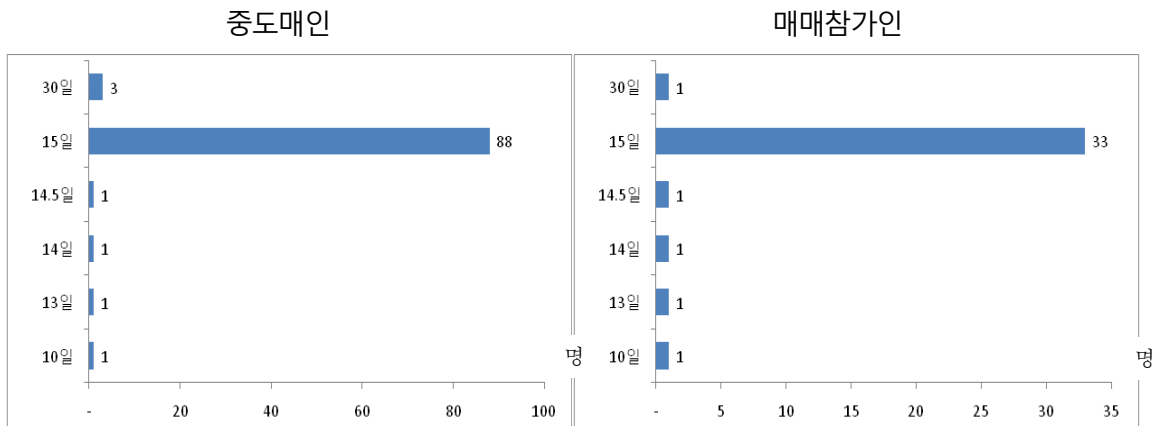
○ 수산물 위판·집하에 있어 최대 경쟁 대상자가 누구인냐는 질문에 대해 장외상인과 생산자 직관을 꼽는 응답자가 전체의 52%로 절반에 이르렀으며, 타지역 위판장이라는 응답도 4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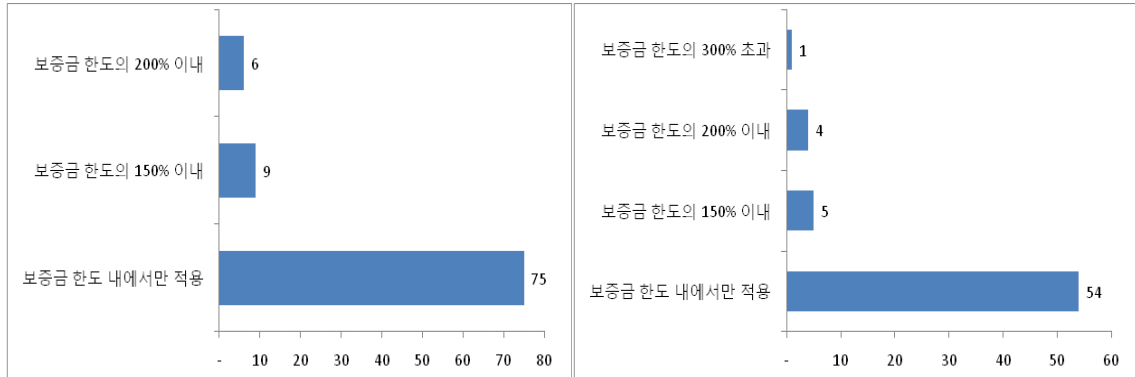
- 한편 어업인, 중도매인, 타조합지불 위판조성금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지불하는 경우에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1/1000~3/1000 미만이 9%로 많았으며 기타방법이 5%로 조사됨
 - 중도매인의 경우 어업인에 비해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은 1/1000~3/1000 미만이 34%였으며, 다음은 3/1000~5/1000 미만이 6%의 비중을 차지함
 - 타조합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하는 비중이 비슷한 편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5/1000~7/1000 미만이라는 응답이 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000~3/1000 미만이 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 분		응답자수	비중
합 계		112	100%
어업인에 대한 위판조성금 비중	지불하지 않음	73	65%
	1/1000~3/1000 미만	10	9%
	3/1000~5/1000 미만	1	1%
	5/1000~7/1000 미만	5	4%
	7/1000~9/1000 미만	3	3%
	9/1000 이상	2	2%
	기타	6	5%
	무응답	12	11%
중도매인에 대한 위판조성금 비중	지불하지 않음	44	39%
	1/1000~3/1000 미만	38	34%
	3/1000~5/1000 미만	7	6%
	5/1000~7/1000 미만	2	2%
	7/1000~9/1000 미만	1	1%
	기타	5	4%
	무응답	15	13%
타조합에 지불하는 위판조성금 비중	지불하지 않음	49	44%
	1/1000~3/1000 미만	15	13%
	3/1000~5/1000 미만	6	5%
	5/1000~7/1000 미만	20	18%
	7/1000~9/1000 미만	5	4%
	9/1000 이상	3	3%
	기타	5	4%
	무응답	9	8%

-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 대한 연체수수료 기한은 15일(중도매인 93%, 매매참가인 87%)이 가장 많았음
 - 연체수수료율을 보면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12.5%~14.5%의 비중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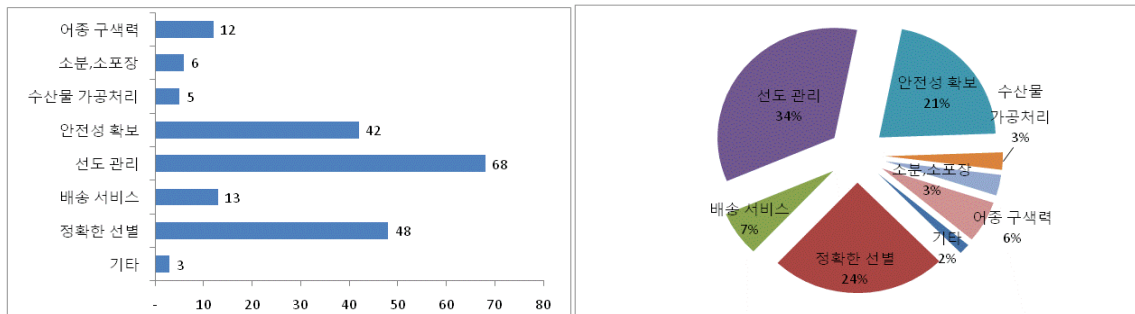


-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게 제공하는 낙찰금액 한도와 관련해서는 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적용한다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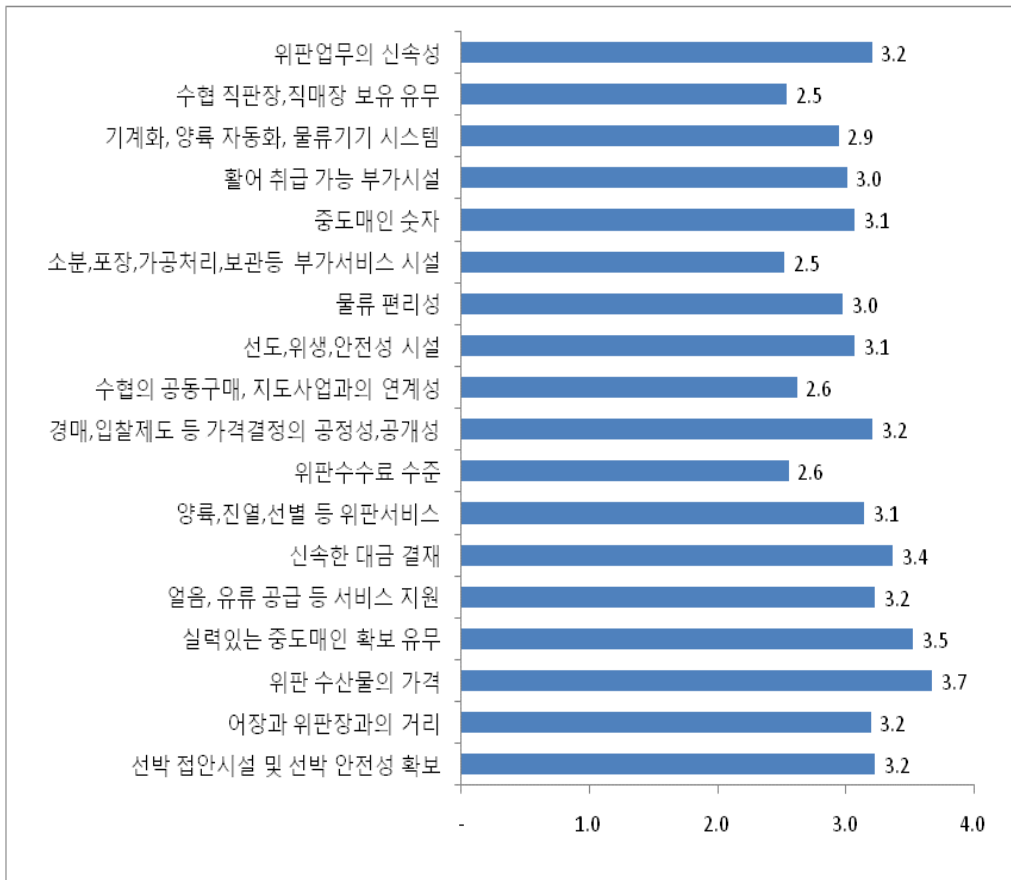
3) 위판사업 관련 요인별 평가

-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어획물의 선도 관리라고 지적한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정확한 선별과 어획물의 안전성 확보가 각각 24%, 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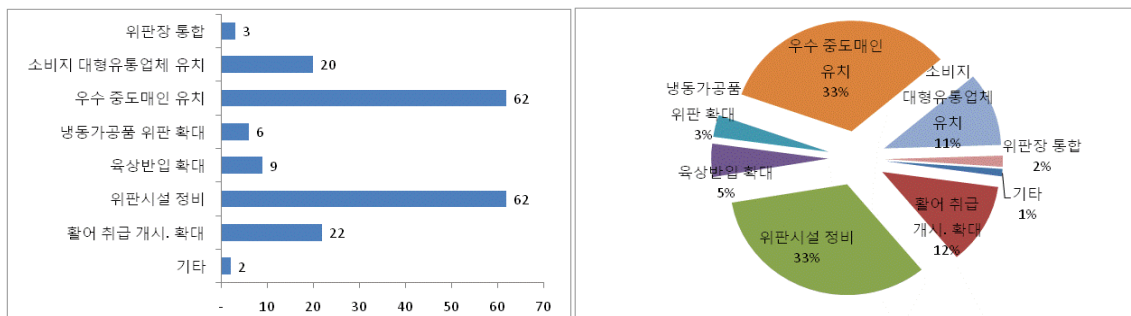
- 한편 위판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 위판장과 관련된 유무형의 주요 요인에 대해 5점 척도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는데, 제시한 18개 요인 중 위판수산물의 가격을 가장 중요하다(3.68점)고 평가하였음

- 다음으로 실력있는 중도매인의 확보 유무를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으며, 신속한 대금 결제도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음
- 한편 얼음 및 유류 공급 등 서비스 지원, 선박 접안시설 및 안전성 확보와 같이 수협 서비스 요인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반면 수협의 직판장·직매장 보유 유무, 위판수수료 수준, 소분·포장·가공처리·보관 등 부가서비스 시설, 수협의 공동구매·지도사업과의 연계성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여타 요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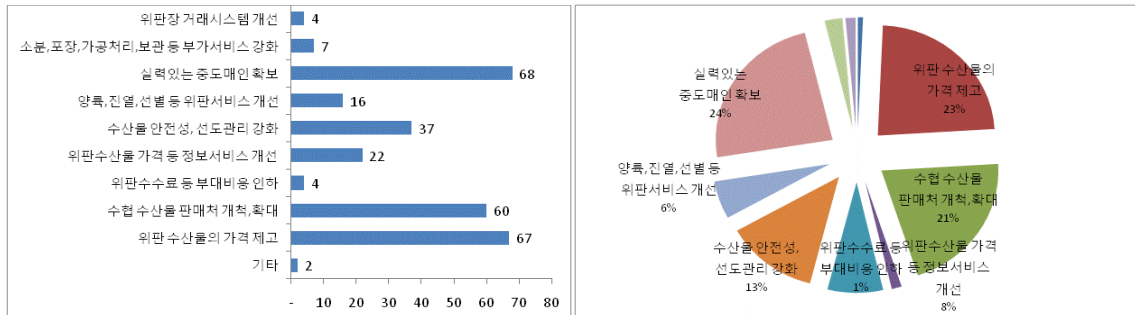


4) 위판사업 활성화 관련 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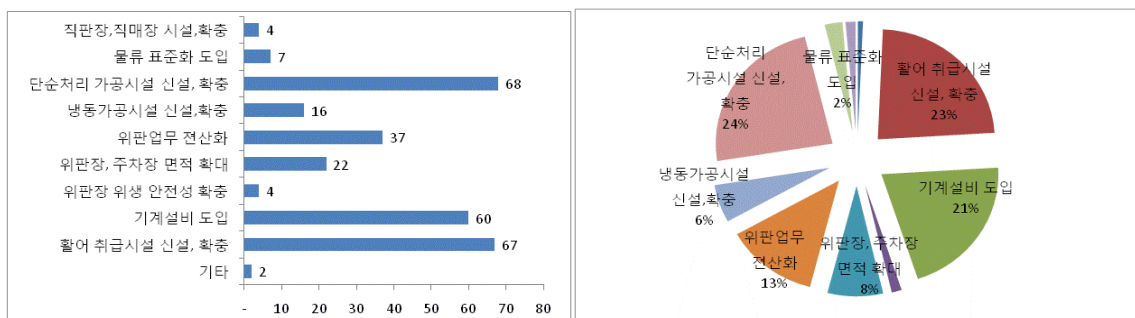
- 수협 위판장의 수산물 위판 및 집하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복수응답)과 관련해서는 우수 중도매인의 유치와 위판시설의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음
 - 이외에 활어의 취급 시작·확대와 소비자 대형유통업체의 유치가 각각 12%, 11%로 나타남



- 산지위판장의 기능에 한정하여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실력있는 중도매인의 확보와 위판수산물의 가격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24%, 23%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수협이 수산물 판매처 개척·확대를 지적한 경우도 전체의 21%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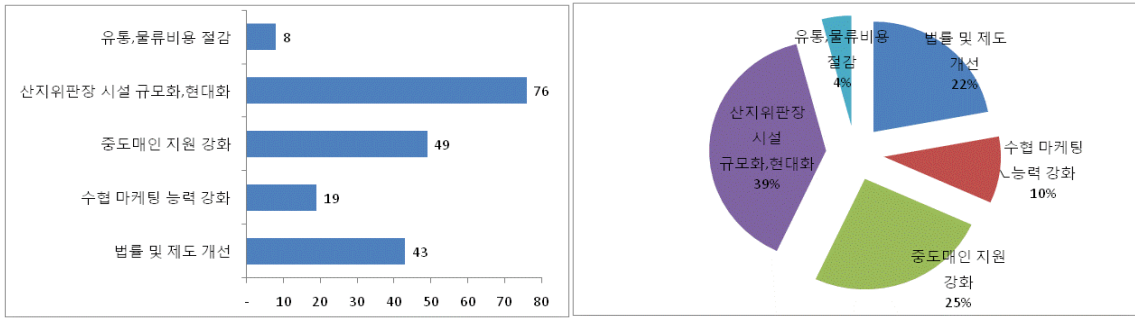


- 산지위판장의 시설측면에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복수응답)으로는 단순처리·가공시설의 확충과 활어취급시설의 신설·확충을 지적한 경우가 전체의 24%, 23%로 가장 많았음
 - 이는 최근들어 산지에 대한 물류 기능 요구와 활어 양륙 수요가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다음으로 자동선별기, 컨베이어벨트 등 자동화기기의 도입이라도 답변한 응답자도 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자경매시스템 및 업무처리 전산화 등 위판업무의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13%에 이르러 위판장 운영에 있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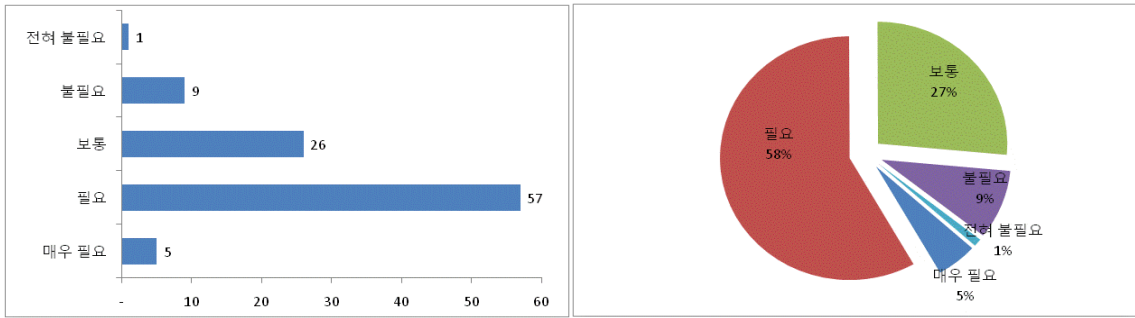


- 산지위판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수협이 시급히 해야 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위판장 시설의 규모화·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39%였으며, 중도매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25%)하고 법률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22%)는 답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수산물 산지위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소비지 인근 생산자를 위한 물류센터(소분·포장·보관·배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62%로 높았으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응답자는 10%를 차지하여, 어업인의 의견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3. 중도매인

1) 표본특성

- 중매인의 경우 총 1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연령대를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38%, 29%로 중장년층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중매업에 대한 종사기간도 20년 이상의 장기 종사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남과 부산, 전남이 각각 45%, 17%, 15%였으며 전북도 12%의 비중을 차지함
 - 현재 사업 중 중매업을 포함해 비중이 큰 업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가 중도매업이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매업 이외에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매와 소매업이 각각 43%, 30%로 유사업종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중매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입수산물의 취급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취급하지 않았으며, 취급을 하더라도 10% 이하의 소규모 취급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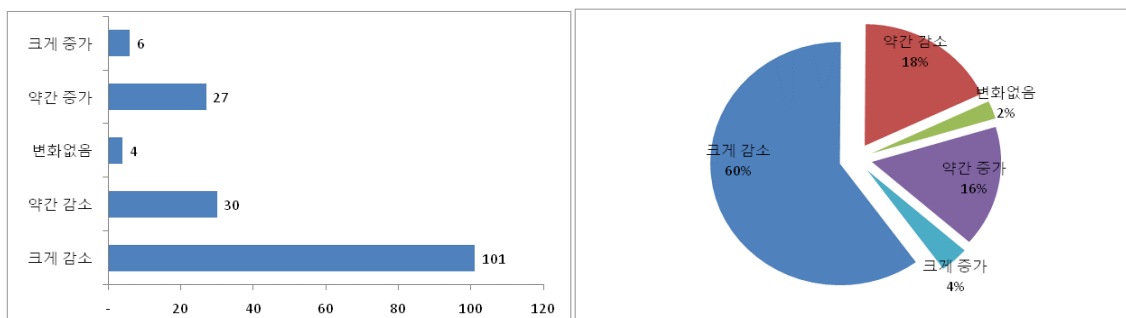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비중
합 계		178	100%
연령	20대	17	10%
	40대	42	24%
	50대	67	38%
	60대 이상	52	29%
종사기간	~10년	29	16%
	10~20년	48	27%
	20~30년	51	29%
	30년~	46	26%
	무응답	4	2%
지역	경인	7	4%
	경남	80	45%
	경북	5	3%
	부산	30	17%
	전남	26	15%
	전북	21	12%
	제주	9	5%
수입수산물 취급 비중	취급안함	105	59%
	~10%	44	25%
	10~20%	16	9%
	30%~	10	6%
	무응답	3	2%

구 분		응답자수	비중
사업비중이 큰 업종	중도매업	125	70%
	가공업	3	2%
	도매업	21	12%
	소매업	5	3%
	냉동창고	2	1%
	외식업	2	1%
	무역업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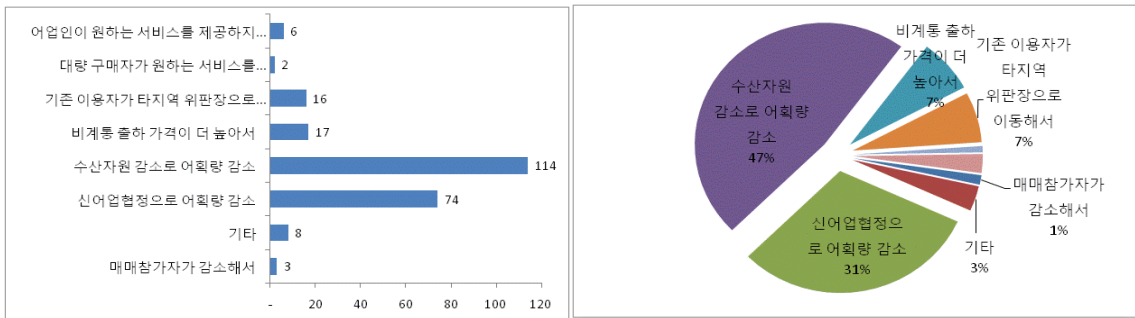
중도매업 이외 운영하는 사업(복수응답)	가공업	12	7%
	도매업	70	43%
	소매업	49	30%
	냉동창고	10	6%
	운송업	3	2%
	외식업	8	5%
	무역업	7	4%
	기타	4	2%
	총합계	163	100%

2) 수산물 위판 관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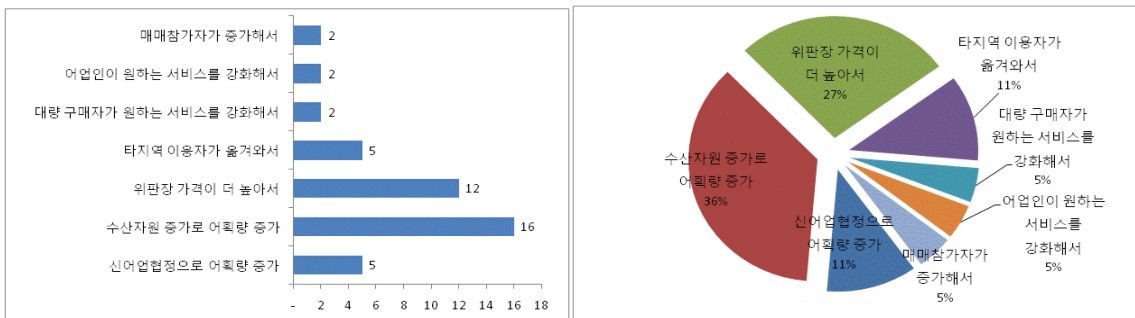
- 199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체 생산량 중에 위판장에 출하하는 물량에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78%가 줄었다고 답한 반면, 증가하였다는 응답자는 20%에 이릅니다



- 계통출하하는 물량이 줄었다고 답한 중도매인의 경우 수산자원 감소 또는 신어업협정으로 어획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의 7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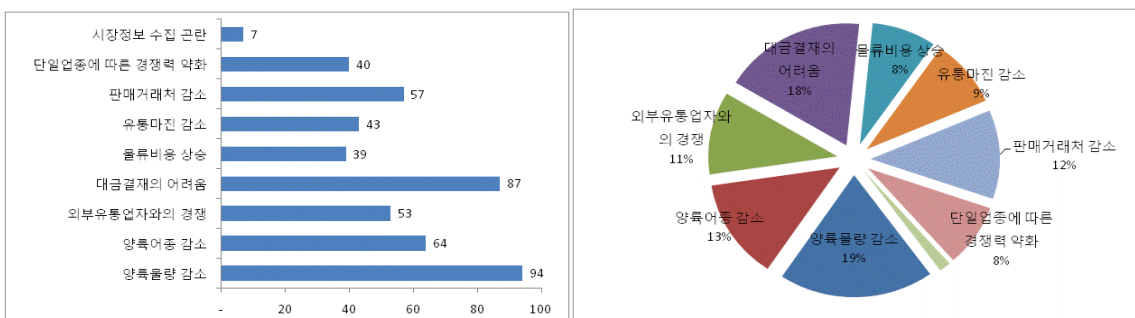


○ 계통출하하는 물량이 늘었다고 여기는 사람도 어획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위판장의 어가가 더 높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27%에 이릅니다.



○ 중도매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으로는 양륙물량의 감소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19%로 가장 많았으며, 대금 결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1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다음으로 양륙되는 어종의 감소와 거래·판매처의 감소도 각각 13%, 12%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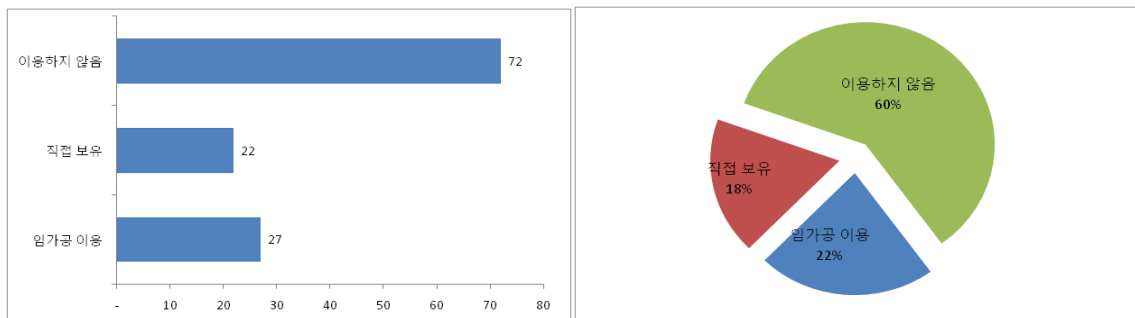
○ 사업과 관련해 이용하는 정부자금은 수산발전기금을 비롯해 중소기업자금,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이자율은 주로 4% 대가 중심을 이루었음

- 현재 거래처의 대금 결제기간은 15~30일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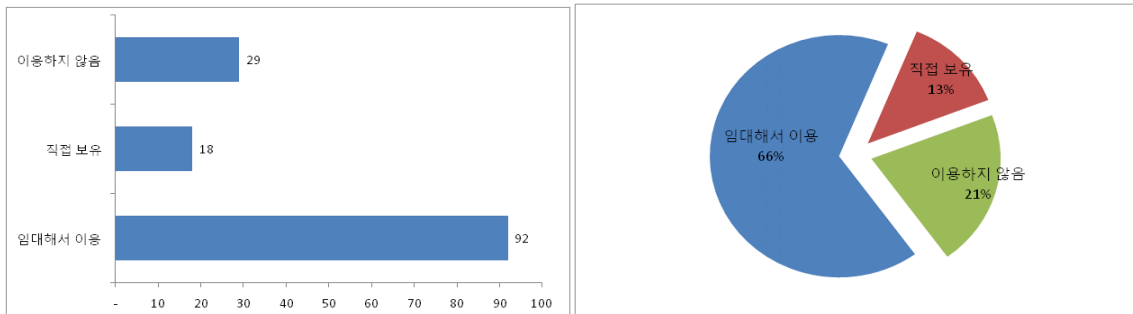
이내가 30%, 1~3개월은 23%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였음

- 한편 위판장 시설 이용과 관련해 별도의 가공시설 또는 저장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대해 가공시설의 경우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였으나, 직접 또는 임가공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도 40%에 이룸
- 반면 저장시설과 관련해서는 임대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중도매인이 전체의 66%였으며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13%에 이르러 어떤 형태로든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79%에 이룸

가공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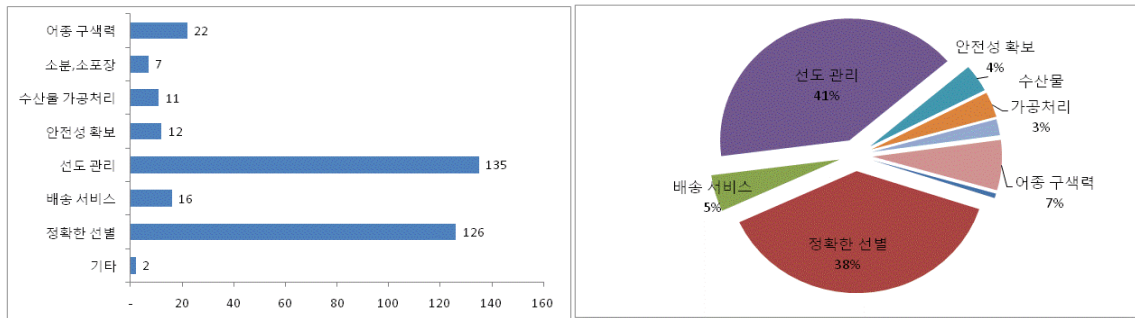


저장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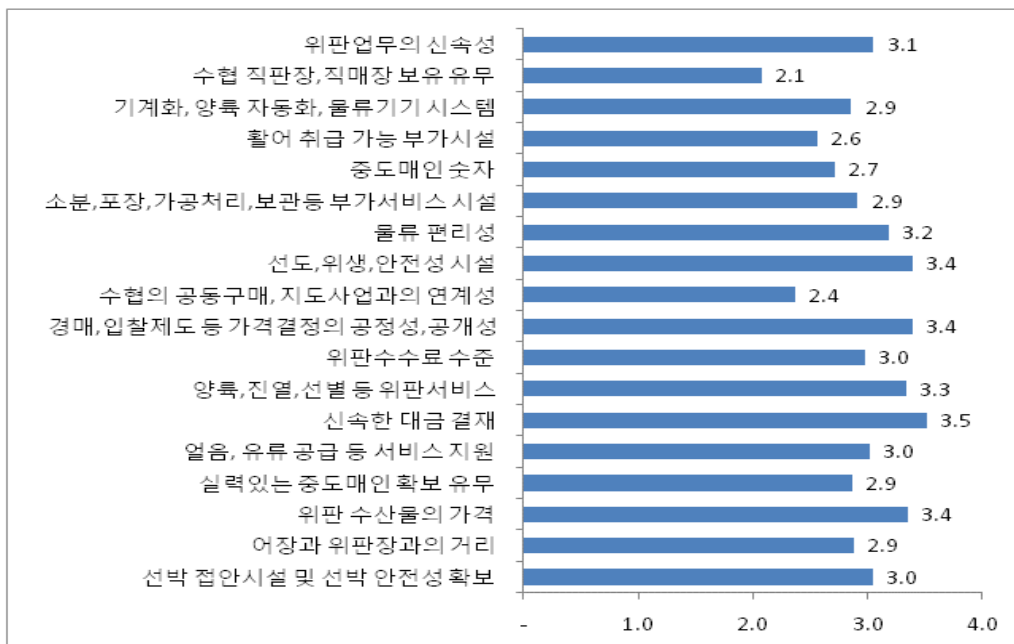


3) 위판사업 관련 요인별 평가

-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어획물의 선도 관리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정확한 선별도 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한편 위판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 위판장과 관련된 유무형의 주요 요인에 대해 5점 척도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는데, 제시한 18개 요인 중 어업인과 수협관계자와는 달리 신속한 대금결제(3.5점)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음
 - 다음으로 위판장의 선도·위생·안전성 시설, 경매·입찰제도 등 가격결정의 공정성과 공개성, 위판수산물의 가격, 양륙·진열·선별 등의 위판서비스를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음
 - 반면 수협의 직판장·직매장 보유 유무, 수협의 공동구매·지도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여타 요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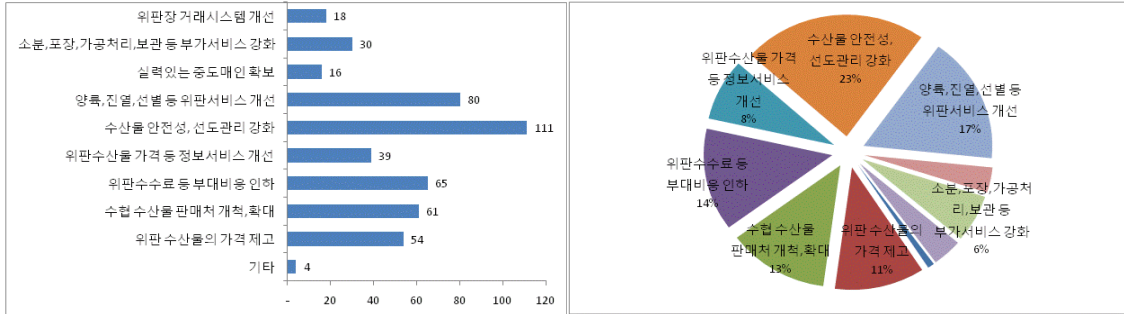


4) 위판사업 활성화 관련 개선 사항

- 산지위판장의 기능에 한정하여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복수응답)서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선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양륙진열·선별 등 위판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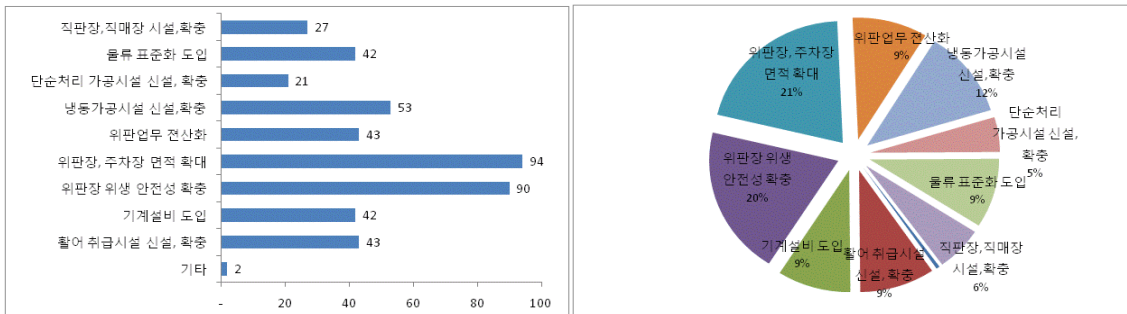
는 의견도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외에 위판수수료 등 부대비용 인하와 수협수산물 판매처의 개척·확대도 각각 14%, 13%의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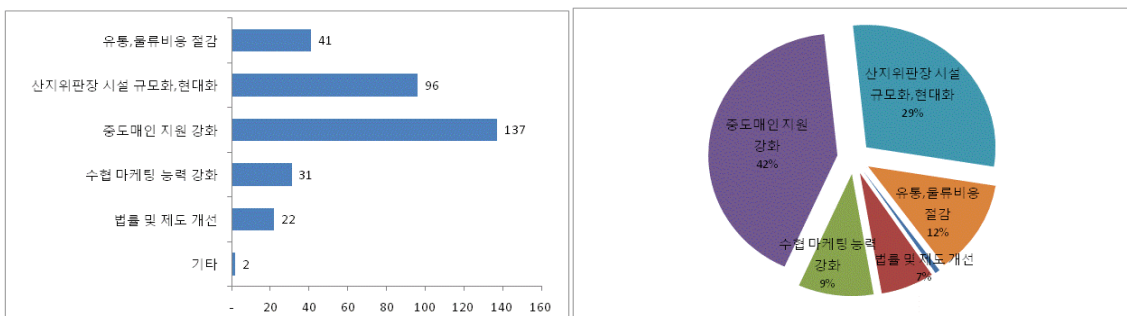


- 산지위판장의 시설측면에 한정하여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복수응답)서는 위판장 및 주차장의 면적 확대와 위판장의 위생 안전성을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21%, 20%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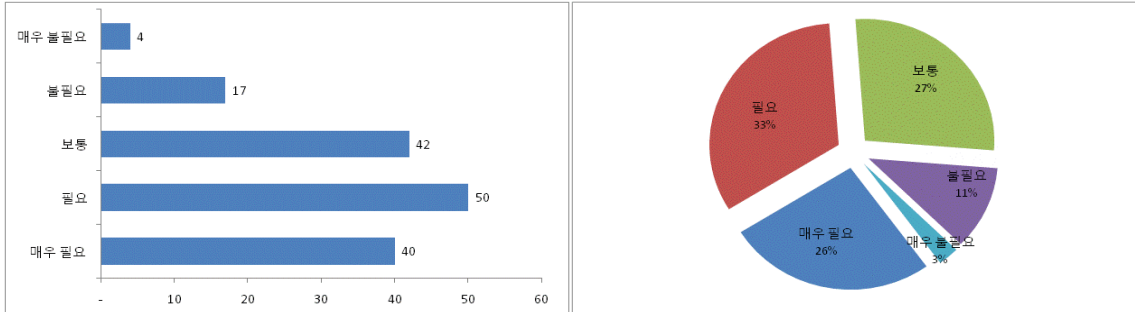
- 다음으로 냉동가공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체의 12%를 차지하였음



- 산지위판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수협이 시급히 해야 할 사항(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중도매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지위판장 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체의 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소비지 인근에 생산자를 위한 물류센터(소분·포장·보관·배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음



<부록 2>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규정

제정 2006. 8.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138조에서 정하는 사업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경제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이하 “경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제사업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규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업방식) 경제사업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방식에 의한다.

1. “수탁방식”이라 함은 본회가 회원 등 위탁자로부터 물품의 판매, 구매, 보관, 가공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2. “매취방식”이라 함은 본회의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3. “대행방식”이라 함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본회가 구매, 보관 및 판매, 수출, 수입 등을 대행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4. “중개방식”이라 함은 본회가 매입·조작 등 직접 취급은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에 대하여 매매조건 제시, 장소제공 등의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5. “예약방식”이라 함은 회원 또는 대량수요자 등으로부터 예약(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사업”이라 함은 본회 및 회원이 구매·생산·가공한 물품을 유통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구매사업”이라 함은 어업인의 생산·유통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이라 함은 제조·가공처리, 제빙, 냉동, 냉장, 보관 및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무역사업”이라 함은 수산물, 동가공품, 수산기자재, 기타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5. “가맹사업”이라 함은 본회가 가맹점에 조직, 교육, 상품공급, 영업, 관리 및 매장개설 등의 노하우와 브랜드를 제공하여 체인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정책대행사업”이라 함은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본회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인수도) ①본회가 취급하는 물품(판매품, 구매품, 원재료, 재공품, 제품, 보관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사자 상호 입회하에 인수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물품을 인수도할 때에는 계약서·신청서(발주서)·통지서 등의 내용과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를 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습상 증빙서 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따로 정하는 경우 증빙서 수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사·품질관리) ①본회가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KS 표시품일 때
2. 수입물품으로서 국제검정기관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일 때
3. 공인검사기관의 검사합격품일 때

③본회는 취급 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보관 및 부보) ①재고물품은 자체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탁보관 할 수 있다.

②재고물품을 위탁보관 할 때에는 창고증권 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재고물품에 대하여는 화재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재공제의 가입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재고조사) ①재고자산의 조사는 현품관리 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고수량과 장부수량을 대사하여 이상유무 확인 후 재고조사표를 작성한다.

②재고조사는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보관한

물품의 경우 매분기 1회 이상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고조사 결과 파손·변질·감량 등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인정감모손(율) 한도내에서 손실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고처리) ①본회가 취급하는 물품의 수송 또는 보관 및 판매관리 중 망실, 훼손 또는 감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고품의 변상은 사고당시의 시가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현물 또는 원가 변상할 수 있다.

③고의, 중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 또는 불가피한 자연발생적인 사고로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손실 처리하고 관련자는 면책할 수 있다.

④사고 또는 손실처리에 따르는 비용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수수료 및 장려금) ①본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는다.

②회원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한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기본요율은 그 취급고의 100분의 5이내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취급고의 일정율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③회원조합 이외의 자에 대한 사용료 또는 수수료(율)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선급금) ①물품의 출하촉진 또는 적기적량 확보를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선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유통시설 설치) 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집하·보관(저장)·검사·선별·포장·수송·하역·가공·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물류표준화 촉진) 물류설비의 표준화, 하역기계화 등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물류표준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14조(유통정보) 원활한 수산물유통을 위하여 유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 ①본회 및 회원이 생산·가공한 수산물과 그 제품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고, 본회의 매취판 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 및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구매방법) ①수산물의 구매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경매참가
2. 선상경매
3. 선취구매
4. 지정구매(회원조합 또는 중도매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매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자회사 또는 일반유통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③기타의 물품은 제조업체 또는 일반유통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제17조(판매방법) ①수산물 판매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장판매
2. 지정거래인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입찰 또는 수의 정가판매
3. 기타 본회에 유리한 판매

②기타 물품은 본회의 유통시설이 설치된 장소(전자상거래 포함)에서 판매하거나 수요자에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고객관리 및 홍보) ①본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감동,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 및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

②본회는 수산물 소비촉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실시한다.

제19조(거래의 원칙) 본회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거래는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제20조(브랜드관리) ①경제사업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과 고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브랜드를 개발·관리한다.

②브랜드 및 상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판매사업

제21조(판매사업 방식) ①판매사업은 수탁, 매취, 중개, 예약방식에 의한다.

②판매사업은 공판사업, 바다마트사업, 군납사업, 급식사업, 특판사업(전자상거래, 홈쇼핑 포함), 기타 판매사업으로 구분 운영한다.

제22조(수탁판매) ①물품의 판매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판매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 팩스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판매신청서를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받은 물품의 판매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뜻을 위탁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③위탁자는 위탁판매품을 출하함과 동시에 위탁판매품출하통지서 또는 위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매취판매) ①매취판매사업은 수산물 수급동향, 품목별 재고량, 최근 판매실적과 판매 가능성 및 가격전망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매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매취 판매품의 판매가격은 수매원가(직·간접 부대비 포함)와 시장동향을 감안한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가격진폭이 극심한 수산물의 특성에 따른 시장사정의 변동, 품질저하 등 판매촉진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원가이하로 판매할 수 있다.

제24조(중개판매) 중개판매사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회원 또는 출하자가 불특정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2. 대량수요처를 본회가 알선·계약하여 회원 또는 출하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3. 기타 수탁 또는 매취판매사업으로 취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25조(예약판매) ①예약판매사업은 회원 또는 대량수요자 등으로부터 예약(주문)을 받아 판매한다.

②본회를 통하여 예약구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판매장설치 및 운영) ①물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하여 공판장·유통센터·물류센터·바다마트·기타 판매장(전자상거래 포함. 이하 “판매장”이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판매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위탁·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구매사업

제27조(구매사업 방식) ①구매사업은 매취, 수탁 또는 대행방식에 의한다.

②구매사업은 유통공급사업, 기자재공급사업, 선수물자공급사업으로 구분 운영한다.

제28조(구매 및 공급의 원칙) ①구매사업은 본회 또는 정부 사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회원이 제출한 구매신청서를 계약서로 갈음 할 수 있다.

②구매사업은 국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되, 국외에서 구매할 때에는 적격업체로 하여금 구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구매물량부족으로 신청전량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실지구입량에 의하여 공정 평등하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구매량 결정) 구매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매취구매는 재고, 과거의 공급실적, 정부의 수급계획, 최근의 소비추세 등을 감안, 수요량을 추정하여 정한다.

2. 수탁구매는 품질, 위탁조건, 공급예상량을 감안하여 정한다.

3. 대행구매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에 의하여 정한다.

제30조(조작 및 소유권) ①본회는 구매품을 회원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수송·보관 등 조작과 관리를 담당하며 그 구매품의 소유권은 본회에 귀속된다.

②본회는 제1항의 구매품의 조작·관리업무를 회원 또는 일반 대행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공급가격) ①구매품의 공급가격은 구매원가(제세포함), 구매비용, 조작제비 및 수수료 또는 적정 매출이익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사정의 변동, 품질저하 등으로 인하여 구매원가 이상으로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매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4장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제32조(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방식) 가공사업은 매취, 수탁 또는 대행방식에 의한다.

제33조(제품관리) ①식품관련 제반 법규에 의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상품성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품질 인증, 가공식품산업표준(KS) 등 정부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인증을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품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품생산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품질관리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가공기술개발) ①가공제품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가공기술을 적극 개발하며 이를 위한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이용사업) 본회는 회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보관사업) 본회는 냉동·냉장창고 등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임치물의 보관, 하역, 운송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무역사업

제37조(수출입 방법) ①물품의 수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매취수출
2. 수탁수출
3.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4. 대행수출
5. 중계무역
6.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물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매취수입
2. 수탁수입
3. 대행수입
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38조(수출입 품목) ①수출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및 동 가공품
2. 어업인의 부업제품
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②수입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자회사 또는 어업인의 수입신청이 있는 물품
2. 본회가 필요로 하는 물품
3.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
4. 정부가 위촉하는 물품
5. 본회의 사업과 관련되는 비회원이 신청하는 물품
6.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39조(무역 진흥 및 지도) ①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해외거래선의 관계자 및 기술자를 초청할 수 있다.

②본회는 회원이 수행하는 무역사업 및 관련 업무를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6장 가맹사업

제40조(매장의 명칭·설비) 가맹사업의 이미지 통일화를 위하여 매장의 명칭 및 설비는 본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가맹점유형) 가맹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완전가맹점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형태
2. 위탁가맹점 : 본회가 시설설치 등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계약자에게 경영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

제42조(가맹점 가입) 가맹점가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받아 매장의 입지여건,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제43조(운영표준화) ①메뉴의 종류와 가격은 본회가 정하되, 가맹점은 메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본회는 표준화된 제품 매뉴얼과 식재료를 공급하며, 가맹점이 이에 따르도록 교육·지도한다.

③포장자재는 본회가 공급하는 통일된 포장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제7장 기타사업

제44조(정책대행사업) 정부의 정책사업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집행지침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부대사업) 수협법 제138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하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본회가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6조(회계 및 전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경제사업부문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하며, 전산개발·처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제사업부문

전산업무규정」에 의한다.

제47조(장표, 서식) 사업에 필요한 장표 및 서식은 해당사업의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사업은 각 사업별 「전산업무 사용자 지침서」에서 정하는 전산출력 장표 및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8(기타) 이 규정에서 위임하거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1. 구매사업규정
2. 군납사업규정
3. 무역사업규정
4. 판매및이용가공사업규정

제3조(경과조치)①이 규정 시행 이전에 다른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조에 불구하고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새로운 요령의 제·개정시까지 적용한다.

<부록 3> 공판사업 요령

제 정 2006. 12 . 18

일부개정 2007. 8. 17

일부개정 2008. 3. 13

일부개정 2008. 11.5

일부개정 2009. 7. 22

일부개정 2010. 4.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 라 한다)의 공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회의 공판사업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규약 및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이라한다) 제46조에 의한 도매시장공판장 및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이 요령에도 불구하고 당해 도매시장 업무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2008. 11. 5>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판장”이라 함은 농안법 제43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개설승인을 받아 수산물을 수집 또는 위탁받아 경매 또는 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농안법 제46조에 의한 도매시장공판장,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및 본회가 운영하는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의2에 의한 위판장을 포함한다.<개정 2007. 8. 17, 2008. 3. 13>

2. 위판장“이라 함은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08. 3. 13>

3. "경매식 집하장“이라 함은 경매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수산물을 수집 또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경매, 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시설로써 위판장외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9. 7. 22>

4. “중도매인”이라 함은 본회 공판장의 지정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5.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본회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공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개정 2007. 8. 17>

6. “출하자”라 함은 제6호의 “산지유통인”외에 수산물을 본회 공판장에 출하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07. 8. 17>

7. “산지유통인”이라 함은 본회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개설자에게 등록하고, 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정거래인”이라 함은 본회 공판장에서 구매하여 판매하는 수산물의 외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판장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경매사”라 함은 공판장장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7. 8. 17>

10. “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농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신설 2007. 8. 17, 개정 2008. 3. 13>

11. “도매시장법인”이라 함은 농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한다.<신설 2007. 8. 17>

12.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농안법 제3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신설 2007. 8. 17>

제2장 수탁판매

제1절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4조(산지유통인 등록) ①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안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판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를 공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신청서”(별지 서식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판장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산지유통인 등록증”(별지 서식 제3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아니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공판장이 매수하여 상장하는 경우
3.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공판장에 상장하는 경우
4. 기타 농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⑤공판장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7. 8. 17>

⑥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 공판장의 직원은 당해 공판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7. 8. 17>

⑦공판장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7. 8. 17>

제5조(산지유통인의 업무제한)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공판장에서 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처분기준은 별지서식 제29호와 같다.<개정 2008. 3. 13>

제6조(출하자 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 등록 대상이 아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이 공판장에 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거래질서의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공판장에 출하자 신고서(별지서식 제27호)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제7조(출하예약 우대 조치) 공판장장은 제4조에 규정에 의거 등록한 산지유통인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경

매의 우선실시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 8. 17>

제8조(불량 출하자 제재) 공판장장은 속박이, 수량, 중량등 품질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 불량 출하자(산지유통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는 공판장의 출하금지 등 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수송임 입체) ①공판장에 수탁판매하고자 출하된 물량에 대한 수송임을 출하자의 요청에 의하여 입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입체금은 판매대금에서 우선공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2>

제10조(대금정산) ①판매대금은 판매완료 후 지체없이 정산한다. 다만, 분할판매의 경우 분할정산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금정산은 판매에 소요된 제비용, 입체금, 수수료, 선금금 및 이자 등을 공제한 판매대금 표준정산서(별지서식 제4호)를 발행하고 정산대금은 출하자(산지유통인을 포함한다) 본인의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개정 2008. 11. 5>

③제2항의 정산서에는 발행일자(작성년월일), 출하자 인적사항, 판매내역, 공제내역, 정산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공판장은 판매대금 정산서를 정산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중도매인

제11조(중도매인의 자격) ①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외상거래의 담보로 거래보증금 또는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중도매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당해 공판장의 직원과 동일 가족관계등록부 [본인 및 부모] 안에 있는 자
<개정 2008. 3. 13, 2008. 11. 5>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신설 2007. 8. 17>

②제1항에서 정한 담보물의 종류, 담보물에 대한 외상거래한도비율, 담보권 설정, 담보취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8. 3. 13>

③<삭 제 2008. 3. 13>

④<삭 제 2008. 11. 5>

⑤대표이사는 제1항의 거래보증금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법인인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신설 2007. 8. 17>

제12조(중도매인 지정신청) ①본회 공판장의 중도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인 지정신청서(별지서식 제5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8호에 한한다.<개정 2008. 3. 13, 2009. 7. 22>

1. 본인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개정 2008. 3. 13, 2009. 7. 22>

2.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서

3. 정관

4.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5. 대표자 및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개정 2008. 3. 13, 2009. 7. 22>

6. 당해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개정 2007. 8. 17>

7. <삭 제 2009. 7. 22>

8. 사업자 등록증<신설 2007. 8. 17>

9. 최근 3년간의 소득세 납부실적 증빙서류<신설 2007. 8. 17>

②공판장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적격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중도매인 지정증”(별지서식 제6호)을 교부한다.

③공판장장은 중도매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등의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중도매인은 제2항에 의한 지정증을 주된 영업장소(중도매인 점포 또는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 지정에 관하여 5년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07. 8. 1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해 중도매인 지정유효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지정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09. 7. 22>

⑦본회 공판장의 중도매인 모집은 공판장장이 정한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다.<신설 2009. 7. 22>

제13조(거래약정 체결) ①제12조 제2항의 지정통지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거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후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중도매인거래약정서(별지서식 제7호)<개정 2010. 4. 27>
2. 담보물과 기타 채권보전서류
3. 연대보증인 입보에 필요한 서류(연대보증인 입보시에 한한다)
4. 인감증명서

②제1항의 중도매인 거래약정서상 변동사항(담보종류, 거래한도액,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 추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증금은 중도매인 지정이 해제된 후에 잔여채무액 등과 상계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중도매인의 대리인) ①중도매인이 대리인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판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도매인 대리인 승인신청서(별지서식 제8호) 및 서약서(별지서식 제9호)
2. 이력서
3. 기타 공판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중도매인은 대리인을 1인에 한하여 둘 수 있다. 다만, 복수경매가 불가피한 공판장은 2인까지 둘 수 있다.

③중도매인은 당해 공판장의 다른 중도매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5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판장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판장장은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외상거래 한도) ①중도매인의 외상거래한도는 기본한도와 신용한도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외상거래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사업채권관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8. 3. 13, 2008. 11. 5>

②기본한도는 제11조 제1항의 거래보증금과 동 조 제2항에서 정한 외상거래 한도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계금액 범위내로 한다.<개정 2008. 11. 5>

③<삭 제 2008. 11. 5>

④<삭 제 2008. 11. 5>

제17조(판매대금 납입) ①중도매인이 매수한 물품대금은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매인의 원활한 상거래를 위하여 판매일로부터 15일 이내(판매당일을 포함한다)의 대금납입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유예기간 경과후 미납입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2>

②제1항의 대금정산은 제비용, 이자, 물품대금 순서로 정산한다.

③제1항의 물품대금을 대금납입 유예기간 경과일 이후로도 계속하여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판장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1. 대금납입 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시 : 경고
2. 대금납입 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시 : 거래정지 최고 및 법적조치에 관한 최고
3. 대금납입 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시 : 거래정지 및 법적조치
4. 대금납입 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시 : 중도매인 지정 취소<개정 2008. 3. 13>

④“신용한도”를 부여하여 거래한 외상대금(기본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일 이후로도 계속하여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 공판장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8. 11. 5>

1. 대금납입 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시 : 경고

2. 대금납입 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시 : 거래정지 최고 및 법적조치에 관한 최고

3. 대금납입 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시 : 거래정지 및 법적조치

4. 대금납입 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시: 중도매인 지정취소<개정 2008. 3. 13>

⑤공판장장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중도매인에 대한 채권 전액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대금납입유예기간 경과 일수에 관계없이 거래정지 및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08. 3. 13>

제18조(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①공판장장은 부류별로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수산업법에 의한 위판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11. 5>

②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제재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9. 7. 22>

1. 1개월 무실적 : 주의
2. 2개월 무실적 : 경고
3. 3개월 무실적 : 중도매인 지정취소
4.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때: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거래정지 10일

제19조(중도매인의 중개수수료) 중도매인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중도매인 지정취소 등) 공판장장은 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도매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은 별지 서식 제29호와 같다.<개정 2008. 3. 13>

1.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매인 지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거래보증금의 납부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중도매인이 거래를 함에 있어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서 중도매인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경우<개정 2007. 8. 17>

4. 시설을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5. 기타 관계법령 및 본회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09. 7. 22>

제3절 매매참가인

제21조(매매참가인 신고 등) ①본회 공판장의 매매참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매매참가인 신고서”(별지서식 제10호)를 공판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거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한 후 거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매매참가인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서식 제12호)를 공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2009. 7. 22>

②매매참가인의 자격 및 신고서류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의 중도매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개정 2007. 8. 17, 2009. 7. 22>

③공판장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격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매매참가인 신고증”(별지서식 11호)을 교부한다.<개정 2008. 3. 13, 2009. 7. 22>

④공판장장은 제3항의 매매참가인 신고증을 교부함에 있어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신고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신고 유효기간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5항의 중도매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 7. 22>

⑤제3항의 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자는 거래보증금 또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후 매매참가인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2009. 7. 22>

1. 매매참가인 거래약정서(별지서식 제13호)<개정 2010. 4. 27>

2. 담보물과 기타 채권보전서류

3. 연대보증인 입보에 필요한 서류(연대보증인 입보시에 한한다)

4. 인감증명서

⑥제5항의 거래보증금 및 거래약정서상 변동사항 발생시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중도매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개정 2007. 8. 17, 2009. 7. 22>

⑦매매참가인의 외상거래는 제11조 제2항의 기본한도 범위내로 한다.<신설 2009. 7. 22>

⑧제5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매매참가인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농·축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거래약정서만으로 거래할 수 있다.<신설 2009. 7. 22>

⑨매매참가인의 판매대금납입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의 중도매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 7. 22>

⑩매매참가인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법인인 경우의 관리는 제15조의 중도매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 7. 22>

⑪제10항에도 불구하고 본회가 제49조에 의한 수매대행지정중도매인을 통해 수매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 7. 22>

⑫매매참가인으로 신고된 자가 거래실적이 저조하거나 관계법령 및 본회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판장장은 거래약정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9. 7. 22>

제4절 연대보증인

제22조(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중도매인의 실질적인 담보가치(“실질적인 담보가치”라 함은 담보물의 처분후 실제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금액 초과 거래로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채무 및 지체상금과 제비용 전액에 대하여 약정 보증한도 범위내에서 중도매인 및 다른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연대보증인 입보제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약정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규제되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규제된 사실이 있는자<개정 2008. 3. 13>
2. 상각채권과 이에 수반한 채권 및 미수이자 채권으로 특수채권에 편입된 채무관계자
3. 보증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없는자(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공판장장이 상환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기타 본회 제규정상 결격 사유가 있는자<개정 2008. 3. 13>

제24조(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 등) ①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 산정 및 보증한도 금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방법서”에 의한다.<개정 2008. 3. 13>

②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신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물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경우 등 공판장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절 경매사

제25조(경매사) ①공판장장은 농안법이 정한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직원 중에서 공판장 업무규정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임명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41일정2의 규정에 의한 위판장은 경매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실제 경매를 담당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경매사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9. 7. 22>

1. 공판장에서 경매보조원 또는 속기원으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판장 또는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 판매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사 교육을 이수한 자

②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상장한 수산물의 가격평가
3. 경락자 결정

③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수희망자와의 담합
2. 부당한 경락자 결정
3. 경매순서 및 경락가격 고의 조작
4. 출하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의 금품수수

④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임명한다. <신설 2007.

8. 1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4. 경매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⑤공판장장은 경매사가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경매사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7. 8. 17, 개정 2009. 7. 22>

⑥공판장장은 경매업무를 수행할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경매사 임면신고서(별지서식 제28호)를 작성, 주무부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는 농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 8. 13, 개정 2008. 3. 13, 2008. 11. 5>

제6절 거래방법 등

제26조(거래품목 등)공판장의 거래품목, 휴업일, 개장시간의 지정 또는 변경은 공판장장이 결정한다.

제27조(거래단위) ①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거래단위를 중량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28조(거래관계자의 표시) ①공판장의 거래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공판장장이 정하는 거래참가증 패용 및 일정한 복장(모자)을 착용하는 등 “거래관계자의 표시”(별지 서식 제14호)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2>

②공판장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7. 22>

제29조(위탁원칙) ①본회 공판장에 수산물을 위탁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위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안법에서 정한 예외의 경우와 소비지 공판장에 계통출하 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본회 공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 또는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기피하거나 판매과정에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7. 8. 17>

1. 위탁하는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위반 또는 유통기한 경과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

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8. 3. 13>

4. 사회통념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하자품 및 매수인이 없는 경우 등

제30조(위탁판매 신청) ①위탁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하자 인적사항, 출하물품내역, 판매대금 송금처 등을 기재한 표준송품장(별지서식 제15호)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구두로 신청할수 있다.

②제1항의 송품장은 접수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판장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하된 수산물을 인수하여 판매하되, 제29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판매를 거절하는 뜻을 위탁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조(경매 또는 입찰방법) ①공판장은 수탁한 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되, 경매는 위탁자가 경매상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 거수수지식,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거수수지식 경매는 경매사가 최고 제시가격을 3회 이상 호가하여야 한다.

③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 높이 이상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3회 이상 호창하여야 한다.

2.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등급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다.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 되어야 한다.

3.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한다

4. 서면입찰식 : 입찰 대상품목은 출하자명·출하지명·품목·품종·수량·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 하여야 한다.

제32조(정가·수의매매) ①공판장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거래 할 수 있다.

1. 공판장이 매수하여 도매 거래하는 경우
2.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4. 반입량이 적고 거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서 공판장장이 인정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개정 2007. 8. 17>

가.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수탁된 품목

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품목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출하자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개정 2007. 8. 17>

가.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수산물

나. 농안법에서 규정한 공판장의 겸영사업으로 위탁받은 수산물

7. 저장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신속히 처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으로서 출하자의 동의하에 경매시작전에 반출하는 경우

8.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농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위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화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장이 가격, 반출지, 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개정 2008. 3. 13>

9.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거래방법, 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화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개정 2008. 3. 13>

②공판장장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1. 판매한 물품의 품목, 수량, 금액 및 출하자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사유

제33조(수탁판매의 예외) ①공판장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매

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07. 8. 17, 2008. 3. 13>

2. 농안법 제34조에서 정한 거래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개정 2007. 8. 17>

3. 당해 공판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판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개정 2007. 8. 17>

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수탁판매의 방법으로서는 적정 거래 물량 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로서 공판장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삭 제 2008. 3. 13>

6. <삭 제 2008. 3. 13>

7. 기타 수탁판매의 방법에 의한 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공판장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공판장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산물을 매수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 수량, 원산지, 매수가격, 판매가격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③중도매인이 공판장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 8. 17>

1.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3.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공판장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4조(경매순서)①공판장장은 당일 수탁물을 판매할 경매사, 속기사 및 하수 담당자 등을 경매개시 전에 지명하여야 한다.

②수탁된 수산물이 효율적인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열하여야 하며, 경매는 진열순서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경매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복수경매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 예약출하품 등 농안법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리한 순서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고봉입상 및 불량용기가 사용된 수산물은 진열순서에 불구하고 불리한 순위의 경매를 할 수 있다.

④수산물의 양륙 또는 하차지연, 경매장소 부족 또는 품질 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상 또는 차상 및 견본경매를 할 수 있다.

제35조(경매절차) 경매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반입물품의 하역(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성명·품명·등급별 수량을 기재하며 판매원표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품명·등급·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 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집합
 - 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실시
 -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 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 라. 경매사가 출하지역·출하자·품목·품종·수량·품위 등급 및 필요한 사항 호창
 -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칭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36조(경매참가 거부 및 담합금지) ①공판장장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수금이 거래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자
2. 거래정지중인 자
3. 제17조의 판매대금 납입을 지체하는 등의 사유로 공판장장이 특별히 경매참가를 제한한 자

②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17>

제37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공판장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경락) ①제31조 제1항에 의한 판매는 최고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다만, 출하자가 농안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최저가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경매에 입회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탁된 수산물은 경락 후 매수자가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매수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수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던 불량품 또는 저질품의 다량혼입으로 매수인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인정 될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인수 및 재판매)①경락 후 매수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인수를 거부 또는 태만히 하여 수산물의 상품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판매를 해제하여 재판매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판매로 인한 제1차 판매가격과의 차액 또는 판매 불능으로 인한 손실액은 제1차 매수인이 부담하며, 제38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40조(판매원표 관리) ①공판장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원표”(별지서식 제16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매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는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③작성된 판매원표는 정당한 절차없이 폐기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④판매원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41조(수수료 및 사업장려) ①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회는 수탁판매 증대를 위하여 매 사업년도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도매인 등에게 사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업장려금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금액 비중 또는 거래금액 증가율 등에 따라 차등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계통출하 물량에 대하여 원가보장을 위한 손실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채무확인) ①매월 1회 이상 사업수행상 발생된 미수금에 대한 채무 확인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무확인은 매수인원장에 매수인이 직접 확인 날인함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유통정보 공개) 공판장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현황판”(별지 서식 제 17호)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통신망(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제44조(하역업무) ①공판장장은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판장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하역비 부담 주체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여건에 맞게 공판장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매취판매

제45조(사업계획 수립) ①공판장장은 품목별 재고량, 최근 판매실적과 판매 가능성 및 가격전망 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상 손익을 철저히 검토하고 자체수매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매취사업 수행시 마다, 수매품의서(별지서식 제30호)를 작성, 어종별 시장 동향, 단가 변동사항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사업을 수행하고, 수매품의서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3>

②제1항의 사업예상손익은 수매원가, 수매수수료와 운반·보관비등 직접부대비, 금융비용등 간접비용, 판매비용 등을 포함하여 순손익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46조(재고보유 최고한도) ①공판장관리 주무부서장은 당해연도 매취사업계획, 연도별 매출액 및 재고자산 회전율, 평균 재고액 등을 감안하여 공판장별 보유재고한도를 정한다.<개정 2009. 7. 22>

②제1항에서 정한 한도의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공판장장은 주무부서장에게 보유 재고한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부서장은 보유기간 및 판매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08. 3. 13, 개정 2009. 7. 22>

제47조(수매방법) ①수매는 위판장(경매식 집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경매에 참가하여 수매 하거나, 회원(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중도매인을 지정하여 수매할 수 있다. 다만, 원양어획물과 수매시기가 지난 연안어획물에 대하여는 자회사 또는 일반유통업자로부터 직접 수매할 수 있다.<개정 2009. 7. 22>

②어선의 체항 등으로 어획물의 양륙이 지연되어 신속히 수매할 필요가 있거나 부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상경매에 참가하거나 어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선취수매 할 수 있다.

③상품성 또는 유통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입상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매계산서에 당초 수매 및 작업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다품종을 동시에 수매할 경우에는 어종별, 규격별, 품질별로 수매가격을 기재한 수매계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삭제 2009. 7. 22>

⑥유통업자를 통하여 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을 수매할 경우에는 품질 및 장기보관 또는 전매된 물품여부 등을 확인하고 생산일로부터 1년이상 장기 보관품에 대하여는 수매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판장관리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품목별 수매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근해산 선어, 냉동품 : 위판장 경매에 참가하거나, 회원 또는 수매대행 지정중도 매인을 통하여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회사 또는 유통업자를 통하여 수매할 수 있다.<개정 2009. 7. 22>

2. 원양산 냉동품 : 경매 또는 입찰에 참가하여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회사 또는 유통업자를 통하여 수매할 수 있다.

3. 건어물 : 산지 계통조직을 통하거나 가공업자 등 생산자로부터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회사 또는 유통업자를 통하여 수매할 수 있다.

4. 활어 : 위판장 또는 양식업자로부터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원 또는 인근 활어시장에서 수매할 수 있다.<개정 2009. 7. 22>

⑧제1항에 의거 위판장의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수매하는 경우 공판장장은 판매 및 유통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 비정규직원이 아닌 자를 경매참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09. 7. 22>

제48조(수매창구의 지정) ①공판장관리 주무부서장은 각 공판장별 소요물품중 품목별 사안별로 수매창구를 지정하거나 수매역할을 분담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각 공판장에서 소요물품을 지정 수매창구에 수매요청하는 경우에는 “수매요청서”(별지서식 제18호)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요청하고 추후에 “수매요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49조(수매대행 지정중도매인)①제47조 제1항의 수산물을 수매대행할 지정중도매인은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공판장장은 주무부서장에게 수매를 대행할 중도매인을 추천한다.
2. 주무부서장은 공판장장이 추천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적격자를 수매대행중도매인으로 지정한다.
3. 수매대행 중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수매대행지정 중도매인거래약정”(별지서식 제19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매대행 지정중도매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중도매인 거래실적 [본회 수매대행 실적을 포함한다] 이 당해 공판장 중도매인 1인 평균실적 이상인 자<개정 2008. 11. 5>

2. 최근 2년간 이 요령에 의거 경고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장은 본회 수산물 취급부서(지사무소를 포함한다)로부터 수매를 대행할 중도매인을 추천받아 수매대행 중도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지정한 수매대행 지정중도매인은 본회 경제사업 전부문에 대하여 수산물 수매를 대행케 할 수 있다.

⑤중도매인의 수매대행수수료는 수매대금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제50조(검수) ①국정검사품은 합격품에 한하여 검수 인수하며, 기타 수매품의 검수는 검수담당책임자가 “수매계산서”(별지 서식 제20호)에 의하여 육안으로 어종, 규격별 수량, 상품성 등을 검수하고 “검수증”(별지 서식 제21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수증은 수매대금 지급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원산지 확인 및 관리) 수매 시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국산 수산물 : 수산물매매기록장, 거래명세서, 원산지증명확인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2. 원양산 및 수입산 수산물 : 수매품에 대한 반입신고확인서, 수입면장 및 원산지증명확인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수매물품의 수불) ①수매 또는 판매업무 담당자는 “수매계산서”에 의거 즉시 판매품 원장과 재고 수불카드에 기장하여 수불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재고 수불카드는 전 수매 물량의 어종, 규격, 수량, 수매처, 보관처, 수매일자, 입출

고 상황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 수불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수매품의 보관) ①수매품을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타 물량과 혼적되지 않도록 구분이 용이하게 표시하여 보관하고, 본회시설에 우선적으로 보관한다.

②현지보관 필요성이 있거나 부대비용 증가 또는 선도저하 등 사업추진상 본회시설로 옮기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시설에 보관 할 수 있다.

③다른 시설에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시설 소유자의 재무 및 신용상태,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여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관을 의뢰하며, 가급적 “시설물 이용 계약”(별지서식 제26호)을 체결한다.

④보관품은 어종, 규격, 수량, 품질 등 인수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수시 확인 점검하는 등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본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수매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제4항의 사항 등을 명시한 보관증서 또는 창고증권 등을 받아야 하며, 매 분기별로 보관시설 소유자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보관물량의 출고) ①보관물량의 출고시에는 출고담당 책임자가 “물품출고요청서”(별지서식 제22호)에 의하여 본회 물품이 정확히 출고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원격지 보관물량을 신속히 출고할 필요가 있어 제1항의 출고요청서를 FAX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경우 비표 등을 통하여 출고담당 책임자는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출고요청서는 일련번호를 인자하여 사용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판매방법) ①수매품의 판매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공판장에 상장판매 및 직판
2. 지정거래인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입찰 또는 수의 정가판매
3. 군납(가공품 포함)이체 또는 납품판매
4. 냉동·냉장업체 및 가공업체에 대한 입찰 또는 수의 정가판매와 회원에 대한 판매
5. 기타 유리한 방법

②전량을 상장 또는 현품 판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건본에 의거 “보관장소도”로 판매할 수 있다.

제56조(판매기간) 수매 비축한 수산물은 수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시다획성 어종 또는 수요시기 집중어종으로 3개월이상 비축이 불가피한 어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7조(판매가격) ①판매가격은 수매원가(직. 간접 부대비 포함)와 시장동향을 감안한 일정률의 이윤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가격진폭이 극심한 수산물의 특성에 따른 시장사정의 변동, 품질품질품질로 원가이상 금액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 있으며, 동일자 동일품목 수매분을 분할하여 원가이하로 판매할 경우에는 이를 어종별 1회 판매금액으로 본다.<개정 2008. 3. 13>

②공판장장은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수산물을 원가이하로 판매한 때에는 상세한 내역을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다품종 일괄판매의 경우 어종별, 규격별, 품질별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평균가격으로 일부품목 또는 일부수량을 매수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매물품을 입고 또는 수송 이전에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매 원가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제58조(수매물품의 이체) 수매관련 주무부서 또는 공판장간 수매물품 이체시 이체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9조(감량처리)수매물품의 운송, 재입상, 입고 또는 보관 중 파지, 파태, 해동, 건조 등 자연감량으로 정상판매가 불가능하고 감량처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1000분의 2 범위 내에서 감량 처분할 수 있다.

제60조(지정거래인) ①수산물의 냉동, 냉장, 도·소매, 가공, 수출업체 또는 대량소비처로서 공판장에서 수매한 수산물을 외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거래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지정거래인 지정신청서(별지서식 제23호)
 2. 업체현황,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 <개정 2008. 3. 13, 2009. 7. 22>
3. <삭제 2009. 7. 22>
 4. 담보물건 목록

5. 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대차대조표

②공판장장은 제1항의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자에 대하여 제3항의 조치를 한 후 거래약정(별지서식 제24호)을 체결한다.

③지정거래인의 자격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외상거래한도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지정거래인의 판매대금 납입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물품대금을 대금 납입 유예기간 경과일 이후로도 계속하여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판장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대금납입 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시 : 거래정지 최고 및 법적조치에 관한 최고

2. 대금납입 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시 : 거래정지 및 법적조치

3. 대금납입 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시 : 지정거래인 지정 취소

⑤공판장장은 지정거래인의 거래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정거래인에 대한 채권 전액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대금납입유예기간 경과 일수에 관계없이 거래정지 및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 3. 13>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방법서 제75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정하는 신용도가 양호한 기관, 단체로서 공판장장이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약정체결만으로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신설 2009. 7. 22>

제4장 공동수집판매

제61조(공동수집판매) ①공동수집판매는 규격과 품질이 같아 공동으로 판매하여 공동으로 정산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집과 보관은 회원이, 판매는 본회가 담당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의 대표를 업무에 참여하게 하거나 회원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공동수집판매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와 회원간에 “공동수집 판매계약”(별지서식 제25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2조(검수) 검수담당책임자는 생산자 입회하에 적격품 여부, 등급 등을 판정하여 검근하여야 한다.

제63조(보관) ①수집된 물품은 공동수집판매계약에 따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타 창고업체에 보관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보관증서 또는 창고증권을 받아야 하며, 매 분기별로 보관시설 소유자의 재무 및 신용상태, 화재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집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창고 별로 보관품의 산지, 등급, 재고수불상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4조(판매) 매수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현품은 대금입금과 동시에 인도한다. 다만, 외상판매가 부득이하다고 대표이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 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하여 외상판매 할 수 있다.

제65조(대금정산) ①판매대금은 판매완료 후 지체없이 이를 정산한다. 다만, 분할 판매 시에는 분할정산을 할 수 있다.

②공동수집된 물품은 품목별, 규격별, 등급별 판매대금에서 제비용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물품의 수량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계산으로 일부 생산자의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정산시에는 판매에 소요된 제비용, 입체금, 수수료, 이자, 선금금 등을 공제한 판매대금 정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5장 예약판매

제66조(예약판매) ①공판장장은 재무 및 신용상태가 건실한 대량수요자 또는 소속 중도매인 등으로부터 예약(주문)을 받아 판매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4. 27>

②예약판매 품목을 선정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성 품목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공판장장은 예약(주문)자와 예약(주문)내역, 물품인수도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약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중도매인에 대한 예약판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공판장 상장절차에 의해 정가수의매매 할 수 있다.<개정 2010. 4. 27>

1.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중도매인이 필요로 하는 적정 거래물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
2. 성어기 일시 반입물량 과다로 반입 당일 원활한 분산이 어렵다고 공판장장이 인정

하는 경우

⑤예약판매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7조 내지 제70조를 제외하고는 제3장 매취판매를 준용한다.<신설 2010. 4. 27>

제67조(증거금 납부)①본회 공판장을 통하여 예약구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 구매예상가액의 20% 이상을 증거금으로 공판장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판장장은 증거금을 물품대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증거금은 공판장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약(주문)자의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예금액은 제1항에서 규정한 증거금 이상이어야 한다.

제68조(보관) ①예약물품의 보관은 본회 시설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사유로 다른 시설에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시설 소유자의 재무 및 신용상태,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여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관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매분기별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②다른 시설에 보관 의뢰시에는 가급적 “시설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어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한 보관증서 또는 창고증권을 징구하고 공판장장의 승인 없이는 출고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예약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설에 보관할 경우에는 예약(주문)자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예약(주문)자 [가족관계증명서상 예약(주문)자의 가족을 포함한다] 소유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 3. 13>

제69조(판매) ①판매가격은 구매원가(직·간접부대비 포함)와 일정률의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②예약(주문)자의 예약물품을 구매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인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공판장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수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 3. 13, 2010. 4. 27>

③예약(주문)자는 가격 하락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예약물품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를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판장장은 예약(주문)자가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예약(주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67조의 증거금 또는 질권 설정 예금에 대한 권리 행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0조(대금정산) ①예약물품에 대한 대금정산은 물품인도와 동시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6조 제4항에 따라 공판장 상장절차에 의해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탁판매에 의한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0. 4. 27>

②<삭제 2010. 4. 27>

③예약(주문)자가 불가피하게 대금을 분할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대금정산분에 대하여만 예약(주문)자에게 인도하고, 잔여물품에 대하여는 공판장이 소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유통정보관리

제71조(유통정보 관리) ①공판장관리 주무부서장은 공판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산물유통정보를 수집·정리하여 공판장에 제공한다.

②수산물유통정보 수집기능을 부여받은 공판장은 수집된 정보를 주무부서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산물유통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근해산 수산물 : 주요산지 공판장의 어종별, 규격별, 품질별, 위판물량 및 가격동향, 어황, 생산전망 등
2. 원양산 수산물 : 어종별, 규격별, 품질별, 반입물량 및 가격동향, 출어상황, 재고동향 등
3. 소비지 유통 : 주요 소비지 어종별 유통물량 및 가격동향 등
4. 유통업체 : 주요 집하지 유통업자 동향 등

④공판장관리 주무부서장은 수산물유통정보수집 공판장과 조사내용 및 시기를 지정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7장 시설사용

제72조(시설의 용도 지정등) ①공판장장은 중도매인 및 부속영업인이 사용하는 공판장 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기타 사용조건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공판장장은 시설규모, 거래액,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도매인 등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4. 27>

③공관장장은 사용료, 임대료, 쓰레기유발부담금, 기타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 등을 계약 또는 징수 기준에 따라 중도매인 등의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공관장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연도의 평가기준 등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0. 4. 27>

⑤공관장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출하자 등 공관장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신설 2010. 4. 27>

⑥공관장장은 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에 따른 벌점제도를 도입하여 제재조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0. 4. 27>

⑦제4항 및 제6항의 중도매인 평가 및 벌점제도 운영 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한다.<신설 2010. 4. 27>

제73조(부속업소의 제한) 공관장 안에는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한 다음 각 호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1. 직관시설
2. 음식점
3. 이용소
4. 약국
5. 기타 공관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

제74조(부속영업의 규제) 공관장장은 공관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시설사용의 규제) 공관장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 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공관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 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
6. 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7. 법령 및 업무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76조(대집행) 제75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공판장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장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7조(보수명령) 공판장장은 공판장 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78조(준용규정)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미수금의 관리등 필요한 사항은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방법서에 따른다.<개정 2008. 3. 13>

제79조(회계 및 전산) 이 요령의 시행에 필요한 회계처리방법은 「경제사업부문 업무처리방법서」에 의하며, 전산처리방법은 「통합공판시스템 사용자 지침서」에 의한다

제80조(장표, 서식) 이 사업에 필요한 장표 및 서식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통합공판시스템 사용자 지침서」에서 정하는 전산출력 장표 및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1조(회원조합의 준용) <삭제 2009. 7. 22>

부 칙

-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 12. 18 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요령)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판매사업실시요령”은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중인 산지유통인, 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연대보증인, 지정거래인, 수매대행지정중도매인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7. 8. 17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 시행중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출하자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 3.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 11.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9. 7.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0. 4. 27부터 시행한다

<부록 4> 산지위판제도 관련 법률

1. 수산업법(시행 2010. 4. 20.)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3. 근해어업의 허가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7.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산업법 시행령(시행 2010. 4. 23.)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전부개정]

제43조(위판장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이하 “위판장”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3. 그 밖에 어획물 양륙시설을 갖춘 선착장 또는 물양장(物揚場) 등으로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판장의 명칭 및 관리자
2. 위판장의 소재지,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제44조(위판장 지정의 취소) ①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판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위탁판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시행 2009. 8. 24.)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9-182호, 2009. 8.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의 거래시설)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판장으로 한다.

제3조(거래방법)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방법"이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에 의해 경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한다.

제4조(수산물 거래의 확인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거래시설의 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수산물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야 한다.

②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를 교부 요청 받았을 때에는 가격 결정 당시의 포장상태 유지 및 내용물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거래확인서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확인서 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거래한 경매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내로 한다.

제6조(정가·수의매매 거부) 거래확인서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한 출하자에 대하여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은 1월의 범위안에서 이 고시에 의한 정가·수의 매매를 거부 할 수 있다

제7조(세부규정)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협의하여 시행규칙 제16조에 정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8.25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4.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에 관한 고시(시행 2008.5 .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2호, 2008. 5. 8.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의 거래시설)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업법시행령(안)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관장으로 한다.

제3조(거래방법)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방법"이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에 의해 경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한다.

제4조(수산물 거래의 확인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거래시설의 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수산물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야 한다.

②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를 교부 요청 받았을 때에는 가격 결정 당시의 포장상태 유지 및 내용물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거래확인서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확인서 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거래한 경매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내로 한다.

제6조(정가·수의매매 거부) 거래확인서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한 출하자에 대하여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은 1월의 범위안에서 이 고시에 의한 정가·수의 매매를 거부 할 수 있다

제7조(세부규정)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협의하여 시행규칙 제16조에 정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 . 부터 시행한다.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7.7.2>

1. 양곡부류 : 미곡·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 및 땅콩
2.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薯類)·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
4.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
5. 화훼부류 : 절화·절지·절엽 및 분화
6.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제19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승인신청) 법 제43조에 따라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판장 개설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7.2]

제2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협등,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관련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9. 6. 2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0호, 2009. 6. 9. 일부개정]

제44조 (시설기준) ①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10.15>

[별표 1의2] <개정 2008.10.15>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제44조 제1항관련)

시 설	부류별	청 과			수 산			축 산			화 훼	약 용 작 물	
	도시인구 별	30만 미만	30만 이상 ~100 만미 만	100만 이상	30만미 만	30만이 상~10 0만미 만	100만 이상	30만미 만	30만이 상~10 0만미 만	100만 이상	-	-	
대 지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건 물	660	1,320	3,300	6,600	660	1,320	2,640	530	1,060	2,110	660	660	
필수 시 설	경매장(유개)	500	990	2,480	4,950	500	990	1,980	170	330	660	500	500
	주 차 장	500	330	830	1,650	170	330	660	170	330	660	330	330
	냉 장 실					17	30	50	70	130	200		
	저 병 실					(20톤)	(40톤)	(60톤)	(80톤)	(160톤)	(240 톤)		
	오물처리장	30	30	70	100	30	70	100	70	130	200	30	30
	위 생 시 설 (수세식화장실)	30	30	70	100	30	70	100	30	70	100	30	30
	사 무 실	30	30	50	70	30	50	70	30	70	100	30	30
하주대기실· 출하상당실	30	30	50	70	30	50	70	30	70	100	30	30	

부 류 별	양 곡	청 과	수 산	축 산	화 훼	약용작물
부 수 시 설	상온창고, 중도 매인점포, 중도 매인사무실	저온창고, 상온창고, 가 공 처 리 장, 재발효 및 추열실, 중 도 매 인 점포, 중도 매 인 사 무 실, 소각시 설, 농산물 품 질 관 리	상온창고, 가공 처리장, 제빙시 설, 염장조, 염 장실,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소각시 설, 용융기, 음 식물쓰레기처리 시설	식육운반차량, 중 도매인사무실, 축 산물위생검사시설 및 사무실, 도체 등급판정시설 및 사무실, 부산물처 리시설, 농산물품 질관리실, 부분육 가공처리시설	저온창고, 상온 창고,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상온창고, 중도매 인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실, 음식물 쓰레기 처 리시설				
기 타 시 설	가. 회의실, 경비실, 기계실등 나. 금융기관의 점포 다.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고 1. ()내는 처리능력을 말한다. 2. 필수시설중 "사무실"은 당해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공판장의 사무실을 말한다. 3. 도매시장법인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경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수시설중 "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필수시설에 "시장도매인점포"를 추가한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도매시장의 경우 필수시설에 "시장도매인점포"를 추가하되,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장소(중도매인의 영업장소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와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수시설 또는 기타시설은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충분한 주차장·차량진입도로 및 상하차대와 상·하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인구는 개설허가 또는 승인신청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공판장·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자치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7. 청과부류를 취급하는 공판장·민영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청과부류시설기준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민영도매시장·공판장이 청과부류와 기타부류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청과부류의 시설기준만을 적용한다. 8. 수산부류중 활어류·패류·해조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건해조류 및 것갈류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냉장실 및 저빙실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설기준은 기준시설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축산부류중에서 조류 및 난류만을 취급하는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축산부류시설기준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 산지에 설치되는 공판장의 경우 위의 시설기준에서 50퍼센트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산지에 설치되는 수산물공판장은 위의 시설기준에서 80퍼센트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고, 주차장·사무실·하주대기실·출하상담실을 필수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개설허가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